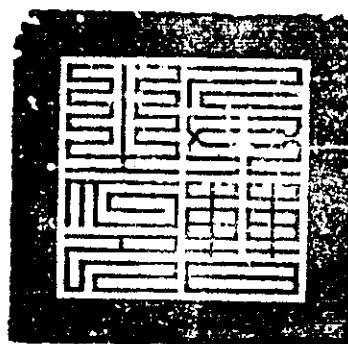


軍史

第 37 號



國防軍史研究所

軍史

第 37 號

1998



目 次

-
- 三國時代의 小部隊 리더 養成體系 許 重 權(1)
 - 高麗時代 武班職의 地位와 構成 李 鎮 漢(29)
 - 18세기 전반의 首都防衛論 李 根 浩(57)
 - 1947~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滿洲計劃’과
長延地區民主自衛軍 정 병 준(85)
 - 건군50년 한국군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 한 용 원(117)
 - 21세기 한국군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발전방향 권 태 영(137)



창군의 모체가 된 국방경비대의 제3연대 1대대 기간(基幹) 장병

- 방위전략의 재조명 온 창 일(167)
- 日本軍國主義 形成過程에 대한 研究 李 鍾 學(189)
- 러시아 대한반도정책의 변화와 전망 김 경 순(219)
- 〈書評〉：修正主義的 韓國戰爭史 연구에 대한批判과 自省(유영익 편, 「修正主義와 韓國現代史」) 金 幸 福(257)

- 1998年度 前半期 軍事史 關聯 博士學位論文 紹介
- 新刊紹介
- 參戰者研究室 利用 案內
- 〈軍史〉誌 投稿案내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三國時代의 小部隊 리더 養成體系

許 重 權

(육군제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조교수)

1. 序 論
2. 中央軍事組織上의 小部隊 리더 養成體系
3. 地方軍事組織上의 小部隊 리더 養成體系
4. 結 論

1. 序 論

인류 역사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들 중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즉 國際關係는 평화적인 상태와 비평화적인 상태의 범주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국제관계의 양극단은 平和와 戰爭이며, 그 범주 사이에는 완전하고 동등한 평화관계－불평등한 평화관계－평화지향적인 마찰과 갈등관계－전쟁지향적인 마찰과 갈등관계－분쟁관계－국지적 전쟁관계－전면적 전쟁관계 등이 존재한다.¹⁾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國力이며, 국력 중의 핵심요소는 物理力, 즉 힘(軍事的 能力)으로 설명된다.²⁾ 다시

1) 구영록, 『인간과 전쟁』, 법문사, 1979, pp. 125~128.

2)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1979, pp. 99~113.

말하자면 국제관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力關係에 따라서 결정 된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우리 나라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 지역에 존재했던 역관계에 따라 중국, 일본 등의 인접국가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국제관계를 형성하면서 역사를 전개시켜 왔다.

古朝鮮이 존재했던 上古時代에는 여러 가지 사료를 종합해 볼 때 고조선 초기 및 중기까지는 고조선의 東夷族 文化圈과 중국의 漢族 文化圈이 역관계의 평형을 이루어 평화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고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역관계가 중국으로 기울면서 깨어짐으로써 漢 王조가 고조선을 공격한 전면적 전쟁관계가 형성되어 결국 고조선은 멸망당하였다.³⁾

고구려·백제·신라가 병존한 三國時代의 경우, 이 지역의 국제관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삼국간에 형성되고 변화된 역관계 위에 중국 및 왜와의 역관계 요소가 重層的으로 가미되어 보다 복합적인 역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이 형성하였던 동이족 문화권을 유지하고자 한 高句麗는 기본적으로 중국세력과 비평화적인 상태의 국제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결국 3세기 이상 지속된 분열시대를 마감하고 6세기 말 7세기 초에 등장한 隋·唐이 한족 문화권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고구려를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전면적인 전쟁관계로 돌입하였고 고구려는 결국 668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고조선 멸망 후 그 流民들에 의하여 형성된 夫餘의 일개 지파가 한반도로 남하하여 건국한⁴⁾ 백제의 경우, 한반도의 중부지방에 그 기반을 구축

3)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였고, 『三國遺事』나 『帝王韻紀』 등에 의하면 중국에 최초의 왕조가 들어섰던 기원전 24세기에 건국되었다고 전한다. 『論語』를 저술한 공자(孔子)가 춘추전국(春秋戰國)의 어지러운 시대를 맞아 동이(東夷)에 가서 살고 싶어했다는 기록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적 유물유적의 주인공이 중국의 한족문화와는 별개의 것이었음이 밝혀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멸망시기의 고조선 후기 역사 기록밖에 접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고조선 초기 및 중기에 고조선은 중국과 대등한 문화발전 단계를 이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4)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하면서⁵⁾ 5세기 한때 중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중국 우위의 역관계를 형성하여 황해를 건너 중국의 遼西·晉平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였고,⁶⁾ 이후 일본 열도로 진출하여 그곳에서倭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7세기 중반에 당이 고구려를 치기 전에 배후의 위협을 제거한다는戰略의 구도하에 형성한 나당연합의 상태에서 역관계상의 열등한 위치를 형성함으로써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660년 멸망당하고 말았다.

고구려, 백제에 비하여 국가적 성장이 가장 늦었던 신라는 소백산맥이라는 지형적 방파제로 인하여 중국이라는 당시 동북아시아 최강국으로부터 간섭을 가장 적게 받았으나, 대한해협 건너편에서 성장한 왜에 의하여 수많은 침략을 받았다.⁷⁾ 이 과정에서 백제·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국가적 위협에 직면하자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에 의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으나, 고구려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고⁸⁾ 6세기부터 고구려 및 백제와 동등한 국력을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쟁을 통하여 영역을 확장하였다. 결국 신라는 당의 고구려 복속이라는 전략적 구도하에 편입되어

- 5) 부여에서 남한한 부족 중 형인 비류(沸流)는 한강유역 하류인 미추홀(안천지방)에 정착하였고, 동생인 온조(溫祚)는 한강유역 중상류인 서울 지방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백제 진국시 이 지역에는 이미 마한(馬韓)이 존재하고 있어 백제는 마한과의 마찰을 통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여 갔다. 백제에 밀린 마한은 익산지방으로 밀려났고, 그 후에는 전남 영암지역으로 밀려났는데, 4세기 무렵 아들 지역이 모두 백제에 편입되었다.
- 6) 백제의 요서경략에 관한 사료는 우리측 기록인 『三國史記』에 전하지 않고, 중국측 기록인 『宋書』 이만열전 백제전, 『梁書』 동이열전 백제전, 『南史』 동이열전 백제전 등에 전한다. 이 중 『梁書』의 기록이 가장 자세한데 읊기면 다음과 같다.
- 其國本與句麗在遼東之東 晉世句麗既昭有遼東 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
自置百濟郡
- 7) 『三國史記』에서 신라가 왜의 침공을 받았던 것을 조사하면, 1세기에 3회, 2세기에 1회, 3세기에 10회, 4세기에 4회, 5세기에 15회, 6세기에 1회 등 총 34회에 이른다.
- 8) 신라를 구원했던 고구려는 경주에 군대를 주둔시켜 신라의 국정(國政)에 깊이 간여하였다. 경주에서 출토된 고구려 왕당(王幢) 명의 기와가 존재하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고구려는 신라 왕자를 볼모로 하기도 하였고 신라 왕실의 왕위계승에도 간섭하였다.

4 軍 史

당과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병존했던 삼국시대의 국제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의 변화하는 역관계에 의하여 형성·유지·전개되었는데, 삼국시대는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았던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⁹⁾ 따라서 한국사학계에서는 고대사를 정리하는 데에는 삼국간의 대内전 및 삼국이 치렀던 대외전 등 전쟁사를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삼국시대의 전쟁사 부분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여 대체적인 윤곽은 이루어 놓았다.¹⁰⁾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삼국간에 형성된 역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¹¹⁾ 그에 따라 역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대규모의 전쟁들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¹²⁾ 장수왕의 한강유역 진출전쟁,¹³⁾ 대수·당 전쟁,¹⁴⁾ 백제의 한강유역 회복전쟁,¹⁵⁾ 백제 의자왕대의 신라 공격전쟁,¹⁶⁾ 신라 진홍왕의 정복전쟁,¹⁷⁾ 신라·당 연합군의 백제·고구려 통합전쟁¹⁸⁾ 등에 연구가 집중되었

9) 『三國史記』, 『三國遺事』와 『隋書』, 『新唐書』, 『舊唐書』 등의 사료를 종합하여 신형식은 삼국시대에 총 460회의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신형식, 「삼국시대 전쟁의 정치적 의미」, 『한국사연구』 43, 1983, pp. 5~9)

10) 이만열, 「삼국의 항쟁」,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8.

이호영, 『신라의 삼국통합과정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5.

11) 노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역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28, 1981.

신형식, 「삼국시대 전쟁의 정치적 의미」, 『한국사연구』 43, 1983.

12) 이병도, 「광개토왕의 용략」, 『한국고대사연구』, 1976.

이진희, 「광개토왕비의 연구」, 1982.

이정구·박노희, 「광개토왕릉비 신연구」, 1986.

13) 박성봉, 「고구려 남진 경영사의 연구」, 백산자료원, 1995.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고구려 대수·당 전쟁사」, 1991.

15)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93.

16)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 멸망」, 『백제연구』 19, 1988.

17) 이병도, 「진홍대왕의 위업」, 『한국고대사연구』, 1976.

18) 이호영, 『신라의 삼국통합과정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5.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통일기 신라사회 연구」, 1987.

허중권, 『신라통일전쟁사의 군사학적 연구』, 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5.

고, 그에 따라 이들 전쟁에서 활약한 군주들과 명장들(광개토대왕, 진홍왕, 의자왕, 을지문덕, 연개소문, 계백, 김유신 등)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적지 않은 성과가 축적되었다.¹⁹⁾ 한편, 신라의 경우 7~8세기에 활동했던 명장들이 대부분 화랑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화랑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²⁰⁾

주지하다시피 戰爭은 일련의 戰鬪들에 의하여 치러진다.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초급~중급제대의 부대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러 지역의 전투들이 결국 전쟁을 구성하고, 초급~중급제대의 전투승패가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선택한 가장 적합한 戰略을 수행하는 것도 결국 중간제대 및 하급제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고대사 분야 중 군사사 부분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규모의 전쟁과 명장들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초급~중급제대의 지휘관과 전쟁을 구성한 전투들에 연구의 관심이 두어져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삼국시대에 고구려·백제·신라가 수행했던 수많았던 對外戰爭 및 對內戰爭에서 그 활동이 발견되는 초급 및 중급제대의 지휘관들에 그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들이 수행했던 전투에서의 구체적인 활약이 파악됨으로써 삼국시대 전쟁사에 관한 보다 명확한 윤곽이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급지휘관(이하 본고에서는 이들을 소부대 리더²¹⁾

19) 정경숙, 「신라시대 장군의 성립과 변천」, 『한국사연구』 48, 1985.

정영호, 「김유신의 백제공격로 연구」, 『사학지』 6, 1972.

20) 이기동, 『신라풀풀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2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부대 리더라는 용어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대체로 소대~중대급 부대의 지휘자 및 지휘관을 지칭하는 장교라고 정의될 수 있다.

물론, 한국고대의 군사조직상에 소부대 리더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고위급 지휘관인 장군(將軍)과 말단병사인 병卒(兵卒)들만 주로 기록되었

6 軍 史

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양성되어 각급체대에 배치되었던가 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 가기로 하였다. 기왕의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된 화랑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삼국의 중앙군사조직상에서 소부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체계가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어떠한 목적하에서 그러한 양성체계가 형성되었고 교과과정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주로 城兵의 형태로 유지된 지방군사조직상에서 소부대 리더들이 어떻게 양성되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2. 中央軍事組織上의 小部隊 리더 養成體系

가. 高 句 麗

현존하는 사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고구려가 유지하였던 중앙 관료조직은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다.²²⁾ 따라서 수많은 전쟁에서 고구려가 운용하였던 中央軍事組織으로 어떠한 부대가 존재하였는지 하는 문제는 체계적으로 풀어지지 않는다.

다. 그런데 로마사의 경우(로마의 정예 핵심부대였던 중부장 보병의 경우, 소대는 60~1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장을 백인대장이라고 하였다. 중대는 20개의 소대로 구성되었고, 3개의 중대가 1개 로마군단을 형성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대사회에서도 군조직은 일련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고대사의 여러 전쟁기록에서 초급지휘관의 직책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2) 고대사에 관한 최고(最古)의 기록인 『三國史記』가 삼국을 통일한 신라사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편찬책임자인 김부식은 경주 출신의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느 역사기록이던 승자의 논리로 역사는 정리된다. 한국 고대사의 경우 고구려사 및 백제사는 신라사에 비하여 너무나 생략되었기 때문에 신라사에 관한 기록이 고구려사 및 백제사를 정리하는 데에 원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군사조직과 관련되는 일련의 고위급 官職名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속된 중앙군사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먼저 군사 조직과 관련되는 고위급 관직명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고구려에는 신하로서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대신급(宰相級)의 관직으로 大輔(좌·우보)²³⁾가 있어서 백관의 위에 있으면서 중요한 국가사업을 토의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군사를 장악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겸하였다. 대보의 관직은 신대왕 2년(166)에 國相으로 그 명칭이 변화되었으며,²⁴⁾ 이후 大對盧, 莫離支로 변화되었으나,²⁵⁾ 수행하였던 임무와 권한은 대동소이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²⁶⁾ 아들 관직 외에 중앙군사조직상에 소속된

23) 대보는 『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1, 유리왕 22년(4)조에 “大輔 협부(陥父)가 수도의 이동 공사로 백성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왕이 수령하는 것을 간한” 기사에 나타나며, 좌보는 대무신왕 8년(25)에 “을두지(乙豆智)를 좌보로 삼았다”, 대조대왕 71년(123)에 “목도루(穆度婁)를 좌보로 삼았다”, 차대왕 2년(147)에 “관나부인 미유(彌儒)를 좌보로 삼았다”, 차대왕 2년(147)에 “환나부 우태 어지류(菴支留)를 좌보로 삼았다”는 기사에 나타나고, 우보는 대무신왕 8년(25)에 “송옥구(宋屋句)를 우보로 삼았다”, 대조대왕 71년(123)에 “고복장(高福章)을 우보로 삼았다”는 기사에 보인다.

24) 국상으로 임명된 자는 신대왕 2년(166)의 명립답부(明臨答夫), 고국천왕 13년(191)의 을파소(乙巴索), 동천왕 4년(230) 이전의 고우루(高優婁), 동천왕 4년(230)의 명림어수(明臨於歎), 중천왕 7년(254)의 음우(陰友), 서천왕 4년(273)의 상루(尙婁), 봉상왕 3년의 창조리(倉助利) 등이다.

25) 막리지가 고구려 최고관직이었음을 『三國史記』 권40 잡지9 외관조에 고구려의 관직을 설명하면서 『新唐書』에 고구려 벼슬의 최상위가 대대로라고 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한편, 『三國史記』 권49 열전 9의 개소문전에는 그의 부친이 대대로의 관직에 있었으며, 부친 사망 후 국인(國人)이 그의 성품이 잔폭함을 미워하여 연개소문이 대대로의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대대로에 오르지 못한 연개소문을 쿠데타를 통하여(642년) 집권한 후, 대대로 대신 막리지로 취임하였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아들인 남생(666년 초)과 남건(666년 8월)이 차례로 막리지에 올랐다. 『三國史記』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6년(647)에는 보장왕의 둘째 아들 왕자 임무(任武)가 막리지였음을 기록되어 있다.

26) 대보－국상－대대로－막리지로 이어졌던 최고위 관직 외에 신대왕 2년 명립

것으로 여겨지는 부대를 지휘하였던 지휘관들에 대한 명칭으로 수없이 나타나는 將軍, 渠帥, 諸將, 大將 등이 있었고, 幢主, 大模達, 莫何邏繡支 및 末客 등도 존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중앙군사조직상의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던 자들 외에 고구려에서는 국왕이 직접 중앙군사조직상의 정예부대를 인솔하여 직접 전쟁에 참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구려 중앙군사조직에는 육군과 수군²⁷⁾이 존재하였고, 육군의 기본병종에는 步兵과 騎兵이 있었고, 보병에는 弓手, 弩手, 刀劍手, 長槍手 등²⁸⁾이 있었으며, 기병에는 輕騎兵과 重騎兵, 鐵騎兵²⁹⁾ 등이 있었다. 보병과 기병 외에도 포병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수군에는 보병과 기병 외에 노를 짓는 수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³⁰⁾

답부와, 중천왕 3년 명령어수가 받았던 지내외병마(知內外兵馬)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 병도는 이것을 관직으로 파악하지 않고 내외의 병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것으로 보았으나, 손영종은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0, p. 255에서 관직으로 파악하여 중앙(기내, 왕기)과 지방(기외, 외방)의 모든 군사조직을 통솔하는 역할을 역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27) 광개토대왕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391년 광개토대왕은 수군을 이용하여 서해를 건너 한강유역의 백제를 공략하였고, 396년 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을 실시하여 58성 700촌을 경략한 것도 수군을 이용하여 서해를 건너 서해안상의 백제지역부터 공략한 후 수도인 한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조에 의하면, 648년 김춘추가 입당하여 고구려 공격에 대한 당의 협조를 구한 후 배편으로 귀국할 때, 고구려 순라군선에 의하여 발각되어 피랍될 뻔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상의 제반 상황을 가늠해 볼 때 고구려 수군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28) 손영종은 안악3호분의 대행렬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종의 부대를 상정하고 있다.(손영종, 『고구려사』, p. 264)

29) 『三國史記』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0년(246)조에 의하면, 위(魏)의 관구검(毌丘儉)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왕은 보기(步騎) 2만과 철기(鐵騎) 5천을 동원하여 방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말을 무장시킨 기병은 약수리무덤벽화, 세간무덤벽화, 쌍기동무덤벽화 등에 그려져 있다. 북한 역사과학연구소에서 1975년에 출판한 『고구려문화』를 우리측에서 출판한 사회과학출판사, 『고구려문화사』, 논장, 1988, pp. 99~100에는 말무장과 철기 병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30) 손영종, 『고구려사』, p. 265.

고구려의 중앙군사조직은 京軍과 宿衛軍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경군은 首都와 王畿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5부³¹⁾의 군대와 일부 전문병종들이 이에 속하였다. 숙위군은 왕궁을 지키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 부대로서 중앙귀족의 자제들과 지방정치세력의 자제 중 선발된 자들이 이 부대에 속하였다.³²⁾

따라서 고구려 중앙군사조직상의 小部隊 리더의 양성체계는 이들 중하위급 제대의 지휘관들이 어떠한 교육과정을 거쳐 성장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마리를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국왕의 경우를 제외한 고위급 지휘관들은 고대사회의 특성상 貴族 신분에서 보충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나, 온달의 경우처럼 平民 신분에서 軍功을 통하여 군사조직상의 지휘관으로 승진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고위급 지휘관은 그들이 소속된 부가 차지한 고구려 정치계에서의 비중에 의하여 곧바로 대보－국상－대대로－막리지－장군 등의 직책에 세습적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었으나, 중하위급 부대의 지휘관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과정을 거치면서 군사적 능력이 인정되어 상위직으로 진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대세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 고구려인들은 尚武的 氣像이 강했다.³³⁾ 이것은 중국 세력과 인접하였던 지정학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중국과의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국가

31) 고구려의 5부는 계루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연노부 등이었는데, 2세기 고국천왕대에 내부, 북부, 동부, 남부 및 서부로 재편되었다.

32) 광개토대왕비에 “왕당(王幢)”이라 표기된 부대, 중국의 『翰苑』에 기록된 대당주(대모달, 막하라수지)는 중국의 위장군(衛將軍)과 유사하다고 한 것 등으로 보아, 숙위군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다.

33) 『後漢書』 동이열전 고구려전: 그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흥악하고 급하며 기력이 있어 전투를 잘하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하여 옥저와 동예를 모두 복속시켰다.

『三國志』 위치 동이전 고구려전: 사람들은 힘이 세고 전투에 익숙하여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켰다.

『梁書』·『南史』 동이열전 고구려전: 나라 사람들은 기력을 중상하여 활, 칼, 창, 화살 등을 잘 쓰고, 갑옷이 있으며, 전투에 익숙하여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켰다.

의 생존을 확보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했던 고구려인들에게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고구려인들에게 특히 강조된 군사기술은 활쏘기와 말 타기 및 칼쓰기 등이었고, 이러한 군사기술들은 귀족은 물론 평민들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연마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고구려의 교육기관에는 扰堂과 太學이 있었다. 경당은 지방에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지방군사조직상의 소부대 리더 양성체계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태학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태학은 소수림왕 2년(372)에 설치된 국가 관료의 양성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관이었다.³⁴⁾ 고구려에서 운용한 태학의 학제나 교과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국의 대학제도와 비슷한 고급관리의 양성기관이고 국가의 최고 학부였으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³⁵⁾ 따라서 고구려의 태학의 성격과 내용을 알아보자면 중국 대학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周代에 완성된 대학제도는 수도에 大學과 小學을 두고 지방에는 鄉學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대 國都에는 5곳에 대학을 두었는데, 각각 동서(東序), 우학(右學), 성균(成均), 우상(虞庠), 벽옹(辟雍)이라 불렀고 舞, 禮, 樂, 書, 儀를 교수하였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격은 公卿, 大夫, 元士의 자제 및 지방에서 선발된 수재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3德(正直, 剛克, 柔克), 6禮(禮, 樂, 射, 御, 書, 數), 6儀(祭禮, 寶容, 朝廷, 祀祀, 軍旅, 軍馬), 6行(孝, 友, 睦, 婦, 任, 恤) 등 기초 교양교육을 배운 뒤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있었다. 대학의 수업연한은 9년이었는데, 그 입학 연령은 8세에 소학에 입학하였고, 15세에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고구려의 태학이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사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주대의 대학과 유사한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372년에 완성된 고구려의 태학은 6세기 영양왕대의 사료에 나타나는 太學博士 李文眞의 예³⁶⁾에서

34)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6, 소수림왕 2년조.

35) 정문연, 『한국학기초자료선집』(고대편), 1987, p. 431.

36) 『三國史記』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1년조.

알 수 있듯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태학에서 교육받았던 자들이 태학을 마친 후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에 임명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특별히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자들이 중앙군사 조직상의 중하위급 부대에 배치받아 고위직으로 성장하여 갔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태학 외에 육군과 수군의 궁수, 노수, 도검수, 장창수, 경기병, 중기병, 철기병, 포병, 노군, 의장병 등의 전문 병종 부대에서 필요로 한 부대원을 양성하여 배출한 각 교육기관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이들 부대의 교육기관에서 운용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다.

나. 百 濟

고구려에 비하여 백제의 행정조직에 관한 사료는 비교적 풍부하다. 관련 사료에 의하면 백제는 중앙행정조직으로 3세기 고이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최고 관직으로 좌보 및 우보제를 유지하였고, 고이왕대에 이르러서 6좌평제로 발전된 조직을 가졌고, 6세기 성왕대에 가서는 22부 제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³⁷⁾

백제가 운용하였던 중앙군사조직도 통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바뀌었다. 좌보 및 우보제하에서는 국왕과 함께 左輔 혹은 右輔의 관직에 있던 대신이 중앙군사조직상의 편제부대를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³⁸⁾ 6좌평제가 실시되었던 3세기부터 22부제로 바뀌었던 6세기까지의 기간에는 6佐平³⁹⁾ 중 숙위의 임무를 담당하였던 위사좌평과 병마에 관한 임무

37)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신형식, 『백제사』, 이화여대출판부, 1992.

38) 좌보에 임명된 자는 다루왕 10년(37)의 흘우(屹于), 고이왕 14년(247)의 진충(眞忠), 우보에 임명된 자는 온조왕 2년(기원전 17)의 을음(乙音), 온조왕 41년(23)의 해루(解裏), 다루왕 7년(34)의 흘우(屹于), 다루왕 10년(37)의 진회(眞會), 고이왕 9년(242)의 질(質) 등이었다.

39)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2, 고이왕 27년조에 의하면, 내신(內臣)좌평은

를 담당하였던 병관좌평 및 佐將이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를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22부제가 실시된 6세기부터 멸망할 때까지는 外部 중 수석의 지위에 있던 司軍部의 장이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를 지휘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좌(우)보—병관좌평, 좌장—사군부의 장으로 이어진 백제 중앙군사조직상의 최고위 지휘관은 수많은 전쟁에서 將軍으로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 최고위 지휘관은 국왕의 숙위를 담당하던 핵심 정예부대와 도성 5부(上部, 前部, 中部, 下部, 後部)의 2,500~60,000명⁴⁰⁾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휘하였다. 도성 5부의 각부는 5巷으로 구성되었는데, 각부의 병력은 하급제대로부터 상급제대에 이르는 일련의 편제로 구성되었을 것이므로 각 제대의 지휘관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군급 이하의 지휘관 내지는 참모의 관직으로 볼 수 있는 司馬, 長史, 參軍 등이 여러 사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 중앙군사조직상의 편제부대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백제의 중앙군사조직은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되었고, 육군의 병종으로는 보병과 기병, 포병이 있었으며, 특히 해양국가였던 백제는 수군이 발달하였으므로 수군부대를 구성한 여러 병종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6좌평제가 마련된 3세기 고이왕대에 16관계 중 제13 및 제14 관계로서 武督 및 佐軍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다. 이것들은 무관의 품계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품계를 차지했던 자들이 중앙군사조직상

선납사(宣納事), 내두(內頭)좌평은 고장사(庫藏事), 내법(內法)좌평은 의례사(儀禮事), 위사(衛士)좌평은 숙위병사(宿衛兵事), 조정(朝廷)좌평은 형옥사(刑獄事), 병관(兵官)좌평은 외병마사(外兵馬事)의 직능을 맡았다.

40) 『周書』 열전 이역 상 백제전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도성에는 1만호가 거주하였고 5부의 각부에는 각각 500명의 병이 있어 부의 통제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일단 백제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를 총 2,500명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新唐書』 열전 동이 백제전에는 병관좌평이 외병 6만을 통솔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병관좌평이 중앙행정조직상의 관직이었으므로 외병 일부를 포함하여 총 60,000명의 부대를 지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의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22부제가 성립된 사비시대에는 내부로써 馬部 및 刀部가 있었다. 이들 관부는 왕실 직속의 기관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말과 무기류를 관리·제작하였던 관서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 관서에도 무관직의 관리가 임명되어 활동하였을 것이고, 전쟁시에는 중앙군사조직상의 편제부대로 구성되어 전투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들은 주로 귀족계급에서 보충되었을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평민에서 출발하여 전투에서 군공을 통하여 초급지휘관부터 그 승진과정을 밟아 상위직으로 진출하였을 것이다. 백제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를 지휘하였던 소부대 리더의 양성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다. 그러나 여러 경우의 장군들에 관한 사료에서 “문무를 겸전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고대사의 경우 군사직과 일반 행정직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귀족 출신의 소부대 리더들은 백제에서 운용하였을 일반 교육기관을 통하여 양성되었고, 그 중에서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자들이 군사직으로 보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여의 일파가 남하하여 한강유역에서 전국한 백제는 이미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마한파의 마찰을 통하여 세력범위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고구려 및 신라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고대국가로서 그 기반을 형성하여 갔다. 따라서 백제인들은 항상 전쟁에 대비하여 귀족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도 군사기술의 습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의 상황을 전하는 여러 중국 사서에서 “백제인의 습속은 기사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숭상하였다”고 한 것⁴¹⁾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백제의 교육기관은 고구려처럼 “태학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사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구려가 태학을 세운 지 2년 후인 374년에 高

41) 『周書』 이역열전 백제전과 『隋書』 동이열전 백제전 등에 “그들의 습속은 기사를 숭상하고…”, “풍속이 기사를 숭상하며…”라 한 것이 그것이다.

興을 博士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⁴²⁾ 그보다 1세기 앞서 고이왕대에 경전에 밝았던 아직기와 왕인을 일본에 보내어 일본 역사기록의 시조가 되었던 점과 논어 및 천자문 등을 전했던 기록이 있고,⁴³⁾ 6세기 성왕대에는 오경박사와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보냈던 것⁴⁴⁾ 등으로 보아 백제에도 고구려와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와 유사한 대학제도가 설립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백제 중앙군사조직상의 소부대 리더들은 평소 가문에서 말타기와 활쏘기 등의 군사지식을 익히면서 일반교양지식을 습득한 후,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대학이라는 국가교육기관으로 들어가 수학하였고,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들은 군사직을 포함한 중앙행정조직상의 관서로 임용되었을 것이다.

다. 新 羅

사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전하는 신라사는 고구려사 및 백제사와는 달리 여러 분야에서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정치사, 사상사, 사회사 및 경제사 등의 제분야가 비교적 상세하게 규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국 후부터 통일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신라에서 운용한 중앙군사조직의 윤곽도 대체로 밝혀졌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신라에서 운용한 중앙군사조직은 대체로 몇 단계를 거쳐 발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소국연맹 및 6부 체제를 유지했던 시기에는 군사력이 大小族長들에게 나뉘어 있었고, 유사시에는 이들 6부의 부대를 국왕이 직접 지휘하거나 신하 중 최고 실력자였던 大輔⁴⁵⁾나 舒

42)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30년조 : 古記云 百濟開國以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興 始有書記(하략).

43) 『日本書紀』 권10 옹신천황조 : 百濟王遣阿直岐 … 阿直岐亦能讀經典 … 阿直岐史之始祖也

『日本書紀』 권10 옹신천황조 :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故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44) 『日本書紀』 권19 흠풍천황조.

45) 대보에 임명된 자는 남해왕 7년(10)의 탈해(脫解), 탈해왕 2년(58)의 호공

弗邯⁴⁶⁾ 또는 신임하는 대신에게 將軍職을 하사하여⁴⁷⁾ 국왕의 군지휘권을 위임하여 통솔하게 하였다. 건국 이후 늘지왕대까지 신라가 수행한 對高句麗, 對百濟, 對靺鞨, 對倭 전쟁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의 군사적 보호를 벗어나기 시작한 늘지왕대부터 동해안 방면으로 고구려의 영역을 침탈해 나갔고, 법흥왕대에 이르러 兵部를 설치하여 軍政權을 집중하여 군사력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여 낙동강 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진흥왕대에 이르러서는 삼국의 주요 격전장이었던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법흥왕 3년(516)에 설치된 兵部는 신라가 설치한 최초의 중앙관부였는데, 병부는 통일신라시기까지 유지되었던 군정에 관한 최고위 관부였다. 병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兵部令은 예하에 大監, 弟監, 筵舍知, 史, 筵幢 등의 병부 소속 관직자들을 통제하여 평상시 신라의 중앙군사조직을 관리하였다.⁴⁸⁾

군정권이 병부로 통일되어 중앙군사조직이 일원적으로 관리되자, 신라는 軍令權을 통일하기 위하여 法幢⁴⁹⁾을 창설하여 평상시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들에 대한 훈련과 유사시 전쟁에서의 지휘체계를 통일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군령권의 통일 노력도 역시 법흥왕대에 이루어졌는

(瓠公), 탈해왕대 이후의 알지(關智) 등이다.

46) 서불감의 직책으로 전쟁에 신라 중앙군의 최고위 지휘관으로 참전한 경우는 조분왕 16년(245)과 침해왕 3년(249)의 우로(于老)가 기록에 보인다.

47) 지마왕 5년(116)의 將, 조분왕 2년(231)의 대장군 우로(于老), 소지왕 17년(495)의 장군 덕지(德智) 등이 기록에 보인다.

48) 『三國史記』 권38 잡지7 적관상 병부.

49) 고구려나 신라에서 독립된 단위부대를 흔히 군기(軍旗)의 뜻을 가진 '당'(幢)이라 하였고, 그 부대장은 '당주'(幢主)라고 하였다. 당주의 지휘하에 있었던 군인으로는 당주의 일족과 같은 귀족이 있었고 또한 귀족 무장이 개인적으로 가려 모은 소모병(召募兵)이 있었는데, 소모병에는 하급 귀족 출신도 많이 있었지만 그 주된 구성인은 평민, 특히 왕경(王京)의 평민이었을 것이다.(최원식, 「군사력의 증강과 군사적 기반」, 『통일기 신라사회 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p. 131)

데, 법흥왕은 불교 공인 이후 새롭게 중앙군사조직을 만들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 곧 호국이라는 호국불교 논리에 의하여 불법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중앙에 신설된 군부대의 명칭을 法幢이라 하였다. 평시 법당에는 장군들이 있어서 부대를 관리하였는데, 전쟁시에는 총사령관으로 법당 소속의 장군을 일부 포함하여 將軍, 大將軍, 上將軍, 部將軍 등이 별도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국왕이 신임하였던 대신 중에서 비상시 임명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당에는 158명의 법당주(法幢主), 194명의 법당감(法幢監), 192명의 법당두상(法幢頭上), 259명의 법당화척(法幢火尺), 486명의 법당벽주(法幢辟主) 등으로 이어지는 편제상의 무관직들이 있었다. 법당에는 시대를 내려오면서 백관당(百官幢), 군사당(軍師幢), 사자금당(師子衿幢), 경여갑당(京餘甲幢),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 외여갑당(外餘甲幢), 여갑당(餘甲幢), 외법당(外法幢), 노당(弩幢), 운제당(雲梯幢), 충당(衝幢), 투석당(投石幢) 등의 부대들이 창설되어 운용되었는데,⁵⁰⁾ 이들 부대에 법당주를 포함한 무관들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당을 창설하여 군령권을 통일한 신라는 진홍왕대(544년)에 이르러, 법당의 지위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국한시키고 종래 6부의 부족장들에게 소속되었던 주 전투력을 大幢으로 흡수하여 실질적인 중앙군사조직을 완비하였다.⁵¹⁾ 대당 창설 후 지방에도 정을 창설하여 6정의 체제를 완비하였다. 대당을 제외한 나머지 5정의 창설을 살펴보면, 진홍왕 13년(552)에 상주정(上州停)(문무왕 13년(673)에 귀당(貴幢)으로 명칭변경), 진홍왕 14년(553)에 신주정(新州停)(주(州)의 중심지가 이동함에 따라 진홍왕 29년(568)에 남천정(南川停)으로, 진평왕 36년(604)에 다시 한산정(漢山停)으로 명칭변경), 진홍왕 16년(556)에 비열흘정(比列忽停)(문무왕 13년(673)에 우수정(牛首停)으로 명칭변경), 진홍왕대 – 무열왕 5년 기간 사이에 실직정(悉直停)(무열왕 5년(658)에 하서정(河西停)으로 명칭변경) 및 진홍왕 16년(556)에 하주정(下州停)(신문왕 5년(685)에 완산정

50) 『三國史記』 권38 잡지7 직관상 병부.

51) 『三國史記』 권40 잡지9 직관하 무관 육정(六停) : 六停 一曰 大幢 眞興王五年始置.

(完山停)으로 명칭변경) 등이 창설되어 이른바 6정 군단으로 전국적인 군사조직이 정비되었다.⁵²⁾ 이들 6정 중 대당을 제외한 나머지 5정의 부대는 지방에 주둔하면서, 신라가 대외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대당과 함께 동원되었으므로 지방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

법당과 대당 외에 신라가 통일전쟁 전까지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로 운용한 것으로는 진평왕 5년(583)의 서당(誓幢), 진평왕 47년의 낭당(郎幢), 태종무열왕 1년(654)의 계금당(勲衿幢), 급당(急幢), 사천당(四千幢) 등이 있었다.⁵³⁾

법당과 6정의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들에는 骨品에 따른 관등의 고하에 따라 장군(將軍), 대관대감(大官大監), 대대감(隊大監 : 領馬兵, 領步兵), 제감(弟監), 감사지(監舍知), 소감(少監 : 領騎兵, 領步兵), 화척(火尺 : 領騎兵, 領步兵), 군사당주(軍師幢主),⁵⁴⁾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보기당주(步騎幢主), 저금기당주(著衿騎幢主), 비금당주(緋衿幢主), 사자금당주(師子衿幢主), 법당주(法幢主), 흑의장창말보당주(黑衣長槍末步幢主), 삼무당주(三武幢主), 만보당주(萬步幢主), 군사감(軍師監), 대장대감(大正大監), 보기감(步騎監), 삼천감(三千監), 사자금당감(師子衿幢監), 법당감(法幢監), 비금감(緋衿監), 저금감(著衿監), 개지극당감(皆知戟幢監), 법당두상(法幢頭上), 법당화척(法幢火尺), 법당벽주(法幢辟主), 삼천줄(二千卒) 등의 무관직이 있었는데, 각각의 중앙부대에 관등에 따라 일정한 수의 위에서 언급한 무관들⁵⁵⁾이 보임되어 부대를 운용하였다.

52) 최원식, 「군사력의 증강과 군사적 기반」, 『통일기 신라사회 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pp. 131~140.

53) 『三國史記』 권38 잡지7 직관상 병부.

54) 『三國遺事』 권1 가이1 태종춘주공조에 원효법사(元曉法師)가 당군으로부터 도착한 군사암호문을 해석하여 신라군에게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기사가 있다. 이 경우 원효법사가 군사당주(軍師幢主) 혹은 군사감(軍師監)의 직책으로 출전했거나, 이 직책을 가지고 경주에서 활동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55) 장군의 지휘하에 신라 주력 병종인 보병과 기병을 지휘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대감(隊大監)과 그의 지휘하에서 보병과 기병 부대의 단위부대장으로 파악되는 소감(少監)의 인원을 대당(大幢) 부대의 경우에서 보면, 대대감이 3인, 소감이 15명이었다.

법당을 비롯한 대당, 서당, 낭당 등의 중앙군사조직상의 부대 명칭과 그 부대들에 각각 소속된 무관직의 명칭에 의하여, 신라의 중앙 군부대에는 주력 병종을 형성하였던 보병과 기병 외에 장창병, 개지극병, 노병, 운제 병, 충병, 투석병 등의 다양한 병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라 중앙군사조직상의 다양한 부대들은 각기 고유의 편제로 조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주제와 연관하여 이렇게 다양한 부대와 병종들에 보충된 소부대 리더들은 과연 어떻게 선발되어 교육받았던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다양한 병종과 관련하여 특수한 병종이라고 여겨지는 개지극당, 장창당, 노당, 운제당, 충당, 투석당 등의 부대들에 현대적인 의미의 병과학교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논리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사료는 없다.⁵⁶⁾ 따라서 해당 부대에서 특수한 임무에 필요한 군사훈련을 직접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소국연맹 내지 6부 체제하에서 신라의 중앙 군부대에 필요했던 초급 지휘관과 병사들은 어떻게 보충되었을까? 이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와 같이 部를 구성한 귀족의 자제들이 花郎徒의 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의 경당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하여 배출되어 부의 군사력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유교와 불교로 대표되는 중국적인 영향을 덜 받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에서 운용한 교육기관들을 통하여 배출된 소부대 리더들은 신라 고유의 사상을 담았던 교육내용으로 훈련되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 내지는 임용절차 등은 고구려의 경당이나 태학의 경우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5세기 무렵부터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낙동강 유역과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6) 삼국시대의 여러 상황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로서 고려 인종대에 편찬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는 찬자의 입장에 따라 유교적 사관과 불교적인 입장에서 각각 편찬되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분야는 대체로 생략되어 기술되었고, 기록된 것들도 신라 중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다.

花郎徒가 국가적인 교육기관으로 정착되었다. 화랑도라고 하는 청소년 수련단체가 국가적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하면서 운영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신라 중앙군사조직의 정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반도의 동남에 치우쳐 움츠리고 있던 신라가 활발한 대외전쟁을 통하여 그 영역을 폭넓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분화시켜 군사력의 정비를 도모한 신라는, 그 중앙군사조직의 하부구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화랑도가 통일전쟁기 신라의 國政에 기여한 바는 金大問이 『花郎世記』에서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현명한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모두 이로부터 비롯되었다)이라고 한 평가⁵⁷⁾에서 단적으로 증명된다.

화랑도는 같은 시기에 하나의 집단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 사료상 나타나는 것을 종합하면 화랑도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진평왕 때의 경우에는 7개 이상의 화랑집단이 존재하기도 하였다.⁵⁸⁾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들 여러 개의 화랑집단들을 통솔할 중심기관 내지는 중심인물이 필요하였는데, 花主가 바로 그것이었다.⁵⁹⁾ 한 개의 화랑집단은 1명의 화랑과, 약간 명의 僧侶, 그리고 화랑을 따르는 다수의 郎徒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낭도의 규모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많은 경우는 3,000명까지 이르렀다.⁶⁰⁾

57)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진홍왕 37년조에는 화랑이라는 제도를 기술하면서, 『三國史記』를 김부식이 편찬할 고려 인종 당시 유통되고 있던 김대문의 『花郎世記』에서 화랑에 대한 본문의 평가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58)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의하면, 진평왕대에 근랑(近郎), 거열랑(居烈郎), 실처랑(實處郎), 보동랑(寶洞郎), 구잠공(瞿昌公), 호세랑(好世郎), 김유신(金庾信), 김흠순(金欽純) 등 총 7명의 화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59) 『三國遺事』 권2 기이편 효소왕대 죽지랑조에 의하면, 익선(益宣) 아간(阿干)이 죽지랑의 낭도인 득오(得烏)를 함부로 부역하게 하여 문제가 된 일이 있다. 화주(花主)가 크게 노하여 익선에게 중벌을 내렸다고 하였다. 이것은 화랑 위에 화주가 있었고 화주들이 화랑집단들을 통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60) 『三國史記』 권44 열전4 사다합전에 의하면, 사다합은 1,000명의 낭도를 거느렸다. 낭도의 상한규모를 3,000명으로 보는 것은 화랑 출신의 김유신이 사사(死士) 3,000명을 데리고 있었던 사실에서 추론된다.

화랑은 진골 신분의 귀족 출신 자제가 낭도의 추천에 의하여 추대되었고, 낭도는 6·5·4 두품에 이르는 상류계층과 함께 평민들도 이에 속하였다. 신라 전 시기를 통하여 확인되는 화랑의 수는 2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화랑도는 15~18세의 청소년들이 3년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체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중 경주 부근의 남산을 바롯하여 금강산이나 지리산 등의 名山과 大川을 찾았더니면서 道義를 연마하였다.⁶¹⁾ 물론 이 같은 국토순례를 행한 목적은 신라가 정복하여 흡수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한 의도도 있었고, 청년들에게 확장된 지역에 대한 地理를 익히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신라 중앙군사조직상의 각종 다양한 부대들에 수련 후 배치된 화랑과 낭도들의 성격을 생각할 때, 이들이 수련한 道義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다. 화랑도가 수련한 도의는 6세기 말 圓光法師가 제정한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의 이른바 世俗五戒로 생각되고 있는데,⁶²⁾ 이 중에서 특별히 忠과 信, 그리고 勇 등이 화랑도의 국가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요시되었던 도의 덕목이었다고 여겨진다.

수련기간중에 있었던 화랑과 낭도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곧바로 중앙군사조직상의 각급부대에 배치되어 전쟁에 직접 참가하였으나,⁶³⁾ 평시에는 수련기간을 마친 후 정규부대인 幢과 停에 편입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랑도 출신의 화랑과 낭도 외에 신라 중앙군사조직상의 각급부대에 임용된 소부대 리더들도 있었다. 이를 중 귀족 신분을 유지하였던 자 중 일부는 화랑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곧바로 중앙군

61) 『三國史記』 권47 열전7 김흠운전.

62) 『三國史記』 권45 열전5 귀산전에 기록된 원광이 귀산(貴山)과 추항(筭項)에게 준 “세속오계”가 화랑도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 기사에서 귀산과 추항을 화랑 내지는 낭도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전후 기록에도 귀산과 추항이 화랑 내지는 낭도였다는 기록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산의 출신, 귀산이 전쟁에 자원하여 소감직(少監職)으로 참전한 것, 그의 언행, 기타 다른 화랑 출신들의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세속오계”가 화랑도의 가치관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63) 『三國史記』 권44 열전4 사다함전.

의 핵심부대인 대당과 귀당에 편입되어 소부대 단위부터 한 단계씩 과정을 거치면서 장군으로 승진하였고, 6두품 이하의 중간 신분층과 평민들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부대에 편입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로 진출하는 것은 소수였고 소부대 리더의 교육과정이나 임용은 대체로 화랑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地方軍事組織上의 小部隊 리더 養成體系

가. 高句麗

고구려의 지방군사조직은 지방행정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지방행정의 長이 곧 지방군사조직의 長이 되었다. 이 점은 고대국가에서 지방에 대한 통치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백제, 신라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고구려의 지방행정단위는 王畿로 관리된 5부를 제외한 州, 郡, 縣이었다. 주의 장관은 補薩, 군의 장관은 太守, 현의 장관은 宰라고 불렸다. 이들은 평시에는 관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권리를 가졌으며 봉건국가에서 수탈하는 조세와 공물, 부역을 보장할 의무를 가졌고, 유사시에는 해당 지역 내의 소속 무력을 지휘하여 전투에 참가하는 의무를 또한 지고 있었다.⁶⁴⁾ 그리고 城이 축성되어 있던 큰 지방은 따로 ○○성이라고 불렸고, 이 경우 성의 총책임자를 城主라고 하였다.

주, 군, 현에는 각기 실정에 따라 일정한 군사조직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고구려가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전쟁에서 중앙부대와 함께 동원되었다. 주, 군, 현에 있었던 지방군사조직 외에 고구려에는 鎮이라고 하는 순수 군사목적의 지방행정조직이 있었는데, 이는 국경상의 중요한 지점과 중심상의 방어에 유리한 지점들에 설치되어 관할 주 장관의 직접통제하에

64) 손영종, 『고구려사』, p. 260.

있었다.⁶⁵⁾ 이 밖에 고구려 지방군사조직으로 역참군과 봉수군이 있어서 통신, 연락, 운수 등을 담당하였다.

중앙군사조직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지방군사조직도 일련의 체계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각 단위의 제대에는 지휘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되고 배치되었는지는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扰堂을 들 수 있다.

경당은 태학과 마찬가지로 소수림왕 2년(372)에 설치되었는데,⁶⁶⁾ 고구려의 각 지방에 있었던 초급 교육기관 혹은 소년들의 수련장소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무술훈련이 시행되었다. 일반교육에 사용된 교재로는 5경(『詩經』, 『書經』, 『禮記』, 『春秋』, 『周易』),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손성진(孫盛晉)의 『春秋』, 『玉篇』, 『字統』, 『文選』 등이었으며, 이들 교재에 대한 수학과 함께 習射를 畫夜로 하였다고 한다. 습사에서의 射는 활쏘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기술을 통칭하여 사용된 것이다. 귀족과 평민을 막론하고 거리에 큰 집을 만들어 경당이라 불렸고 그들의 미혼 자제들이 경당을 이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경당은 고구려 각 지방에 있었던 초급 교육기관 내지는 소년들의 수련장소로 이해되고 있다.⁶⁷⁾

경당은 고구려 초기에 상무적 기상을 기르기 위하여 귀족과 일반 국민들이 실시했던 활쏘기, 말타기 및 칼쓰기 등을 내용으로 한 가정교육이 차츰 부족단위의 교육으로 변화되어 정착된 것으로 여겨지며, 교육대상으로는 주로 미혼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戰士團을 양성하기 위한 수양단체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경당에서 교수한 교육내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⁶⁸⁾

65) 손영종, 『고구려사』, p. 261.

66) 『舊唐書』 권199 열전49 동이열전 고려전

67) 정문연, 『한국학기초자료선집』 고대편, 1987, p. 702.

68) 손인수·이원호, 『교육사신강』, 1978, p. 32.

따라서 경당을 통하여 일반 교양교육과 군사훈련을 마친 고구려의 지방 청년들은 위에서 언급한 주－군－현－진에 편재되었던 각급제대의 부대들에 배치되어 초급지휘관으로 활약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百 濟

백제의 지방군사조직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조직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의 장이 곧 지방군사조직을 지휘하였다. 백제는 지방을 5방(중방, 동방, 남방, 서방, 북방⁶⁹⁾)으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는데, 각방은 10개의 郡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방의 장은 達率의 官階에 있는 자가 임명되었는데 方領 또는 方鎮이라 불렀고, 방령 아래에는 德率 관계를 지닌 2인의 方佐가 부책임자로 있었다. 각군에는 방좌와 마찬가지로 더 솔 관계를 지닌 3인의 將이 임명되어 있었다.⁷⁰⁾ 따라서 백제의 지방군사조직에 의하면 150명의 將, 10명의 방좌, 5명의 방령이 존재했다고 여겨진다. 각군에는 1,200~700명의 군사가 있었다.⁷¹⁾ 이렇게 본다면 백제의 지방군은 60,000~35,000명으로 파악된다. 백제 지방행정조직을 전하는 『周書』에는 각군이 아니라 각방에서 거느린 군대의 수가 1,200~700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경우로 지방군의 규모를 파악한다면 6,000~3,500명이 된다. 그런데, 백제의 전쟁관련사료들에 의하면 백제가 전쟁에서 동원했던 군의 규모는 최고 4만 명까지로 밝혀진다. 물론 이렇게 대규모의 부대가 동원된 경우는 중앙군과 함께 지방군이 동시에 투입된 것이라 여겨지지만, 백제 지방군의 총 규모가 『주서』에 나타난 경우처럼 6,000명이하였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부대 동원이라 하겠다. 따라서 필자는 백제

69) 『周書』 열전 이역상 백제 전에 의하면, 중방은 고사성(古沙城), 동방은 득안성(得安城), 남방은 구지하성(久知下城), 서방은 도선성(刀先城), 북방은 웅진성(熊津城)이 방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70) 『周書』 열전 이역상 백제 전.

71) 『北史』에는 군(郡)에서 통솔한 병사의 규모를 1,100~70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기록들에는 방(方)의 방령(方領)이 1,200~7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방군의 규모를 60,000~35,000명으로 파악한다.

백제 지방군의 규모를 이렇게 파악할 때, 지방군사조직상의 부대들은 각군의 장이 지휘한 400~230명 규모의 부대에서부터 각방의 방령이 지휘한 12,000~7,000명 규모의 부대로 구분되는데, 두 경우 모두 상급제대로부터 하급제대로의 지휘계통상의 편제부대로 구성되었을 것이며,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참모조직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임명된 자들이 바로 지방군사조직상의 소부대 리더들이라 할 수 있다.

중앙군사조직의 경우처럼, 백제의 지방군사조직상에 나타나는 이들 소부대 리더들의 양성체계를 나타내 주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사서에 백제인의 기풍을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였다”는 기록⁷²⁾을 참고하고, 사비 천도 후 활발한 대외전쟁을 통하여 국력을 확장해 나갔던 현실을 고려할 때, 고구려에서 운영하였던 扇堂이나 신라의 花郎徒 같은 조직이 기록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청소년에 관한 교육기관이 존재했으리라고 추론되기 때문에, 백제의 경우도 각 지방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 중에서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을 위에서 살피는 지방군사조직상의 각급부대들에 활용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 新 羅

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지증왕 6년(505) 이전에는 州와 郡으로 관리되었다. 주와 군에는 州主와 郡主가 있어 해당 관할지역에 대한 행정 및 군사 임무를 수행하였다. 城이 축조된 군사상 중요한 지방은 城主가 주주 및 군주를 겸하여 지방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신라의 활발한 대외정복이 이루어진 지증왕대에 이르러 州, 郡, 縣(城, 村)으로 정리되었고 주에는 중앙에서 軍主가 파견되었고, 군에는 幢主, 현에는 道使가 있었다. 따라서 군주는 주의 지방군 부대를,

72) 『周書』 및 『隋書』 동이열전 백제전.

당주는 군의 지방 군부대를, 그리고 도사는 현의 군부대를 지휘하였다. 주가 가장 먼저 설치되어 군주가 파견된 곳은 삼척의 실직정이다.⁷³⁾

한편, 신라 정부는 대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주에 정을 설치하기 이전인 진흥왕 5년(544)에 지방의 군사상 주요 지역에 음리화정, 고량부리정, 거사물정, 참량화정, 소참정, 말다부리정, 남천정, 골내근정, 벌력천정, 이화혜정 등 停을 설치하여 지방군사조직을 유지하였다.⁷⁴⁾ 그런데, 이를 지방부대들은 6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의 5정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되어 갔다.

6정 중 대당을 제외한 지방군사조직인 나머지 5개의 정(停)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지증왕 6년(505)의 실직정인데, 법흥왕대에 이르러 중앙군사조직이 정비되면서 법당과 대당이 만들어지자, 지방군사조직도 진흥왕 12년(551)의 상주정, 진흥왕 14년에 신주정(진흥왕 2년 : 568년에 남천정, 진평왕 26년 : 604년에 한산정으로 명칭변경), 진흥왕 16년(555)에 비사별정, 진흥왕 17년(556)에 비열흘정 등 5개의 정이 편성되어 지방군사조직상의 주요 부대를 구성하였다.⁷⁵⁾

이들 각 지역의 정에는 중앙군사조직의 부대와 마찬가지로 장군(將軍), 대관대감(大官大監), 대대감(隊大監 : 領馬兵, 領步兵), 제감(弟監), 감사지(監舍知), 소감(少監 : 領騎兵, 領步兵), 화척(火尺 : 領騎兵, 領步兵), 군사당주(軍師幢主), 대장혁당주(大匠尺幢主), 보기당주(步騎幢主), 저금기당주(著衿騎幢主), 비금당주(緋衿幢主), 사자금당주(師子衿幢主), 법당주(法幢主), 흑의장창말보당주(黑衣長槍末步幢主), 삼무당주(三武幢主), 만보당주(萬步幢主), 군사감(軍師監), 대장대감(大庄大監), 보기감(步騎監), 삼천감(三千監), 사자금당감(師子衿幢監), 법당감(法幢監), 비금감(緋衿監), 저금감(著衿監), 개지극당감(皆知戟幢監), 법당두상(法幢頭上), 법당화척(法幢火尺), 법당벽주(法幢辟主), 삼천졸(三千卒) 등의 무관직이 있었는데, 각각의 지방부대에 관등에 따라 일정한 수의 위에서 언급한 무관들이 보임되

73)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지증왕 6년(505)조.

74) 『三國史記』 권38 잡지7 직관상 병부 십정(十停)조.

75) 최원식, 「군사력의 증강과 군사적 기반」, 『통일기 신라사회 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pp. 131~140.

어 부대를 운용하였다. 한편, 대야성주 김품석의 막객(幕客) 검일(黔日)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⁷⁶⁾ 성주는 막객들로 구성된 幕府를 형성하여 현대적 의미의 참모조직도 유지하였는데, 막부에는 여러 명의 참모요원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방군사조직의 핵심부대들이 停制로 개편되면서부터 5정의 부대는 중앙의 대당과 거의 동등한 과정을 거쳐 소부대 리더들을 보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화랑이나 낭도들이 보임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5개 정의 병사들은 해당 지역민으로 보충하였을 것이며, 소부대 리더 중 일부는 해당 지역의 실력자의 자제들이 보충되었을 것이다.⁷⁷⁾

4. 結 論

본 연구는 戰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일련의 戰鬪들에 의하여 치러지며, 초급-중급제대의 전투승패가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과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선택한 가장 적합한 戰略을 수행하는 것도 결국 중간제대 및 하급제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 고대사 분야 중 군사사 부분에서 초급-중급제대의 지휘관들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수행했던 전투에서의 구체적인 활약이 파악됨으로써 삼국시대 전쟁사에 관한 보다 명확한 윤곽이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소부대 리더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양성되어 각급제대에 배치되었던가 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 보았다. 기왕의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된 花郎徒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삼국의 중앙군사조직상에서 소부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체계가 존재하였는지, 존

76) 『三國史記』 권47 열전7 죽죽전.

77) 『三國史記』 권47 열전7 죽죽전과 필부전에 의하면 죽죽과 필부는 해당 지역 출신으로 밝혀지고 있다.

재하였다면 어떠한 목적하에서 그러한 양성체계가 형성되었고 교과과정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주로 성병(城兵)의 형태로 유지된 지방군사조직상에서 소부대 리더들이 어떻게 양성되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시대에 각국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중앙군사조직상의 여러 부대들을 운용하였고, 그 부대들은 각기 초급제대에서부터 최상급부대에 이르는 일련의 편제부대로 구성되었는데, 각급단위의 편제부대에는 지휘관들이 존재하였고, 고구려의 경우는 太學, 백제의 경우는 태학과 유사한 국가기관 그리고 신라는 花郎徒를 통하여 각급부대에서 소요되는 소부대 리더들을 양성하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고구려 및 신라의 경우는 각각 3년씩의 수련기간을 설정하여 유교 및 불교식 교육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양성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평시에는 각각의 수련기간을 거친 후 배치되었지만, 전쟁시에는 곧바로 소부대 리더로 임용되었다.

둘째, 삼국은 각각 시대를 달리하면서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지방군사조직상의 부대를 편성·운용하였는데, 고구려의 경우는 部－城, 백제의 경우는 方－巷－城, 신라의 경우는 州－郡－縣－城－5停 부대 등으로 지방군사부대를 가졌다. 그리고, 지방군사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소부대 리더의 양성은 고구려의 경우 扇堂을 통하여, 백제의 경우는 고구려의 경당이나 신라의 화랑도와 유사한 기관을 통하여, 신라는 花郎徒라는 교육 기관을 통하여 각각 소부대 리더를 양성하여 운용하였다. 지방군사조직의 경우는 이를 정규과정 외에 지방민의 자제들이 아버지의 身分과 戰功 정도에 따라 소부대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高麗時代 武班職의 地位와 構成

李 鎮 漢
(安城產業大 講師)

1. 머 리 말
2. 武班職의 經濟的 報酬와 班次
3. 武班의 構成과 校尉·隊正의 地位
4. 文武班의 入仕過程과 構成員數의 比較
5. 맷 음 말

1. 머 리 말

高麗時代의 武班은 정3품 上將軍에서 品外의 隊正에 이르는 계층으로 서 정3품 6尙書 이하의 文班과 함께 양반체제를 이루었고 지배 신분층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먼저 무반직의 개별 임무에 대해서는 京軍의 組織에 관한 고찰을 통해 밝혀졌다.¹⁾ 또한 身分制的인 視角에서 官制의 運營과 출신 가문 등에 대해 문무반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형식상 무반과 문반은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반이 상

1) 李基白, 「高麗 京軍考」,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대적으로 차별받는 존재였다고 파악하였다.²⁾ 이어 무반의 지위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검토한 결과 현종대 이후 무반의 지위는 서서히 상승되어 갔고 武臣亂은 그러한 경향에 따른 필연적인 사건이었으며³⁾ 이후 거의 대동 해진 지위는 고려말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⁴⁾ 한편 고려시대의 무반은 문 반에 비해 관인의 특권에 있어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였지만 무반도 문 반과 비슷하게 양반층에서 세습하였기 때문에 무반도 하급귀족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⁵⁾

이상의 연구는 정밀한 실증과정을 거쳤으므로 현재까지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반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거시적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무반직의 실제적 지위와 내부적인 구성 등 세부적인 측면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무반직의 班次를 문반직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품계라면 문무반의 반차가 같아야 하는데 문반 중심으로 관제를 운영하던 상황에서 兩者間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관제의 구성 측면에서 문무반을 비교한다. 문반은 刃筆의 업무를 담당하는 入仕胥吏 이상이 해당되며⁶⁾ 그 가운데 權務 이상이 官人の 범주에 들었다. 반면에 무반은 隊正 이상이 관인이며 그 아래 무 반에 진입할 수 있는 군인이 있었다고 한다.⁷⁾ 상위에 관인이 있고 그 하

2) 邊太燮, 「高麗朝 文班과 武班」『史學研究』11, 196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3) 邊太燮, 「高麗武班研究－武臣亂 전의 武班을 중심으로－」『亞細亞研究』8-1, 1965; 앞의 책, 1971.

4) 邊太燮, 「高麗後期의 武班에 대하여」『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科學』12, 1966; 앞의 책, 1971.

5) 朴龍雲, 「高麗前期 文班과 武班의 身分問題－高麗 賢族家門 研究(3)－」『韓國史研究』21·22합, 1978.

6) 李高·義方等…使人呼於道曰 凡戴文官者 雖至胥吏 倘無遺種 卒伍蜂起 搜殺 (『高麗史節要』11 案宗 24年 8月).

7) 李基白, 「高麗 軍人考」『震檀學報』21, 1960; 앞의 책, 1968, 84쪽.

李基白, 「高麗 軍班制下의 軍人」 앞의 책, 1968.

위에는 잠재적 관인 후보자인 입사서리와 군인이 있어 문반과 무반은 서로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무반 校尉·隊正의 경우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관인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것은 대정 이상의 무반이 단일한 계층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반이 8품 산원 이상과 교위·대정으로 나누어진 것은 관제상 문무반을 동일한 구조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관인과 그 후보자군의 구성원 수가 특정한班에 편중되지 않게 함으로써 문무반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2. 武班職의 經濟的 報酬와 班次

무반직은 上將軍, 大將軍, 將軍, 中郎將, 郎將, 別將, 散員, 校尉, 隊正 등 9등급으로 나뉘었고 上將軍에서 校尉까지는 정3품 이하 정9품까지의 품계가 있으며 대정은 品外이다. 이와 같이 무반은 단일한 체계이고 관직 사이의 高下가 분명하기 때문에 승진과정도 단순하며 隊正을 제외한 나머지 관직에는 품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문반을 포함한 전체 관인층 내에서 개별 무반직의 실제적인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되는 문반직과의 반차 비교가 필요하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문반이 무반보다는 우월한 지위였다고 하는데 단순히 품계로만 비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품계로써 비교한다 하더라도 문반은 같은 품계에 여러 관직이 있고 관직에 따라 田柴나 녹봉 등의 경제적 보수가 다르며 반차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어떤 관직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음의 사료를 주목해 보자.

判…六尚書官 判事 十五 六尚書·上將軍 十 殿中監 近仗·諸衛大將軍 卽·監·祭酒 八 近仗·六尚書官 知部事 八 諸衛·將軍·諸曹侍郎 七 近仗·諸衛中

郎將·諸曹郎中 六 近仗·諸衛郎將·諸曹員外郎 五 … 秘書·殿中·禮賓·衛尉·司宰·太僕·大府·少府·將作·國子 判事 九 九少卿·少監·司業 六 秘書·殿中丞 五 內給事 四 … 以下 參外六品 及近仗·諸衛別將 東南班七品員 三 近仗·諸衛散員 及東班八九品 二 諸權務 … 直翰林·史館·錄事·判官·留院·校勘 以上有祿權務 二 以下諸權務員 一(『高麗史』72 「輿服志」齒簿 百官儀 從明宗 20年)。

이 기사는 丘史의 지급에 관한 규정 가운데 무반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六尚書·上將軍은 10명, 殿中監·近仗·諸衛大將軍·卿·監·祭酒는 8명, 諸衛將軍·諸曹侍郎은 7명, 近仗·諸衛中郎將·諸曹郎中은 6명, 近仗·諸衛郎將·諸曹員外郎 5명, 參外六品 및 近仗·諸衛別將·東·南班七品員 3명, 近仗·諸衛散員과 東班 八·九品 2명 등이었다. 무반의 7품까지는 같은 품계의 문반직과 동일하였으며 산원은 문반 8·9품 및 권무직 直翰林院·直史館 등과 같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6품 이상의 무반직을 상서육부의 관직 및 경·감·좨주와 병기하면서 수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은 무반의 반차 비교 대상이 이들 관직이었음을 알려 준다. 왜냐하면 구사의 규정 방식은 각 관서별로 나누어 거기에 소속된 관원의 구사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尚書六部와는 전혀 별개의 조직인 무반을 近仗·六尚書官 등으로 함께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寺·監의 경·감직을 특별히 따로 떼어 대장군과 비교한 것은 육부에는 대장군과 비교되는 종3품 관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뒤의 秘書·殿中 등 官署의 判事 이하 관직에 대한 구사수 규정에서 유독 경·감만이 제외되었던 것이다. 결국 구사의 규정은 상서와 상장군, 경·감과 대장군, 시랑과 장군, 낭중과 중랑장, 원외랑과 낭장 등이 班次上으로 서로 대응되는 관직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한편 7품 이하에서는 정7품의 별장이 문반 참외 6품 및 동·남반 7품, 정8품 산원은 문반의 8·9품과 각각 비교되면서 동일한 수를 지급하였으며 교위와 대정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반은 품계가 없는 권무 까지도 1~2명의 구사를 받는 데 반해 무반은 품외인 대정은 논외라 한

다 해도 정9품인 교위조차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8품 이하의 무반직은 동일한 품계의 문반직과 대응되지 않았으며 교위·대정은 산원과도 구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사의 규정이 실제로 문반과 무반의 상대적인 지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계 및 구사수와 함께 관직의 지위를 알려 주는 주요한 요소인 田柴科等과 祿俸額 등에 대해 살펴보자. 문반직에는 동일한 품계에도 田柴科等과 녹봉이 다른 관직이 많으므로 편의상 품계와 구사수가 같은 문무반직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文班과 武班 官職의 田柴·祿俸·丘史數의 비교

| 品階 | 官職 | 更定田柴科 | 文宗祿俸 | 仁宗祿俸 | 丘史 | 田柴科等差 |
|-----|-------|-------|---------------|------------|-----|-------|
| 정3품 | 六尚書 | 제4과 | 300석 | 300석 | 10 | |
| | 上將軍 | 제3과 | " | " | " | +1 |
| 종3품 | 卿·監 | 제5과 | 233석 5두 | 233석 5두 | 8 | |
| | 大將軍 | 제4과 | " | " | " | +1 |
| 정4품 | 諸侍郎 | 제6과 | 200석 | 200석 | 7 | |
| | 將軍 | 제5과 | " | " | " | +1 |
| 정5품 | 諸郎中 | 제8과 | 120석 | 120석 | 6 | |
| | 中郎將 | 제6과 | " | " | " | +2 |
| 정6품 | 諸員外郎 | 제10과 | 86석 10두 | 76석 10두 | 5 | |
| | 郎將 | 제8과 | " | " | " | +2 |
| 정7품 | 六局直長等 | 제12과 | 46석 10두 | 46석 10두 | 3 | |
| | 別將 | 제11과 | " | " | " | +2 |
| 정8품 | 良醞令等 | 제14과 | 20석 | 20석 | 2 | |
| | 散員 | 제12과 | 33석 5두 | 33석 5두 | " | +2 |
| 정9품 | 良醞丞等 | 제15과 | 10석 | 10석 | 2 | |
| | 校尉 | 제13과 | 23석 5두 | 23석 5두 | 0 | +2 |
| 品外? | 權務 | 제15과 | 13석 5두-6석 10두 | 20석-8석 10두 | 1-2 | |
| | 隊正 | 제14과 | 16석 10두 | 16석 10두 | 0 | +1 |

관인에 대한 경제적 보수인 전시와 녹봉은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떠한 무반 관직도 같은 품계의 문반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⁸⁾ 更定田柴科 규정에서는 무반의 관직이 같은 품계의 문반 관직에 비해 1~2 과등 정도씩 우대를 받고 있다.⁹⁾ 녹봉은 상장군이 6상서, 대장군이 경·감, 장군이 시랑, 중랑장이 낭중, 낭장이 원외랑과 녹봉액이 일치하며 그 것은 문종록제에서뿐만 아니라 인종록제에서도 같다. 정7품 별장은 六局直長과 같지만 산원 이하 교위·대정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녹봉을 받았다. 녹봉액을 구사수와 비교해 보면 7품 이상은 동일 품계의 문무반 관직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8품 이하에서는 무반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녹봉을 지급한 데 반해 구사의 수는 오히려 같거나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품과 7품을 계선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별장과 녹봉액이 같은 관직에는 종7품의 門下錄事·中書注書 등이 있으며 구사의 규정에서도 문반과 병칭하면서, 참상에서와 같이 특정한 관직이 아니라 참외 6·7품을 함께 들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관인은 宰樞·參上·參外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부여된 특권의 차이가 컸다. 무반직은 최고위 계층인 재추에는 없으므로 참상 이하에만 해당된다. 본래 참상은 품계를 기준으로 6품 이상이 해당되는 제도였지만 고려에서는 녹봉액이 참고되어 文宗祿制에서는 66석 10두를 받는 拾遺 이상이었고 仁宗祿制에서는 53석 5두의 閣門祗候 이상의 관직이었다. 무반의 경우 郎將은 품계나 녹봉액이 참상의 기준에 적합하였고 또한 실제 사례에서도 참상으로 나타난다.¹⁰⁾ 한편 참외는 앞서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직이며 문반은 참외 6품직과 7·8·9품 및 품계가 없는 권무직까지 포함된다.¹¹⁾ 무반도 문반의 예를 준용한다면 별

8) 邊太燮, 주 2)의 논문, 279~280쪽.

9) 姜晉哲, 「田柴科制度의 制定 및 그 内容」『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大出版部, 1980, 50쪽.

10) 李鎮漢, 「高麗時代 參上·參外職의 區分과 祿俸」『韓國史研究』 99·100合, 1997, 175쪽 및 184~188쪽.

11) 李鎮漢, 「高麗時代 權務職의 地位와 祿俸」『民族文化』 20, 1997, 155쪽.

장에서 대정까지 참외이다.

무반의 녹봉을 보면 참상에서는 구사 지급규정에서 병칭한 문반 관직과 동일한 데 반해 참외에서는 비교 대상 관직이 없으므로 동일한 품계의 여러 관직과 비교할 경우 녹봉액은 같거나 많았지만 구사수는 오히려 같거나 적었다. 참상과 참외를 계선으로 하여 관제의 운영이 다소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상의 무반직이 특정 문반직과 비교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반차가 같았기 때문이다. 문종록제에서 정6품 86석 10두였던 원외랑과 낭장의 녹봉이 인종록제에서 똑같이 10석씩 줄어 76석 10두가 되는 것은 이들 관직이 동일한 반차의 관직이었으므로 녹봉의 변화도 같았던 것이다. 또한 구사의 지급규정에서 상장군과 상서, 대장군과 卿·監, 장군과 시랑, 중랑장과 낭중, 낭장과 원외랑을 병칭하였던 것도 그러한 규정과 관련된다. 이들이 조회에 참석하여 동서반이 분립하였을 때 동일한 항렬에서 서로 마주하는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사례를 통해 참상 무반의 반차를 확인해 보자. 「柳彥琛讓正議大夫監門衛攝上將軍不允批答」에서 왕은 상장군에 대해 ‘높은 資級을 주어 특이한 은전을 보이되 官秩은 八座에 준하고 班次는 九卿 위에 있게 한다’고 하였다.¹²⁾ 八座에 대해서는 崔滋의 기록을¹³⁾ 따라 6尚書와 左右散騎常侍가 포함된다는 견해와¹⁴⁾ 『高麗史』 輿服志의 기록에¹⁵⁾ 의거해서 6尚書와 左右僕射를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지만¹⁶⁾ 반차의 측면에서 전자의

12) 唯我國所以恒置上將軍者 其意若曰 若將軍有功 則可以大將 處之 大將有功 則將何以復加 故設斯爵 以答大將之元功茂烈耳 豈宜人授其職也 卿生長名家 … 級加峻級 用示恩 欽視八座之資 班在九卿之右(『東國李相國集』 33 「柳彥琛讓正議大夫監門衛攝上將軍不允批答」).

13) 作諸公告身 各一通 是爲大官誥 … 舊制 樞密·僕射·八座·魏·隋·唐 皆以六尚書兩僕射 謂八座 今以六尚書·左右散騎常侍 謂八座·上將 並小官誥 近樞密使 始預宣麻 僧官誥 視卿相大小 各有差(『補闕集』下).

14) 朴龍雲, 「高麗時代 尚書都省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1, 1995, 67쪽.

15) 穀宗朝 詳定 … 文官 八座·左右常侍·御史大夫·翰林學士承旨·侍臣三品以上 武官 上將軍以上 金班犀(『高麗史』 72 「輿服志」 冠服 公服).

16) 邊太燮,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尚書省 機構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47, 1970;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문반 정3품의 尚書·散騎常侍·御史大夫 등은 品階·祿俸·田柴科等·丘史數에 있어 상장군과 일치하여 모두 동일한 반차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九卿의 위에 있게 한다고 하였는데 九卿은 종3품 예빈경 등을 말하며 그들과 동일한 반차인 무반의 大將軍보다 摄上將軍이 높다는 의미이다.¹⁷⁾ 결국 상장군과 상서, 대장군과 경·감이 동일한 반차였다고¹⁸⁾ 할 수 있다. 그 밖에 음서의 대상으로 낭중·중랑장을 병기하였고¹⁹⁾ 장군은 侍郎을²⁰⁾ 낭장은 員外郎을 겸하고²¹⁾ 있다. 참상·양반의 반차 비교에 있어 田柴科等보다는 녹봉액이 반차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참상·참외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²²⁾

녹봉액, 구사수,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참상의 문무반은 품계가 같으면 형식상으로 서로 같은 반차였다. 그러나 7품 이하에서는 그러한 비교가 쉽지 않다. 별장은 구사의 지급에 있어 문반의 참외 6품 및 東南班 7품과 병칭되면서 같은 3명인데 그것은 무반의 정7품은 하나지만 문반의 참외

17) 李鎮漢, 「人物事例를 통해서 본 官職의 班次와 祿俸」『高麗前期 官職과 祿俸의 關係研究』, 高麗大博士學位論文, 1998.

18) 다음의 기사도 대장군과 경·감이 동일한 반차였음을 입증한다. 즉, 여름에 얼음을 주는 대상범위는 문반의 경·감과 무반의 대장군까지였다.

制 每歲自六月至立秋 頒冰于諸致仕輔臣 三日一次 左右僕射·六尚書·卿·監·大將軍以上 七日一次 以爲永制(『高麗史節要』, 4 文宗 3年 6月).

19) 忠宣王卽位敎曰 宰樞及文武三品以上 致仕·見存者 各許一子 蔭官 無子 則甥·姪·女婿·外孫及收養子 許一名初職 先代宰樞內外孫無名者 許文武初職 四品及給事中丞·諸曹郎中·中郎將解官者 勿論試攝 各授一子 蔭官 凡實行後爲外官者 亦降等許蔭(『高麗史』75 「選舉志」3 銀注 凡蔭叙).

20) (吳)光陟 毅宗末 爲別將牽龍行首 與李義方 有素 拜千牛衛將軍 改金吾衛將軍·吏部侍郎 明宗欲授三品職 光陟曰 臣年少 拜四品 又兼吏部 於臣足矣 遂辭出爲楊忠州道察訪使(『高麗史』100 慶大升傳).

21) 又加郎將…(癸巳) 是年冬 授兼員外郎…有功績 還爲龍虎軍中郎將(「中甫純墓誌銘」, 261~262쪽). 이 글에서 인용한 묘지명의 출전은 金龍善編, 『高麗墓地銘集成』,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3이며, 편의상 묘지명과 쪽수만을 기록하였다.

22) 李鎮漢, 「高麗時代 參上·參外職의 區分과 祿俸」『韓國史研究』 99·100合, 1997.

6·7품은 녹봉액에 따라 여러 관직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며 3인의 구사가 지급되는 참외 6·7품은 녹봉액에 관계없이 참상에 진입할 수 있었다.²³⁾ 따라서 무반 참상인 낭장이 될 수 있는 별장도 이를 관직과 거의 대등한 반차였다고 생각된다. 정8품 산원은 문반 8·9품 및 직한림원·직사관 등 의 諸權務와 함께 같은 2명의 구사가 지급되었다. 비교되는 문반 관직의 품계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丘史數는 품계에 거의 준하는 편이다. 하지만 교위와 대정에 대한 구사 지급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문반 품외의 有祿諸權務까지도 1명의 구사를 받는 데 비해 무반은 정9품인 교위조차도 구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참외 무반직은 참상과 같이 녹봉으로 반차가 비교되지 않았던 것 같다. 문반직에 비해 田柴科等도 높고 녹봉도 많은 이들 관직에 대해 관인에 대한 중요한 특권의 하나인 구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다소 모순되는 사실은 7품 이하의 무반직이 하나의 계층으로 구성되지 않은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3. 武班의 構成과 校尉·隊正의 地位

무반직이 같은 품계의 문반직에 비해 전시과와 녹봉 등 관인에 대한 경제적 보수에 있어 우대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 주는 儀禮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별장 이하의 무반직을 일률적으로 참외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 兩班 官人の 路上相見禮를 규정한 德宗 2년 12월의 避馬式에서는 노상에서 상관을 만났을 때 문반과 무반의 품계에 따라 馬上祗揖하거나 下馬廻避하는 등 의례가 달라졌다. 이때 동등한 대우를 받은 문무반의 관직은 문반 종3품과 상장군, 4품과 대장군, 5품과 장군, 6품과 중랑장, 7품과 낭장, 8품과 별장, 9품과 산원 등 으로 무반이 문반에 비해 1품계씩 낮았으며 정9품 교위는 아예 제외되었다.²⁴⁾ 이러한 문무반의 차별적인 규정은 당시 양자간의 현실적인 사회적

23) 李鎮漢, 앞의 논문, 183~184쪽.

24) 『高麗史』 84 「刑法志」 1 避馬式 德宗 2年 十二月判.

자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²⁵⁾ 그러나 관제가 개정되고 田柴科, 官職의 班次, 祿科 등이 조정이 있었던 문종 30년²⁶⁾ 이후에 제정된 의례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 ① 判 凡內外衙門員以上 坐床治事 大朝會日 進步起居 平時揖而不拜 宰樞廳
參上 廳內 參外 階上 人吏·掌固 沒階行禮 參上廳 參外 廳內 人吏·掌固
沒階行禮 參外廳 人吏 階上 掌固 沒階行禮 外官廳 長典·記官 並沒階行
禮 西班 則攝郎將以上 准參上 散員以上 准參外 校尉·隊正 准人吏 旗頭·
都典 准掌固 庶人見常參以上 起身唱喏經過(『高麗史』 68 「禮志」 10
嘉禮 參上參外人吏掌固謁宰樞及人吏掌固謁參上參外儀 肅宗 2年 5月).
- ② 其日早 陳繖扇·水精鍼斧 於殿庭 如常儀 尚食·茶房 宿設壽尊所 於殿階
上東邊 有司設臣僚尊所 於殿階下西邊 時至侍中 版奏中嚴 太樂令 帥工人
就位 協律郎·典儀·贊者各就位 舍人引文武四品以下·常參以上官 入殿庭
位 參外文班九品以上·有祿諸權務 武班散員以上 分立殿門外(『高麗史』
67 「禮志」 9 元會儀).
- ③ 鄭仲夫廢毅宗立明宗 仲方與有力 驟拜大將軍 … 時武散官檢校將軍以下 散
員同正以上 聚議欲奪處東班權務官 重房臺省 畏衆口 莫敢雖何 仲方獨曰
國家設官分職 唯卿·監外 武臣不兼文官 自庚寅以後 吾儕得處臺省 布列
朝班 校尉·隊正許著幞頭 西班散職差任外官 固非先王之制 若又遽奪權務
官 其如東西定制何 吾寧死不從 議遂寢 … (『高麗史』 100 洪仲方傳,
『高麗史節要』 12 明宗 9年 5月).

①은 각종 관서를 방문했을 때 參上·參外·人吏·掌固 등이 행하는 儀禮에 관한 규정이다. 宰樞廳에서는 參上官이 廳舍 안에서, 參外官이 섬돌 위에서, 人吏·掌固 등은 섬돌 아래에서 각각 儀禮를 행하였다. 參上廳에서는 參外官이 廳舍 안에서, 人吏는 섬돌 위에서, 掌固는 섬돌 아래에서 의례를 행하였다. 武班의 儀禮는 문반에 비정하였는데 摄郎將 이상은 參上

25) 邊太燮, 「高麗朝의 文班과 武班」, 『史學研究』 11, 196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318쪽.

26) 更定兩班田柴科 又改官制 定百官班次 及祿科(『高麗史節要』 5 文宗 30年 12月).

예, 別將 이하 散員 이상은 參外에, 校尉와 隊正은 人吏에, 旗頭·都典은 掌固에 준하여 행하였다. 4계층으로 나누어 의례를 달리하면서 무반은 별장·산원만이 참외에 준하였고 교위·대정은 관인이 아닌 人吏와 같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②는 新年에 첫 번째로 거행되는 朝會인 元會儀에 관한 내용으로 文班 9品 以上·有祿諸權務와 武班 散員 이상이 참석대상이다. 원회의는 참상 이상만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조회와 달리 모든 관인이 참석하는 일종의 大朝會이다. 이때 참외관은 참상관과 같이 의례가 있는 뜰 안에 위치하지 못하지만 殿門의 밖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반은 品外의 有祿諸權務까지도 참여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무반은 정9품 校尉도 포함되지 못하였다.

③은 무신란 이후 무신들이 득세하면서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문반직을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洪仲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東班 권무관에 취임하고자 한 범주는 檢校將軍 이하 散員同正 이상이었으며 校尉同正은 제외되었다. 문반에서 初仕外官職이나 權務職을 제수받는 대상은 品官同正 이상이었으므로²⁷⁾ 이 규정을 무반에 준용한다면 校尉同正 이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위동정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품관동정에 비견되는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散員同正 이상이 品官同正이 되므로 교위동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홍중방의 말에서 이 시기부터는 교위와 대정도 복두를 쓰도록 허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산원 이상만이 쓸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徐兢의 『高麗圖經』에 의하면 관인의 복식 가운데 하나인 旗頭는 朝官,²⁸⁾ 庶官,²⁹⁾ 散員³⁰⁾ 등과 官府門衛校尉³¹⁾가 착용하였다고 한다.³²⁾ 그런

27) 李鎮漢, 「高麗前期 官人の 初入仕와 土地分給」『民族文化研究』 29, 1996.

28) 『高麗圖經』 7 冠服 朝官服.

29) 『高麗圖經』 7 冠服 庶官服.

30) 『高麗圖經』 21 皂隸 散員.

31) 『高麗圖經』 12 仗衛 官府門衛校尉.

32) 그 밖에 朝·監服, 近侍服, 從官服 등도 해당된다. 고려시대 문헌에 나타난

데 官府門衛校尉도 校尉이므로 인종대의 견문기와 명종대의 기사가 서로 상충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官府門衛校尉는 관부를 守衛하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었으므로 복두가 허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저히 관인의 범주에 들 수 없는 계충인 控鶴軍, 龍虎·左右親衛旗頭 등이 복두를 착용한 것도³³⁾ 이들이 仗衛라는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밖에 諸王·宗室의 宮宅蒼頭, 權臣의 蒼頭와 武臣執權者 金俊의 丘史 등이 帥頭를 썼지만 모두 정규적인 것은 아니었다.³⁴⁾ 따라서 복두는 산원 이상이 썼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같은 차이는 산원과 교위가 구별되는 계충이었음을 알려 준다. 다음의 사료는 그러한 사실과 관련된다.

都兵馬使 以國用不足 令人 納銀拜官 白身望初仕者 白銀 三斤 末經初仕望權務者 五斤 經初仕者 二斤 權務·九品 望八品者 三斤 八品望七品者 二斤 七品望參職者 六斤 軍人望隊正 隊正望校尉者 三斤 校尉望散員者 四斤 散員望別將者 二斤 別將望郎將者 四斤(『高麗史』80 「食貨志」3 賑恤 納粟補官之制 忠烈王 元年 12月).

이 기사는 忠烈王初에 國用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納粟補官에 관한 규정이다. 참상에 오르는 데 문무반 모두 16근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참상 이상의 文武班 관직이 동등하였음을 알려 준다.³⁵⁾ 이 가운데 무반은 군인과 대정이 각각 은 3근, 교위가 4근, 산원이 2근, 별장이 4근을 바치면 상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군인에서 낭장까지 한

복식에 관해서는 權英淑 外,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衣服의 特性」『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135~137쪽. <표 8> '고려시대 문헌에서 발췌한 의복'에 잘 정리되어 있다.

33) 權英淑 外, 앞의 논문.

34) 王乘崔沆所獻 新釐 幸王輪寺 出大府銀 三十斤 賜造釐工匠 及沆蒼頭 仍許蒼頭 許著幘頭 凡四十六人 舊例 唯諸王宗室宮宅蒼頭 許著幘頭 謂之紫門假著 權臣 蒼頭著幘頭 始此 是後 凡權勢家奴 皆著之(『高麗史』24 「世家」高宗 39年 9月 丁亥).

宣旨曰…以金俊丘史 十人 許初入仕 十人 真拜 把領 親侍 二十人 假著幘頭(『高麗史』26 「世家」元宗 5年 7月己亥).

35) 邊太燮, 앞의 논문, 330쪽.

단계씩 오르는 데 대한 대가로 바치는 은의 액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산원에서 별장은 2근인 데 비해 정9품 교위와 정7품 별장에서 각각 정8품 산원과 정6품 낭장을 제수받기 위해서는 두 배인 4근이었다. 이때 賣官의 銀價는 그 관직의 사회적 지위를 표준으로 정해졌으므로³⁶⁾ 승진상의 어려움이나 관직 간의 지위차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별장에서 낭장이 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4근을 납부한 것은 참외에서 참상으로 진출하는 대가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위에서 산원은 관직에 부여된 품계상으로는 특별하게 나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원에서 별장보다 두 배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신분상 하나의 界線을 이루는 군인과 대정보다³⁷⁾ 더 많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역시 교위와 산원 사이에 관제상 또 하나의 단층이 있었음을 알려 주는 증거가 된다.

한편 교위·대정이 문반 품외의 권무보다 낮은 지위였고 권무는 산원과 대옹되었다. 明宗初에 崔忠獻(1149 : 의종 3 ~ 1219 : 고종 6)은 門蔭으로 良醞令同正이 되었고 이어 成陵直을 제수받았다. 뒤에 衛尉注簿同正이 더 해지고 刀筆吏를 부끄러이 여겨 興威衛保勝散員으로 바꾸었다.³⁸⁾ 洪奎(1241 : 고종 28 ~ 1316 : 충숙왕 3) 역시 처음에 권무가 되었다가 산원으로 고쳤고³⁹⁾ 群山島出身의 金希磧도 丙科權務인 監牧直에서 산원이 되

36) 邊太燮, 앞의 논문, 330쪽.

37) 이기백은 납속보관의 기사를 군인에서 무관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료로 이해하고 있다(李基白, 「高麗 軍班制下의 軍人」『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91쪽).

38) 崔忠獻이 散員으로 바꾼 시기는 명종 4년 趙位寵의 亂이 있기 전이다.

始以門蔭 散良醞令 旋拜成陵直 散加衛尉注簿 自許 以功名顯 耻爲刀筆吏
改點興威衛·保勝散員 大定 甲午 盜起西都 推轂元帥 授鉞徂征選(崔忠獻墓誌銘」 330쪽).

39) 始得權務 尋改散員 仍以金帽錦衣 領牽龍 爲行首(「洪奎墓誌銘」, 434쪽). 이 후 洪奎는 黑槊將軍兼御史中丞이 되었고 원종 11년 林惟務를 제거하는 데 참여하였으므로 高宗末에서 元宗初 사이의 어느 시기에 武班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었다.⁴⁰⁾ 이상의 4가지 사례 모두 권무직에서 무반으로 바꾸면서 산원이 되었다. 권무직에서 대정이나 교위로 전환해도 품계로나 경제적 보수에 있어 불리하지 않다. 계다가 成陵直은 권무직 가운데 가장 낮은 잡권무이며 崔忠獻과 洪奎가 무반으로 전환한 때는 무신정권기로서 무반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문반 권무에서 무반으로 전환하면서 대정이나 교위가 아니라 산원이 되었던 것은 본래 권무직과 교위·대정은 서로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권무직에는 품계가 부여되지 않았고 녹봉도 적었지만 문반 참외의 범주에 들었으며 품관직의 여러 특권을 가졌다.⁴¹⁾

기존의 연구는 고려후기의 科敂 규정 등에서 교위·대정이 문반 9품이나 권무와 비교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위·대정이 문반의 권무와 견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⁴²⁾ 그러나 과령 등은 관인들에 대한 경제적 수취에 관한 것으로 부담액을 결정할 때 녹봉액과 田柴 등 경제적 보수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문반 9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시와 녹봉을 받는 교위·대정 등이 9품직·권무직과 비슷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경제적 보수가 유사한 문무반을 둑어 규정한 것이지 지위가 같았기 때문에 병칭된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권무의 지위는 교위·대정과 비교될 수 없었으므로 권무에서 무반으로 전환할 때 산원이 되었다. 元善之(1281 : 충렬왕 7~1330 : 충숙왕 17)는 음서로 西面都監判官이 되었다가 산원으로 바꾸었고,⁴³⁾ 閔思平(1295 : 충렬왕 21~1359 : 공민왕 8)도 奉先庫判官에서 산원이 되었다.⁴⁴⁾ 무반 교위·대정과 문반 권무·9품은 서로 상대되는 계층도 아니었으며 지위에 차이가 있었다.⁴⁵⁾

40) 『高麗史』 103 金希磾傳.

41) 李鎮漢, 「高麗時代 權務職의 地位와 祿俸」『民族文化』 20, 1997, 157~158쪽.

42) 陳元英, 「高麗前期 校尉·隊正에 관한 ... 考察」『史學志』 27, 1994.

43) 生七歲 以父任 爲西面都監判官 十七 換虎職 爲散員(「元善之墓誌銘」, 469쪽). 원선지는 1330년(충혜왕 즉위년) 50세로 사망하였는데 17세에 무반으로 전환하였다고 했으므로 충렬왕 23년이 된다.

44) 「閔思平墓誌銘」, 561쪽.

45) 李鎮漢, 「高麗時代 權務職의 地位와 祿俸」『民族文化』 20, 1997, 161~162쪽.

이러한 구별은 호칭상에서도 나타나는데 1領內의 참외 別將과 散員의 수를 합하여 십장이라 한 데 반해 校尉와 隊正의 수를 합하여 六十이라고 하거나 尉·正으로 약칭하였다.⁴⁶⁾ 이에 대해 十將을 郎將과 別將이 각각 5명씩 10명이므로 2백 명으로 구성된 단위부대의 長과 그 副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⁷⁾ 그러나 이 견해는 낭장·별장과 교위·대정을 한데 묶으면서 산원만을 제외시킨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郎將과 别將은 각각 참상과 참외에 속하는데 서로 다른 계층을 한데 묶어 통칭한다는 것 역시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註 46)의 a에서 제시한 사료의 ‘42都府의 五員·十將·尉正의 녹봉을 먹는 자’ 가운데 五員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낭장 5명을 五員으로, 참외의 별장 5명과 산원 5명을 합하여 十將이라고 통칭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 十將과 六十·尉正은 각각 서로 동일한 계층을 묶어서 통칭한 것이며, 서로 구분되는 계층이므로 十將·六十 또는 十將·尉正 등과 같이 비교하였던 것이다. 별장·산원과 교위·대정 사이에 계층적으로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상에서 산원 이상과 교위·대정이 구별되는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구사의 지금, 元會儀 참석, 복두의 착용 등은 산원 이상에게만 허용된

46) a. 揭榜云 國家之制 近仗及諸衛 每領 設護軍 一 中郎將 二 郎將 五 別將 五 散員 五 伍尉 二十 隊正 四十 望軍丁人 六百 凡護駕內外力役無不爲之 比經禍亂 丁人多闕 丁人所爲賤役 使祿官 六十代之 因此 領役艱苦 爭相求避 伍尉隊正等 未能當之 … 其領內 十將·六十有闕 除他人 並以領內 丁人 遷轉錄用(『高麗史』81「兵志」1 兵制 靖宗 11年 5月).

b. 憲司上疏一 府兵領於八衛 八衛統於軍簿 四十二都府之兵 十有二萬 而隊有正 伍有尉 以至上將 以相統屬 所以嚴禁衛 禦外侮也 自事元以來 昇平日久 文恬武嬉 禦衛武人 內於近侍·忠勇 皆設護軍以下等官 以代禁衛之任 而祿之 於是 祖宗八衛之制 皆爲虛設 徒費天祿 而其迂遠赤·速古赤·別保等各愛馬 寒署夙夜 勤勞甚矣 而不得食斗升之祿 而食四十二都府五員·十將·尉正之祿者 非幼弱子弟 卽工商賤隸 或食其祿而曠其職 或勤於王事 而不得食 豈祖宗忠信重祿之意哉 伏願 併近侍於左右衛 司門於監門衛 司楯於備順衛 忠勇於神虎衛 其餘各愛馬 以類併於諸衛 使之 番日入直 古其勤怠各以其衛內護軍以下 至於尉正之職 隨品錄用 使食其祿 而勤其職 則人樂仕而國祿省 禦衛嚴而武備矣(『高麗史』81「兵志」1 兵制 恭讓王 元年 12月).

47) 高麗史研究會編, 『高麗史 兵志 譯註 一』, 1969, 34쪽.

특권이었고 교위와 대정이 그 대상에 들지 못하였다는 것은 산원 이상과 교위·대정이 서로 다른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은 충렬왕대의 납속보관 규정에서 교위에서 산원으로 오르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납부하도록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산원 이상과 교위·대정은 지위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숙종 때 정해진 관청에서 행하는 의례에서 무반은 別將과 散員이 참외관에 준하고 교위와 대정은 人吏에 준하도록 한 규정이다. 즉, 무반은 별장·산원만이 참외관이며 교위와 대정의 사회적 지위는 入仕胥吏와 같았다. 그러므로 음서로 교위나⁴⁸⁾ 대정을⁴⁹⁾ 제수받는 것은 문반에서 主事나 令史 등 의 �胥吏職에 직접 임명되는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고려시대 입사서리는 녹봉을 받지 못하였지만 엄연한 문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吏部의 考課 대상이 되었으며 무반은 대정 이상이 兵部의 고파대상이었다.⁵⁰⁾ 문반에서는 입사서리총이 최하위 계층이었던 것처럼 무반에서는 교위·대정이 준하였다.

교위·대정은 경제적으로 우대받았고 祿官⁵¹⁾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사의 지급, 원회의 참여 등 관인으로서의 주요한 특권을 갖지 못하였다. 田柴科等이나 祿俸額에 근거하여 문반의 9품직이나 권무직 등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낮은 계층과 비교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문반 참외의 하위계층으로 권무직·9품직에 맞닿아 있는 입사서리직인데 관청에서 행하는 의례에서도 교위·대정은 人吏 – 입사서리직 –에 준하도록 규정하였다. 의례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따라 정해진다.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의례에 관한 규정에서兩者가 동일

48) 慶大升 父珍 中書侍郎平章事 大升膂力絕人 早有大志 不事家產 年十五 荫補校尉 累遷將軍(『高麗史』 100 慶大升傳).

49) 文漢卿 濱州人 祖儒寶 右僕射 漢卿 性貪鄙怯懦 初補隊正 累遷大將軍(『高麗史』 101 文漢卿傳).

50) 始復銓選法 舊制 府衛則自隊正以上 諸司則自九品以上 與夫府史胥徒 皆錄歲月功過 每於歲杪升黜 謂之 都目政 自禡時權奸竊國 官爵日出私門 都目政舊廢 至是追錄其勞(『高麗史』 75 「選舉志」 3 銓注 凡選法 辛昌卽位之年 8月).

51) 註) 45의 a 사료.

했던 것은 현실적인 지위가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인의 사회적 지위가 吏屬이나 향리와 비슷한 존재로 이해하여⁵²⁾ 계층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입사서리는 문반의 범주에 속하며 의례상으로 교위·대정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의례상 旗頭·都典 등 상충 군인과 비교되는 대상은 掌固 등 未入仕胥吏 계층이다.⁵³⁾

4. 文武班의 入仕過程과 構成員數의 比較

무반의 지위와 구성을 검토한 결과 산원 이상이 관인에 해당되고 교위·대정은 문반의 入仕胥吏에 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문반과 무반의 입사과정을 비교 검토해 보자. 먼저 입사과정을 보면 문반의 경우 관인의 후보자는 吏役을 마친 자, 科舉及第者, 品官同正職受蔭者 등이었고 이들은 곧바로 관직에 임명되기도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初仕外官職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자격을 갖쳤다고 해서 모두 관인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초사외관직에 임명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또한 초사외관직을 제수받았다고 해도 임지에서 선정을 펼쳐 우수한 고과를 받아야 비로소 임기를 마친 뒤 京官이 되었는데, 좋은 성적을 받고서도 관직을 제수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⁵⁴⁾ 신분상 구별되는 계선을 뛰어넘

52) 李基白, 「高麗 軍班制下의 軍人」『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88~289쪽.

53) 나1에서 든 사료에 의하면 掌固에 준하는 의례를 행해야 하는 계층이 旗頭·都典이었다. 旗頭·都典은 상충군인으로 생각되며 각종 포상의 시행에서 미입사서리 등과 병칭되었다.

○ 詔曰 兩行封冊使副 同時偕至 中外吏民疲於支待 其有錯誤當坐者 皆放除之 其所過州縣 減今年租稅之半 受冊時諸執事 及升壇陪位官 常參以上 並增級 鄉職以下 同加正職 掌固·算士·書手·近仗軍頭 皆許登仕 其餘軍卒 賜物有差 (『高麗史』8「世家」文宗 11年 夏4月 丙寅).

○ 次臨湊驛 下德音 加所歷名山大川 神祇德號 有沿途州縣官吏 京職加職一級 賦諸司掌固·諸衛旗頭 初職 (『高麗史』11「世家」肅宗 7年 11月 丁亥).

54) 李鎮漢, 「고려시대 初仕外官職의 運營과 祿俸」『韓國史學報』2, 1997.

여 관인이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이다.

무반은 단일한 관제조직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대정과 교위를 거쳐 산원이 된다. 대정과 교위는 음서,⁵⁵⁾ 군인에서의 진입, 戰功 등에 의해서 충원되며⁵⁶⁾ 이후 충분한 고과성적을 쌓아야 산원으로 승진하였다.⁵⁷⁾ 그런데 대정과 교위의 직무가 쉽지 않았다. 교위·대정은 소규모 단위부대의 지휘관이었지만 휘하 군인의 결원이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는 등⁵⁸⁾ 어려운 일이 많았으므로 苦役으로 인식되었다.⁵⁹⁾ 교위와 대정에게 문반 관인보다 높은 科等의 전시를 지급하고, 문반 서리에 대비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녹봉을 지급한 것은 이들이 문반에 비해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경제적 처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⁶⁰⁾

55) 隊正과 校尉의 定員은 각각 1,814원과 907원이다. 그런데 음서를 줄 수 있는 5품 이상의 무반 관직의 정원은 152명이므로 托蔭者에 前職者를 포함하고 '1人多子'說을 따른다 해도 음서로 충원하는 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위·대정은 군인에서 선발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무반을 정3품 상장군을 한직으로 삼은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56) 邊太燮, 「高麗朝의 文班과 武班」『史學研究』 11, 196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314~316쪽.

李基白, 「高麗 軍班制下의 軍人」『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92~293쪽.

陳元英, 「高麗前期 校尉·隊正에 관한 一考察」『史學志』 27, 1994, 52~54쪽.

57) 是年 正月 忠宣王 卽位下敎曰 … 一 州府郡縣鄉吏百姓 依投權勢 多授軍不領散員 或入仕上典 侵漁百姓 陵冒官員 宜令按廉使及所在官 收職牒 充本役 又領府隊尉隊正 無功超授軍不領散員 謂避本役 職役 付托世家橫行外方 濫乘驛馬 濫擾貧民 亦令有司收職牒 充本役(『高麗史』 84 「刑法志」 1 職制 忠烈王 24年).

58) 揭榜云 國家之制 近仗及諸衛 每領 設護軍 一 中郎將 二 郎將 五 別將 五 散員 五 伍尉 二十 隊正 四十 望軍丁人 六百 凡護駕內外力役無不爲之 比經禍亂 丁人多闕 丁人所爲賤役 使祿官 六十代之 因此 領役艱苦 爭相求避 伍尉·隊正等 未能當之 … 其領內 十將·六十有闕 除他人 並以領內丁人 遷轉錄用(『高麗史』 81 「兵志」 1 兵制 靖宗 11年 5月).

59) 議以品祿減少 分給文武官京畿田 有差 以近地 紿校尉·隊正 盖爲苦役也(『高麗史』 78 「食貨志」 1 田制 祿科田 元宗 13年 正月).

60) 下位 武班 將校와 官人の 경제적 처지가 열악했음을 알려 주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문반 관인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열악했던 것은 상당수가

뿐만 아니라 직제의 구조상 교위·대정의 승진과 정도 쉽지 않게 되어 있다. 경군의 조직은 二軍·六衛에 1,000명으로 구성된 단위부대인 領이 45개가 있었다. 관원은 이군·육위의 正副指揮官으로 上將軍 8員과 大將軍 8員이 있다. 각領에는 지휘관으로 將軍 1인이 있으며 그 아래 中郎將 2인, 郎將 5인, 別將 5인, 散員 5인, 校尉 20인, 隊正 40인 등이 있다.⁶¹⁾ 領내에서 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위 관직과 차상위 관직수의 비례는 대정과 교위는 2:1, 교위와 산원은 4:1, 산원과 별장 및 별장과 낭장은 1:1, 낭장과 중랑장은 5:2, 중랑장과 장군은 2:1이다. 그리고 장군과 대장군이 45:8이고 대장군과 상장군은 1:1이다. 이것을 다시 주요 계선에 따라 下位 官職과 次上位 官職數의 비율을 계산하면 교위에서 산원은 1/4, 참외에서 참상의 界線인 별장과 낭장은 1, 托蔭의 계선인 낭장과 중랑장은 1/2, 致仕의 혜택이 주어지는 계선인 장군과 대장군은 8/45이다. 무

군인에서 계층 상승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諷爲隊正 貧居 有郎中卜章漢 以非罪見竄 守平遞食其田 有年 及章漢遇赦還 守平素不相識 且其田租已租于江 守平袖租簿 就與之 章漢曰 當吾竄謫 君雖不食 豈無他人 君今哀我還其田足矣 何用租爲 守平曰 乘人之災 食其田 猶恐不義 今既還尚忍食也 遂投其簿 章漢不授 廢門入 守平竟以簿繫石 擲之而去 父老歎曰 今爭奪成風 不圖獲見若人 幸龍職卑而任寵 權貴子弟皆願爲之 守平由隊正 得補 辭以家貧 親舊曰 此榮選也 率多易妻求富 君若改娶富家 誰不願授室 守平曰 貧富天也 何忍弃二十年糟糠之妻 以求富室 邪言者 憙服(『高麗史』 102 權守平傳).
 - 又以年饑 發私廩賑權務·隊正·近仗左右衛神虎衛校尉以下 及坊里人(『高麗史』 129 崔忠獻傳附註).
 - 內侍郎將黃元吉 以其科田 薄 白王易郎將韓貞甫科田 楷言 元吉 雖無此田 不至貧乏 貞甫 惟祿是資 豈宜奪彼與此 請各復其舊 從之(『高麗史』 123 李汾禱傳附 楷).
- 61) 李基白, 「高麗 京軍考」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72~74쪽.
- 그런데 每領의 官員 수에 있어 응양군과 龍虎軍·六衛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응양군은 郎將 2人, 別將 2人, 산원 3人인 데 반하여 용호군·육위는 낭장 5, 별장 5, 산원 5인이며 그 외의 관원수는 같다. 鷹揚軍은 1領이고 나머지 龍虎軍과 六衛는 합계 44領이므로 후자로 설명한다(『高麗史』 77 「百官志」 2 西班 鷹揚軍, 龍虎軍, 左右衛 등).

반 관인이 되는 과정인 교위에서 산원이 1/4로서 치사의 계선을 넘는 장군에서 대장군을 제수받는 과정 다음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충렬왕 원년의 納粟補官 규정에서 산원에서 별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2근인 데 반해 교위에서 산원은 그 2배인 4근을 내도록 한 것은 이러한 관제의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대정에서 교위를 거쳐 산원이 되는 수치상의 확률은 1/8이다. 대정에 보임된 8명 가운데 1명만이 교위를 거쳐 산원에 오를 수 있으며 나머지 7명은 결국 무반 관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상의 계산일 뿐이다. 상위 관직의 결원이 생겼을 때 循資法에 따라 충원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때는⁶²⁾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마련이다.⁶³⁾ 게다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자, 병부의 고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출신이 좋은 자 등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빨랐을 것이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더욱 지체된다. 결국 대정에 보임된 자들의 대부분은 대정이나 교위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끝내는 산원에 오르지 못하고 퇴임하게 된다. 교위·대정에서 계층을 뛰어 넘어 관인이 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뜻이다.⁶⁴⁾

교위·대정에서 극히 일부만이 산원이 되었는데 양자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의 수가 매우 적은 관제의 구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교위에서 산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장기간의 苦役을 치러내야 했다. 교위·대정의 입장에서 그러한 일을 해야 할 동기는 분명하며 그것은 신분의 상승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고역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한편 무반 관원의 수는 산원에서 낭장까지 동일하므로 승진이 비교적

62) 朴龍雲, 「高麗時代 官員의 陞黜과 考課」『歷史學報』145, 1995, 118~123쪽.

63) 武臣亂 以前 申甫純은 校尉에서 散員이 되는 데 9년이 소요되었다.

毅宗七年 壬申 拜守庶下校尉 辛巳 崔淸下散員(『申甫純墓誌銘』, 261쪽).

64) 1급의 소속 군인이 1,000인이며 대정이 40인이므로 산술적으로 25명의 군인 가운데 1명이 대정이 되며 산원은 5인이므로 200명 가운데 1명이 된다. 그런데 음서로 대정·교위가 되기도 하므로 관제의 구조상 군인에서 대정·교위를 거쳐 산원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순탄하게 되어 있다. 물론 참외 별장에서 참상 낭장에 오를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어 중랑장, 장군, 대장군으로 승진할 때부터는 관원수가 줄어드는 병목구조이다. 能力이라든가 戰功 등과 특수한 요소는 무시하고 오직 무반의 관직 수만을 고려할 때 대정에서 중요한 계선을 뛰어넘는 확률은 산원과 낭장까지 1/8, 중랑장까지 1/20, 장군까지 1/40, 대장군까지 1/1,800 등이다. 대정에서 시작하여 최고위 무반직에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군인에서 진입하였을 때는 더욱 어려워진다.

끝으로 문무반 구성원의 수를 비교해 보자. 우선 기준의 견해에 따라 文宗代의 문무반 관직수와 정원을 비교하면 3품 이하의 문반 품관은 305 직 474원(겸직관 포함)이며 무반은 315직 1,757원이다.⁶⁵⁾ 관원의 수만을 단순 비교할 때 무반은 문반에 비해 약 3.7배 정도 많다. 게다가 문반직은 겸직의 사례가 상당히 많으므로 실제의 수는 더욱 줄어들고 문무반의 품외인 권무와 대정을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물론 재추가 주로 문반이 취임하는 관직이었으므로 전체 문반의 수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재추는 양반이 아니다.

문반이 우위에 있었으므로 무반 구성원수에 비해 다소 적을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커다란 문무반의 수적 불균형은 관제상으로나 신분제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분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관직의 역임이고 이들이 상위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데 지배신분층의 절대 다수가 무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무반의 지위가 문반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며 문반 우위의 현실에 따라 관제를 운영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관제 운영상의 문제일 뿐이며 3품 이하의 관직을 문

65) 고려시대 중앙관서의 관직수와 정원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의 표와 서술을 참고하였다. 물론 무반 관직의 수에서 종6품 六衛長史 6員과 정8품 六衛錄事參軍事 12員은 문반직이므로 문반 관원수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전체 문무반의 관원수의 비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한편 문반의 관직수는 3품 이하의 가운데 추밀에 해당되는 중추원부사·첨서중추원사·중추원학사 등 3직 4원을 뺀 것이다.

朴龍雲, 「高麗時代 官職과 官階」『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 高麗大出版部, 1997.

무반으로 구분하여 양반체제를 만들 때는 문반과 무반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였을 것이므로 문반과 무반의 관원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

이에 반해 교위·대정이 문반의 입사서리직에 비교되었으며 산원 이상총과 구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무반 관인수를 비교해 보자. 무반은 앞서 제시한 관원수에서 정9품 교위의 48직 907員이 제외된다. 반면에 문반에서 품계가 부여되지 않은 권무직은 실제로는 참외에 속하였으므로 그 수가 더해진다. 문종대 권무직은 문종권무관록에 규정된 것이 58직인데 諸宮錄事, 諸神廟直, 諸窯直, 諸壇直, 諸殿守護員, 諸牧監直, 諸宮直, 諸殿直, 諸陵直, 諸眞殿直 등이 있어 정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정원을 알 수 있는 都兵馬錄事, 五部錄事 등 29직의 관원수는 114員이다.⁶⁶⁾ 따라서 양반의 관원수를 비교하면 상장군 이하 산원 이상의 무반 관원의 정원은 832원이고⁶⁷⁾ 尚書 이하 雜權務 이상의 문반 관원은 $478 + a$ (권무직)이다.⁶⁸⁾ 문무반의 관제구조와 관직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양자의 수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다. 그러나 무반 관인에서 교위가 제외되고 문반에 권무관이 포함되면 수치상으로 문반과 무반의 수가 근접해져서 종전의 견해보다 문무반 정원의 격차가 줄어든다.

다음으로 교위·대정과 그에 대응되는 문반계층인 입사서리의 수를 비교해 보자. 교위는 907員이고 대정은 1,814員이므로 총 2,721원이며 산원 이상 무반 관인의 약 3.3배이다.⁶⁹⁾ 반면에 입사서리의 수는 記官 以上的⁷⁰⁾

66) 金光洙, 「高麗時代의 權務職」『韓國史研究』30, 1980, 43~45쪽, 〈표 1〉 참조.

67) 朴龍雲의 武班 合計에서 六衛長史, 六衛錄事參軍事, 校尉의 정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68) 문반의 관원수는 3품 이하 9품 이상의 관원수에서 六衛長史와 六衛錄事參軍事의 수를 더하고 겸임직을 제외한 것이다. 한편 권무직의 수는 정원을 알 수 있는 29직 114원에 파악할 수 없는 29직을 1명으로 계산하여 더한다 해도 143직이 된다. 그런데 諸가 붙어 있는 권무직은 적어도 2명 이상은 된다는 의미이므로 그 수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諸陵直은 역대 王과 王후의 수만큼 정원이 있으며 諸眞殿直도 역시 유사하다(李鎮漢, 「高麗時代 權務職의 地位와 祿俸」『民族文化』20, 1997, 175쪽).

69) 朴龍雲, 앞의 논문.

70) 金光洙, 「高麗時代의 胥吏職」『韓國史研究』4, 1969.

정원을 계산하면 中書門下省 등 일반관서의 경우 733인이며 문종대의 諸司都監各色 가운데 吏屬의 정원이 기록된 것을 합하면 66인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입사서리의 수는 대략 799人이다. 무반에 소속된 서리와 諸司都監各色에 기록되지 않은 서리가 있으므로 그 수가 조금 늘어난다 해도 교위·대정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입사서리와 교위·대정이 문무반 관인의 예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이 있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관인이 되는 입사과정에 있어 문반과 무반이 달랐다. 무반은 교위 또는 대정과 교위를 거쳐 산원이 되는 하나의 과정만이 있지만 문반은 입사서리에서 고과점수를 쌓아 진입하기도 하고 과거를 통해 관인이 될 수 있으며 음서로 품관동정직을 받았다가 관직을 제수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반은 吏役을 거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거나 음서를 통해 직접 관직에 임명될 수도 있었다. 즉, 主事 등의 상급서리뿐만 아니라 과거급제자와 品官同正職 受蔭者도 문반 관인의 후보자이므로 훨씬 많아진다. 그러므로 교위·대정과 입사서리의 수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급제자나 품관동정직 受蔭者는 직역을 담당하는 자는 아니다.

다음으로 서리층의 구분에 대한 의문이다.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高麗圖經』에서 丁吏와 驅使가 함께 관인의 使令의 役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丁吏와 丘史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정리를 未入仕胥吏에 포함시켰다.⁷¹⁾ 그러나 동일한 기록에 의하면 정리는 산원과 인리 다음에 기술되었고 驅使는 丁吏, 房子 다음에 서술하고 있으며 모두 독자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구사와 정리가 전혀 다른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관인에 대한 紿使의 지급에 있어서도 정리와 구사를 구분하였다.⁷²⁾ 지

71) 金光洙, 앞의 논문, 8~11쪽.

72) 紿使之賤 視官品而爲多寡之數 國相 丁吏 四人 驅使 三十人 令官倍之 前有
青蓋 持之在數十步外 民庶乘馬 惟自執鞭馭而已 丁吏多前驅 紿使執巾瓶 從
物後隨 列卿以上 丁吏 三人 驅使 二十人 正郎 丁吏 二人 驅使 十五人 員外
以上 丁吏 一人 驅使 十人 初品 紿使 三人 皆官奴隸也 世代相承爲之(『高麗
圖經』 22 雜俗一 紿使).

급 범위는 구사가 初品 以上의 관인에게 주어진 데 반해 정리는 6품 이상의 참상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지급되는 수를 비교하면 구사가 훨씬 많다. 정리와 구사가 同類였거나 혹은 동일한 계층이었다면 이처럼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수의 차이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정리와 구사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고 있으며 지급되는 범위와 인원을 비교할 때 구사에 비해 정리가 높은 지위였다. 『高麗圖經』에서 구사를 丁吏와 房子 다음에 기록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한편 『高麗史』에서 나타난 丁吏는 外方에 파견되는 宰臣,⁷³⁾ 兵馬使,⁷⁴⁾ 按廉 및 別銜使⁷⁵⁾를 수행하고 있었다. 『高麗圖經』의 撰者인 徐兢이 丁吏를 皂隸의 범주로 파악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外方城上에서 宰臣에게 入謁할 때 錄事, 隨使丁吏, 其官員長吏 등의 순이었다는 점,⁷⁶⁾ 兵馬使의 호칭이 兵馬錄事와 隨使丁吏의 有無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⁷⁷⁾ 그들의 出自가 鄉吏였다는 점에서⁷⁸⁾ 정리를 구사와 같거나 동일한 계층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리를 구사보다 한 계층 높은 입사서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참상 이상의 관인에게 1~4인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나 교위·대정의 수에 균접하게 된다.

73) 宰臣入廳 有南廳 則迎錄事 於南廳 閱視 官員行禮 錄事入東北隅 以次閱視
無南廳 則宰臣入東上方 於大廳 閱視訖 以告宰臣退出西上方 宰臣出廳 南向坐
錄事入謁 次隨使丁吏入謁 其官員長吏 以次入謁 宰臣若除問聖行禮 則錄事以下行禮
又除錄事以下行禮 則外官入謁 宰臣接房後 錄事接房 參上參外以次入謁(『高麗史』 68 「禮志」 10 外方城上錄事 謁宰臣及外官迎宰臣儀).

74) 使若上將軍·判事 則南向 知兵馬使 東壁 副使 西壁 具設床坐 … 雖三品員 無
兵馬錄事 隨使丁吏 則謂單使 坐東壁 分道將軍·按廉相會 則隔一席一行坐
兵馬判官·錄事相會 則坐西壁(『高麗史』 68 「禮志」 10 兵馬使及軍官拜坐儀).

75)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 一 諸州縣及鄉·所·部曲人吏 無一戶者 多矣 外吏
衣勢避役者 悉令歸鄉 丁吏 亦令減數 歸還 … 一 忽只·鷹房·尙乘·巡馬·宮闈
都監·阿車赤等 當新員赴任之時 遽徵封送 因而取斂於民 一切禁斷 乃至按廉及
諸別銜抄與丁吏 亦不得贈與(『高麗史』 84 「刑法志」 1 職制 忠烈王 22年 5月).

76) 주 73)의 사료.

77) 주 74)의 사료.

78) 주 75)의 사료.

그 동안 무의식적으로 무반 관인의 범주에 넣었던 교위·대정을 문반의 입사서리와 서로 상대되는 계층이라는 주장에 대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문반은 품외 권무까지 참외관에 속하지만 무반은 산원 이상 만이 해당된다는 것 역시 문무반 관제를 비교할 때 어색한 점이 있다. 그러나 문무반의 입사과정과 구성원 수의 검토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구분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되리라고 생각된다.

5. 맷 음 말

무반 관직의 반차와 관제의 구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관인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무반에 지급된 전시와 녹봉을 비교하였다. 무반은 전시과에 있어 상대되는 문반 관직에 비해 1~2과등이 높았던 반면, 녹봉은 정6품 낭장 이상 및 정7품 별장은 비교되는 동일 품계의 문반과 같았으나 산원, 교위, 대정 등은 더 많았다. 경제적 보수에 있어 무반이 문반에 비해 나은 대우를 받았다. 또한 구사의 지급규정과 녹봉액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군과 상서, 대장군과 경·감, 장군과 시랑, 중랑장과 낭중, 낭장과 원외랑 등 6품 이상의 관직은 동일한 품계이면서 형식상의 班次도 같았음을 알 수 있었다. 참상 이상의 문반과 무반의 경우 품계와 반차를 같도록 구성한 것은 조회에 참여하는 양반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무반 7품 이하는 녹봉에 있어 문반보다 훨씬 우대받았지만 구사의 지급은 8품까지 한정되고 교위·대정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어 문반의 품외인 권무에게도 구사가 지급된 데 반해 무반의 정9품 교위조차도 구사가 없었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 문반과 무반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 주는 의례에 관한 기사를 검토하였다. 정3품 상장군 이하 대정 까지를 포함하는 무반은 상장군에서 낭장까지의 참상, 별장과 산원을 포함하는 참외, 문반의 입사서리에 준하는 교위·대정 등의 3계층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무반직은 정8품 산원 이상이 관인의 범주에 들었고 교

위·대정은 관인과 군인의 사이에 위치한 계층이었다. 산원과 교위 사이에는 신분적으로 또는 지위상으로 커다란 단층이 존재하고 있었다. 교위·대정에게 경제적 보수에 있어서 우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제적 우대는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고역을 담당한 데 대한 배려였다. 문무반 관제의 구조와 운영이 6·7품을 경계로 서로 달랐던 것이다.

다음으로 문무반의 입사과정을 비교하였다. 문반의 경우 과거급제자, 品官同正職 受蔭者, 吏役을 마친 자 등은 관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초사외관직에 부임하였고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만 권무 이상의 관직을 제수받았는데 때로는 좋은 고파를 받고서도 산직상태가 되는 자가 적지 않았다. 초사외관직을 거쳐 중앙관직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무반 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苦役인 대정·교위를 역임해야 했으며 관원수에 있어 교위는 대정의 1/2, 산원은 교위의 1/4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정에서 교위를 거쳐 산원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문무반 모두 신분을 높여 관인이 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무반직의 구성이 8품·9품을 계선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군사 편제와 관련이 있다. 먼저 二軍六衛에 총 45領으로 京軍의 조직을 편성하고 군사 지휘관으로 상장군 이하 대정 등을 두었다.⁷⁹⁾ 이후 무반의 관직에 품계를 부여하고 반차를 조정하였는데 상장군을 문반의 상서와, 대장군을 경·감 등과 각각 대비시켰다. 그리고 장군에서 교위까지는 每品의 正品階에 두었고 대정은 품외로 하였다.⁸⁰⁾ 문반 관직도 9품 이상의 품관과 품외의 권무가 있으므로 외형상으로는 무반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문무 9품 이상이나 권무 이상과 대정 이상을 문무반 관인층으로 하게 되면 수적으로 무반에 편중되는 문제가 생긴다. 문반 우위의 구조하에서 지배계층의 구성에 있어 문반이 다소 적을 수는 있지만 무반 구성원이 3

79) 중앙군인 六衛는 光宗朝 후반기에 성립되었다고 한다(鄭景鉉, 「高麗前期武職體系의成立」『韓國史論』 19, 1988).

80) 이 시기는 관제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성종대였을 것이다.

배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관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반이 문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관인층 이상 지배 신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3품 이하를 문반과 무반으로 나누어 양반체제를 만든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9 품 이상의 品官과 品外로 이루어진 문무반 구조의 유사성과는 달리 문반은 권무 이상이 관인에 포함된 반면, 무반은 정8품 산원 이상으로 한정된 것은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무반의 수적 편중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문반이 관인과 그 候補群인 입사서리층 등으로 구분되었듯이 무반도 산원 이상과 교위·대정의 2계층으로 이루어졌으며 문무반 관인층에서 다시 참상과 참외가 나누어졌다. 결국 3품 이하의 관제는 문반과 무반의 양반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는 각각 입사서리 이상 및 대정 이상이 해당되었으며 참상과 참외 그리고 입사서리와 교위·대정으로 구분되었다. 문반과 무반은 모두 三元的인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18세기 전반의 首都防衛論

李根浩
(국민대 강사)

1. 머리말
2. 首都防衛論 擡頭의 背景
3. 北漢山城 築城 贊反論
4. 都城守備論의 展開
5. 맷음말

1. 머리말

조선조에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의 기간은 변화의 시기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¹⁾ 이와 동시에 중앙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며 국가의 재건이 일단락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즉 토지 개간 등으로 田結의 수가 임진왜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이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재정확보를 위해 量田사업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大同 法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전세제도 역시 總額制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재정운영에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정치운영에서도 18세기 전반

1) 李泰鎮,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1992.

이후에는 蕩平論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구현되면서 정국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군제의 경우도 五軍營이 三軍門 중심으로 정비되었고, 防衛戰略도 수도 외곽지역 방위에 치중하면서 수도 중심의 경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수도방위체제가 수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상당 정도 해명되었다. 이에 따르면 인조·효종대를 거치면서 수도 외곽지역 방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가 숙종대 이후 특히 영조대에 수도 중심으로 방위체제가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이 주로 軍營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北漢山城 축성이나 都城 수축과정, 영조대에 반포된 『守城綸音』의 내용 분석 등에 치중되었다. 따라서 首都防衛論의 논의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미흡하다. 특히 영조대에 『守城綸音』 반포로 구체화되는 都城死守論의 계기적인 파악을 위해서라도 이전시기 방위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전반 수도방위론을 북한산성 축성론과 도성수비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전반인 숙종 재위시에는 이전시기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북한산성 축성

2) 이 시기 수도방위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논고들이 참조된다.

姜性文, 「英祖代의 都城 死守論에 관한 考察」(『淸溪史學』 13), 1997.

金龍國, 「肅宗朝 北漢築城考」(『鄉土서울』 8), 1960.

金駿錫, 「조선후기 國防意識의 전환과 都城防衛策」(『典農史論』 2, 서울시립대), 1996.

閔德植, 「朝鮮 肅宗代의 都城 修築工事에 관한 고찰－성곽사적 측면을 중심으로－」(『白山學報』 44), 1994.

閔德植, 「北漢山城을 쌓게 된 경위에 관한 고찰－성곽사적 측면을 중심으로－」(『白山學報』 45), 1995.

元永煥, 「朝鮮後期 都城修築과 守備에 대한 고찰－영조사대를 중심으로－」(『鄉土서울』 33), 1975.

李泰鎮,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7.

李泰鎮, 「肅宗代 北漢山城의 築造와 그 意義」(『北漢山城 地表調查 報告書』, 고양시·서울대박물관), 1996.

李堦秀, 「18세기 北漢山城의 築造와 經理廳」(『淸溪史學』 8), 1991.

론이나 도성수비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로 축성이 이루어졌다. 북한산성 축성론이나 도성수비론이 근본적으로는 수도방위를 위한 논의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당시 일부 論者들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방략으로 이해하고 있어 주목된다.³⁾ 그렇다면 같은 목적으로 제기된 양자의 논의가 서로 대립하였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하는 論者들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해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시기 수도방위론을 둘러싼 당시 論者들의 정치적 의도를 먼저 살피고, 나아가 이 시기 논의가 갖는 시대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수도방위론이 갖는 의의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동시에 영조대 도성사수론으로 이어지는 수도방위론의 발전과정을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다만 본고에서는 시기적으로 18세기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영조대『守城綸音』의 분석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숙종 재위기간, 그것도 중반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2. 首都防衛論 擡頭의 背景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전란을 경험한 조선의 지배층들은 전란 후 국가재건 과정에서 군사적으로는 五軍營을 설치하였으며,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대표되는 수도 외곽지역의 保(堡)障處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을 경과하면서 점차 수도 중심으로 방위의 중심이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를 가져온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물론 두 차례의 호란을 겪으면서 보장처의 군사적 중요성이 약화된 데에도 원

3) 李濡, 『鹿川疏稿抄稿』 2, 「論北城箚」(국립 古-8102). “惟我聖上斷自宸衷 特命城此北漢孰不欽仰睿算之出尋常萬萬 然而築役雖得粗完猶不無甲乙之論 其主都城者以爲舍根本之都城取孤絕之北漢非計之得其主於北漢者以爲都城濶大難守不如專意北漢此皆未之深思雖守都城豈可使賊據北漢雖守北漢亦豈可使賊據都城乎.”

인이 있겠으나, 여기에 더하여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시기 수도방위론 대두와 관련되어 중요한 것이 서울의 변화이다. 17세기 후반~18세기에 진행된 서울의 변화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이 인구의 증가이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한성부 인구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숙종대를 전후로 한 한성부의 인구변동

| 연 도 | 호 수(戶) | 구 수(口) |
|--------------|--------|---------|
| 인조 26년(1648) | 16,006 | 95,569 |
| 효종 8년(1657) | 15,760 | 80,572 |
| 현종 10년(1669) | 23,899 | 194,030 |
| 숙종 4년(1678) | 22,740 | 167,406 |
| 43년(1717) | 28,356 | 185,872 |
| 경종 3년(1723) | 31,859 | 199,018 |
| 영조 8년(1732) | 35,768 | 207,733 |

(高東煥,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3, 10면의 <조선시대 한성부의 인구변동>에서 초략)

이 표에서 보면 17세기 중반인 1657년(효종 8)에 8만 572명에 그치던 서울 인구가 1669년(현종 10)에 19만 4천30명으로 약 20만명선에 육박하면서 2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인구증가의 이 같은 양상을 놓고 그 원인에 대해 학계에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⁴⁾ 이 시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울의 인구증가 추세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4) 지금까지 이 시기 서울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실제인구의 증가이기보다는 정부의 호구파악방식의 변화라든지, 행정구역의 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실제인구의 증가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연구자들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高東煥,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11면을 참고하였다.

큰 무리는 없다.⁵⁾

서울 인구의 양적 증가는 도시공간의 확대로 이어졌다. 서울의 지역적 공간은 조선전기에는 도성 안과 城底十里까지를 경계로 삼았다.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서울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양주의 松溪院, 大峴, 서쪽으로는 楊花渡와 고양의 德水院, 남쪽으로는 한강, 노량진이고, 북쪽 경계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⁶⁾ 그러나 17세기 중·후반 이후 인구의 증가로 도시공간이 확대되면서 『續大典』에서는 성지십리와 일치하는 四山禁標 지역이 조선전기보다 확대되었다. 즉 『속대전』에 나타나는 사산금표 지역은 동쪽으로는 大菩洞~水踰峴~牛耳川~松溪橋~中梁浦를 연결하는 지역이, 서쪽으로는 望遠停~모래내까지를 연결하는 지역이, 남쪽으로는 중량포~箭串橋~新村~豆毛浦~용산까지, 북쪽으로는 大棗里~舊館基~延曙~대보동~석관현의 서남처까지 연결하는 지역이 해당되었다.⁷⁾

인구 증가와 공간 확대 같은 양적인 증가는 서울의 근대적 도시화를 촉진하여, 서울을 종전의 정치중심 도시에서 상업도시로 탈바꿈시켰다.⁸⁾ 물론 서울의 이 같은 질적인 변화가 단지 인구의 증가라든지 공간의 확대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며, 이와 함께 도시수공업의 발달과 한강을 중심으로 한 교통·운수의 발달 역시 이를 촉진하였다.⁹⁾ 17세기 후반, 18세기 이후

5) 심지어 高東煥은 당시 인구를 3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高東煥, 위의 논문, 1993, 25면).

6) 『世宗實錄地理志』, 漢城府.

7) 『續大典』刑典 禁制 京城十里內. 한편 서울의 지역적 평창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高東煥, 앞의 논문, 1993.

楊普景,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서울학연구』 3, 서울학연구소, 1994).

8) 17세기 후반~18세기 이후 서울의 도시적 성격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高東煥, 위의 논문, 1993.

李泰鎮,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발달단계」(『서울학연구』 1, 서울학연구소, 1994).

최완기, 『한양—그곳에서 살고 싶다?』(교학사, 1997).

9) 최완기, 앞의 책, 1997, 70~77면 참조.

서울의 상업도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곳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계층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京華士族이 등장하여 성장하였으며, 생산인구인 상공업 인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소비인구도 증가하여 구매력을 높였다.¹⁰⁾

한편 사회적으로는 자연재해와 부세부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대규모로 流民이 발생하였다. 유민들은 생활근거지인 농촌을 떠나 유리하는 가운데 경제적 이익의 추구나 王都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로 집중되었다.¹¹⁾ 유민들의 서울집중은 서울 인구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진휼을 기대하고 상경한 유민들에 대한 진휼재원 마련을 위해 조정에서는 공명첩의 발행과 함께 청국에 구휼미의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¹²⁾ 이외에도 전염병이 확산되었고,¹³⁾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물가, 특히 米價가 상승되는¹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서울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였다. 광범위한 유민의 발생이 사회 불안요소로 부상함과 동시에 이 시기에는 도성 내에서 잣은 掛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불안요인이 급증하였다.¹⁵⁾

사회 불안요인이 급증하자 서울의 변화에 편승하여 성장한 계층들은 혹

10) 金駿錫, 「조선후기 國防意識의 전환과 都城防衛策」(『典農史論』2, 서울시립대), 1996, 32면. 한편 京華士族에 대해서는 유봉학, 「學界의 京·鄉分岐와思想的 推移」(『燕巖一派 北學思想研究』, 일조각, 1995)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11) 유민의 서울 집중현상에 대해서 南九萬은 “畿民大都貧乏 而不念農作之爲本業 苛趨目前之升斗之廩 離鄉去土 流入京師者 不可勝計”(『肅宗實錄』卷30, 肅宗 22年 2月 庚子)라 하였다.

12) 『肅宗實錄』卷32, 肅宗 24年 2月 庚午.

13) 『承政院日記』369冊, 肃宗 23年 2月 26日. “且飢餓致斃 僵屍載路 所見誠慘而薰染成疾 亦甚可慮 決不可仍置城內.”

14) 『肅宗實錄』卷29, 肃宗 21年 8月 己未.

15) 속종대 민의 저항 및 패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3).

홍순민, 「17세기 말 18세기 초 농민저항의 양상」(『1894년 농민전쟁연구』2, 한국역사연구회, 1992).

李相培, 『朝鮮後期 掛書研究』(강원대 박사학위논문, 1997).

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서울의 수비강화를 희망하였다. 이들의 욕구는 북한산성 축성이나 도성수축 등이 제기되었을 때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¹⁶⁾ 따라서 이 시기 수도방위론의 대두는 도성민들의 안위에 대한 욕구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조정에서는 도성민들의 욕구를 수용하여 도성의 방어를 군영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도성 중심으로 재부를 축적한 도성민의 경제력에 기대를 걸고 이를 동원하는 새로운 방어체제 정비를 모색하였던 것이다.¹⁷⁾

이와 관련해서 지배층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당시 사회불안을 경계하고 있다.

“근래에는 天災가 아주 심한데, 이미 징험한 일로서 말해도 놀랍고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불행하게도 흥년이 또 이에 이르러 민심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남북에 비록 근심이 없으나 도적이 치성하여 領相의 차자 가운데서 이를 말하였습니다.”¹⁸⁾

즉 청국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보다는 도적의 성행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여기서 도적의 성행은 비단 사회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

16) 『備邊司臚錄』 54冊, 肅宗 30年 2月 25日, “今此都城修築事 下教後 人莫不爲便 而武臣則尤以爲好 爲自北城議論時 渠輩至欲上疏 今番欲陳疏云云”이라든지 “而臣所帶書吏或下人等 皆言都民 亦未嘗有不便者云云矣”라는 기사는 도성민의 도성방위 강화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군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金鍾洙, 「朝鮮後期 訓練都監의 設立과 運營」(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189~190면).

17) 이러한 점은 『備邊司臚錄』의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감지된다. 즉 “反覆思惟 決不若因都民之衆心 據京倉之積粟 堅守此城之爲得之”(『備邊司臚錄』 54冊 肃宗 30年 2月 3일).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李泰鎮, 위의 논문, 1977, 174~177면과 김준석, 앞의 논문, 1996, 28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

18) 『備邊司臚錄』 第52冊, 肃宗 28年 9月 17日, “近來天灾孔棘 以已驗之事言之 無唯可惧可愕 況今凶荒 又不幸至此 民心靡定 卽今南北雖以無憂 至於盜賊之巖蔓 領相箚中 亦以此爲言.”

히려 집권층이 우려하였던 것은 정권안보에 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숙종 즉위 초반 한때 청나라가 三藩의 난 등으로 정정이 불안하여 대외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한 적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康熙帝에 의해 三藩의 난이 진압되고, 대만정벌이 이루어져 중국의 전 지역이 청국의 실질적인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강희제에 이어 즉위한 雍正帝 때에는 청국의 전성기인 乾隆시기를 맞이하였다.¹⁹⁾ 이로써 18세기 전반에 청국과 조선의 관계는 감시와 견제라는 긴장관계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대두되는 수도방위론은 대외적인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적인 반란에 대처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²⁰⁾ 즉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적 측면이 보다 주요한 이유였다고 하겠다.

18세기 전반에는 이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조응하여 정치적으로는 탕평론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 시기는 17세기 사람 정치가 爛熟期를 거쳐 쇠퇴의 과정을 밟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사림정치가 상징적인 존재인 山林의 위상변화이다. 즉 현종대까지 왕권을 압도하였던 山林이 숙종대 전반 몇 차례의換局의 와중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집권당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환국이 결과적으로는 왕권의 회복과 강화를 가능케 하면서, 사림정치의 쇠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²¹⁾

이럴 즈음 朴世采에 의해서 皇極蕩平說이 제기되었다. 朴世采는 皇極蕩平說을 통해 종래까지 봉당활동의 이론적 근거었던 朱子朋黨論을 비판하면서, 특히 黨人간의 시비와 用舍黜陟의 기준을 신료집단의 여론인 公論에 두기보다는 국왕에게 귀속시켰다. 이를 통해 朴世采는 신료중심적 봉

19) 金斗鉉, 「清朝政權의 成立과 發展」(『講座中國史』IV, 1989, 지식산업사) 참조.

20) 李泰鎮, 「三軍門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編』, 육군본부, 1977), 175면.

21) 鄭萬祚, 「朝鮮時代의 士林政治」(『韓國史上의 政治形態』, 一潮閣, 1993), 235면.

22) 朴世采의 蕩平論에 대해서는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144~146면 을 참고하였다.

당론에서 군주중심적 정치이론으로 전환시키는 논리를 제공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왕권강화를 추진하던 숙종의 의도에 부합하였다.²²⁾ 이에 숙종은 朴世采가 작성하여 올린 탕평교서를 반포하면서,²³⁾ 甲戌換局 후 이를 실제 정치에 적용하였다. 숙종이 탕평 추진을 위해 정치적으로 취한 정책은 이론바 雙舉互對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론과 소론을 두고서 이를 각각 調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조판서를 노론에 임명하면, 참판을 소론으로 한다거나²⁴⁾ 노론과 소론 각 봉당에 대표적인 산림인 權尚夏와 尹拯을 동시에 招致하는 경우²⁵⁾ 등이 해당된다.

탕평정치가 정치에 반영되면서 이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은 정권유지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군사력을 국왕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었다.²⁶⁾ 특히 앞서 지적한 대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군영들은 명목상 왕에게 통수권이 주어졌으나, 실질적으로 각 군영대장에 의해 군령과 군정이 장악되었다. 그렇기에 이 당시 군영은 왕권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公兵’이기보다는 ‘家兵’적인 존재였다.²⁷⁾ 따라서 왕권강화를 추진하던 탕평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군영을 재편하고,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즉위 초부터 군사력 강화에 부심하였던 숙종이 1682년(숙종 8) 金錫胄를 전면에 내세워 급위영을 창설한 것이나, 1704년(숙종 30) 「良役變通節目」을 제정하여 양역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군영의 정비를 시도하였던

23) 『肅宗實錄』 卷27, 肅宗 20年 7月 丙戌。

24)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鄭萬祚 教授가 『韓國史上의 政治形態』, 一潮閣, 1993, 附錄 「세미나 速記錄」, 363면에서 지적한 바 있다.

25) 일례로, 『肅宗實錄』 卷35, 肅宗 27年 7月 庚寅。

26) 정권유지와 군사력의 문제는 비단 이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숙종대 이후 탕평정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취해졌던 조치들, 예컨대 禁衛營(숙종대), 龍虎營(영조대), 壯勇營(정조대) 등이 순차적으로 설립되면서 급위군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은 탕평정치의 추진과 군사력의 관계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하겠다.

27) 『顯宗改修實錄』 卷22, 顯宗 11年 7月 壬戌。

점은 이를 반영하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²⁸⁾ 이는 결국 무질서하게 난립한 군영을 정리하고, 군영의 편제를 일률적으로 하여 국가의 공병으로써 확보하는 조치였던 것이며, 삼군문도성수비체제를 제도화하는 모습은 왕권강화를 추진하던 숙종의 군권장악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북한산성이 축성되고, 도성수축이 이루어지는 등 방위의 중심이 수도로 변화하였던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인 수도방위론이 대두되는 것은 탕평정치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편 18세기 전반 수도방위론이 대두되는 와중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들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與民共守論’이 그것이다. 탕평론자인 申旼은 수도 방위를 위해 북한산성을 축성하자고 주장하면서 ‘與民共守論’을 제기하였다.²⁹⁾ ‘與民共守論’이란 글자 그대로 민과 더불어 함께 지키자는 것으로, 17세기까지 지배층들이 보장처 정비를 통해 유사시 피난 갈 것을 생각하던데서 진일보한 논리였다고 하겠다. 물론 여기서의 민은 도성민으로 보이며, 숙종의 경우도 “도성민은 바로 나의 赤子인데, 어떻게 난리에 임하여 보전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³⁰⁾라고 하여 민과 더불어 최후 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전시기에 비해 수도방위가 강화되는 상황과 民을 공동주체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는 수도방위론의 전개가 이 시기 民의 성장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8세기 전반 首都防衛論 대두는 군사적으로 수도 외곽지역의 보장처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약화된 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사회·경제적으로 서울의 상업도시화에 편승하여 성장한 계층들의 都城수비 강화를 바라는 의식 고양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정치적으로 탕평정치가 구현되면서 탕평을 통한 왕권 강화의 군사적 기반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28) 「양역변통절목」에서 나타나는 군영 정비에 대해서는 李泰鎮, 「三軍門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7을 참고하였다.

29) 申旼, 『銅菴集』 卷4, 疏劄 「進八條萬言封事冊子劄」 7조 修城池. “今若思上 下相保之道 爲與民共守之計 若莫固守京城.”

30)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10月 辛巳.

3. 北漢山城 築城 贊反論

18세기 전반 수도방위론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이 북한산성 축성론이다. 이 논의는 이후 수도방위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시기 북한산성 축성론을 제기하고 이 논의를 주도하였던 인물은 앞서 언급한 申琬이었다.³¹⁾ 申琬이 주장한 북한산성의 축성은 임진왜란 직후 李德馨이 제기하였고,³²⁾ 이후 효종대³³⁾와 숙종대 남인 정권에서 몇 차례 제기되기는 하였다.³⁴⁾ 그러나 이전에는 일회적인 논의에 그친 데 비해서 申琬이 제기하면서는 본격적이고도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申琬이 축성의 최적지로서 주목한 곳은 彰義門 밖의 蕩春臺 터였다. 이 곳을 축성의 적지라고 한 데에는, 자연적 산세가 험하다는 것과 돌이 많기 때문에 1/3은 塚堞(낮은 담)만을 설치하여도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또한 인문자리적으로도 산성내 공간이 넓어서 도성민 수만 호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 사계절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점, 북한산과 접하고 있으므로 운송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에 적당하다는 점, 주변지역의 지휘가 용이하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이 곳이야말로 하늘이 내려 준 “戰守之地”라는 것이다.³⁵⁾ 申琬에 의해서 제기된 蕡春臺 築城論은 그것이 북한산성 외성 축성이지만, 申琬이 지적한 창의문 밖은 도성에서 북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에 그 논의는 자연스럽게 북한산성에 축성하자는 논의로 전환되어 나타났다.³⁶⁾

31) 申琬, 『網菴集』 卷4, 「進八條萬言封事冊子劄」 修城池.

32) 『宣祖實錄』 卷73, 宣祖 29年 3月 庚午 및 李德馨, 『漢陰文稿』 卷9, 「中興洞山城形勢啓」.

33) 性能, 『北漢志』 事實.

34) 『肅宗實錄』 卷1, 肅宗 卽位年 11月 壬申. 동 실록 卷23, 肅宗 17年 11月 己卯, 12月 癸未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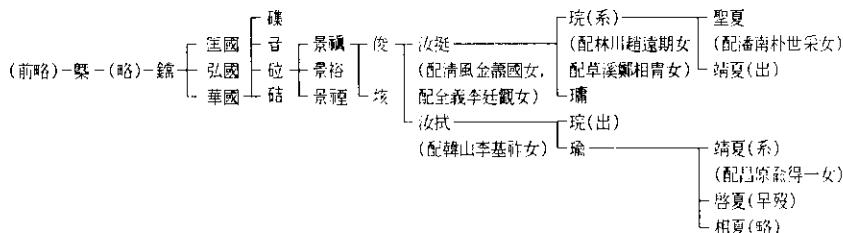
35) 申琬, 『網菴集』 卷4, 「進八條萬言封事冊子劄」, 修城池.

36) 金龍國, 「肅宗朝 北漢築城考」(『향토서울』 8, 1960), 75면.

축성론을 제기한 申琬은 平山人으로 인조반정 1등공신이면서 영의정을 역임한 申景禛의 증손이다.³⁷⁾ 申琬은 숙종 8년경 서인이 노·소론으로 분당될 때 스승인 朴世采와 함께 소론으로, 숙종 20년 갑술환국 이후에는 朴世采의 皇極蕩平論을 정치에 구현하는 데 주력한 탕평론자로서 활동하였다. 申琬과 정치노선을 같이한 인물로는 동문인 金構·趙泰采·俞得一·俞集一 등과 李濡 등이 있다. 이들은 노·소론 봉당세력과 같이 공론을 앞세우며,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기보다는 현실문제에 대처하면서 정국의 경색을 막기 위해 주력하였던 탕평론자이면서 경세가였다.³⁸⁾

申琬의 제기 이후 축성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숙종 28년 9월 李世白에 의해 재론되면서부터였다.³⁹⁾ 이때 申琬을 지지했던 인물로는 앞서 지적한 김구·유득일·유집일·이유 등 이외에 숙종을 비롯해 洪受疇·尹就商·李思永 등이다. 이들이 축성을 지지한 이유는 첫째, 보장처인 강화도와 남한산

37) 『평산신씨대동보』, 『평산신씨문화공파보』, 『평산신씨합보』(계유보(1873)복간본) 등을 참조하여 초략.



38) 鄭萬祚, 「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國史館論叢』17, 국사편찬위원회), 1990. 한편 이 시기 朴世采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문인들을 “轉向老論”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老論蕩平派로 분류한 아래와 같은 연구가 있으나, 이러한 정치세력의 분류는 재고를 요한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申琬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鄭景嬉,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의 시도」(『韓國史論』30, 서울대), 1992.

_____, 「17세기 후반 '전향노론' 학자의 사상」(『역사와 현실』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_____, 「肅宗 後半期 蕩平政局의 變化」(『韓國學報』79, 일지사), 1995.

39) 『肅宗實錄』卷38, 肅宗 29年 9月 甲子.

성이 지리적 여건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李瀟는 나라에 변란이 있으면 반드시 강화도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데, 이 2곳으로 가려면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국왕의 大駕는 건널 수 있지만, 士民은 다 버리는 형편이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⁴⁰⁾ 이 점은 申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강화도의 水勢는 예전과 다르고, 남한의 외로운 성은 마침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고 하여, 숙종 및 金構 등의 동의를 얻었다.⁴¹⁾

둘째로, 도성이 지나치게 넓어서 수비하기가 곤란하다는 도성수비 불가론이다. 숙종을 비롯한 어영대장 尹就商, 강화유수 李思永의 견해였다.⁴²⁾ 일례로 숙종은 도성은 넓어서 지키기가 곤란하며, 만약 파란하게 되면 군량과 병기 등이 모두 적의 손에 이용되기 때문에 도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리였다.⁴³⁾

그러나 이들이 도성수비 불가론을 말한다고 해서 도성을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축성을 반대하였던 논자들도 인정하는 바로,⁴⁴⁾ 아래의 지적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임금을 모시고 위험한 성에 있는 것이 어찌 만전의 도리이겠습니까? 만약 먼저 북한산성을 쓱으면 도성과 表裏가 되어 서로 의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수레를 따르는 군병은 북한산성을 지키고, 도성의 장정들과 기타 군병들은 도성을 지키다가 만약 도성이 함락되면 물러가 북한산성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⁴⁵⁾

즉 도성을 버리고 북한산성만을 지키기보다는 도성과 북한산성을 表裏

40) 『肅宗實錄』卷37, 肅宗 28年 10月 壬午.

41) 『肅宗實錄』卷38, 肅宗 29年 2月 辛丑.

42) 축성 찬성론에 대해서는 『肅宗實錄』卷37, 肃宗 28年 10月 壬午, 동 실록 卷38上, 29年 1月 丙寅, 동 실록 卷38上 29年 3月 庚申, 동 실록 4月 丙子, 동 4월 丁丑 등.

43) 『肅宗實錄』卷38, 肅宗 29年 1月 丙寅.

44) 『肅宗實錄』卷38, 肃宗 29年 3月 乙亥, 判府事徐文重劄子.

45) 『備邊司謄錄』第53冊, 肃宗 29年 3月 21일.

로 삼아 도성을 지킨다면 만전의 계책이 된다는 것이다.

申琬의 제기로 본격화된 북한산성 축성론은 일부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비 강화를 추진하던 숙종의 윤허를 받아 축성을 위한 준비들이 조속히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숙종 29년 3월 숙종은 각 군문에 經理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군문 소속 군사들의 부역이 이루어졌다.⁴⁶⁾ 이때申琬은 부역에 필요한 인원을 군문 소속 군사 이외에도 서울에 유입된 飢民들을 동원하여 役事を 추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후술하듯이 민생안정을 우선하는 반대론자들에게 빌미가 되어 축성은 중지되고,⁴⁷⁾ 도성수축으로 선회하였다.

북한산성 축성론이 申琬에 의해서 발의되고, 이후 역사가 결정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노·소론 붕당세력들의 반대이다. 이들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첫째, 도성을 폐기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노론의 예조판서 金鎮龜는 만일 사변이 있으면 군신 상하가 북한산성으로 들어갈 것인데, 종묘·사직과 궁궐이 있는 도성을 적에게 넘겨주게 되면, 적을 腹心에 두고 우리는 좁은 비탈의 한구석에 혹처럼 불고 박처럼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⁴⁸⁾ 소론의 判府事 徐文重의 경우도 도성과 북한산성을 모두 지킨다면 병력이 나누어지게 되어, 한 성을 잃으면 한 성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여 도성을 지켜야 됨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성을 축성하게 되면 보장처인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⁴⁹⁾

둘째로, 이른바 “修根本論”으로,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반대이다. 노론 측 金鎮龜의 경우 근래에 인심이 혼들리고 풍속이 퇴폐하며, 綱常이 무너졌는데도 하루아침에 완성하지 못할 축성사업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綱常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군주가 道德을 쌓고 언행을 삼가며, 허세만 떠벌여서 인심이 떠나고 나라

46) 『肅宗實錄』 卷38, 肅宗 29年 3月 庚申 및 庚午.

47) 『肅宗實錄』 卷38, 肅宗 29年 10月 辛丑.

48) 『肅宗實錄』 卷38, 肅宗 29年 3月 乙亥.

49) 위와 같음.

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국가가 계속해서 한재와 수재를 계속 겪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산성과 같은 대역사를 일으키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⁵⁰⁾ 소론측 行司直 李寅燁의 경우에도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깊주린 백성이 길에 가득하고 도적이 몰래 일어나는 때를 당해서, 백성을 움직여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¹⁾ 이외에도 소론측에서는 축성 반대논리로 북한산성의 지리적 여건이 축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⁵²⁾ 청나라와의 약조설,⁵³⁾ 풍수지리적으로 來龍之脈이 파괴된다는 점⁵⁴⁾ 등을 지적하였다.

축성을 둘러싼 이상의 찬반론은 申旼을 중심으로 한 탕평론자와 노·소 당인들의 대립이어서 그 의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申旼이나 일부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성을 추진하였던 의도는 무엇이며, 노·소론·봉당세력들이 반대하였던 의도는 무엇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산성 축성론은 도성을 폐기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도성수호를 위한 방략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봉당세력들의 반대가 거세게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 역학관계가 내포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산성 축성론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반대하였던 金昌集을 비롯한 다수 노론들이 숙종 36년에 북한산성 축성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⁵⁵⁾ 그러한 가능성성이 충분하다.

50) 『肅宗實錄』 卷38, 肅宗 29年 1월 丙寅 및 위와 같음.

51) 『肅宗實錄』 卷38, 肅宗 29年 4월 庚辰, 行司直李寅燁上疏.

52) 『肅宗實錄』 卷38, 肅宗 29年 3月 乙亥. 여기서 徐文重은 “北城雖險阻 而內甚於外 山麓互蔽 高低懸絕 號令不能相及 首尾難以接應 壓臨之勢 與賊共之 我不可專恃”라 하여 북한산성의 불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53) 위와 같음. 判府事 尹趾善은 “且城池之不得修築 入於丙子約書 備後之策 未知得失如何 而目前之辱 恐致無限境界也”라 하여 명자호란 당시 청나라와의 약조를 들어 만일에 있을 청나라의 헐책을 우려하고 있다.

54) 『肅宗實錄』 卷38上, 肃宗 29年 4月 庚辰, “行司直李寅燁上疏曰…北城東麓卽京都來龍之脈也 衛家之說 雖不足深信 而聖祖肇創 建邦設都 三百年僅護之地 不宜容易鑿破 而城基開築之際 不得不鑿山破石 侵傷地脈 倘於異日 有些休咎 則浮議朋興 必歸咎於此 將何辭而解此惑乎.”

55) 李涓秀, 앞의 논문, 1991, 178~179면.

申烷을 비롯해 북한산성 축성을 지지하였던 김구나 유득일 등이 탕평론 자임은 앞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臣權이 강한 당시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탕평론을 지지하면서 군주권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군주권의 강화에서 필수적인 것은 군사권의 장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1704년(숙종 30)에 이루어진 「양역변통절목」이었다.⁵⁶⁾ 특히 이 절목 가운데 「五軍門改軍制節目」에서는 종래 무계획적으로 설립되어 통일성이 없던 각 군영을 체계화하고, 아울러 훈련도감과 급위영, 어영청 등 3군문을 중심으로 수도방위체제를 편제하였다.⁵⁷⁾ 이러한 조치는 결국 국왕이나 탕평론자들이 봉당세력의 군사적 기반인 오군영을 국가체제로 통합시키려는 의도하에서 추진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절목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申烷을 중심으로 한 탕평론자들의 정치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거니와, 북한산성 축성도 동일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숙종이나 申烷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북한산성 축성에 주로 軍門의 군사와 재정을 동원하여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다.⁵⁸⁾ 숙종이나 申烷 등이 이를 계획한 것은 군문세력을 재편 내지는 약화시켜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도성과는 별도의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여 방위에 만전을 기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결국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탕평론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노론의 경우 표면적으로 전란시 북한산성 중심으로 방위가

56) 숙종 30년 12월에 제정된 「양역변통절목」의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鄭萬祚, 「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國史館論叢』 17, 국사편찬위원회), 1990을 참고하였다.

57) 李泰鎮, 「三軍門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7.

58) 북한산성 축성이 결정되었을 때 숙종은 군문에서 經理토록 하였으며, 실제 군문소속 군사들이 교대로 부역하였다(『肅宗實錄』 卷38上, 肅宗 29年 3月庚午). 한편 李濡는 申烷이 제기한 餓民을 축성에 동원하자는 것에 동의하고는 각 군문에서 料米를 내도록 하자고 하였다(위와 같음).

치중될 경우 도성의 폐기가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었음은 물론이다. 당시 정국은 숙종의 의도에 의해 비록 노론과 소론 및 탕평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봉당세력, 특히 노론세력이 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숙종 27년 張禧嬪이 사사된 巫蠱獄으로 인해 정국이 경색되면서 숙종을 비롯한 탕평세력들은 이를 타파하고자 민생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申烷이 숙종 28년 8월에 제출한 「八條萬言封事」는 그러한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하겠다.⁵⁹⁾ 이로써 이 시기가 되면 양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申烷을 중심으로 한 탕평논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다.⁶⁰⁾ 이런 상황에서 숙종을 비롯해 탕평론자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산성을 축성, 이를 왕권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결과적으로는 노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은 당연하며, 노론들의 반대 역시 예견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 논리로서 주목되는 것이 이른바 “修根本論”이다. 이는 당시의 정세로 보아 새롭게役事を 일으키기보다는 먼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북한산성 축성론에 동조하였던 金構는, 북한산성 축성의 당위성을 논하는 가운데 당시의 급무를 민생보다는 축성이 우위임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⁶¹⁾ 이 점은 노론들의 입장과 대조적이다. 이때 노론들 뿐 아니고 소론측에서도 金構의 주장에 대해서 심한 반발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비난하였다.⁶²⁾

金構와 노론측의 논쟁은 17세기 사립정치기 국정운영의 모습과 유사하여 흥미롭다. 주지하듯이 17세기 국정운영의 방향은 국왕을 중심으로 몇몇 관료들에 의해서 부국강병책이 논의되고 있을 때 당시 山林이나 당인

59) 申烷, 『網菴集』卷4, 「進八條萬言封事冊子劄」.

60) 『肅宗實錄補闕正誤』卷41, 肅宗 31年 4月 丁卯, “辛巳以後 黨人全用事 如申烷趙泰采背之貪濁淆亂 蘩然自恣 固合於大整治 至是 士類登用則宜首及於此 而今不然 已不能知大體所在矣.”

61) 『肅宗實錄』卷38, 肅宗 29年 3月 庚申 “(金)構曰 灾異如此 脫有兵禍 事無可爲 念及于此 百姓賑救 反是第二件事 築城之役 何可少緩.”

62) 소론측의 경우 『肅宗實錄』卷38, 肅宗 29年 4月 庚辰 行司直李寅燁上疏.

들은 養民 우선을 강조하였다. 후자의 입장은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외면적인 강병책은 砂上樓閣에 불과하므로, 이보다는 폐된 민생회복이 급선무이며, 양병책은 추후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 시기 당인들의 이 같은 입장은 世道政治論과 연관되면서 왕권 강화를 제약하는 논의였다.⁶³⁾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18세기 전반 북한산성 축성에 반대하는 노론측의 입장은 17세기 이래 제기되었던 양민우선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왕권에 대한 제약 내지는 견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노론측의 이러한 입장에 반해 소론 역시 앞서 지적한 대로 도성폐기의 불가라든지, 민생 우선의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렇다면 소론의 반대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노론과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하겠다. 노론에 비해 정치력에 있어서나 정치명분 면에서 열세에 있는 소론세력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관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론측의 반대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당시 지배세력인 사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론들로서 새롭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양역변통과 정에서 소론세력은 대변통론, 즉 신분질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良役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戶布論이나 口錢論 같은 것을 반대하고, 小變通論의 軍制變通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⁶⁴⁾ 즉 소론세력들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사족들과 일반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를 반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役事의 강행은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감만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숙종을 비롯한 申旓이나 지지자들이 북한산성 축성을 추진하였

63) 金駿錫,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그 展開」(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0).

鄭萬祚, 「17세기 中葉 山林勢力(山黨)의 國政運營論」(『擇窓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1992).

64) 鄭萬祚, 「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國史館論叢』 17, 국사편찬위원회, 1990).

던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그것의 정치적 의도는 종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봉당세력, 특히 노론세력의 약화를 의도하면서 아울러 왕권의 군사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바로 이런 의도를 간파한 노론과 소론, 특히 노론의 경우는 도성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修根本論’ 등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였다. 노론의 이 같은 정치적 입장에 비해 소론은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서까지 이들이 추진한 북한산성 축성론을 지지할 수는 없었다.

노론과 소론의 반대에 따라 북한산성 축성론은 申旼에 의해 제기되던 당대에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는 비록 숙종의 의도에 부합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탕평세력이 정치세력화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세력이 주로 주장하는 도성수축으로 귀결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도성수축으로 귀결은 숙종과 탕평론자 세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당시에 정국을 주도하던 집권층인 노론세력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탕평론자들인 申旼이나 金構 등이 당시 민의 고통이 극심하던 때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정치집단화하지 못한 이들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申旼이 제기한 북한산성 축성론의 의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 북한산성 축성론은 숙종 37년 실제로 옮겨져 축성된다는 사실이나, 도성민이나 지배층의 안위 욕구를 반영하여 제기된 수도방위 논의를 종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그 의미 또한 적지 않다.

4. 都城守備論의 展開

18세기 전반 북한산성 축성론이 제기되고 도성수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후일 영조대 都城死守論의 시원적인 도성수비론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도성수비론은 전통적인 도성관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일찍부터 제기되

기는 하였다.⁶⁵⁾ 특히 임진왜란을 경험하면서 이 논의는 구체화되어 제기 되기는 하였으나,⁶⁶⁾ 당시의 방위전략이 수도 외곽지역에 대한 군비강화에 치중하였기에 국방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후 도성수비론은 간헐적으로 제기되다가 18세기 전반인 숙종 30년을 전후하여 북한산성 축성론에 대립한 견해로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시기 도성수비론은 내용에 따라 숙종 30년을 전후한 논의와 숙종 36년을 전후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숙종 30년을 전후로 한 시기 도성수비론은 대개 도성의 부분적인 수축을 거쳐 도성을 수비하자는 것으로, 金鎮龜는 북한산성을 축성하여 만일의 사변시에 북한산성으로 들어간다면 도성의 자녀라든지 도성의 병기가 모두 적의 손에 넘어가니 오히려 도성을 腹心으로 삼아 지키자고 하였다. 그리고 李奮는 도성을 宗社와 士民이 있는 곳이라고 전제하고, “도성을 증축하여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굳게 지켜 버리지 않는 것이 長策”⁶⁷⁾이라는 내용으로 도성수비론을 제기하였다. 이같이 북한산성 축성론이 제기되자 반대논리로 제기된 도성수비론은 宗社를 보전하기 위해서 도성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숙종 36년을 전후로 한 도성수비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이전 시기의 그것보다 논리상 심화되어 주목된다. 이 시기 도성수비론은 청나라에서 海賊에 대한 방위를 강화하도록 한 咨文이 오면서 본격화되었다.⁶⁸⁾ 이 당시 숙종은 이를 기회로 海防을 강화하고 아울러 전 시기에 이루지 못한 북한산성을 축성하고자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그에 대신하여 변방수비 강화론이나 海防強化論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도성수비론 역시 그 일

65) 조선전기 도성에 대한 인식은 金駿錫, 앞의 논문, 1996, 22면 참조. 일례로 『宣祖實錄』 卷71, 宣祖 29年 1月 乙未, “蓋京城 乃四方根本”이라는 인식이 보이고 있다.

66) 일례로 이정귀는 정유재란 직후 도성수비를 주장하였으며(李廷龜, 『月沙集』 卷30, 「陳弊劄」, 修軍政以飭武備條), 광해군대에도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光海君日記』 卷15, 光海君 元年 4월 乙卯).

67) 『備邊司牘錄』 54冊, 肅宗 30年 2月 25日.

68)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9月 己未.

환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이 시기 도성수비론은 주로 노론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소론의 경우는 1710년(숙종 36) 영의정 崔錫鼎이 『家禮源流』 시비로 인해 노론측의 공세로 결국 물러났으며, 탕평론자의 경우도 申甞이 1707년(숙종 33)에 사망함으로써 그 이후 정치적 결집이 되지 못한 채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도성수비론을 주장한 논자들 가운데 주목되는 견해는 趙泰老·李光迪 등의 논의이다. 趙泰老는 도성을 지키는 데 이로운 점과 도성을 버리는 데 해로운 점 5가지를 들어 도성수축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都下民人 모두가 한목소리로 도성을 지키자고 한다고 하였다.⁶⁹⁾ 도성민들의 안위 욕구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지만 趙泰老의 논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시기 도성수비론은 도성민들의 욕구를 집권층에서 수용하는 측면을 반영한 사례이기도 하다.

趙泰老의 견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숙종 36년 10월 司直 李光迪이 제기한 견해이다. 李光迪은 星山人으로 효종조에 문과에 등재한 후 知製敎·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7旬이 넘도록 당하관의 품계에 머물다가, 노론 李時白의 요청으로 비로소 嘉善大夫에 제수된 인물이었다. 李宜顯이 쓴 묘지명에서는 “常慮存陰雨”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⁷⁰⁾ 이때 제시한 도성수비론 역시 그 일환이라 하겠다. 李光迪은 이미 숙종 30년 3월 북한산 성 축성론을 둘러싼 논의가 있을 때 도성수비를 주장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⁷¹⁾ 숙종 36년에 이를 구체화하여 다시 제기하였다. 李光迪의 논의는 外禦 6조, 內守 7조로 이루어졌는데, 도성수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4부분으로 정리된다.⁷²⁾

① 도성 사방에 대한 군비 강화의 내용이다. 북으로는 백악과 인왕산 뒤의 높은 봉우리에 베풀고 총포를 설치하는 동시에 총융청을 북한

69)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10月 乙亥, 副提學趙泰老上疏曰.

70) 이상 李光迪에 대한 서술은 李宜顯, 『陶谷集』 卷17, 「工曹判書李公墓誌銘」 을 참조하였다.

71) 『肅宗實錄』 卷39, 肅宗 30年 3月 癸卯.

72) 『肅宗實錄』 卷49, 肃宗 36年 10月 甲子.

산성⁷³⁾ 아래로 옮겨 수비하고, 양주의 문治를 弘福山城으로 옮겨 수비하며, 남쪽으로는 남산과 남한산성을 수어대장이 관리하자고 하였다. 아울러 동·서에 높은 담을 쌓고 성 위에 破壘를 설치함으로써, 도성의 사방에 대한 군사시설의 정비를 통해 방어체계를 정비하자고 하였다.

- ② 군량 및 재원 확보방안이다. 전국의 조운이 모이는 三江에 설치된 江倉을 인왕산 아래 守城宮터로 옮겨 설치하고, 군량의 비축을 위해 三南의 儲置米 절반과, 統營·監營·兵營의 還上穀의 절반을 京倉에 수납하며, 각 군문 屯穀의 발매를 금지해서 직접 군문에 바치게 하여 군량을 비축하자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社倉의 제도를 採用하여 한성부 5부의 統戶로 하여금 穀契를 만들게 하고, 오부 소속 관리들이 이 전관하여 이식을 통해 도성민이 수성하는 양식을 비축하자고 하였다.
- ③ 도성 방어를 위한 인력배치 문제로, 도성민을 군문에 분속시키자고 하였다. 즉 당시 도성민의 帳籍에는 男丁이 10여 만 명인데, 이 가운데 노약자 등을 제외한 후 북부민은 금위영에, 남부민은 수어청에, 서부민은 훈련도감에, 중부민과 동부민은 어영청에 소속시켜 각자 거주지역을 지키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領將의 통제를 받으며, 隊伍를 편성하여 城堞에 배치하고, 봄·가을로 군사훈련을 하여 군사기술을 연마도록 하자고 하였다. 즉 도성은 도성민이 自守하자는 것이다.
- ④ 강화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강화도를 도성과 응접하는 곳으로 삼자고 하였다. 특히 이광적이 강화도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은 험준한 형세뿐만이 아니고, 이곳으로 삼남의 조운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즉 강화도가 갖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73) 여기서 李光迪 역시 북한산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때의 논의는 북한산성 축성론자들이 국왕의 駐蹕處로써 북한산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도성 방어의 외곽거점으로서 설명하고 있어 그 의미는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서 이광적의 논의에서 북한산성은 도성수비를 위한 부차적인 것이며, 오히려 그의 입장은 都城固守로 말해질 정도로 도성수비에 대한 견해로 집약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李光迪의 논의는 숙종 30년을 전후한 시기 도성수비론에서 볼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논리로서 수도방위론이 내용상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⁷⁴⁾ 특히 주목되는 점은 ③의 인력배치 문제로, 도성민을 군문에 분속하여 도성을 지키자는 것이다. 즉 5부 방민들을 각각의 군영에 배치하여 군사훈련과 수성을 담당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성 방민의 분속문제에 대해서는 숙종 30년 李濡가 도성수축을 제시하면서 방민을 군문에 분속시키자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李濡의 지적에서는 구체적인 분속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비해, 李光迪의 논의는 매우 구체성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숙종 30년을 전후한 논의가 주로 도성의 수축이나 축성 등에 집중된 데 비해서, 숙종 36년 이후에는 인력의 배치문제를 거론하고 도성민 스스로 도성을 방어한다는 논리로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숙종 30년 도성 방민의 군문 분속을 언급하였던 李濡 역시 이광적의 논의가 있은 며칠 후에 전 시기의 논의에 비해 매우 구체화된 논의를 제기하였다.⁷⁵⁾ 이 시기 李濡의 녺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도성민의 관리나 그에 대한 대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李濡는 도성민은 부모 처자가 같은 공간 내에 있으니 이들을 엄격한 규율로 다스리고, 나아가 군문에 소속시켜 단속한다면 도성수비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그는 이른바 “閑游之類”라고 하여 군문 분속에서 제외된 세력들도 각 군문에 분속시키자고 하였다. 여기서 “한유지류”란 閑良이나 出身 등과 같은 자들로서 이들에게는 出身軍官이나 權武軍官 등의 칭호를 주어 관리하자고 하였다. 사실 李濡는 1704년(숙종 30) 12월에 제정된 「양역변통절목」 가운데 「校落講者徵布節目」을 삽입시켜 낙강교생들이 軍保의 칭호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罷布 2필을 징수하는 대신 군역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⁷⁶⁾

74) 李涓秀, 앞의 논문, 1991, 178면.

75)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10月 丁亥 및 李濡, 『鹿川疏劄抄稿』 2 「條上城守事宜劄」. 이하 李濡의 견해는 『鹿川疏劄抄稿』를 참고하였음.

76) 『肅宗實錄』 卷40, 肅宗 30年 12月 甲午.

한유자총의 대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던 인물이었다.⁷⁷⁾ 따라서 도성수비에서도 한유자총에게 군관의 칭호를 주어 이들을 포섭하고, 나아가 격려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즉 재정에 여유 있으면 試射를 통해 입격자에게 급료를 지급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李濡의 논의는 앞서 살펴본 李光迪의 논의에서 한계로 보이는 도성민의 관리방안까지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조대 均役法에서 選武軍官으로 제도화되는 軍官 名號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李光迪이나 趙泰老·李濡 등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시하는 등 도성수비론이 심화되면서 방위론을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숙종은 이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숙종의 반대는 수축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도성은 鼎定하는 곳”이기 때문이다.⁷⁸⁾ 즉 도성은 도읍하여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 대신 숙종은 종전에 중단되었던 북한산성의 축성을 강구토록 하였다.⁷⁹⁾

도성수비론에 대한 반대는 숙종뿐이 아니었다. 소론측 南九萬 역시 도성수축은 물론 도성수비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축을 주관하는 군영의 재력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南九萬은 만약 전쟁이 발생하여 적군이 도성 사방을 포위한다면 결국 한 나라를 잃게 된다는 점, 도성은 “油滑姦民之淵藪”가 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들에 의한 의외의 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도성을 사수하기에는 너무 광활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였다.⁸⁰⁾ 南九萬의

77) 특히 李濡는 숙종 37년 교생에게 군관명호를 주자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는 후일 균역법에서 選武軍官이라는 군관명호를 만들게 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鄭萬祚, 「均役法의 選武軍官」, 『韓國史研究』 18, 1977, 83~84면).

78)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10月 丁丑.

79)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12月 戊子. 도성 수축을 지지하거나 거부하기도 하였던 숙종의 이 같은 태도는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숙종이 의도하는 바는 도성수축이든 북한산성 축성이든 그것이 군비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별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시의 정치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겠다.

80) 南九萬, 『藥泉集』 卷29, 「錄答備局堂上語」.

도성민에 대한 인식은 도성수비론을 주도하였던 노론들이 적극적으로 도성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구만 이외에도 소론측의 최석항 역시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오히려 海防을 강화하자고 하였다.⁸¹⁾ 숙종을 비롯한 남구만이나 최석항 등의 반대논리는 종전부터 도성수비에 반대하면서 제기되었던 견해였다. 이런 가운데 南九萬의 논리에서 보이는 도성민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 본다면, 그 반대이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각각의 봉당세력이 추구하는 바나 또는 지지기반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며,⁸²⁾ 결국은 노론세력들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광적의 논의를 포함한 이 시기 도성수비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먼저 도성수비론이 도성민을 분속하여 도성을 지키자는 논의이면서도 도성민 가운데 일부 세력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이다. 李濡의 경우는 예외이기는 하나 李光迪의 논의에서는 “老病殘病者”를 제외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광적이 도성수비론을 건의한 지 몇 개월 뒤에 제기된 李基夏의 논의를 보면, 노약자 이외에도 동·서 관직자를 제외하고 있다.⁸³⁾ 즉 李基夏는 당시 도성의 장정 9만에서 1~2만에 해당되는 동·서 관직자나 노약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정들을 각 군문에 분속시키는 시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관직자를 제외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들이 직역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들까지도 군문에 분속시켜 군사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81)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10月 戊寅。

82) 노론과 소론의 이 같은 차이점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農書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노론측에서 만들어진 『農家集成』은 대지주나 대농경영에 주안점을 둔 농서인 반면에, 소론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稿經』은 직접 생산자를 위주로 하여 小農經營에 주안점을 둔 농서였다(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일조각, 1988).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남구만이 奸民으로 설정한 도성민이란 서울에서 대대로 상업활동을 하던 시전상인들을 지칭한 것은 아닐까 한다. 이는 결국 시전상인들이 노론측의 기반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

83)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11月 甲寅。

신분의 우열이 군문 분속에 기준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영조대 『守城綸音』에서는 숙종대 논의의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고 모든 도성민이 군문에 분속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李光迪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강화도를 포함한 보장처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비단 李光迪에게서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李基夏의 경우도 강화도를 포함해 남한산성, 대홍산성, 홍복산성 등에 대한 조치를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도성수비론과 함께 제기된 보장처에 대한 정비는 戰勢가 불리하면 도성을 버리고 보장처로 입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17세기 보장처를 강화할 때의 지배층의 의식을 아직도 불식하지 못한 논리라 하겠다. 이러한 한계 역시 영조나 정조대에 이르면 극복되고 도성만을 사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착되었다.⁸⁴⁾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숙종대 후반의 도성수비론은 이후 영조대에 都城死守論이 구체화되는 논리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5. 맷 음 말

이상에서 18세기 전반 수도방위론에 대해서 북한산성 축성론과 도성수비론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맷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산성 축성론의 경우 申旓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이는 이전시기 수도방위전략의 기조인 보장처에 대한 정비가 병자호란의 경험을 통해서 보듯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 시세에 따라 여의치 않자 제기된 논의였다. 그리하여 도성과 표리되는 북한산성을 축성하여 수도방위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 북한산성 축성론의 주장이었다. 이 논의가 비록 숙종의 의도에 부합하여 조속하게 추진되기는 하였

84) 영조대의 경우 姜性文, 「英祖代의 都城 死守論에 관한 考察」(『淸溪史學』 13, 1997)이 참고되며, 정조대의 경우는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9月 丙申條, 姜游의 上疏.

으나,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과 소론, 특히 노론세력에 의한 집요한 반대로 인해 결국 축성이 되지 못하고 도성수축론으로 선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탕평론자들의 정치적 열세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申甕이 제기한 북한산성 축성론은 숙종 37년 실행된다는 사실이나, 도성방위론의 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그 의미 또한 적지 않다.

도성수비론은 숙종 30년 북한산성 축성론에 반대의견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의 논의는 종사의 유지를 위해 도성을 수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해서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숙종 36년을 전후로 해서는 논리가 보다 심화되면서 도성수비를 위한 군량이나 재정의 확보 및 인력의 배치문제까지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전까지의 논의에 비해 발전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에는 보장처의 강화를 말하거나 신분상의 우열을 기준으로 방민 분속을 건의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논리는 18세기 중반인 영조대『守城綸音』에서 표방되고 있는 도성사수론의 단계에 이르면 극복되고 있다.

결국 18세기 전반, 주로 숙종대에 제기된 수도방위론은 임진왜란 이후 수도 외곽지역에 대한 방위전략에서 그 논의의 중심을 수도로 전환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숙종대 시원적인 모습을 보인 都城守備論은 이후 영조대『守城綸音』이 반포되면서 都城死守論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한편 연구 진행과정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수도방위론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이다. 특히 그것은 북한산성 축성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자가 처한 정치환경이나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영조 27년『守城綸音』제정 당시 일부 반대가 있기는 하나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대체로 동조하고 있어 서서히 해소되는 듯하다. 아마도 이것은 노론 중심(노론 가운데 탕평세력)으로 정국이 움직여지는 상황과도 관련된 듯하지만 이에 대해서 보다 깊은 천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47~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滿洲計劃’과 長延地區民主自衛軍

정 병 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머리말
2. 해방직후 임정의 군사계획과 ‘滿洲計劃’의 대두
3. 장연지구민주자위군의 조직과정과 구성
4. 장연지구민주자위군의 활동과 해체
5. 맷음말

1. 머리말

1946~1949년에 이르는 국공내전 시기 만주는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대결장이자 미·소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전장이었다. 국공내전이 중공과 북한 간의 긴밀한 공산주의 동맹관계를 창출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공내전이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남한 내 우익진영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만주는 조·중·소 공산주의 3각동맹과 한·중·미 반공연합이 각축전을 벌인 지역이었고, 한국전쟁 이전시기 최대의 격전지였

다. 미국과 소련,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한인반공부대와 조선의용군, 남한과 북한이 이곳에서 격돌했다.

남한 우익진영, 특히 오랜 기간 중국에서 활동했던 임정계열은 중국정세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공내전에 참전하길 희망했다. 중국에 잔류했던 임정계열이 조선의용군이 중공군을 지원한 것과 같이 한인 반공부대를 조직해 중국 국민당군의 휘하에서 반공 연합투쟁을 벌이려 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논문이 다루려는 주제는 바로 국공내전 시기 임정계열이 만주에서 조직한 한인 반공부대인 長延地區民主自衛軍(이하 장연군으로 약칭)이다. 1947년 4월 만주 심양에서 조직된 이 부대는 1천여 명의 병력을 보유했으며 1948년 11월 해체될 때까지 약 1년 반 정도 존속했다. 적은 병력과 짧은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의 존재는 해방 후 귀국한 임정의 행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방 후 임정계열이 상정한 남한-중국-미국 간의 동아시아 3국 반공군 사동맹의 형성과 반공투쟁은 김구의 ‘滿洲計劃’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장연군은 그 결실이었다. 장연군의 조직과정과 실체는 임정계열의 해방 후 국가수립 구상과 통일방향이 한반도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 구상하에 전개되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 부대의 운명은 1948년 2월 김구의 노선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의 조직과 김구의 ‘만주계획’은 한국전쟁 직전 남한 내에 형성되었던 반공통일론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을 설명하는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2. 해방직후 임정의 군사계획과 ‘滿洲計劃’의 대두

광복군이 조직된 이후로 임정이 수립한 군사계획의 핵심에는 만주가 지리적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광복군의 핵심간부들이 대부분 만

주의 구독립군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거주하는 2~3백만 가량의 한인 교포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임정 군사계획의 핵심은 중국 관내에서 간부를 양성한 후 만주로 들어가 광복군을 확대·개편하고 일본군과 싸워 국내로 진격한다는 것이었다.¹⁾

해방직후 중국 關內에서 시도되었던 광복군 擴軍시도도 이런 계획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10만으로 추정되던 일본군내 韓籍장병을 흡수해 각각 1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10개의 暫編支隊를 편성하려던 임정의 시도는 연합국의 임정·광복군 불승인 및 개인자격 입국방침에 따라 무산되었다.²⁾ 1946년 5월 16일 광복군의 해체이후 광복군의 간부들과 사병들은 대부분 귀국했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 잔류했던 임시정부 계열의 인사들은 변형된 방식으로 해방직후 임정이 계획했던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1946년 4월 소련군의 만주 철수 이후, 국민당이 만주지역으로 진출하자 잔류한 임정·광복군 간부들은 1946년 하반기 대거 만주로 진출했다. 이들은 중국 관내에서 실패했던 임정의 기반강화 및 광복군 확군을 만주에서 다시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를 김구는 ‘滿洲計劃(Manchurian Plan)’이라 지칭했다.

구체적으로 만주계획이란 1947년 말 1948년 초에 여러 차례 김구가 강조한 만주에서의 군사계획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김구를 비롯한 이청천, 이범석 등 중국 국민당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북한을 무력공격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전에서 장개석군대와 동맹해 韓中の 공산주의 세력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 이러한 구상은 복합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다. 첫째, 남한 내에선 이청천·이범석 등 광복군 지휘관들과 全盛鎬·吳光鮮 등 구 조선혁명군 출신들이 김석원 등 일본군 장교출신

1) 한국임시정부의 군사진행계획서》(임시정부－중국군사위원회, 1945. 3) 崔鍾健 편역, 1976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知人社 pp. 133~136.

2) 즐고, 1998 〈1945~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내 조직과 활동〉《史學研究》55집.

3) Bruce Cumings, “Introduction: The Course of Korea-American Relations, 1943~1953,”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p. 27~28.

들과 함께 반소·반공을 연계로 한 건군계획을 추진했다. 둘째, 만주에선 미국의 후원하에 한인부대를 창설하며, 이 부대와 중국국민당군과 함께 국공내전에서 중공군과 만주한인공산주의자들을 격퇴한다는 계획하에 한인군대 창설을 시도했다.

이러한 구상은 종국적으로 동북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격멸한다는 것이었다. 즉 남한·북한·만주가 포함된 이 계획은 한국·중국·미국의 동아시아 3각 반공군사동맹체제의 수립이었다.

대북정책과 대중국정책, 구체적으로는 대만주정책이 결합된 이러한 거대한 국제적 계획은 구상대로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김구의 만주계획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47년 10월이다. 한국문제의 유엔이관 후 김구는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만족할 만하게 처리된다고 해도 북한과 남한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을 방지할 최선의 방법은 한국인들이 중국 중앙군에 참가해서 만주의 공산군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며, 이들을 만주에서 구축해 북만주를 점령함으로써 한국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구는 장개석과 회담하기 위해 9월초 며느리인 安美生을 메시지와 함께 중국에 보냈으며, 아울러 이청천과 전 일본군대령 金錫源이 비밀리 협의했다는 것이다. 미군 정보당국은 안미생이 宋美齡을 통해 蔣介石을 만났으며, 만약 장개석과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김석원이 여타 일본군 장교들과 함께 중국 중앙군에 참가하는 한편, 수십만 조선인부대와 현재는 중국 내에서 전범이지만 공산군에 대항해 전투하길 희망하는 수십만 일본인 부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⁴⁾

김구는 중공군에 대항해 만주에서 한국인 우익 제5열을 조직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동경에 체류중인 중국의 쟁 장군(대일본연합위원회 중국

4)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12(1947. 11. 6). 安美生은 1947년 9월 초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김구의 만주계획 발언시점에 그녀는 중국에 있었다[鮮于鎮 인터뷰(1996. 7. 2),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宋友惠, 1992 〈獨立運動家 安定根의 生涯〉水村朴永錫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p. 777].

측 성원)과 접촉하려 했다. 김구는 자신이 쟁 장군을 알고 있으며, 만주와 접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국민당과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구는 주한미군에 일본방문 허가를 신청했지만 미태평양 육군 총사령부가 이를 거부했다.

김구가 공개적으로 이런 구상을 표명한 것과 동일한 시기인 1947년 9월 18일 이청천은 하지에게 보내는 극비비망록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 주도하에 극동군사동맹이 결성되어야 한다. 긴급사태 발생시 (남)조선군대는 전선에서 저지임무를 주도할 것이며, 중국(국민당)군대와 협력하여 공산국 군대를 격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중략) 미군 최고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우리는 극동연합군(중국국민당 및 일본)과 긴밀한 협동하에 두만강과 압록강 전선의 적을 격퇴시킬 것이며(중략) 계속 북진할 것이다.(중략) (북조선)공산군이 (38도)선 넘어 기습하기 전에, (남)조선군대는 38 이북으로 진격해 전역에서 공산군을 격퇴하며 朝滿 국경으로 전진할 것이다.⁵⁾

대동청년단을 만든 이청천은 대동청년단을 '건군의 모체'로 삼는다며 이러한 계획을 미군정에 제출한 것인데, 이청천 역시 만주에서 광복군을 재조직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청천은 "현재 만주에 잔류하고 있는 광복군 장교 3백 명과 하사관 및 사병 5천여 명은 서로 긴밀한 연계하에 반공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하며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 자유롭다. 북한에서 피신해 온 수많은 청년들이 있으며 이들은 광복군 재조직을 위해 소집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본국과의 협조하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공산주의 영향력 소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⁶⁾

김구와 이청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강조한 만주 한인반공부대는 다름 아닌 1947년 4월 말 潘陽에서 조직된 長延地區民主自衛軍을 지칭한 것이다. 이 부대는 1948년 11월 潘陽이 중공군에게 함락되면서 해산되었

5)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05(1947. 9. 15), Incl.

6) ibid.

다. 1년 정도의 짧은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의 창설과 운영에 대한 김구의 관심은 남달랐다.

김구는 1948년 2월 북한에 남북정치지도자들 간의 협상을 제안하는 소위 ‘2월서한’을 보냈지만 동일한 시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나의 열망은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여타 지원을 얻어 만주로 가서 나의 이전 추종자들과 동참하는 것이다. 중국이 만주에서 공산주의자를 구축하는 작업을 도와 주는 나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다.”⁷⁾

김구는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만주에서 군대육성과 국민당과의 연합에 의한 공산군 격멸이라는 만주계획을 되뇌었다. 중국국민당과 연계해 공산주의자들을 만주에서 무력으로 물리친 후 만주의 근거지를 통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격퇴한다는 김구의 구상은 당시 중국과 남한내 임정계 인사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본질적으로 임정계열의 ‘만주계획’은 해방직후에 돌출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광복군이 창설된 이래 만주에서의 군대육성 및 국내진공이라는 군사계획의 핵심은 불변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변화된 조건 속에서 이 ‘만주계획’의 구성요소들은 변화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군 대신 중공군·조선의용군이 타도대상으로 설정된 부분이었다. 이러한 노선은 임정계열의 강력한 반북한, 반공, 반소노선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둘째, 해방직후에 임정계열의 군사계획이 중국관내지역에서 일본군내 한적사병의 흡수를 통한 광복군의 확대였다면, 만주계획은 만주지역의 韓僑들 속에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셋째로, 이 계획은 당시 국공내전 등 중국정세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다. 광복군이 해체되는 1946년 5월 무렵이 되었을 때 중국 관내의 한교들은 대부분 귀국한 상태였고,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지역에 중국국민당 군대가 진주하게 되면서 2~3백만에 달하는 만주지역 한교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총체적으로 당시 임정계열이 구상하

7)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 10, 1948, 895.00/2-1048, FRUS 1948 vol. VI, pp. 1101~1102.

고 있던 한반도 통일·독립의 방향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정핵심들과 중국에 잔류해 있던 임정계열 인사들은 이러한 ‘만주계획’ 등의 군사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⁸⁾ 문제는 이러한 만주계획이 임정의 국무회의나 의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김구를 비롯한 임정의 핵심인사들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주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만주계획이 구체적으로 본격화되던 1947년 당시 국내에서는 만주에서 중공군 격퇴를 위한 군대창설 문제와 남한군대의 창설문제가 우익인사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이청천은 국군의 모체조직이라며 대동청년단을 조직했고, 일본 육사 후배인 金錫源이 조직한 육·해·공군출신동지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⁹⁾ 이들 모두는 1947년 하반기에 만주에서의 군사계획을 강조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임정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우익 테러조직인 白衣社 역시 만주에서의 군대창설 문제를 제안·추진한 바 있다. 백의사는 1947년 8월 웨드마이어 장군에게 만주와 북조선의 공산군과 싸울 목적으로 白衣軍이라는 연대급의 특수부대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미 1946년 10월 27일 17명으로 구성된 北風決死團을 만주의 安東에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국민당과 연대해 전투·정탐활동·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백의사령부를 조직하기 위해 미군이 16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백의사의 1947년 8월의 계획서는 매우 구체

8) 김구는 귀국한 후에도 임시정부를 통한 군사활동 내지 군대창설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趙擊韓은 하지가 5만 명의 警備軍 조직을 맡길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김구가 미군정이 조직한 민주의원(1946. 2)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孫世一, 1970 《李承晚과 金九》 ·潮閣 pp. 223~224).

9) 李炯錫, 〈창군전후〉 1-12 《中央日報》 1971. 2. 15~2. 28; 崔榮喜, 1970 〈解放直後의 私設軍事團體들〉 《世代》 10월호; 김석원, 1977 《老兵의 憎》 有法社.

10) “Some Information on Korea and Manchuria,” to Lt. Gen. Albert C. Wedemeyer, by Baik I Sha, August, 1949. RG 59, Records of the Wedemeyer Mission, box. 10. National Archives. 백의사는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의 지원으로 1946년 1월부터 9월까지, 1947년 6월부터 1947년 말까지 매달 20명의 첨보원을 북한으로 파견하기도 했으며, 중공군 휘하인 吉

적이며, 놀랄 만큼 김구의 ‘만주계획’과 유사했다.¹⁰⁾ 또한 백의사의 계획은 입안·계획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만주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도 된 것이었다.¹¹⁾

분명 1947년 하반기에 남한 우익진영내 상당수가 ①만주에서의 공산군 격퇴를 위한 군대창설·파견, ②국민당군대와의 연합작전, ③만주 석권 후 한반도 내로의 진격, ④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라는 호전적이며 공세적인 ‘만주계획’에 동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장연지구민주자위군의 조직과정과 구성

김구가 만주계획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하반기부터였지만, 만주 현지에서 활동하던 임정계열 인사들은 이미 1946년 하반기부터 ‘만주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추진했다.¹²⁾ 또한 중국에 잔류한 임정계열이 만주에서의 군대창설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초반부터였다.

현재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만주한인부대 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은 1946년 초반 임시정부 東北代表部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在東北韓國光復軍目的’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방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동북에서 한국민족의 애국청년들을 망라해 건국독립의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교육한다.

東軍區의 제2연대, 6연대, 13연대, 17연대, 보안연대, 포병연대 등에 33명의 첨자를 침투시켰으며 그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 11) 광복군의 국내파견원으로 해방직후 임시정부 특파사무국을 결성했던 白昌燮은 1948년 2월白衣社 司令 廉應澤의 권유로白衣軍을 조직하기 위해 심양에 들어갔다. 그러나 심양의 정세가 엄혹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白昌燮 인터뷰(1996. 8. 29) 부평천주교회]
- 12) 金銀錫(광복군·장연군·황포22기 출신) 인터뷰(1996. 8. 12) 종로 파고다방; 李時燦(한독당 동북특별당부 조직부장 겸 비서) 인터뷰(1996. 7. 16) 청담동 자택.

- 잠정기간 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거해 동북의 치안에 협력한다.
- 중앙군과 협력하여 군사행동을 일치시킨다.¹³⁾

이 시점에서 동북지방은 소련군의 점령하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의 철수를 대비해 현지에서 조직된 자위대·치안대·보안대 등의 과도적 민간조직을 한국광복군이라는 임정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흡수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1946년 1월 30일 임시정부 동북대표부 주석 崔泰山의 견의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재 각지에는 3만 이상의 한교 의용군 및 경비대가 있다.(중략) 그러므로 짐짓 建軍을 잠시 허용하여 잠시 광복군으로 편성하거나 혹 한국의 국군을 건설한다는 깃발 아래에 그들 단체를 수용하되 중앙군의 지시에 의하여 협력하고 치안에 참여케 한다.¹⁴⁾

이러한 建軍 구상은 1946년의 소위 '5·23폭동'을 거치면서 보다 현실적인 자위대 창설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만주를 점령한 소련군은 중공군과 조선의용군 세력을 부식시키면서 1946년 4월 14일 濱陽에서 완전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국민당군과 중공군에 의해 심양·장춘·길림 등 각 도시들이 교대로 점령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공군은 중국국민당과 임정측 관련조직들을 탄압했고, 5월 23일 중공군·조선의용군이 장춘을 철수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중국인들이 한인들을 습격한 소위 '5·23폭동'이 일어났다. 이 폭동으로 한인들이 4백여 명 가까이 희생되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東北救濟總會가 조직되었다. 이후 1946년 8월 20일 국민당 점령지구 21개 현 한국교민회 대표들이 모여 東北韓國僑民總會를 조직했다. 이들은 駐華代表團長 朴贊翊의 만주 순회를 계기로 1946년 10월 21·22일 양일간 심양 주화대표단 東北辦事處에서 '東北收復地區內 韓

13) '在東北韓國光復軍目的' 國家報勳處, 1996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XIII) 臺灣篇①》 pp. 288~289.

14) 崔泰山 〈동북지구한교문제〉(1947. 1. 30)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7, 임정편 XIII)》 pp. 65~69.

國僑民代表大會'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인들의 鄉村自衛隊 조직이 강력하게 논의되었다. '5·23폭동' 과정에서 한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폭도들에게 학살·약탈당한 경험을 반성한 결과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위대를 조직해 가급적 중국 현지자위대에 편입시켜 적절한 훈련을 받으며, 조직문제와 실현방법은 주화대표단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¹⁵⁾

이 회의에는 광복군 제3지대장이었던 金學奎와 광복군 구대장출신인 朴英俊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한인자위대 설치안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즉 이들은 한인자위대를 건설하되, 이 자위대가 1946년 5월 해산된 광복군을 계승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새로운 건군방략은 1946년 10월 말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먼저 동북대표부를 계승한 주화대표단 동북판사처가 새로운 군대창설 방안을 모색한 이유는 첫째, 광복군 자체가 이미 해체되어 법적 존재근거가 없어졌다는 점, 둘째, 만주에서 국공내전이 본격화되면서 소련 점령시기에 조직된 경비대·보안대의 상당수가 조선의용군과 8로군의 지지세력이 되거나 土匪가 되었기에 이들을 흡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1947년 1월 28일 주화대표단의 閔石麟은 중국국민당 정부의 吳鐵城에게 公函을 보내 韓中の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정치간부 인재 1천 명을 훈련시키고 갑종병 1사단을 양성해 건군의 기간부대로 삼아 장래에 대비한다.¹⁶⁾

임정측에서 이런 제안을 한 이 시기에 만주에서 국공내전을 벌이고 있던 중국국민당군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인부대의 창설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첫째로, 국민당 東北保安司令長官 杜聿明은 조선의용군과 대결하기 위해선 조선인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당시 국민

15) 〈東北收復地區內 韓國僑民代表大會經過〉(백범사업회 소장자료)

16) 〈閔石麟이 吳鐵城에게 보낸 公函〉(1947. 1. 28), 秋憲樹《資料韓國獨立運動 1》연세대학교 출판부, pp. 514~515.

당군은 조선의용군이 주축이 된 東北民主連軍의 공세로 인해 수세적인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¹⁷⁾ 둘째, 이 시기 국민당군은 포로로 잡힌 조선의용군에 대한 矯導와 轉向, 석방된 포로 처리문제, 장기간 억류문제 등으로 고민했고, 이를 다루기 위한 한인부대의 창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셋째로, 당시 동북에 주둔하던 국민당군은 남방출신들로 쌀을 주식으로 삼았는데, 동북지방에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한국농민들 뿐이었기 때문에 군량미 확보를 위해서도 한인자위부대의 창설이 요구되었다.¹⁸⁾

첨령지구의 한인자위부대를 조직하고 이들과 연대해 공산당을 토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한 국민당군은 東北行營을 통해 1946년 12월 말 공식 외교채널인 주화대표단 동북총관사처에 한인부대 창설문제를 문의해 왔다. 당시 주화대표단 동북총관사처의 처장은 李光이었고, 朴英俊은 동북관사처 외무주임이었다. 교섭을 받은 동북관사처는 김학규와 상의했고, 중국어로 계획서를 작성해 남경의 주화대표단에 보고했다. 박찬익은 이 계획서를 국민당과 중국군사위원회에 발송했다.¹⁹⁾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교민업무를 다룬 주화대표단은 군대창설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독당 동북특별당부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당시 동북에 존재하던 임시정부의 당·정·군 책임자들은 이 한인부대 창설을 광복군의 후신으로 생각하며 공조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장연민주자위군에 참가했던 金銀錫·金英勳·李時奉·趙東熙 등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17) 림창배, 〈국민당 계통에서의 조선인들의 활동〉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 1992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5: 승리》 민족출판사 p. 574.

18) 金銀錫·金英勳·李時奉·趙東熙 起草 〈黃浦22期韓國人學生〉(1988. 5) 미간행 원고(이하 〈황포22기〉로 약칭) pp. 19~20; 박영준 인터뷰(1996. 7. 6) 상도동 자택.

19) 〈朴英俊志士〉, 李炫熙 對談 《韓國獨立運動證言資料集》 198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 154; 南派朴贊翊傳記刊行委員會, 1989 《南派朴贊翊傳記》 乙酉文化社 pp. 300~307.

20) 〈황포22기〉 pp. 20~21; 림창배, 위의 글, p. 574.

그렇지 않아도 韓獨黨 계통의 당사자들은 광복군이 해체됨에 따라 허탈감 마저 없지 않은 데에 또 만주접경인 신의주학생사건의 참가자 또는 以北에서 반공애국청년들이 속속 越境해 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수용문제도 있거나와 재만 한국인청년들을 규합, 한국인부대를 조직하여 공산군과 대치할겸 한국인들을 보호한다는 의지에서 부대창설과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중국정부에 요청을 할 구상을 하던 차에 마침 중국정부로부터 먼저 이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²¹⁾

한독당 滿洲特別黨部의 위원장으로 장연군 창설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학규 역시 1946년 9월 무렵 만주로 이동할 때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만일 만주에서 중국 중앙정권이 튼튼히 서 있고 그에 의하여 우리 한인의 민주세력이 다소라도 서 있다고 하면 북한 적색 괴뢰집단은 남한이 미국에 의한 민주세력과 만주의 韓中이 합세한 민주세력의 挾攻撃制하에서 끔짝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만주로 가서 중국과 협작하여 우리 민주세력을 다소라도 마련해 놓고 남한과 호응하여 원동의 암이요, 한국의 화근인 북한의 공산세력을 구축해 보려고 결심한 것이다.²²⁾

또한 장연군의 부총대장을 지낸 박영준 역시 ‘동북에서 공산당을 완전히 빼려부수면 이 군대(장연민주자위군)는 통일의 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²³⁾

결국 만주에서 한인부대를 창설하는 작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첫째, 임정측 인사들은 해산된 광복군의 후신으로 군대를 양성해 만주석권과 이북진격을 내심 원하고 있었고, 둘째, 중국국민당은 조선의용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익 한국인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1) 〈황포22기〉 p. 20.

22) 金學奎, 1988 〈白波自敍傳〉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집, p. 606.

23) 〈박영준지사〉 pp. 154~156.

24) 許宇成은 당시 東北신문 사장이었다. 그는 1948년 12월 18일 영국배 湖北

이에 따라 한독당 만주특별당부 위원장이던 金學奎는 許宇成,²⁴⁾ 金仁基, 李時燦, 尹一波 등과 한인부대 설립계획을 수립해 1947년 2월경 동북행 영과 중앙정부에 한국인부대 창설계획의 인준을 요청하는 한편 남경의 주화대표단과 국내의 김구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²⁵⁾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한인부대 창설문제와 관련해 김구와 이승만이 모두 보고를 받았으며, 한인부대 창설을 준비하고 있던 한독당 만주 특별당부측은 김구·이승만과의 협의·보고를 매우 중시했다는 사실이다. 먼저 김학규는 1947년 3월경 심양에서 이승만이 상해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양에 있는 미국 연락소의 연락기를 타고 북경을 거쳐 상해로 갔다. 상해의 카세이 호텔에서 이승만을 만난 김학규는 만주정세를 보고하고 향후 남한과 만주 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로 약속했다.²⁶⁾ 김학규는 분명 만주에서의 한인부대 창설문제를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지지를 얻을 생각이었음이 분명했다. 주화대표단 동북총판사처장 이광은 주화대표단장 박찬익에게 보내는 1947년 4월 2일자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白波(金學奎) 동지는 2월 18일 安東에 갔다가 3월 31일 濱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처(總辦事處)에서 도와 줌으로써 제가 잠시라도 휴식하기를 바랐는데 그가 곧 南京으로 날아가 大計를 상의하고 결정하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중략) 오직 雲公(雲南 李承晚)이 南京에 오신 다음에 大計가 확정되므로 우리 모두 생기가 있을 것입니다.²⁷⁾

號로 귀국했다. 귀국 후 허우성은 국민당 정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압도적 화력과 근대적 무기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에게 패배했다고 설명 했다. (《民國日報》1948. 12. 23)

25) 〈황포22기〉 p. 21. 한인부대의 창립계획은 한독당 동북특별당부에서 준비 했음이 분명하지만, 계획서는 중국국민당 정부와 공식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주화대표단을 통해 제출되었다.

26) 김학규, 위의 글, pp. 607~608. 이승만은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 중국을 방문했다. 이승만은 1947년 4월 10일에는 상해를, 4월 14일에는 남경을 방문했다.

27) 〈李光이 朴贊翊에게〉(1947. 4. 2)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99~100.

김학규가 이광의 만류를 뿐리치고서 ‘大計를 상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이승만을 만나러 남경으로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김학규는 만주의 정세와 한인부대 창설문제에 관한 지지와 성원을 요구했음이 분명하다.

한편 김구 역시 일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학규와 박찬익 양자로부터 한인부대 창설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이 직후인 1947년 2월 20일 김구는 해군대위였던 徐相旭과 韓某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답신을 휴대시켜 파견했다. 이들은 인천에서 大連, 安東을 경유해 潘陽에 있던 김학규에게 편지를 전했다.

潘陽 和平區 西安街 4號

白波志弟偉鑒

전자와 鄭辰洪과 금일의 金正煥 두 사람에게 붙여 보내온 서한(南坡의 서한까지)은 빠짐없이 모두 읽었으나 반공반탁운동에 열중하느라고 또한 긴 편지를 휴대시켜 보내는 것이 곤란했기에 미처 하지 못하였소. 南坡 형의 환우가 쾌차하여 고향에 돌아갔소이까? 石麟이 편지에 크게 기대하여 말하기를 ‘滿洲韓僑自衛軍을 中央軍의 양해하에 조직하여 中共 韓共을 근본적으로 滅絕하는 것은 中韓의 영구한 행복이 된다’고 하였소. 이 편지를 휴대하고 가는 동지를 신임하고 일체를 상의·토론하시오. 1947년 2월 20일 백범 쓰다.²⁸⁾

또한 김구는 한인부대가 창설되어 훈련중이던 1947년 6월 하순에 한독당 청년부에서 일하던 申斗鎬와 全盛鎬를 특사로 파견했다. 이들은 大連, 營口를 거쳐 潘陽에 들어갔다. 김구는 이들을 한인부대의 간부로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두호는 음식을 잘못 먹고 사망했고 전성호는 자위군의 정치교육 교관으로 활약했다.²⁹⁾ 전성호는 1932년 봄 용정에서 민생단

28) 〈金九가 金學奎에게 보낸 편지〉(1947. 2. 20) 백범사업회 소장자료.

29) 〈황포22기〉 p. 21; 다른 기록에 따르면 전성호는 金九의 특사가 아니라 ‘曹成煥과 申翼熙의 의뢰를 받아 이들의 개인적 특사’로 만주로 파견되었다. 그는 국민당군의 孔憲榮 장군과 협력하며 민주자위군의 교관을 했다(咸泰岩, 1955 〈全盛鎬評傳〉《자유민에게 전해 다오》국방부 pp. 375~376). 박

을 조직한 인물로 매우 반공적인 인물이었다. 연변측 기록에 따르면 전성호는 9·18사변 이후 '간도자치촉진위원회'를 조직해 자치를 주장하는 한편 일본영사관에 출입했으며, 반공 깃발을 내세웠다. 그는 조선총독부 갑인구락부 성원으로 간도에 와 용정주재 일본영사관 기관지인 《간도일보》사장으로 있던 친일파 朴錫胤, 광명회 정사빈과 연합해 반공친일조직인 민생단을 조직했다.³⁰⁾ 또한 전성호는 모든 군사경력자를 건군의 기초로 삼자는 '건군에 관한 이론적 고찰'(1946) 등을 집필하기도 한 대표적 반공 군인이었다.

또한 김구는 1946년 6~7월경 呂正淳(李正善)을 중국에 파견했고, 1947년 8월경에는 羅金湧을 파견했다. 이들은 많은 물품을싣고 중국을 향해 떠났는데, 이들 물품은 만주의 민주자위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³¹⁾ 이외에도 김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화대표단 동북총

영준은 전성호가 자위군의 총대장 후보로 파견되었지만 만주정세에 어둡고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주에 인적 연관관계가 없어 교관을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金銀錫은 전성호가 자위군의 대대장으로 활동했다고 증언했다. 전성호는 귀국 후 국군 연대장으로 활동 중 한국전쟁으로 사망했다.

30) 현봉순, 1984 〈'민생단' 유령을 격살〉《조선족백년사화》제2집 豉寧인민출판사, pp. 417~432. 남한에서 출간된 〈전성호평전〉에도 그가 연변자치촉진회 부회장 및 《간도일보》편집국장(1935), 간도통신사 주간(1939)을 지내며 일본현병대 및 관동군 장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咸泰岩, 앞의 글, pp. 357~367)

31) 廉仁鎬, 〈民族의 큰 스승 白凡 金九(43): 민주 '자위군' 창설 지원〉《문화일보》1996. 1. 16; 〈김구 선생이 한국에서 발송한 예물의 해관압류 해제의뢰〉(閔石麟-吳鐵城)(1947. 7. 9) 秋憲樹 편, 위의 책, pp. 518~519. 나금용은 김구의 명에 따라 北星 77호를 구입해 화물을 실고 인천에서 상해로 가다 태풍을 만나 중국 青島港에 예인되었다. 羅金湧은 김구가 주화대표단 및 각계요인에게 보내는 공함을 가지고 있으며, 화물 중에는 남경정부 요인에게 보낼 예물이 많이 들어 있었다.[(青島에서 몰수된 韓籍선박 석방의뢰)(僕純-吳鐵城)(1947. 8. 29) 秋憲樹 편, 앞의 책, p. 519]. 呂正淳의 본명은 李正善으로 광복군에서 활동하던 인물이며 羅金湧은 1946년 현재 42세로 주화대표단 직원이자 東北大韓民團長을 지낸 인물이다.

판사처나 한독당 동북특별당부측에 사람을 파견하거나 서신을 보냈음이 확인된다.³²⁾ 김구는 한인부대의 창설이 제기될 때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만주의 임정관계자들과 연락·협의했고, 만주의 한독당 관계자들 역시 김구가 한인부대의 최고 통수권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과 만주의 보고·연락관계는 인편과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구의 지시를 받을 수는 없었다.³³⁾

이런 과정 속에서 1947년 2월 22일 한국인부대 창설문제는 장개석의 재가를 받았다.³⁴⁾ 이에 따라 한인부대의 모든 기간요원을 한국인으로 한다며 정식승인을 요청한 결과 4월에 國防部와 長官部의 비준을 받았다.³⁵⁾

그러나 동북행영의 견해는 장비, 급식, 급여 등 제반 군수용품을 중국정부에서 지원하지만 遼寧·黑龍江·吉林 3성으로 구성된 동북지방은 광활하기에 임정의 파견부서, 즉 주화대표단 동북판사처나 한독당 동북특별당부가 이 부대를 관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측이 군수보급이나 경리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인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에서 동북행영측은 한인부대를 중국중앙군에 예속시키고 중국장교가 최고지휘관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편성단계에서는 중국인이 관계하지만 완전히 편성 후 실전에 배치될 때는 한국인에게 일임한다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金銀錫의

32) 김구는 1947년 3월 27일 金秋峯을 압록강 이북으로 파견한다는憑證을 발행했고, 1948년 1월 23일에는 濱陽의 이시찬에게 편지를 보내 만주에서 한인부대 건설을 위해 보내려던 대표단의 파견을 중단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金秋峯에게 주는 金九의憑證〉(1947. 3. 27) 백범사업회 소장;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49(1948. 2. 3)]

33) 박영준 인터뷰(1996. 7. 6).

34) 〈황포22기〉 p. 22; 〈박영준지사〉 위의 책, p. 154.

35) 〈박영준지사〉 p. 154. 駐華代表團 東北總辦事處의 崔赫甫는 주화대표단장 朴贊翊에게 보낸 1947년 4월 25일자 보고를 통해 중국정부 국방부의 허가와 장관부의 비준을 얻어 5월 초부터 장연군이 실현되게 되었다고 했다. (〈백범사업회 소장자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인 自衛軍을 창설하기 위해 모병활동이 전개되었지만, 별반 호응이 없었다. 당시 安東에는 신의주 학생사건으로 피신해 온 수백 명의 반공청년·학생들이 집결해 있었는데, 이들은 호구지책조차 막연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주화대표단 동북관사처는 이들을 먹여 살릴 경제적 기반이 없던 처지였었고, 이를 반공청년들 역시 반공이라는 가치에 공명 해서 이들은 한국인 自衛軍 창설에 가담했다. 또한 주화대표단 동북총관 사처 僑務局 外務組 主任이던 朴英俊과 동북총관사처 宣撫局長이던 최혁 주가 장연군 부총대장과 제1총대 제2대 대대장직을 맡기 위해 주화대표 단 공직을 사임하는 등 임정의 중견간부들이 장연군에 참가했다.³⁶⁾ 이 결과 1947년 4월 27일 濬陽 大利街 소재 한국인국민학교에서 한인부대인 長延地區民主自衛軍(이후 長延軍으로 약칭)이 발족되었다.³⁷⁾

발족 당시 長延軍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 (가) 在東北 한국교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 (나) 在東北 한국교민사회에 대한 선무활동
- (다) 朝鮮義勇軍 포로의 수용 및 矯導
- (라) 유사시 납한 국방경비대와 제휴하여 협공작전으로 以北 공산군을 섬 멸하고 통일정부수립에 기여³⁸⁾

장연군의 명칭은 다양하게 쓰였는데, 고유명칭은 長延地區獨立步兵第1總隊이며, 주로 문서에 쓰여졌다. 또한 간판상의 운영명칭은 長延區民

36)〈韓國駐華代表團東北總辦事處長 李光-駐華代表團長 公函〉①〈本處宣撫局長 崔赫宙 辭任에 關한 件〉(東總秘字 第603號, 1947. 5. 25) ②〈本處僑務局外務組主任 朴英俊 解任에 關한 件〉(東總秘字 第604號, 1947. 5. 25)〈백범사업회 소장자료〉.

37)〈황포22기〉p. 22. 한편 박영준은 長延軍이 1947년 3월 말에 조직되었고, 4월 초에 각 5백 명씩 3개 대대가 편성되었다고 증언했다(남파박찬익전기간 행위원회, 위의 책, pp. 305~307). 그러나 박영준과 최혁주가 주화대표단 동북총관사처에 사임원을 제출한 것이 1947년 5월 15·16일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장연군의 실제 창립일은 1947년 5월 중순이었을 것이다.

38)〈황포22기〉pp. 22~23; 림창배, 위의 글, pp. 574~575; 〈박영준지사〉p. 158. 목표 (라)항은 〈황포22기〉에만 나타난다.

主自衛軍第1總隊였으며, 통상 自衛軍·民主自衛軍·長延軍 등으로 불려졌다.³⁹⁾ 장연군의 기본임무와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부대는 장백에서 연변에 이르는 지역내 한인들을 반공 이념하에 결집시킨 자위대이자 국민당군의 조력부대였다.

장연군은 기본적으로 유격대 편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부대규모를 정확히 결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앞에서 인용한 崔赫宙가 朴贊翊에게 보낸 1947년 4월 25일자 편지에 따르면 대대장은 중국인 楊馥堂, 朴英俊이 大隊附, 金亮, 金世洛, 李伯健, 李道根, 崔赫宙는 각 중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⁴⁰⁾ 이를 통해 장연군이 최초단계에서는 1개 대대 규모로 예정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북총관사처 宣撫局長이던 최혁주가 1947년 5월 16일 제출한 사임원에 의하면 그는 장연구민주자위군 제1총대 제2대 대대장직에 임명되었고,⁴¹⁾ 이는 장연군의 규모가 수개 대대를 보유한 최소 연대급으로 상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발족 당시 장연군의 병력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5~7백명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며, 초기에는 5백 명을 단위로 한 3개 대대가 편성되었으며, 1947년 가을 5개 대대로 확장되었다.⁴²⁾ 이 중 3백5십 명에서 5백 명 가량이 신의주사건 관련자들이었으며, 나머지는 동북 각지에서 모집된 인원들이었다. 장연군은 명칭이 의미하듯이 長白-延邊지구의 한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한 부대였으며, 임정의 핵심들을 장연군을 초기에는 사단급 편성으로, 나아가서는 군단급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39) 위와 같음. 박영준은 부대의 명칭을 長延地區步兵獨立總隊로 기억했다. 여기서 總隊는 유격대 편성을 의미한다.

40) 〈崔赫宙가 朴贊翊에게 보낸 1947년 4월 25일자 편지〉(백범사업회 소장자료).

41) 〈韓國駐華代表團東北總辦事處長 李光-駐華代表團長 公函〉(백범사업회 소장자료).

42) 박영준은 1947년 4월 초 3개 대대가 편성되었을 때 5백 명 수준이었다고 증언했으며(〈박영준지사〉 p. 155; 남파박찬익전기간행위원회, 위의 책, p. 305), 김은석 등은 초기병력이 9백 명이었다고 기록했다(〈황포22기〉 p. 24). 한편 림창배는 초창기 병사가 3,670명(제1대대 950, 제2대대 760, 제3대대 730, 제4대대 700, 제5대대 700명)이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이시찬의 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림창배, 위의 글, p. 575)

장연군의 조직체계와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總 隊 本 部 : 總 隊 長 楊馥堂 대령(중국인)
 - 副 總 隊 長 朴英俊 중령
 - 인 원 약 30명
- 제 1 대 대 : 대 대 장 尹一波 중령
 - 特 務 長 趙尚根 준위
 - 제 1 중 대 장 朴利根 소령
 - 제 2 중 대 장 崔應歲 대위
 - 제 3 중 대 장 孫 宇 대위(孫完翼)
 - 인 원 약 270명
- 제 2 대 대 : 대 대 장 崔赫宙 중령
 - 특 무 장 李裕文 준위
 - 제 1 중 대 장 張應祚 대위
 - 제 2 중 대 장 王荷天 대위(裴氏)
 - 제 3 중 대 장 趙海金 대위(趙東熙)
 - 인 원 약 210명
- 제 3 대 대 : 대 대 장 金 明 중령
 - 특 무 장 未詳
 - 중 대 장 未詳
 - 인 원 약 90명
- 제 4 대 대 : 대 대 장 초대 姓名未詳 중령(중국인)
 - 대 대 장 2대 文學彬 중령
 - 특 무 장 未詳
 - 중 대 장 未詳
 - 인 원 약 240명
- 제 5 대 대 : 대 대 장 金世洛 중령
 - 특 무 장 未詳
 - 중 대 장 未詳
 - 인 원 약 60명⁴³⁾

43) 〈황포22기〉 pp. 23~24. 팀창비는 인사참모 趙海金 소령, 정치참모 朴利根 소령, 작전참모 孫宇 소령, 군수참모 張應祚 소령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총대장 楊馥堂을 제외한 간부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⁴⁴⁾ 부총대장인 박영준은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 광복군 구대장을 지낸 바 있었고, 대대장은 대부분 만주의 구독립군 출신이었다.⁴⁵⁾ 중대장은 신의주사건 관련자들로 군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맡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후에 황포 22기로 입교한 趙東熙로, 그는 일본 학병출신으로 신의주사건 관련자였다. 소대장들은 주로 만주출신 청년들이 담당했다. 특무장은 한국군부대의 인사계와 마찬가지로 보급·행정을 담당하는 자리였다.

이들의 장비는 일본군이 남기고 간 99식 소총이 대부분이었고, 기관총과 박격포가 있었지만 중무장은 할 수 없었다. 또한 국민당군은 이들에게 더 이상의 중무장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중무장을 한 채 조선의용군측으로 도망치거나 사고의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⁴⁶⁾

4. 장연지구민주자위군의 활동과 해체

장연군이 조직된 이후 별인 활동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부대의 확대개편을 위해 계속적으로 한인사병을 모집하는 초모공작이었고, 두 번째는 장연군의 확대·강화에 대비한 군간부 양성활동, 세 번째는 군사훈련 실시였다. 이 세 가지는 장연군의 장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가. 한인사병 초모공작

장연군은 창설직후부터 집중적인 한인사병 초모공작을 벌였다. 그 결과

44) 박영준은 경리참모가 중국인이었으며, 대대장 중 중국인이 몇 명 있었는데 한국어를 잘 하는 것으로 보아 華僑출신인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박영준 치사〉 p. 155)

45) 이서찬과 김은석의 증언에 따르면 윤일파, 최혁주, 문학빈, 김세락 등은 모두 조선혁명군 출신이었다. 윤일파는 조선혁명당 출신으로 해방 후 한독당 동북특별당부에서 활동했으며, 최혁주는 목사 출신으로 권총을 차고 다녀 ‘권총 찬 목사’로 불렸고, 문학빈은 독립운동시절 동상으로 발가락이 잘려 나간 인물로 유명했다.

46) 박영준 인터뷰(1996. 7. 6.).

창설 초기병력은 1947년 말에 이르러 약 1천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⁴⁷⁾ 초모공작은 주화대표단 동북총판사처와 한독당 동북특별당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장연군에 입대하는 한인청년들은 사상적으로 볼 때 반공·반북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국공내전이 전개되고 있던 만주지역에서는 한인청년들의 생업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반공적인 한인청년들은 장연군을 일종의 직업으로 여겨 입대하기도 했다.

문제는 장연군이 내부적인 자생력과 재생산구조를 갖지 못한 채 부대 운영자금·물자·무기 등 전반적인 보급을 중국국민당군에 의존해야 했다는 점이다. 장연군의 결성과정과 부대편제, 주요간부 선발과정은 임정의 파견기구인 주화대표단 동북총판사처와 한독당 동북특별당부가 담당했지만, 장연군의 운영은 전적으로 중국 군사위원회와 동북행영에 예속되어 있었다. 장연군의 이념적·조직적 지도세력이었던 한독당 동북특별당부는 일제시대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당의 黨軍이었던 조선혁명군 출신인사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들은 한국교포 사회에 근거를 둔 黨·政·軍 삼위일체의 운영노선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장연군은 만주지역 한국교포들 속에서 뿌리를 내린 군사조직이 아니었다. 또한 장연군의 핵심들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이념적으로 계승·추종하고 있었지만, 이미 1947~1948년 시기에 임시정부는 만주지역 내에서 강력한 법통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중공은 만주 국공내전에서 전략적 방어단계(1945. 11~1947. 5)를 거쳐 전략적 진공단계(1945. 5~1948. 11)로 접어들어 국민당군을 몇몇 대도시로 고립시켰다. 1947년 12월 무렵이 되어 만주정세는 중국 공산군의 공격으로 심양 주변이 점령되고 長春 등 대도시와 연결되는 北寧철도가 단절되어 비행기로 왕래할 지경에 놓였다. 중국국민당군이 설정하고 있던 주요 도시를 點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線으로 한 點·線 연계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국민당군이 압박을 당하는 수세국면이 조성되면서 장연군에 대한 지원은 더욱 미약해졌다. 이에 따라 장연군에 포

47) 〈박영준지사〉 p. 155.

섭되어 있던 한인청년들이 점차 장연군을 이탈하게 되었다. 주화대표단 동북총판처장 李光은 1948년 4~5월경 남경 주화대표단의 閔石麟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建軍에 대해 : 근간에 벌써 4백 명이나 초모했고, 계속 초모중에 있으나 군복이 부족하고 총기도 발급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찬 없는 조식이어서 떠나는 자가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⁴⁸⁾

주화대표단 대표였던 민석린 역시 중국측의 요구로 만주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배격하기 위해 5백 명을 모아 놓았지만, 중국측이 급양을 해주지 않아 대다수의 청년들이 흘어졌다고 회고했다. 민석린은 의지가 굳은 청년 1백 명이 남아 이들을 한독당 동북총지부에 수용했으나 경비 곤란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주화대표단 동북총판사처장 이광과 한독당 동북특별당부 위원장 김학규의 전갈을 받았다.⁴⁹⁾

나. 군간부 양성활동

창설직후 '공산당을 때려부수겠다'는 장연군의 사기는 높았지만, 정세는 불리하게 돌아갔다. 중국측의 지원이 미약한 것도 문제였지만, 자위군의 증강·편성에 대비한 초급간부의 확보도 문제였다. 특히 일본군·만주군 출신의 군경험자들이 있었지만, 이들보다는 자체적인 군간부 양성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독당 동북특별당부는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1947년 10월경부터 동북행영과 교섭, 1948년 1월 초 자위군에서 선발한 청년 30명을 撫順 소재 제3군관훈련반 제3기생으로 입교시켰다.⁵⁰⁾ 제3군관훈

48)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105~106.

49) 필자 미상, 1959 〈石麟 閔弼鎬先生略傳〉 pp. 62~63; 閔弼鎬, 〈大韓民國臨時政府와 나〉 pp. 133~138(金俊暉 編, 1995 《石麟閔弼鎬傳》 나남출판).

50) 〈황포22기〉 p. 25. 이 당시 입교한 인원이 얼마인지는 기록에 따라 다르다. 박영준은 간부요원 40명을 뽑아 현지 幹訓團에 보냈다고 증언했고(〈박영준 치사〉 p. 155), 다른 기록에는 50명을 선출해 旅順 군관학교 분교에 보냈

련반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1948년 5월 하순 中央訓練團 東北分團에 수용중인 長延軍에 복귀하여 李逸泰 장군 휘하에서 區隊長으로 복무했다.

또한 장연군은 정예 정규군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泸川省 成都市 소재 陸軍軍官學校에 일차적으로 50명을 목표로 양성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재가를 얻었다. 중국정부와 장연군측의 육군군관학교 입교문제 교섭의 경로는 분명치 않다. 박영준은 자신이 김학규와 함께 동북행영의 杜律明을 만나 50명을 황포군관학교로 보내 간부요원으로 양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자리에서 승낙을 받았다고 증언한 반면,⁵¹⁾ 림창배·이시찬은 이시찬과 徐波가 책임지고 성도군관학교 교장 關麟徵과의 연락을 통해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⁵²⁾

결국 1948년 2월 중순 한인 50명의 황포군관학교 입교에 대한 남경정부 승인이 났고, 3월 초 선발고사를 통해 51명의 군관후보생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중국 군관학교 제22기생으로 입학·훈련을 받게 되었다.⁵³⁾ 당시의 선발기준은 ① 광복운동에 참여했던 자 또는 그 후예, ② 장연민주자위군에 복무중인 군인, ③ 신의주학생사건 또는 반공투쟁에 참여했던 자, ④ 기타는 군관학교 생도보집규정에 준하는 자였다.⁵⁴⁾

다고 되어 있다[필자 미상, 1959 《石麟閣弼鎬先生略傳》(金俊權 編, 1995 《石麟閣弼鎬傳》나남출판) pp. 62~63]. 김구 암살과 관련된 장연군출신 白允鎬도 바로 이 중국군관학교 동북분교 출신이었다. 그는 장연군 4대대장 文學彬의 부하로 있다가 군관학교에 들어갔고, 1949년 1월 김학규를 찾아와 洪鍾萬을 소개했다(金學奎 미출간 원고, 《血淚의 告白》백범사업회 소장).

51) 〈박영준지사〉 p. 156; 남파박찬익전기간행위원회, 위의 책, pp. 307~308.

52) 림창배, 위의 글, p. 575; 이시찬 인터뷰(1996. 7. 16)

53) 김은석은 당시 시험을 황포군관학교에서 나온 시험관이 주관했으며, 만주 전역에서 조선인 140여 명이 응시해 50명의 조선인이 합격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한 명은 북경에서 선발된 鄭基樺이었는데, 그는 雙公 鄭伊衡의 손자뻨로 해방전 임정의 비밀연락원으로 활동했다[1996. 9. 7. 정기엽 전화인 터뷰].

54) 〈황포22기〉 p. 9. 이시찬은 인터뷰에서 황포 22기생 51명의 선발은 장연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객관적으로 처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신

선발된 51명의 대부분은 평북 등 북한출신이었으며,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다음의 표 참조). 이들을 도별로 분류하면 경기 3, 경북 3, 경남 2, 제주 1, 황해 1, 평남 8, 평북 32, 함북 1명으로, 남한 출신자가 9명, 북한 출신자가 42명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한 평북의 32명 중 신의주사건 관련지역인 의주 9, 신의주 5, 용암포 1명 등으로 최소한 15명 이상이 신의주사건 관련자였다.⁵⁵⁾

장연군측은 이들 50명만으로는 1개 사단도 만들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50명씩 보내면 완전히 3개 사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⁵⁶⁾ 이들은 육군중앙군관학교 제22기 제2총대 소속으로 중국 四川省 雙流縣 교사에서 1948년 7월 19일부터 훈련을 받았고, 1948년 12월 成都市 皇城 督練區 교사로 이전해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1949년 9월 7일 졸업한 후 중경-귀양-유주-광주-해남도를 거쳐 臺灣 凤山으로 이전했다. 이들은 1949년 10월부터 제4군관훈련반 尉官隊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졸업한 후 1950년 1월부터 儲備軍官훈련반에서 구대장 또는 교관으로 복무했다.⁵⁷⁾

의 동생인 李時奉을 비롯한 대부분의 입학생이 장연군이나 한독당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장연군 출신들이 여기에 가담했고, 이들이 장연군의 간부대오를 형성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55) 김은석은 인터뷰에서 신의주사건 관련자들이 중심이었으며, 장연군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증언했다.

56) 〈박영준지사〉 p. 156. 원래 황포군관학교의 수학기한은 4년이었지만, 22기는 만주의 정세가 전시였던 관계로 1년밖에 훈련을 받지 못했다. 김학규 역시 장연군으로 한 개의 군단을 편성할 목적이었다고 회고했다.(김학규, 위의 글, p. 607)

57) 이후 이들은 대만을 출발해 1950년 5월 18일 인천에 도착한 후 남산 군인 호텔에 수용되었다. 김창룡은 이들의 사상을 검열했고, 육본 인사참모는 이들을 협박하며 사병으로 복무하라고 강요했다. 이들의 귀국 역시 1949년 김구 장례식에 조전을 보낸 것이 빌미가 되어 이승만이 장개석에게 이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문번도 없이 한국전쟁에 참가해 화령장전투에서 19명이 전사했고, 나머지 28명도 모두 전상을 당했다.

黃埔軍官學校 제22기 2總隊 한국인생도명부

| 이 름 | 별 호 | 생 년 월 일 | 졸업 연령 | 소 속 | 입교당시의 주소 | 한국군 군 번 | 사 망 연 도 |
|-------|-----|-------------|----------|---------|----------|------------|------------|
| 金 英 勳 | | 1927. 12.20 | 22 | 步1대대1중대 | 平北 鐵山 | 17374 | |
| 朴 肅 澤 | | | 22 | 步1대대1중대 | 慶北 永川 | 17371 | 1950 |
| 金 現 奎 | 世波 | | 26 | 步1대대3중대 | 平北 義州 | | 1950 |
| 朴 天 馬 | 宇震 | 1926. 8.29 | 23 | 步1대대3중대 | 平北 義州 | 17373 | |
| 李 時 煉 | 芳 | | 24 | 步1대대3중대 | 平北 龍川 | 17385 | 1972 |
| 金 重 達 | | | 25 | 步1대대3중대 | 平北 新義州 | 17358 | 1950 |
| 金明奎* | | | 25 | 步1대대3중대 | 平南 平壤 | 17364 | |
| 安 昌 道 | 典民 | 1926.10. 1 | 22 | 步1대대3중대 | 平北 義州 | 17395 | |
| 吳 用 鴻 | 鮮民 | 1923. 2. 8 | 25 | 步1대대3중대 | 平北 宣川 | 17366 | |
| 鄭基煥* | | 1921.10. 2 | 26 | 步2대대5중대 | 平北 龍川 | | |
| 張 海 德 | | | 21 | 步2대대6중대 | 平北 龍川 | 17375 | 1950 |
| 朴 允 鍛 | | | 20 | 步2대대6중대 | 平南 成川 | 17377 | 1950 |
| 權 必 鉉 | | | 21 | 步2대대6중대 | 慶南 陜川 | 17386 | 1978 |
| 張 定 根 | | | 25 | 步2대대6중대 | 平北 龍川 | 17351 | 1950 |
| 金 正 仁 | | | 20 | 步2대대6중대 | 平北 鐵山 | 17388 | 1950 |
| 安 秀 成 | 鳳凰 | 1924.10.21 | 25 | 步2대대6중대 | 平北 新義州 | 17390 | |
| 金 是 九 | 東元 | | 21 | 步2대대6중대 | 慶南 宜寧 | 17396 | |
| 金 致 三 | | 1924. 8.13 | 26 | 步2대대6중대 | 平北 龍川 | 17381 | |
| 李 成 滿 | 治宇 | | 20 | 步2대대7중대 | 平北 龍川 | 17360 | 1950 |
| 朴 成 男 | | 1930. 3. 8 | 21 | 步2대대7중대 | 京畿 龍仁 | 17361 | |
| 許志秀* | 林虎 | | 25 | 步2대대7중대 | 平北 龜城 | 17357 | 1950 |
| 徐 三 哲 | 綵榮 | 1923. 7.25 | 24 | 步2대대7중대 | 平南 鎮南浦 | 17352 | |
| 李 鶴 瑞 | 武虎 | | 26 | 步2대대7중대 | 平北 龍川 | 17365 | 1950 |
| 金 炳 喆 | 麗 | | 23 | 步2대대7중대 | 黃海 松林 | | 香港 |
| 金 光 鎭 | 元石 | 1923. 8.26 | 24 | 步2대대7중대 | 平北 新義州 | 17367 | |
| 文 時 旭 | 林勇彪 | | 25 | 步2대대7중대 | 平北 義州 | 17369 | 1962 |
| 李 元 坤 | | | 22 | 步2대대7중대 | 平北 義州 | 17379 | 1950 |
| 金 露 | | | 24 | 步2대대7중대 | 咸北 清津 | 17372 | 1950 |

| 이 름 | 별 호 | 생 년 월 일 | 졸업 연령 | 소 속 | 입교당시의 주소 | 한국군 군 번 | 사 망 연 도 |
|-------|-----|-------------|----------|-----------|----------|------------|------------|
| 金銀錫 * | 東洙 | 1919.12. 6 | 26 | 步2대대 7중대 | 平北 義州 | 17378 | |
| 康一永 | | | 21 | 步3대대 8중대 | 平北 平壤 | 17376 | 1950 |
| 李學律 | | | 21 | 步3대대 8중대 | 平北 泰川 | 17389 | 1950 |
| 趙東熙 | 海波 | 1924. 3.30 | 26 | 步3대대 8중대 | 平北 義州 | 17382 | |
| 白賢一 | 鳳奎 | | 25 | 步3대대 8중대 | 平北 新義州 | 17383 | |
| 李時奉 | | 1926. 4. 2 | 24 | 步3대대 9중대 | 平北 龍川 | 17392 | |
| 金大衛 | | 1926. 3. 2 | 23 | 步3대대 10중대 | 平北 宣川 | 17362 | |
| 金炳善 | 耀先 | | 26 | 步3대대 10중대 | 平南 | 17380 | 1950 |
| 文昌德 | 政行 | 1929. 9.15 | 21 | 步3대대 10중대 | 京畿 仁川 | 17356 | |
| 朴在俊 | 立靖 | | 23 | 步3대대 10중대 | 平北 | | 臺灣 |
| 羅泰奎 | 英男 | | 20 | 步3대대 10중대 | 平北 龍岩浦 | 17384 | |
| 韓昌燮 | | | 22 | 통신대 | 濟州 | 17394 | 1969 |
| 崔龍山 | | 1932. 2.16 | 21 | 통신대 | 平北 龍川 | 17368 | |
| 金龍浩 * | | | 22 | 통신대 | 平南 | 17370 | 1950 |
| 文昌興 | | 1925. 12.24 | 24 | 통신대 | 京畿 仁川 | 17355 | |
| 金銀嶺 | | | 23 | 통신대 | 平北 新義州 | 17363 | 1950 |
| 金白雲 | | 1918. 1.21 | 24 | 통신대 | 平北 義州 | 17391 | |
| 金一鍵 | | 1927. 1.14 | 22 | 통신대 | 平南 | 17387 | |
| 裴豪元 | | 1924. 3.28 | 22 | 통신대 | 慶北 高靈 | 17359 | |
| 吳貴星 | 東承 | 1927. 4.11 | 23 | 轉工兵隊 | 平南 鎮南浦 | 17354 | |
| 文仁俊 | 成龍 | | 23 | 轉工兵隊 | 平北 龍川 | 17353 | 1950 |
| 李元敬 | 岩波 | | 22 | 轉工兵隊 | 慶北 安東 | 17393 | |
| 楊致昊 | 啓民 | 1925. 3. 9 | 24 | 轉工兵隊 | 平南 大同 | 17350 | |

출전 : ① 同學錄編纂委員會, 1949 《陸軍軍官學校第二十二期總隊同學錄》

② 《陸軍官校二十二期 一, 二, 三總隊在臺同學通訊錄》中華民國 68 年 2 月中
(韓國留華同學韓戰殉職暨病故同學名錄)

③ 육군본부, 《육군장교자력표》

비고 : * 표는 광복군 출신자.

다. 중앙훈련단 동북분단으로의 흡수와 해체

동북행영측은 장연군에게 충분한 보급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훈련장비만 제공해 훈련만 시켰을 뿐 전투무기를 제공하거나 실제 전투에 참전시키지 않았다. 장연군측의 불만이 커졌지만, 장연군 총대장 楊馥堂이 만주출신이어서 대우를 못 받는데다 동북행영의 과장급에 불과한 대령 계급이었기 때문에 중국 육군군관학교 출신 장성들이 참모로 있는 동북행영측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1947년 12월 말 한국인출신 중국군 小將 李逸泰가 심양에 나타났다. 이일태는 황포군관학교 4기 출신으로 南京 소재 中國中央訓練團의 東北分團 黨政訓練班 주임이었다. 중국군 사단장을 지낸 바 있는 이일태는 중국여자와 결혼했고, 杜聿明의 선배였다. 이일태는 두율명을 만나 장연군의 지휘권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이일태를 신임한 두율명의 허락을 받았다. 두율명의 허락을 받은 이일태는 장연군 부총대장인 박영준을 찾아와 장연군의 인계문제를 협의했다.⁵⁸⁾ 훈련만 시킬 뿐 전투에는 참전하지 못해 사기가 떨어진데다 보급마저 충분하지 못했던 장연군측은 영관급 지휘관으로는 동북행영측과 교섭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 지휘권을 이양하라는 이일태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일태 역시 항일전 당시 1개 사단이면 일본군도 격파할 수 있었는데, 공산군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장담했고, 조선인 사단 3개를 육성하면 자신이 군단장까지 도 진급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47년 말~1948년 초에 이광, 김학규, 박영준, 이일태가 회동했다. 이광은 정부(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동북총판사처장)를, 김학규는 당(한독당 동북특별당부 위원장)을, 박영준은 군(장연군 부총대장)을 대표한 인물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은 이렇게 발언했다.

이일태 장군을 앞세워서 1개 사단을 훈련시키면 공산군 3개 사단은 문제

58) 박영준 인터뷰(1996. 7. 6.); 〈박영준지사〉 p. 156.

없다. 그래서 광복군의 한도 풀고 또 교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남북통일에 나서서 압록강 건너 뒷통 때리면 김일성이 절단 날 게 아닙니까 했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좋다고 가결됐지요.⁵⁹⁾

이에 따라 장연군은 1948년 2월 이일태에게 지휘권이 넘어갔다.⁶⁰⁾ 장연군이 이일태가 지휘하는 中國 中央訓練團의 東北分團 黨政訓練班에 편입된 시점은 1948년 3~4월경이었다.⁶¹⁾ 장연군 1천여 명은 東大宮에 있는 당정훈련반에 편입되어 6개월 기한으로 훈련에 돌입했다. 이일태가 훈련총대장이었고, 당정훈련반에는 독자적인 중대장·소대장 체계가 설치되었다. 장연군의 대대장을 제외한 전 병력이 새로운 편제에 편입되었고, 대대장만 이중체계를 유지했다. 원래의 계획은 당정훈련반에서 6개월의 훈련을 끝낸 후 실전에 배치되는 것이었지만, 훈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1948년 6월 심양주변이 함락됨으로써 결국 장연군은 실전에 참가할 수 없었다.

한편 장연군의 지휘권이 이일태에게 이관된 1948년 초반 이래 동북지역 임정계열의 당·정·군 관계자들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만주를 떠나게 되었다. 먼저 장연군 부총대장이던 박영준은 주화대표단장이던 부친 박찬익의 소환을 받고 1947년 12월 말 장연군 지휘권을 이일태에게 이관한 후 김학규와 함께 동북정세보고서를 작성해 1948년 1월 15일 남경으로 떠났다.⁶²⁾ 또한 한독당 동북특별당부 위원장인 김학규 역시 1948년 2월 하순 심양을 떠나 입국할 것을 결심했다. 김학규가 입국을 결심한 것은 첫째 만주가 중공의 손에 떨어질 것이며, 둘째 김구가 남북협상에 참가한

59) 박영준 인터뷰(1996. 7. 6)

60) 〈박영준지사〉 p. 156.

61) 박영준은 1948년 3월이라고 증언한 반면 김은석 등은 4월 충순이었다고 기록했다.

62) 박찬익이 박영준을 소환한 것은 장개석의 요청 때문이었다. 장개석은 박찬익에게 김구가 미군정과 충돌하니 당신이 귀국해서 김구를 설득하라고 강권했는데, 당시 박찬익은 와병중이었기 때문에 박영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박영준 인터뷰(1996. 7. 6); 〈박영준지사〉 pp. 156~157; 남파박찬익전기간행위원회, 위의 책, p. 309]

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⁶³⁾

주화대표단 동북총판사처장 이광 역시 길림·장춘이 중공군에 포위되고, 公主嶺, 開原이 중공군의 손에 들어가 四平街에서 대치상황이 벌어진 1948년 중반 만주탈출의 방법을 모색중이었다.⁶⁴⁾ 이에 따라 주화대표단과 김학규·이광 등은 협의를 통해 미 제14항공대장 센놀트가 운영하던 플라잉 타이거(Flying Tiger) 항공사의 비행기를 대여해 심양에 있던 주화대표단, 한독당, 장연군 관계자 2천여 명을 심양에서 북경으로 피난시켰다.

임시정부의 당·정·군 핵심들이 만주를 떠난 직후인 1948년 6월 중순 팔로군이 심양을 반격하여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장연군 소속 부대원 일부는 단독으로 부대를 이탈하여 금주, 산해관을 거쳐 천진으로 남하하여 귀국선 편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여병력은 1948년 11월 심양이 함락되면서 일부는 도피 후 귀국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나머지는 11월 2일 주둔지였던 撫順의 한국인 소학교에서 모두 팔로군에 포로가 되었다.⁶⁵⁾

이상과 같이 장연군은 애초의 구상대로 만주지역내 중공군과 조선의용군의 격멸, 한교의 보호 등을 위해 중국국민당군과의 연합작전 수행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고, 모병·간부양성·훈련이라는 부대체제 강화단계에서 해산되고 말았다.

5. 맷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장연군의 성격과 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연군은 만주 국민당 통치구역 내에서 중국국민당군의 통제하에

63) 김학규, 위의 글, p. 608. 만주특별당부에서 조직부장을 지낸 이시찬 역시 공산군의 만주점령이 목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신도 1948년 4월경 만주를 떠났다고 증언했다.

64) 〈李光이 閔石麟에게〉(1948. ?. 2)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105~106.

65) 〈황포22기〉 p. 26; 廉仁錦, 위의 글.

있던 한인자위군이었다. 장연군은 국공내전의 와중에서 한인들의 생명·재산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항촌자위대의 성격을 지녔으며, 중국측의 보급과 지원 및 통제하에 놓였다. 그러나 장연군의 주요 지도자와 활동방향은 임정계열이 장악·결정했다.

둘째, 장연군은 만주 국공내전에서 동북민주연군과 조선의용군에 대항하는 한인 반공부대의 성격을 지녔다. 만주의 국공내전은 중공당 중앙이 있던 동만주가 중심지였는데, 동만주 주민의 70~80%를 점하는 한인들의 대중적 지지와 성원을 획득하는 것이 내전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조선의용군과 연대했고, 이에 맞서 중국국민당은 장연군과 연대하려 했던 것이다.

셋째, 장연군은 1946년 5월 중국 관내에서 해산된 광복군의 후신을 자임했다. 이는 항일전 시기부터 임정이 수립하고 있던 만주진출과 광복군 확대라는 군사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었다. 해방 후 중국 관내에서 이뤄진 일본군내 韓籍 장병의 흡수를 통한 광복군 擴軍시도와 장연군을 통한 광복군 재조직 시도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넷째, 결론적으로 장연군은 만주지역에서 건설된 한인들의 반공우익군 대였을 뿐만 아니라 임정을 중심으로 한 당시 남한내 우익진영의 통일·독립국가 건설방향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졌다. 김구는 장연군의 창설과정부터 조직·활동에 이르기까지 장연군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맺으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장연군 창설 이후 김구는 '만주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남한내 우익진영과 만주 현지의 임정계 인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종국적으로 김구의 '만주계획'은 남한-중국-미국이라는 동아시아 3국 반공군사동맹체제의 수립을 지향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만주의 정세는 김구를 비롯한 남한내 임정세력들의 사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김구는 장연군의 통제권이 만주내 임정계열로부터 중국측으로 완전 이관된 1948년 2월까지도 만주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정치지도자 간의 정치협상을 제안했다. 김구의 이러한 양면적 모습은 분명 국내정세 이상의 국제적 연관관계 속에서 조명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김구를 비롯한 국내 우익인사들이 공감하고 추진했던 '만주계획'은 한국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에 의한 '실지회복론' 혹은 '북진통일론'과 분명한 계승·변용관계를 맺고 있었다.

건군50년 한국군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

한 용 원
(한국교원대 교수)

1. 서 론
2. 한국군의 창군·성장과정
3.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
4. 한국군의 사회적 역할
5. 21세기 한국군의 역할
6. 결 론

1. 서 론

신생국가의 군대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역할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파이(Lucian Pye)나 존슨(J. J. Johnson) 등은 개도국의 군이 근대화의 추진세력이 될 수 있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헌팅تون(S. P. Huntington)과 웰치(C. E. Welch) 등은 개도국의 군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제도로서의 군이 정치에 개입한 라틴아메리카 군대의 역할에 비추어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제도로서의 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분파 내지 파벌로서의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여 제도로서의 군을 정권의 배경막 내지 정권안보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정치적 군부와 제도적 군부의 역할은 동일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¹⁾ 따라서 논자는 이 글에서 건군 50년간 제도로서의 한국군의 역할에 관해서만 고찰키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제도로서의 군의 역할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군사제도가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적 필요성(functional imperative)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필요성(societal imperative)을 공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국가의 경제적 번영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 이기는 하지만 국방비를 줄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자거나 사회복지비로 전용하자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는 반면, 군대가 사회에 비해 발달된 제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군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군이 보수화되기 쉬운 것인데, 군의 사회적 필요성마저도 외시한다면 군을 게토(ghetto) 같은 존재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의 역할은 안보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적절히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군 50년간 한국군은 안보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1950년대의 안보적 역할과 1960년대의 사회적 역할은 팔복할 만하였다. 한국군은 1948년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창설되었으나 창군사가 분단사와 맞물려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군문화·일본군문화·미국군문화가 접합되어 시발함으로써 우여곡절 속에서 성장해야만 했다. 한국군은 1950년대에 북한군의 전쟁도발을 분쇄하여 국가를 수호하였고, 전후복구에 진력했으며, 1960년대에는 근대화의 기수역할을 담당했을 뿐

1) 한용원, “광복50년 국가발전에 있어서 군의 역할,”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9 국방」(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5. 10) 참조

아니라 우방의 지원을 위해 월남전에 파병하였고, 1970~80년대에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군의 창군 및 성장의 과정을 개관한 연후에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고, 21세기의 역할을 조망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 유산은 문화적·구조적 산물인 동시에 상황적·인위적 산물임이 분명하지만 제도로서의 군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황적·인위적 요인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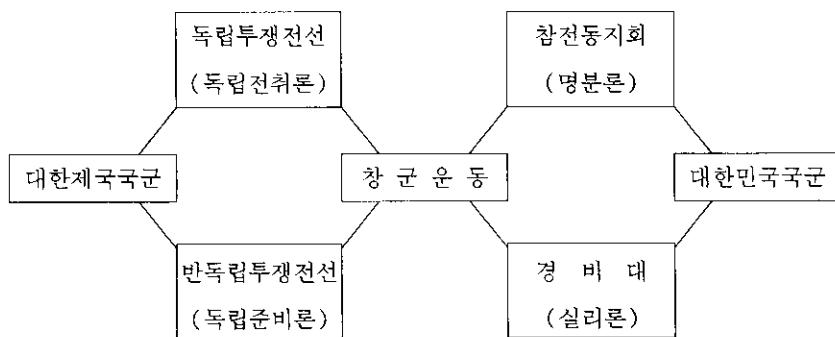
2. 한국군의 창군·성장과정

한국군의 창군과정은 ①민족자생의 창군운동과정, ②미군정의 경비대 창설과정, ③대한민국정부의 국군창설과정 등 3단계로 진행되었다. 일제의 강압으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국군이 해산되자 일부는 ‘독립 전취론’을 견지하고 독립투쟁전선의 광복군으로 활약하였고, 다른 일부는 ‘독립준비론’을 견지하고 반독립투쟁전선의 일본군 및 만주군으로 복무했으나 그들은 해방공간에서 함께 만나 창군운동을 전개하였다. 창군운동의 전개양상은 광복군의 국내지대 편성과 30여 개의 군사단체 결성으로 나타났으나 창군운동과정에서 “광복군을 모체로 국군을 편성해야 한다”는데 공동의 동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경비대를 창설하면서 민족자생의 군사단체들을 해체시키자 창군운동세력은 분열되었다. 즉 “광복군을 모체로 국군을 편성해야 한다”는 중견층의 명분론과 “경비대는 장차 국군이 될 것”이라는 소장층의 실리론으로 분열되어 소장층은 제도권 내의 경비대에 입대했으나 중견층은 제도권 밖에서 참전동지회(후에 육·해·공군출신동지회)를 결성하여 국군이 창설되기를 기다렸다. 1948년 8월 15일 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국군이 창설되자 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되고, 육·해·공군출신동지회 회원들이 국군에 입대함으로써 창군운동세력은 다

시 대한민국 국군으로 합류하였다.

그러므로 창군과정은 〈그림 1〉과 같이²⁾ 전개되어 창군운동과정에서 국군의 이념과 정신이 형성되고, 경비대창설과정에서 국군의 조직과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군창설과정에서 정신과 조직의 변증법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비대의 간부들이 20~30대의 소장층으로 형성되어 리더십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해방 직후의 사회의 사상적 혼란상이 경비대에도 과급되어 사상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경비대의 체질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제도권 밖에 있던 육·해·공군출신동지회의 중진 군사경력자들을 충원시켜 리더십문제를 해결하고, 광복군의 수뇌들이 육성한 청년단원들과 이북에서 월남한 우익청년단원들을 충원시켜 사상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림 1〉 창군과정의 전개

다음, 한국군의 성장과정은 ①1950년대 전쟁 및 정비기, ②1960년대 체제정립기, ③1970~80년대 자주국방기, ④1990년대 통일대비기로 전개되었다.³⁾ 한국군은 창군과 동시 경비대체제를 국군체제로 전환시켰으나

2) 한용원, “전군과 한국군 군대문화: 전통과 유산,” 「한국군 군대문화의 회고와 발전적 정립」(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8. 6), pp. 7~10.

3) 한용원, “국군50년: 창군과 성장,” 「국방연구, 제41권 제1호」(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8. 6) 참조.

군부반란사건이 연발하여 이를 진압하는 데 여념이 없어 겨우 소부대훈련을 마친 상황에서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하였다. 한국군은 전쟁전 10만명선을 유지했으나 전후에 65만명선으로 성장(T/O기준)했으며, 전시에 장교 및 하사관을 선발하여 미군사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1950년대에 10,000명 이상이 해외유학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전후에 종합행정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어학, 행정, 관리 면에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중에 한국군은 국가수호의 전통, 인명중시의 전통,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통을 확립하였고, 전후 복구활동에 참여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민교육도장의 전통도 확립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군체제의 정립은 5·16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이는 5·16세력이 국방쇄신의 차원에서 인사·병무행정 등을 개혁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도적·교육적 조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60년대에 한국군은 군인사법을 제정하고 장병의 급여수준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장교단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ROTC제와 3사관 학교제를 실시하고, 합동참모대학과 국방대학원 산업과정을 설치·운영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군의 발전방향을 좌우하던 미군사고문단이 철수하자 전투발전사령부(후에 연구발전사령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교리와 절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군은 전후복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대화의 기수역할을 수행하고, 해외파병전통과 재해복구 및 대민봉사활동전통을 확립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휴전선의 방어임무를 전담하게 된 한국군은 「국군 현대화계획」(1971~75)을 수립하여 육·해·공군의 장비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방8개년계획」(1974~81)을 수립하여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였다. 율곡사업으로 지칭되는 전력증강사업은 미국의 대한무상군원이 종료(1978)됨에 따라 신설된 방위세(1975)를 재원으로 하여 각종 기본병기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는데, 1차율곡사업에 이어 2차율곡사업(1982~86)과 3차율곡사업(1987~92)이 추진되었다. 1970~80년대 자주국방기에 한국군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교리와 절차를 발전시키고 무

기와 장비를 개발하였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운영(1978)하여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군사관계를 대미일변도로부터 점차 다변화시키고, 분쟁지역의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 참여했을 뿐 아니라 3군통합전력의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군구조를 개선하고, 1994년 12월 1일부로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의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3.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

한반도는 지난 50여 년 간 휴전체제로 인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의 정규군이 대치한 가운데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벌여 왔다. 창군 이래 한국군은 한편으로 북한군의 6·25남침을 비롯하여 1·21청와대기습 등 각종 무력도발을 분쇄·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했을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한국전쟁시에는 ①창군요원의 29%를 포함한 275,000여 명의 희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였고, ②1·4후퇴시에는 민족의 군대로서 북한피난민의 보호작전과 구출작전을 전개했으며, ③3년간 전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전개되었음에도 민족문화재를 보호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전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64년부터 1973년 까지 10년간 연인원 312,853명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①미국으로부터 11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의 약속을 받아내었을 뿐 아니라 과월 장병의 수당과 과월업체의 수입이 총 10억 달러에 달해 경제발전을 크게 뒷받침할 수 있었고, ②한국전쟁에 연인원 572만여 명이 참전하여 147,131명의 인명손실을 본 미군이 수행하는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한·미간의

안보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은 첫째,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둘째, 국가발전전략의 추진과 결부되어 수행되었고, 셋째, 남북한간의 적대와 의존의 동태적 대상관계의 전개와 국민의 반공·안보이념의 추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우선 정부수립 직후부터 월남전이 종료될 때까지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은 미국의 무상군원을 바탕으로 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무상군원은 1950년대에 한국의 국방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960년대에 50%, 1970년대의 전반기에는 31%, 후반기에는 1.5%를 각각 차지하여 한국의 경제력이 국방비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 큰 뜻을 담당해 주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30만명 수준)은 전전상태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후에 주한미군(1950년대 후반 8만명선, 1960년대 6만명선, 1970년대 4만명선)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국방재원의 일부를 부담해 주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 주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선건설·후통일론’에 의한 국가주도의 수출산업화정책을 추진하여 ‘선혁명·후통일론’에 의한 군사·경제병진정책을 추진한 김일성 주석과의 체제경쟁에서 (표 1)과 같이⁴⁾ 승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도 이룩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파병을 통해 한·일, 한·미간 밀월관계를 유지하여 부국강병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일로부터 손쉽게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화를 이룩하고, 생산된 제품을 미·일의 시장에 수출하여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이렇게 하여 산업화가 도약단계에 진입하자 그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성장을 지속시켰으며, 이 기간에 미국의 무상군원이 종료(1978년)되자 그는 방위세(1975년)를

4) 황의각, “남북한 경제의 구조와 역량,”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세종연구소, 1995), p. 274.

(표 1) 남북한의 1인당 GNP의 변화 비교

(단위 : 달러)

| 연 도 | 북 한 | 남 한 |
|------|-------|-------|
| 1961 | 195 | 82 |
| 62 | 211 | 87 |
| 63 | 225 | 100 |
| 64 | 240 | 103 |
| 65 | 248 | 105 |
| 66 | 255 | 125 |
| 67 | 225 | 142 |
| 68 | 232 | 169 |
| 69 | 239 | 210 |
| 70 | 304 | 252 |
| 71 | 374 | 288 |
| 72 | 422 | 318 |
| 73 | 489 | 395 |
| 74 | 559 | 540 |
| 75 | 751 | 590 |
| 76 | 775 | 797 |
| 77 | 725 | 1,008 |
| 78 | 956 | 1,392 |
| 79 | 1,114 | 1,640 |

재원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을 달성코자 하였다.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은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국의 국력신장이 맞물려 1960년대 말부터 모색되었으며, 넉슨독트린에 의해 주한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국군현대화계획」(1971~75)을 추진하여 육·해·공군의 장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974년부터 율곡사업으로 지칭되는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국산화와 양산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 제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한국군은 지상방위의 책임을 전담하게 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분수령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부국강병정책은 1970년대 후반기에 그의 리더십의 경직화와 핵개발의 기도로 인해 미국의 압력을 받아 유연성을 상실케 되었다. 그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이탈하자 미국은 주월한국군 철수 후 코리아게이트사건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였고, 그가 1976년 한국원자력기술공사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창설하여 핵연료의 국산화 개발에 착수한데다가 1978년 장거리유도탄을 개발하여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장거리 유도탄의 생산을 유보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므로 그를 계승한 전대통령은 원자력기술공사와 핵연료개발공단을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통합·개편하는 조치를 통해 핵개발 카드를 사실상 포기하였다.

다음,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은 남북한간의 적대와 의존의 동태적 대쌍관계의 전개와 국민의 반공·안보이념의 추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북한은 1960년 미일안전협정이 체결되자 이를 한·미·일 남방3각동맹으로 간주하여 1961년 소련 및 중국과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 북방3각동맹을 형성하였고, 한국이 휴전 후 미군이 주둔한 가운데서도 60만 병력을 계속 유지하자 북한은 중국군의 철수에 대비, 인민군을 강화시켜 1959년에 80만명으로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노농적위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1962년 4대군사노선을 결정·채택하여 국방의 자위정책을 추진한 북한은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한 기간인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수많은 게릴라와 특공대를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파(북한의 대남적대행위는 1965년 88건, 1967년 784건, 1968년 985건에 달했음)시켜 한국의 치안을 교란하여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게릴라의 거점을 확보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에 한국은 향토예비군을 창설(1968)하여 후방방위력을 강화시키고,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현대화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기본무기와 장비의 국산화와 양산화는 물론 한국형 전차, 함정, 전투기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도 군수공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해 핵무기카드 외에도 미사일카드, 화생방카드, 슈퍼건카드를 확보하게 되었고, 상비군사력도 100만명을 초과하여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1990년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①전쟁수행 잠재력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우세하지만 ②동원군사력 면에서는 남북한이 대체로 비등하고, ③상비군사력 면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⁵⁾

한편 안보가 불안한 국가에서는 군의 안보적 역할 수행이 국민의 안보 의식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군사문화가 사회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해방공간에서 한국의 사상적 혼란상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해방된 민중들의 개혁열정과 영합되었지만 ①우익민족세력이 반탁운동을 반공운동으로 휘몰아 갔고, ②반란사건의 여파로 민중들의 반공의식이 쏙 트기 시작했으며, ③농지개혁으로 민중들의 개혁열정이 진정된데다가 ④숙군작업을 통해 군내의 좌익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한국전쟁시 북한군을 격퇴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 할 수 있었다.

전후에는 일반민중들의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의식이 심화된데다가 준전시상태(전후 상당기간 휴전상태는 준전시상태로 인식되었음)가 지속됨으로써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절대다수 국민들의 능동적 동의 내지 수동적 동의를 유도해 낼 정도로 확산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도구와 슬로건뿐 아니라 정치사회화와 국민교육의 기본가치(반공=민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권안보의 도구로 활용한 데 반발하여 4·19혁명 후 혁신 세력의 정당운동·노동운동·통일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에 5·16세력은 이를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았을 뿐 아니라 안보상황론을 개발독재론과 결부시켰으며, 특히 유신체제

5) 국방부, 「국방백서」(1990), p. 124.

하에서는 총력안보논리를 내세워 민중들의 정치참여를 제한시키고 통일안보논리를 내세워 체제강화를 꾀하였다.

이처럼 반공·안보이념이 정권안보의 도구로 이용되는 와중에서도 반공의 최첨단 보루로서 기능했던 한국군에는 자연스럽게 반공문화가 정착되었고, 따라서 군문을 거쳐 간 1,500만명의 장병들은 한국사회에 반공·안보이념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전개된 한국사회의 반체제운동은 탈정부적·탈안보적 차원의 민중통일론을 제기할 정도로 반공·안보이념을 훼손시켰다. 더욱이 자라나는 세대들은 가난과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대이므로 성장과 안보이데올로기를 중시하지 않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안보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시켜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4. 한국군의 사회적 역할

창군으로부터 5·16까지 한국군의 발전방향은 미군사고문단이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군은 경비대 시절부터 미군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된 조직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경비대가 일본군출신이 주류를 형성했음에도 미군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합리주의, 기술주의, 직업주의가 제고되어 근대적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군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군은 한국전쟁 직전 10만명선을 유지했으나 1952년 5월 36만명선으로 증대되었고, 1953년 5월 65만 5천명선(T/O기준)으로 양적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전쟁중에도 전전에 창설한 각종 병과학교를 재개교하고 4년제 사관학교를 창설했을 뿐 아니라 미군사학교에 장교 및 하사관을 선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950년대에 10,000명 이상이 해외유학을 경험하였고, 전후에 종합행정학교를 설치하고 어학·행정·관리과정을 개설·운영하여 1950년대에 20,000명 이상을 배출함으로써 질적인 성장

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과 고문에 힘입어 정부 및 민간부문보다 많은 건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중반 까지 지속되었다. 1961년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보유한 건설중장비는 불도저를 포함하여 총 1,100대에 불과하였고, 1967년에 2,877대로 증가했으나 이는 1967년 당시 군이 보유했던 크레인을 비롯한 4,000여 대에 비하면 1/3~1/2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술인력도 정부 및 민간부문은 1968년에 6,048명에 불과하였고, 1970년 12,826명으로 증가했으나 군에서는 1966~68년간 양성한 기술인력만 해도 31,000여 명에 달해 정부 및 민간부문은 군에 비해 1/5~1/3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⁶⁾ 이상과 같은 여건으로 인해 한국군은 1950년대에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전통을 확립하고 전후복구에 주역을 담당했으며, 1960년대에 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재해복구 및 대민봉사활동의 전통을 확립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군은 1960년대초 한국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된 집단이고 기술화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조국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전술했듯이 당시 군은 정부 및 민간부문보다 많은 건설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데다가 전후복구의 주역을 담당하여 노하우를 축적시켜 왔다. 특히 군은 미군의 공병자재를 지원받아 전쟁으로 파괴된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AFAK(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사업을 통해 900여 개의 학교, 200여 개의 병원 및 고아원, 100여 개의 교량을 복구하고 300여 개의 교회를 건립한 경험을 가졌다.⁷⁾ 그리고 당시 한국사회에는 공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경지의 정리는 물론 저수시설이나 제방조차 제대로 축조되지 않아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은 〈표 2〉와 같이 근대화 추진에 필수적인 사업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 공공시설 건설사업, 국토의 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6)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과 국가발전」(1992), pp. 124~126.

7) 백선엽, 「군과 나」(대북연구소, 1989), pp. 301~303.

〈표 2〉 군의 근대화과업 참여실적

| 구 분 | 추진연도 | 실 적 | 비 고 |
|-------------|---------|----------------------|----------------------|
| 전 술 도로 건 설 | 1961~72 | 2,675km | 1984년부터 거의 중단 |
| 일 반 도로 건 설 | 1958~92 | 2,564km | 산악지역 및 해안지역 |
| 한·미합동도로건설 | 1960~72 | 확장 212km 포장 580km | USOM의 재정지원 |
| 경부고속도로건설 | 1968~70 | 31km | 난공사지역 담당 |
| 기타고속도로건설 | 1990년대 | 34km | 자유로와 서울외곽도로 |
| 교 량 건 설 | 1954~92 | 676개소 | 화천대교·필승교 등 |
| 공 공 시 설 건 설 | 1954~72 | 4,970동 | 학교 교실 |
| | 1957~67 | 165동 | 고아원 및 보건소 |
| 농 경 지 개 간 | 1961~75 | 2,170정보 | 연병력 13만여 명(장비 2만여 대) |
| 농 경 지 정 리 | 1965~75 | 2,873정보 | |
| 방 조 제 촉 조 | 1960년대 | 매년 20~40km | 연병력 2만여 명(장비 3천여 대) |
| 조 립 및 사방사업 | 1961~90 | 2,200정보 | |

특히 군은 ①전술도로·일반도로·고속도로의 신설·확장·포장공사에 참여하되, 협준한 산악지역이나 해안격오지에 도로를 개발하고 난공사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했으며, ②교량건설에 참여하되, 화천대교, 필승교 등 군사작전과 직결되는 교량은 단독으로 건설하고, 천호대교, 김포대교 등은 지원형식을 취하였고, ③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학교 교실난을 해결하고, 전쟁고아들의 수용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고아원, 보건소 등 공공시설의 건설에 주력했으며, ④공업화의 추진으로 소외된 농촌주민들을 위해 경지의 개간 및 정리와 방조제의 축조 그리고 조립 및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군은 군대의 행정관리기법을 일반행정업무의 쇄신차원에서 전수하여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5·16 당시 군은 미군의 관리제도와 기술을 도입하여 사회에 비해 월등한 관리능력을 보유하였고, 특히 타이프라이터 활용, 사무표준화, 문서 및 보고통

제 등의 행정관리기법을 정착시켰으나 일반행정부처에서는 일제식민지 행정제도 및 관례를 전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군은 행정부처에 행정관리 기법을 전파시켜 한국행정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군의 근대화과업 참여는 군이 민간부문보다 월등한 장비와 노하우를 보유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업화의 여파로 인해 민간부문의 장비와 노하우가 군을 앞서게 된 1970년대 후반기부터 군의 참여는 도로 및 교량건설과 조립 및 사방사업으로 제한·축소되었다. 그러므로 군의 근대화과업 참여는 그 팔목할 실적에도 불구하고 15여 년 간에 걸친 한시적 기여를 불면케 되었다. 하지만 1960~70년대 범세계적인 개발연대의 시대정신에 부응한 자랑스러운 업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근대화에 기여한 군의 역할은 수정주의자들이 한국의 근대화의 기원을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구하고, 산업화과정의 강성국가와 관료제를 식민지의 유산으로 보는 견해가⁸⁾ 허황된 것임을 입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한국군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한국군은 ①창군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문을 거쳐 간 1,500만명의 장병들이 군생활을 통해 반공·안보의식과 집단주의정신을 제고시키고 인내심과 독립심을 배양케 하였다. 그리고 한국군은 ②창군이래 1965년까지 각종 군사기술학교의 통신, 수송, 항공, 공병, 항해, 전자 등 454개 과정에서 60여 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배출하는 등⁹⁾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 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한국군은 ③창군이래 1970년대 초까지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창군직후부터 문맹퇴치를 위한 6주간의 한글반을, 1954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과정을 교육하는 12주간의 기초반을, 초등학교 5~6학년과정을 교육하는 12주간의 국민반을,

8) 예컨대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Cornell Univ. Press, 1987).

9) 육군사관학교, 「군대와 국가발전: 자료집」(1981), p. 100.

1955년부터 중학교 1~2학년과정을 교육하는 15주간의 중등반을 각각 개설·운영하여 기초반은 1962년에 종료하고, 기타반은 저학력자를 정집 대상에서 제외시킨 1970년대 초까지 지속하여 한글반 59만여 명, 기초반 13만여 명, 국민반 15만여 명, 중등반 12만여 명 등 총 100만여 명을 교육시켰다.

나아가 한국군은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활동과 격오지 방역 및 진료활동, 농촌일손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현혈활동 등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우선 군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구조활동과 복구활동을 전개했는데, 주요한 구조활동 실적으로는 1969년 2,444명, 1984년 9,930명, 1987년 6,740명, 1990년 12,331명을 각각 구조하였고, 복구활동을 위해 1960년대에 185만여 명, 1970년대 120만여 명, 1980년대 410만여 명이 각각 동원되었다. 다음 군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벽지 및 도서지방의 주민들을 상대로 진료활동 및 방역활용을 전개하여 격오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했으며, 또한 군은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활동에 나서 적기영농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군은 산업화의 여파로 인해 ①공해가 심화되자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고, ②대형사고가 빈발하자 현혈활동을 전개하여 1990년대에 국내 총현혈량 중 군현혈량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군의 사회적 역할은 근본적으로 군이 사회보다 장비와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화의 여파로 사회가 군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이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고,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 역할의 수행이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도 기술인력의 양성보다는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며,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활동은 천재뿐만 아니라 대형 인재로 확대될 것이고, 대민봉사활동은 무의촌지역의 감소와 농촌영농의 기계화로 인해 격오지 진료 및 방역활동과 농촌일손돕기활동은 축소될 것이나 산업화의 부작용과 개인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환경보호활동과 현혈활동은 확대될 것이다.

5. 21세기 한국군의 역할

21세기 한국군의 역할은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민주화와 통일의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크며, 따라서 21세기 한국군의 역할에 관한 키워드(keyword)는 ‘자주국방의 강화’와 ‘민족통일의 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통일논리는 ①선평화·후통일의 논리, ②점진적·단계적 접근의 논리, ③과정으로서의 통일의 논리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한국의 안보정책도 ①안보목표를 과거의 대결지향의 대북한 대응에서 나아가 통일지향의 민족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②안보전략을 과거의 정치군사전략으로부터 총괄적 안보전략으로 전환시켜 가며, ③군사정책은 지상군 위주로부터 3군의 균형발전으로, 병력집약형으로부터 기술집약형으로, 대북 억제로부터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¹⁰⁾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는 사회주의세력의 쇠퇴와 해체, 선진 자본주의세력의 상대적 부상, EU 같은 지역행위 주체의 자율성 증가, 세계적 조직 및 기구의 역할 증대, 민족 및 종족의 독립성 강조 등 변화양상을 시현하면서, 방어적 국가안보와 공동안보 형태의 지역안보 모색에 따라 국제 군사화 추세가 완화되고 번영·복지를 위한 첨단과학기술의 추구와 정보력의 강화를 지향하는 데 반해서, 동북아의 정치군사질서는 중·일간의 지역질서 주도권 경쟁, 일본의 군사대국화 위험성, 중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 북한체제의 불안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등이 중요한 위협요소로 남아 있어¹¹⁾ 지역국가들이 쌍무간·다자간 안보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미

10)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1995), pp. 38~39.

11) 하영선, “21세기 신문명과 한일관계의 미래,” 「한일관계 50년의 쟁점과 과제」(한국정치학회, 1998. 7), pp. 1~9.

국이 아시아의 안보를 관리하기 위해 아·태지역에 유럽과 같은 규모의 10만명의 해외주둔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의 자주성과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전력구조와 첨단무기 중심의 전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혼란과 외부세력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군이 안보·전략·통일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군의 자주국방은 한국방위의 한미동맹화와 한국화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도로 변경시키되,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키 위해 한국에 미군을 계속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¹²⁾

더욱이 탈냉전 이후 아·태지역에서는 협력적 안보의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안보대화를 추진하는 등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능력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21세기에 한국군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첨단과학기술화, 고급 인력화는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 한국군은 사회적 역할보다 안보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군의 사회적 역할은 군이 사회보다 장비와 기술 면에서 앞설 때나 군이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효과적인 민군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강조되는 것인데, 21세기에 한국의 사회는 현재처럼 군대보다 앞서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하며, 군부

12) 미국은 1989년 「동아시아 전략구상」을 통해 한국방위에 있어 주한미군이 맡아 온 주도적 역할을 지원적 역할로 전환키로 하고 감군조치를 취하다가 1995년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 10만 명의 미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아·태전략을 변경하였음.

정치의 청산으로 확산된 국민의 총괄적 안보의식은¹³⁾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군이 위상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군이 안보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형전력의 강화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한국군은 전력을 병력과 장비의 총화인 유형전력과 능력과 기술의 총화인 무형전력으로 구분하여 유형전력의 강화는 국민의 책임이지만 무형전력의 강화는 군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해 왔고,¹⁴⁾ 따라서 1990년대에도 군사대비태세의 강화가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21세기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 한국군은 자주국방능력의 제고에 필요한 조기경보 및 감시장비와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도입을 건의·확보하여 운용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과정에서의 안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공동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보대화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의 총괄적 안보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문적 능력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 한국군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측면보다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측면과 재해의 복구 및 구조활동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교육도장 역할도 기술인력의 양성 측면보다 안보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안보의식의 배양도 군사적 측면보다 총괄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¹⁵⁾ 그리고 군이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는 역할은 안보 및

13) 총괄적 안보는 군사적 방위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 정치적 자주, 사회적 통합과 전략적 자원의 확보 등을 포괄하는총체적 안보 내지 포괄적 안보를 지칭함.(백종천·이민룡, 「한반도 공동안보론」, 일신사, 1993, pp. 88~116 참조)

14) 국방부, 「선진국군」(1984), pp. 178~179.

15) 냉전시대의 안보교육은 반공·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군사적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두었으나, 탈냉전시대의 안보교육은 자유·평화·번영·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총괄적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임.

통일과 관련하여 21세기에 매우 중요하다. 군이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게 되면 군의 총괄적 안보능력과 통일대비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 총괄적 안보의식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지난 50년간 한국군은 한편으로 북한군의 남침 및 각종 무력도발을 분쇄·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했을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군의 안보적 역할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수행되었고, 특히 미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국방재원의 일부를 부담해 주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무상군원을 제공해 주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 주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강병을 지향한 국가주도의 수출산업화정책을 추진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도로 변경되었다.

한편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되고 기술화된 집단으로 성장하여 사회보다 월등한 장비와 기술을 보유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근대화의 기수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로서 군문을 거쳐 간 1,500만명의 장병들이 군대생활을 통해 책임 있는 사회적 역군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그중 200만명에 달하는 장병들은 기술인력으로 육성되어 사회에 배출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군은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하였고, 대민봉

사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은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는 데 등한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성을 제대로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21세기에 한국군은 세계질서의 재편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민주화와 통일의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그 역할이 규정될 공산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사회적 역할보다 안보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안보적 역할은 무형전력의 강화에 진력하되, 통일과정에서 필수적인 총괄적 안보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고, 사회적 역할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화를 도모하는 측면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군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발전방향

권태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서 론
2. 21세기 한국군의 전략환경 분석
3. 21세기 한국군의 주요 과업과 발전방향
4. 결언

1. 서 론

1998년은 한국군이 창설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군이 ‘지천명’의 나이가 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2년 후면 새로운 21세기가 열리고 새로운 천년기(millenium)가 시작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의 지난 반 세기를 뒤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21세기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의 사실로서 한국군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무’에서 창조되었다. 해방 이후 미국의 후원을 받아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고, 한국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여 국군이 운영·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20여 년 간 ‘자

주국방'의 기치 아래 방위력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대북 방위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군은 지난 50년간 한·미 연합체제에 의해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다. 한국군은 5만 명에 달하는 해외 원정군을 월남에 파병했고, '한강의 경계기적'을 창출하는 데도 직·간접으로 기여하였다. 만일 구한말 또는 일제 치하의 독립 우국지사나 한국전쟁 발발시의 우리 선배들이 현재의 국군 위용을 볼 경우 말로써는 표현을 다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군은 현재의 전력 및 방위태세로서는 결코 자족감을 느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격변의 21세기는 과거 50년과는 그 성격과 본질이 근원적으로 다른 새로운 전략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소 양극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정치-군사중심의 국제관계가 경제-기술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로 통칭되는 새로운 문명구조가 탄생되고, 그 사회는 전쟁의 개념 및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한반도의 남북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적지 않은 진통과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현재의 대치·긴장관계가 점차 해소되고 통일시대가 숙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97년 말에 찾아온 불청객, '외환위기'로 인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어 온 경제발전 신화는 적어도 3~5년간은 먼 옛날의 추억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라 사회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군사비 축소 압력이 거세게 표현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유비무환'의 군사태세를 확보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지금 국내외 국방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만일 우리 군이 이러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국방의 3류화'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국가이익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는 국방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이 글은 ① 21세기 한국군의 전략환경을 도전적 측면과 기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② 21세기 한국군의 주요 과업과 발전방향을 장기적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하여 우리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 21세기 한국군의 전략환경 분석 : 도전과 기회

오늘날 세계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는 미답의 상황에 접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및 주변의 전략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도전과 기회의 이중적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 도전적 전략환경 시나리오

먼저 도전적 전략환경의 변화 모습을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자. 첫째, 북한이 변화 또는 붕괴되는 과정에서 무력도발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을 ‘기아의 늪’으로 빠뜨려 놓고 국제사회에서 식량을 구걸하고 있으면서도 무력 적화통일노선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가 파산상태의 경제’ 속에서도 ‘파포화상태의 군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8.0%에 불과하지만 정규군은 한국보다 57.0%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¹⁾

북한은 경제적 피폐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보기 드문 병영국가체제를 유지하고 ‘군사 최우선’의 개념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왔

1) Military Balance(1997/98)에 의하면 ’96년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12,400불인 데 비해 북한은 200불에 불과하다. 그러나 병력은 한국이 672,000명인 데 비해 북한은 1,055,000명이나 된다.

다. 북한은 “군사중시사상과 정책을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이고 사회주의와 국가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혹,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 화학무기 등 전략적 차원의 전력을 개발 또는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무기는 한국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위협이며, 서울이 휴전선(DMZ)에 근접(30km 정도)해 있다는 전략적 취약점을 고려할 때 매우 위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군사력’은 북한정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다. 북한지도층은 군사력에 의존해서 내부의 동요 또는 봉괴를 막고자 하며, ‘벼랑 끝외교’(핵공갈, 서울 불바다 등)와 봉남연미(封南聯美)정책을 추구하고, 최후의 마지막 카드로 국지도발 또는 ‘자살적’인 전면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봉괴 또는 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물론 주변 4강도 모두 불안해 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어느 국가도 한반도의 현상 파괴적인 통일로 인한 부작용과 경제적 부담을 원하지 않으며 현재의 역학구도에서 손해를 볼지도 모를 모험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도 현재는 안보문제를 압도하는 경제문제(IMF 구제금융)로 인해 조기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갑자기 봉괴될 경우 이를 수습하는 데 소요되는 기하학적인 통일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북한이 분쟁을 유발하면 경제위기(IMF)가 더욱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의 시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막연한 희망 및 기대치가 최소한 현재의 경제난(IMF)을 극복한 이후로 연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지역의 지정학적 여건과 전략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초강대국인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서구(EU) 등이 뒤쫓아가는 유동적인 과두체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세계 5강 중 4강이 접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아직도 냉전의 유산이 잔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4강간의 전략적 이해대립으로 인해 갈등

과 마찰이 심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들이 잡복되어 있다.²⁾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건설적인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을 통해 양국간의 갈등 및 마찰을 조정하려 한다. 특히 최근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외면적으로 보여 주었다.³⁾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경계론이 불식된 것은 아니며, 중국 또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멀쳐 버린 것이 아니다.⁴⁾ 만일 미국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을 방

- 2) 헨팅تون(Samuel Huntington)은 기독교 문명권과 유교문명권 및 이슬람문명권 간의 충돌 가능성을 예측했다. 후리드만과 레바드(George Friedman & Lebard)는 일본이 여타 정상적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군사비를 10년간 지출할 경우 어떤 군사력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표명했다. 케네디(Paul Kennedy)는 세계의 경제중심이 아·태지역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간의 마찰/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진단했다. 디브(Paul Dibb)는 냉전이후 동아시아가 가장 불안정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즉 대만해협, 한반도, 일본 북방 4개 도서, 스프래틀리군도, 파라셀(Paracel)군도 등 분쟁 가능성이 잡복되어 있고, 과거 역사의 수모와 창피를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 3)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97년 10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98년 6월말(6. 27~7. 3) 중국을 방문했다. 이때 양국은 미사일 상호 조준해제 등 47개항을 합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4) 중국은 1995년 4월 미국과 일본이 '신 안보공동선언'을 채택, 일본의 지역적 안보역할 기능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했던 것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러시아와 「21세기 전략적 동반관계」를 발전시켰다. '96년 4월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서 양국간에 Hotline 설치, 핵발전소 건설 협력 등을 포함한 14개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민의 입장에서 중국 위협론은 다음과 같은 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가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1인당 생산량이 '77~'87년 기간중 2배, GNP는 '78~'85년 기간중 4배 증가하였다. 세계은행(IBRD)의 구매력지수(PPI) 평가에 의하면 '94년 국가총생산(GNP)이 미국에 이어 2위이고, '95년 RAND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능가, 세계 제1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중국 11.3조불, 미국 10.7조불, 일본 4.5조불, 인도 3.7조불). 미국대원의 설리반(Brian Sullivan) 박사는 중국이 지난 12년간 두 자리 숫자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2020년경에는 미국경제(GDP)의 15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해하거나, 중국이 무력으로 ‘하나의 중국정책’을 강행(대만 침공)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아시아지역에 ‘신 냉전체제’가 형성될지도 모른다.⁵⁾

그리고 미국이 신보수주의의 득세로 인해 ‘신고립주의’를 채택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중일간의 지역 패권경쟁이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미일간의 경제전쟁, 일러간의 북방도서 분쟁,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다자간의 영유권 분쟁 등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간에 갈등 또는 대결관계가 형성되거나,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의 안보 및 통일구도와 국가발전 전략은 근원적으로 재설계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 21세기에는 지식·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국은 미국을 필두로 하여 지식·정보 중심의 새로운 전쟁방법 및 수단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표1 참조)

주지의 사실로서 미국은 지난 '91년 걸프전에서 단서를 잡고 21세기형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세계 최선두의 위치에서 열심히 개척해 나가고 있다.⁶⁾ 아마도 2010~20년경에는 제1단계의

둘째, 총괄적 국력면에서 중국이 일본과 독일을 능가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정치력, 문화력, 국토, 인구 등 총체적 국력면에서 향후 20년내 미국 다음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유교문화권의 제국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속하는 제국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중국은 19세기 이래 서구 열강으로 받은 역사적 수모와 치욕을 청산하고 싶은 의욕이 강하며, 홍콩에 이어 마카오, 대만을 통일하고 동남아 화교경제권과 연결시 그 위력을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Yan Xuetong, “China’s Rise in the Eyes of Western Observers”,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 No. 12)

5) 중국은 '97년 8월 홍콩반환에 이어 '99년 12월 마카오를 환원하고, 2010~20년경에는 대만을 통합, 전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6)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MTR: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은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이 군사체계를 만들 경우, 작전 운용개념과 조직편성도 상호 결합적으로 변혁시켜서 전쟁의 성격과 그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군사혁신은 군사력의 전투 잡

〈표 1〉

정보사회의 전쟁양상

| 사회변화 |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 |
|-------|--------------|------------------------------|--------------------------------|
| 전쟁 양상 | 육체·백병전 | 기계·화학전 | 정보·지식전 |
| 전장 공간 | 1차원(지상) | 3차원(지·해·공) | 4차원(우주) |
| 전력 구조 | 병력집약형(labor) | 자본집약형(capital) | 정보집약형(information) |
| 지휘 구조 | 장수(인물) 중심 구조 | 수직적·계층적 구조 |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 |
| 전투 형태 | 선형(linear) | 선형·비선형 (대부대, 집중) | 비선형(non-linear) (소부대, 분산) |
| 파괴·피해 | 노획·포로 | 대량파괴·대량살상 (massification) | 정밀파괴·소량피해 (demassification) |

정보기초의 신 전쟁개념 및 수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미국이 구상 및 실험중인 21세기 군사혁신(RMA)은 광역·장거리의 정밀감시(sensors)·통제(warnet)·타격(shooters) 복합체와 이에 부합된 작전운용개념 및 조직편성을 하나의 총체적 시스템 개념에서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산업시대의 전쟁개념 및 수단들을 일순간에 구식화·진부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정보공유의 디지털 전장(digitalized battlefield)을 개척하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미국의 전횡과 패권을 경계시하는 한반도 주변의 3국들도 21세기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군사혁신에 결코 등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의 3국이 러시아, 일본, 중국의 순서로 미국보다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모두 자국 실정에 걸맞는 군사혁신을 성취할 잠재력을 충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⁷⁾

7) 재력과 효율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켜서 과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불연속성(discontinuity)의 새로운 전쟁양상을 시현한다.(권태영·정춘일, 「선진국방의 지평」, 을지서적, 1998, 241~248쪽 참고)

7) 한반도 주변의 3국(일·중·러)의 군사혁신 잠재력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매

만일 한반도 주변 4국이 모두 21세기형 군사혁신을 통해 제6세대의 새로운 전쟁개념과 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⁸⁾ 한국만이 산업시대의 제4세대 전쟁개념과 수단에 연연하고 군사혁신에 지각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국가이익을 제대로 방호할 수 있을까? 한국은 현재 남북이 분단·대치되어 있고, 향후 통일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약소국’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 고유의 지정학적 불리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추가하여 이들 주변 4국들이 모두 21세기형 군사혁신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넷째, 21세기 미래사회가 고도로 민주화·다원화·산업화·도시화·지능화·정보화·국제화됨에 따라 사회의 생활양식, 의식구조 및 형태 등이 충격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난 '91년 걸프전에서와 같이 방송매체(CNN)를 통해 각 가정에서 직접 전황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식이 단 하나밖에 없는 핵가족화의 현상이 가일층 심화되어 인명손실이 큰 전투방식은 비록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하는 추세에 있다.

호프만(Stanley Hoffman)은 현대사회의 발전이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부

우 다양하다. RUSI의 Mary C. FitzGerald는 러시아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INSS의 Brian R. Sullivan 박사는 중국의 잠재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아 가면서 낮은 자세로 조용히 군사 혁신의 선택권(option)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8) 미래학자 Alvin Toffler는 인류문명사회가 제1물결의 농경사회와 제2물결의 산업사회를 거쳐 21세기에는 제3물결의 정보사회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했다. Toffler는 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이 변화되면 전쟁수행 개념 및 방식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참고 : 이규행 감역(앨빈 토플러), 「전쟁과 반전쟁」, 한국경제신문사, 1994, 50~53쪽).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이론가인 Slipchenko 장군은 지금까지 전쟁방식은 제5세대의 변혁을 거쳤고 앞으로 정보사회에서는 제6세대의 새로운 전쟁방식이 태동한다고 주장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 군대를 제4세대라고 한다면 다국적군(미군)은 제6세대 문턱에 들어선 군대라고 할 수 있다.(Vladimir I. Slipchenko, “A Russian Analysis of Warfare Leading to the Sixth Generation,” *Field Artillery*, October 1993, pp. 38~41 참고)

정적으로 분석하였다.⁹⁾ 즉, 풍요 속에서 자아의식이 높아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상업주의와 국제협업주의가 증진되고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높아져서 역기능 내지 비유용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인간의 영웅적 가치보다 상업적·편의적 가치가 선호되어 국가지향적 봉사정신이 약화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의식 및 가치의 변화는 사회의 일부인 ‘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① 군의 신비주의, 비밀주의 내지 성역주의가 약화 내지 부정받게 되고, ② 군을 민주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다한 직업들 중의 하나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③ 시민들은 군의 전통적인 집단주의 행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군이 민주·다원사회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가치, 그리고 개성을 이해해 주기를 희망할 것이며, ④ 군 운용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군의 비리, 비효율성 및 비경제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군은 사회라는 거대한 모체(母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추세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군이 지휘통솔, 병영생활, 교육훈련, 전장심리 등 인적 자원(human capital)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인력의 개발과 유지 방책을 준비해야 됨을 의미한다.

다섯째, 경제 실리적 이해관계가 안보문제를 압도하는 양상이 노정되어 군사비를 축소하자는 사회적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백기를 든 이후 세계질서의 중심은 정치-군사(high politics)에서 경제-기술(low politics)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 소연방의 와해는 군사를 경제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군사가 스스로 붕괴·소멸된다는 것을 전 인류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 국가의 근원적인 힘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정치·군사력에 있다기보다는 내실적인 경제·기술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한경쟁시대(WTO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9) Stanley Hoffman, “The Acceptability of Military Forces in Modern Society,” *Adelphi Papers*, IISS, 1973, pp. 3~5.

아와 같은 대전환기에 한국은 지금 ‘국가 부도사태’에 비견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부채가 무려 1,500~2,000억불이나 되고 기업의 총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며, 가계의 총체적인 빚이 GDP의 반을 초과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수혈받고 경제운용도 IMF가 정해 놓은 거시경제지표하에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탄력을 회복하려면 3~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한국이 안보, 사회, 외교, 통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대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시간적 ‘지연’을 불가피하게 강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군사비를 축소해서 이를 실업대책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 설정이다. 그러나, 군의 입장에서 군사비를 살펴보면, 한국은 군사비의 국민 부담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여 한때 GDP 대비 6%였던 군사비를 3% 수준으로 감소시켰다.¹⁰⁾ 이는 세계 평균치와 유사한 규모로서 현재 분쟁중에 있거나 대치상태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율, 물가 등의 급등현상을 고려할 때 ’98년 실질 군사비는 당초보다 15~20% 감소되었고, 이러한 감소규모는 중·장기 가용재원 판단에도 그대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군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경제적 및 생산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절감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존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안보 불확실 위험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예산축소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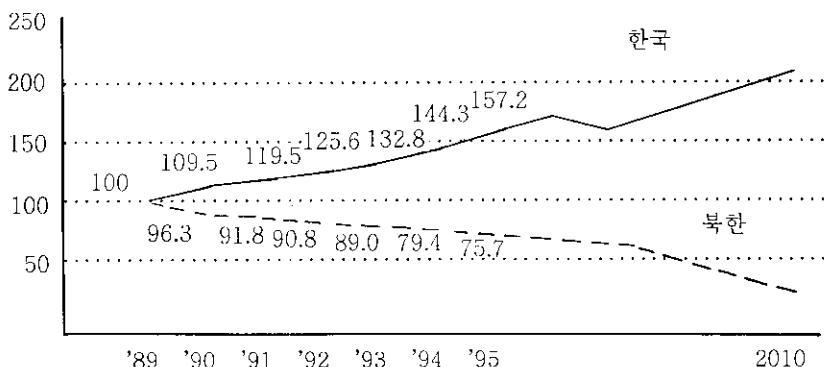
나. 기회적 전략환경 시나리오

다음 21세기 한반도 전략환경의 기회적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로 한다.

10) 군사비 감초추세: GDP대비 군사비는 80년 6% → 90년 3.7% → 95년 3.2%로 감소되었고, 정부재정 대비 군사비는 80년 36% → 90년 24.2% → 95년 21.5%로 감소되었다. 이 추세대로 감소된다면 2010년의 군사비는 GDP 대비 2.5% 수준, 정부재정 대비 1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점차 화해·협력구도로 변화되고 2010년경에는 통일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대에 이르러 8년간 연속해서 마이너스(minus) 경제성장을 해 왔다.¹¹⁾ 그리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북한 경제력은 '89년 대비 '95년에는 약 25%가 축소된 반면 한국은 57%나 신장되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남북간의 국력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일층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¹²⁾



〈그림 1〉 남북 경제력 격차 증가추세

- 1989년도 남북한 GNP(경상) : 한국 2,112억불, 북한 240억불(8.8배 우세)
- 1995년도 남북한 GNP(경상) : 한국 4,570억불, 북한 208억불(21.9배 우세)

11) 북한의 경제성장은 '90년 -3.7%, '91년 -5.2%, '92년 -7.6%, '93년 -4.3%, '94년 -1.7%, '95년 -4.6%, '96년 -3.7%, '97년 -6.8%를 기록했다. GDP는 '90년 231억불, '91년 229억불, '92년 211억불, '93년 205억불, '94년 212억불로 연속적으로 축소하였다.(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 결과」, 1992~1995판;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12) INSS, 1997 Strategic Assessment: Flashpoints and Force Structur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7, p. 99.

'89년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약 10배나 되고 '95년에는 약 20배나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0년경에는 한국의 경제위기(IMF) 극복 조정 기간을 계상하더라도 약 30배 이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경제파탄 상태에 있다. 만일 북한이 현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부의 특별지원이 없다면 국가 자체가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구조 및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경제시스템은 중국과 같이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전환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감소시키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91년 합의한 「기본합의서」(화해·불가침·교류협력)를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통일로 가는 대장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기울어져 가는 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역량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울어져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 이유는, ① 북한경제의 약화로 신규전력의 창출이 어렵고 ② 과거 북한의 후원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군사지원이 대폭 감소 내지 중단되었으며, ③ 기 보유중인 전력(무기)의 노후화 및 구식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은 현 경제위기를 향후 3~5년 이내에 극복하고 2020년경에는 세계적 위상의 선진국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¹³⁾

아시아 경제는 21세기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이 과도기를 잘 넘기면 지난 20년 동안 발전해 오던 경제활력을 다시 찾고 2010~20년경에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변모하게 될 것이다.¹⁴⁾ 일본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기술대국이 되었고, 중국도 그 동

13) 1995년 재경원의 「신 경제 장기구상」에 의하면 우리 경제규모(GDP)가 2000년 세계 8위, 2010년 7~8위, 2020년 7위가 될 것으로 기획하였는데, IMF 충격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00년 세계 8위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2020년경 10위권 이내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4) 세계경제포럼(WEF)은 최근('98. 6. 5)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96년 20위, '97년 21위, '98년 19위로 평가했다. 동 보고서 자문이사회의 공동의장인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학 교수는 「'97년에

〈표 2〉 세계 속에서 본 한국의 경제 및 기술 가능성(2020년)

- GDP : '95년 4,560억불(세계 11위) → 2020년 선진권 진입
- 무역규모 : '95년 1,900억불(세계 13위) → 2020년 상위권 무역국
- 과학기술 : '95년 세계 13위 수준 → 2020년 선진 상위권
- 반도체, 조선, 가전, 섬유 등 : 2000년까지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 정보통신, 자동차, 신물질, 생물공학 등 : 2010년경 세계 최선두 위치 도달
- 소프트웨어, 정밀기계, 로봇, 컴퓨터, 원자력 등 : 2020년경 세계 선두수준 진입
- 우주, 항공, 해양, 에너지, 자원, 기초과학 등 : 2020년경 세계상위권 진입
- 초고속통신망 :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입하여 완성

안의 고도성장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경에는 세계 제2,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역동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앙적 위치(Be-Se-To)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와 같은 지경학적(geo-economics) 이점을 잘 활용하면 2020년경에는 〈표 2〉와 같이 세계 선진권의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¹⁵⁾

이와 같이 국력이 커지고 국가위상이 제고되면 남북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으며, 국력에 상응한 적정 군사비를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정치적인 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창출한 가장 홀륭한 제도임이 입증되었고, 이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 및 집단이 계속 확대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작은 정부, 높은 저축, 낮은 임금, 유연한 노동시장, 수출주도 성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경제적 봉괴를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98. 6. 6)

15) KDI, 「21세기 발전전략」(중앙일보, '96. 5. 7); 박선섭·김광식, 「산업정보사회 발전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 한국국방연구원, 1996; 통신개발연구원, 「초고속 정보통신 국가전략」, 1995 등을 참고하여 정리.

있다. 동아시아 지역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화’(democratization)가 가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헌팅تون(Samuel P. Huntington) 교수에 의하면 경제발전은 정치체제도 개방·민주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약 40개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변환되었는바, 장차 가장 유망한 민주화 전환 가능 지역이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라고 지목하였다.¹⁶⁾ 필리핀, 대만에 이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도 민주화의 대장정을 밟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는 필연적인 발전과정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은 지난 50년간 세습 공산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으나, 한국은 이 기간중 ‘한강변의 경제 기적’, ‘88 스포츠 기적’, ‘북방외교 기적’을 성취한 데 이어서 ‘민주화 기적’을 창출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에서 선진형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자유(freedom), 공정성(fairness), 경쟁성(competitiveness), 비판문화 등에 있어서 제한성 내지 미숙성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으로 발전·성숙하게 되고, 이 힘이 국력성장과 통일성취(북한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생명을 바쳐 가면서 수호해야 될 명확한 ‘참 가치’를 제시해 주는 등대이다. 군이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창의성, 삶의 자유와 권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복지창달을 보호해 주는 정치이념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은 군의 궁지와 가치를 증대시키고, 사기를 한껏 제고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북한군이 싸워야 할 의욕과 명분을 상실시키게 할 것으로 예견된다.

넷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체계가 발전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16) Samuel P. Huntington, “After Twenty Years: The Future of the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Vol. 8, No. 4, October 1997, pp. 3~12.

주지의 사실로서 아시아 지역은 냉전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한반도, 북방 4개 도서, 대만해협, 스프래틀리군도 등 분쟁 잠재지역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CSCE와 같은 다자간 지역 안보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은 과거 침략과 수모의 역사적 감정을 아직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각기 상이하고 경제생활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동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체와 안보대화 노력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다자간 지역경제 및 안보기구가 발전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는 경제문제로 시발했으나 안보문제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참여범위를 확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도 다양하게 구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동북아 협력대화(NEACD), 동북아 안보대화(NEASeD),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이 현재 진행 또는 논의되고 있다.¹⁷⁾ 만일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과 상호 의존성을 배경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협상 등)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의 평화적 통일에도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역안보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 및 추진해서 ‘공동안보’ 협의, 다자간 공동훈련, 각종 군비통제 협상 등에 참여하는 한편 평화유지활동(PKO)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17)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RF: ASEAN Regional Forum,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Pacific, 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3. 21세기 한국군의 주요 과업과 발전방향

가. 한국군의 21세기 주요 과업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 전략환경에는 도전적 시나리오와 기회적 시나리오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여건 속에서 한국이 21세기에 생존과 번영, 그리고 통일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도전적 시나리오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방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기회적 시나리오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1세기 한국의 주요 국가전략 목표를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우선 우리 사회 내부의 내연적 갈등 및 마찰요소들을 제거, 국민적 대화합의 자유민주주의를 창달하여 ② 현재의 경제위기(IMF사태)를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지난날의 ‘경제기적’의 활력을 다시 찾아서, ③ 2020년경에는 선진권의 국력을 보유한 자유·민주·복지국가로 도약하며, ④ 이러한 국력을 배경으로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을 최소의 희생 및 부작용으로 성취하고, ⑤ 인류의 공존·공생·공영을 위해 기여하는 세계 속의 ‘先進中級國家’(advanced middle power)로 웅비하는 것이다.¹⁸⁾

만일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목표를 이와 같이 설정한다면 국방목표 및 과업도 당연히 이러한 국가목표를 뒷받침하도록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① 우선 북한의 여하한 전쟁도발도 확고하게 억제하고 자유·민주·개

18) 국가전략은 시대의 산물이다. 세종연구소의 연구백서,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전략」(1996년도 간행)에서는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목표를 ① 성숙한 민주주의국가의 완성, ② 민족의 평화적 통일, ③ 지속적인 번영을 통한 선진국 진입과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④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설정하였다.(13~16쪽 참고)

방체제를 확실히 수호하며, ② 경제난(IMF)을 극복하고 국력(경제)성장의 선진권 진입을 적·간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평화적 통일을 주도면밀하게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여 통일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④ 통일 이후의 안보 불확실성 위험에도 확고하게 대비하여 한국의 정당한 국가이익 추구를 후원, 보장하고, 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및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 ⑥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참된 민주군대로서 민주·개방·다원·정보사회의 발전과 조화된 ‘민·군 합일체’를 형성해야 될 것이다.

상기 과업들 중에서 제①항(북한의 전쟁도발 억제)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제까지 우리 군이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매우 복잡·다양하고 이중적이며 난해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과업도 매우 벅찬데, 전략적 환경은 미래의 안보 불확실성 위험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또한 북한의 통상(전술적 차원) 전력에 의한 위협 못지 않게 대량살상(전략적 차원) 전력에 의한 신종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나, 한국의 전략적 차원의 전력은 국제적으로 강력히 통제받고 있다. ③ 한국은 단·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전력증강을 도모하여야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화해·공존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여 군비통제 협상문제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④ 현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나가야 하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화해·협력·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성격, 규모 및 구조에 변화가 올 것임을 예상하여야 하며, ⑤ 군사대비태세에 있어서도 전면전, 국지도발, 침투, 테러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갑작스런 변혁, 붕괴 또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⑥ 특히 전력구조에 있어서 북한위협에 중점을 둘 경우 지상군 중심의 양적인 군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 미래 안보 불확실성 위험에 중점을 둘 경우 3군 균형의 질적인 군대를 지향해 나가야 하며, ⑦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군사비의 축소압력을 가급적 수용하여야 하나, 한국군의 군사적 임무, 역할 및 범위는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좀처럼 감소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군의 21세기 발전방향

21세기에는 앞서 분석한 전략환경의 도전적 및 기회적 요소와 이들 요소들의 복잡성·난해성·상충성·과도기성으로 인해 한국군의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어느 정도의 위험(risk)부담을 감수하더라도 21세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가능한 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만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오리무중(안개) 속에 가리워져 있게 되면 국방노력의 구심점이 없고 귀중한 국방자원이 낭비되기 쉬우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의 시대적 낙후성으로 인해 국방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다가오는 21세기 안보전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기본 발전방향을 개념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군사기획의 기본구도(paradigm)를 북한 위협에 확실히 대비하는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미래 안보 불확실성 위험도 충분히 고려한 국방태세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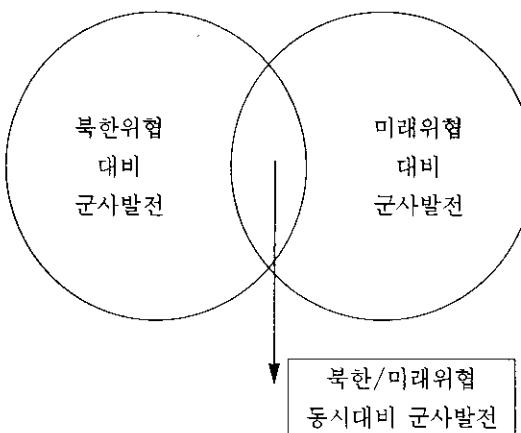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군이 유지해 온 군사력 발전의 패러다임은 사실상 북한위협에 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매우 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군사력이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다가오는

19) 한국은 지난 20여 년 간 ‘율곡’이란 별칭이 붙어 있는 전력증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방위전력’ 수준(상대 대비 70% 수준의 전력)은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목표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전력은 아직 이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력은 매우 긴요하고 필수적이다.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는 3만 7천 명에 불과하지만 첨단장비에 의한 전력은 엄청나다. 주한

21세기에는 한반도의 전략환경이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한편, 대주변 안보 불확실성 위험은 상대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대북 위주로 통상적 군사력을 발전시켜 나갈 경우, 그 전력은 미래 주변 안보 불확실성 위험에 대비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러나, 미래 안보 불확실성 위험에 대비하여 전력을 발전시키면 그 전력은 현존하는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에 확실하게 대처함은 물론, 평화통일을 후원·촉진·보장하는 데도 매우 유리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주요 신규전력(무기체계)을 새로이 기획·개발·생산해서 실전배치하려면 10~15년의 선도기간(lead time)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즈음에는 북한의 군사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남북관계가 화해·협력단계로 접어들 확률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 위협은 현존하는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전투준비태세’(present readiness)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신규 군사력의 창출은 ‘미래 안보 불확실성 위험’에 대비(future readiness)하여 21세기 선진형 국방태세를 지향해 나가되, <그림 2>와 같이 현존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동시적으로 필요한 전력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이 좋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력은 ① 대부분이 전술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차원이고, ② 노동집약적이기보다는 정보·기술집약적이며, ③ 후진형의 양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선진형의 질적 차원이다. ④ 특히 전장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유도무기, 유도탄 방호체계 등의 첨단 전자기술분야가 강조된 ‘작고도 당찬 군대’를 지향한 것이다.

미군의 전력을 대체하려면 1992년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투자비 32억불과 유지비 20억불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주한미군 자체만으로도 전쟁억지효과가 막강한데, 유사시에는 태평양지역의 엄청난 종원전력이 동원, 투입될 수 있다.(권태영·정춘일, 「선진국방의 지평」, 을지서적, 1998, 23~24쪽 참고)



〈그림 2〉 미래 군사력 발전 우선순위

둘째,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능력에 기초한 ‘자위 충분성의 거부적 정예군’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 나간다. 한국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주변국가들과 공존·공생·공영의 평화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변국가들과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번영·통일전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21세기 한반도 주변의 전략환경은 이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한국이 최악의 안보상황 시나리오하에서도 주권국가로서의 국가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면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21세기의 한국군은, ① 주변국가들이 결코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②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자국의 편의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는 결코 없는, ③ 충분히 작지만, 동시에 충분히 당찬, ④ ‘자위 충분성의 거부력’은 보유해야 된다.

주지의 사실로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강대국과 1대 1로 대응

되는 군사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 짹이 없는 일이다.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여건과 가용재원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미래의 한국군은 주변국보다 훨씬 작은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전력은 상대측의 부당한 침해를 능히 방위할 수 있는 '자위 충분성의 거부적 억제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거부적' 억제수준이라 함은 상대측이 모든 전력을 투입해서 싸우면 종국적으로 승리 할 수는 있으나 그 승리에 따르는 대가는 국가(國基)를 흔들 정도로 심대 하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스스로 삼가 내지 절제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준을 뜻한다. 21세기에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면 ①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책을 적극적으로 모색 할 수도 있고, ② 주변 세력간의 평화적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으며, ③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이익 추구의 자유스러운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위치는 '힘'이 없을 때는 외세에 의해 농락당하기 쉬우나, '힘'이 있을 경우에는 전방위(全方位)로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외부의 힘도 국익추구에 합치되도록 상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한민족에게 '한'(恨)스러운 역사를 안겨 준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힘'이 없어서 지정학적 유리점을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 '한'(恨)스럽다고 해야 옳은 역사적 해석이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도 없이 '이이제이'를 하겠다는 책략은 사실 자기 기만이요 허구일 뿐이다.

셋째, 21세기 한국군은 국제화·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의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현재 매우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21세기에는 선진 경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이처럼 제고되면 군사력도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자주화'되고 '선진화'되어야 국가발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군의 현 위상을 선진국(G7)과 비교해 보면 〈표 3〉에서 보듯이 한국군의 외형적인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나 내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후진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표 3) 한국과 선진국(G7)의 국방력 비교

| 구 分 | | G7 평균 | 한 국 | 비교(한/G7) |
|-------|----------------------|---------------|---------------|-----------------|
| 규 모 | 병력(천명) (병력/인구) | 474 (0.5%) | 633 (1.5%) | 1.34 (0.33%) |
| | 군사비(억불) (군사비/GDP) | 610 (2.6%) | 140 (3.5%) | 0.23 (0.75%) |
| 자 주 성 | 작전지휘권 | 독자성 유지 | 전시 위임 | |
| | 동맹의존도 | 일부 의존(일, 캐) | 매우 높음 | 취 약 |
| | 전략무기 | 보유/잠재력 | 불 보 유 | |
| 정 예 화 | 군사비/병력(천불) | 113 | 22 | 0.20 |
| | 지상병력/전차(명) | 140 | 236 | 1.69 |
| | 전투장비 효과도 (전투기) | 33 | 17 | 0.52 |
| 방산기술 | R&D비(억불) | 78 | 3.8 | 0.05 |
| | 항공우주기술 | 독자기술 | 공동생산 | 선진국의 52% |

한국군의 군사비는 1995년 기준 약 140억불로서 세계 9위이고, 병력은 약 65만 명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 실체는 ‘노동집약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병력 1인당 군사비는 한국이 선진국의 1/6, 전차 1대당 병력 수는 한국이 선진국의 2배, 전투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숙련도는 한국이 선진국의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개발 투자비는 한국이 선진국의 1/2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국방운영체제가 비효율적이고, 군사주권(작전통제권)의 행사도 제한되어 있다.²⁰⁾

이와 같은 군사력으로는 21세기 미래 안보 불확실시대에 국가이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군사력을 건설, 유지 및 운용하는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자주·선진화’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군사력의 선진화 필요성은 이미 걸프

20) 권태영·정춘일, 앞의 책, 을지서적, 1998, 43쪽

전에서 충분히 실증된 바 있다.²¹⁾ 이제 전쟁에서 수적 및 양적 개념은 퇴색해지고, 질적·정예의 군대가 승리를 좌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의 한국군은 ① 노동집약형의 군대에서 정보·기술집약형의 군대로 전환해 나가고, ② 지상군 중심의 양적 군대에서 지·해·공 균형의 질적 군대를 지향하며, ③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제고하여 점차 선진국 수준(5~10%)에 근접시켜 나가고, 하드웨어 중심의 군사기술 개발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④ 소수·정예·전문·직업주의에 의한 인력관리체계를 정착시키며, ⑤ 전력의 합동·통합적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지휘체제를 발전시키고, ⑥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의 생산성·경제성·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21세기 한국군은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적인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추구하여 정보·기술·과학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군사혁신(RMA)을 성취하고자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보 및 체계통합기술을 이용해서 전투공간에 대한 정보지식을 지배(dominant battlespace awareness)함으로써 일찍이 클라우제비츠(Clausewitz)가 언급한 전장의 ‘안개와 마찰’(fog and friction)을 감소시키고,²²⁾ 孫子兵法의 “知彼知己면 百戰不殆”²³⁾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이와 같이 새로운 군사혁신(RMA)에 의해 산업시대의 전쟁개념

21) 걸프전쟁은 역사상 공자(다국적군)가 최소의 희생(138명)으로, 최단기간 (43일 작전, 지상전투는 100시간) 내에 상대(이라크군)에게 최대손실(사상자만 10만, 포로 10만 이상, 기갑전투차량 4,500대)을 입히고, 결정적으로 완승한 가장 ‘스마트’한 전쟁이었다.(DoD,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 Final Report to Congress, April 1992* 참고)

22)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Peter Paret and Michael Howa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117~121.

23) Sun Tzu, *Art of War*, translated by Ralph D. Sawyer, Westview Press, 1994, p. 135.

과 방식을 일순간에 구식화/진부화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주변의 3국(러시아, 일본,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이들 3개국도 ‘군사혁신’을 추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 군사독트린에 의해 2005년까지 현행 5군체제를 3군체제(전략+방공+공군, 해군, 일반군)로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군 운용의 합동 및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와 각종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분야(인공위성, 조기경보/감시, C3I, 크루즈 미사일 등 정밀 타격무기 등)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아시아 제1의 해·공군력을 확보하고, ‘핵 선택권’(nuclear option)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 전자, 항공 우주기술 등을 이용해서 ‘군사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RMA option)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은 사실 미국의 방위분담 요구를 등에 업고 “有事法制”를 통해 정치·군사 대국화를 조용하고 낮은 자세로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국은 유사한 전략환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좋은 귀감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한국적 군사혁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① 핵무정후전략(핵탄두 100기 보유 추정)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② 첨단 정찰·감시체계(Opeq 정찰위성, Phalcon 조기경보통제기, UAV/RPV 등)와 ③ 우수한 정밀타격체계(Jerico-I / II 탄도미사일, LANCE, 각종 PGMs 등)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미국과 협력하여 유도탄 방호체계(Arrow)도 개발·시험중에 있다. 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⑥ 통합군제도와 ⑦ ‘시민군’에 의한 급속 동원전개체제를 발전시켰으며, ⑧ 국토의 협소성과 짧은 종심, 그리고 내선상에 위치한 특징을 고려하여 ‘신 전격전교리’와 ‘적지 전장확대개념’을 채택하여 6차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연전연승의 신화를 창출하였다. 이렇게 당찬 이스라엘이지만 국력은 한국보다 훨씬 작다(인구 : 1/8, 영토 : 1/5, 상비군 : 1/4, 군사비 : 2/3 수준). 두 나라가 지난 50년간 사활을 걸고 발전시켜 온 군사력의 실존능력과 운용 효율성은 이

스라엘이 한국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여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서 국지형의 ‘군사혁신’(RMA)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21세기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① 약 30~50명 정도의 우수한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 군사혁신 개념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② 각군본부 이상 상위조직에 ‘군사과학/정보자문관’을 설치하며, ③ 전장감시·지휘통제(C4ISR) 분야를 마스터플랜하에 집중적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④ 국방연구개발비를 대폭 증액시키고, ⑤ 민·군 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연구개발정책을 발전시키며, ⑥ 미래 정보·마비전에 대비하여 소수의 정예자원으로 ‘사이버전’ 연구팀을 편성한다. 그리고 ⑦ 군의 각급 교육과정을 통해 ‘21세기 군사혁신’의 개념을 주지시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²⁵⁾

다섯째, 21세기 한국군은 운영체제의 과감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을 통해 적은 자원으로도 큰 전투력을 창출 및 발휘할 수 있는 경제군·능률군·효율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하심(Hashim) 박사는, “후진국의 군대는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국방자원을 조직화하는 관리능력이 미흡하여 전투력을 생성·발휘하는 데 ‘효과성’이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은 군대 규모는 작지만 ‘중복’된 부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성과 능률성이 매우 높다.”라고 군대의 후진적 특성을 밝힌 바 있다.²⁶⁾

군사력은 크게 유형적 요소(부대, 병력, 장비, 시설 등)와 무형적 요소

24) 권태영, “군개혁의 모델, 이스라엘군,”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1998. 6. 8), 2~13쪽.

25) 권태영·정춘일, 앞의 책, 277쪽.

26) 권태영·안병성·신범철, 「미국의 정부 재창조 개혁과 우리의 국방운영혁신 개념」, 한국국방연구원, 1998, 126쪽.

(전략, 제도, 체제, 사기, 기강 등)로 구성된다. 전투력을 발휘할 때 유형적 요소는 ‘더하기(+)’ 효과를 주지만 무형적 요소는 ‘곱하기(×)’의 효과를 미친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경우, 유형전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무형전력이 ‘영(zero)’이면 전체 전투력의 발휘효과도 ‘영(zero)’이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형적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재원(예산)이 소요되지만, 무형적 요소는 올바른 사명감과 굳건한 의지, 그리고 탁월한 운영능력만 있으면 재원(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서도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유리점이 있다. 과거 전사를 회고해 보면, 군사운영체제가 상대보다 우월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이 놓은 군사천재인 구스타부스 아돌푸스(Gustavus Adolphus)의 ‘분산/산병’대형, 나폴레옹의 ‘시민군’에 의한 ‘대군’(Grande Armee), 샤론포르스트(Sharonhorst)의 ‘일반참모제도’(General Staff System), 미국의 ‘공·지전투교리’와 ‘지원병제도’(Volunteer System), 이스라엘의 ‘신 전격전교리’, ‘통합군 지휘체계’, ‘나할-가드나제도’ 및 ‘정보군단’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한국군의 운영 혁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요구이다. ① 경제위기(IMF)로 인해 사회의 군사비 축소압력이 증대되는 추세이고, ② 경제성장의 둔화로 군사비의 외형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감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③ 군사비의 외형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율급등,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군사비는 대폭 감소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④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군사비 중에서 유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신규전력의 투자재원을 압박하게 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유지운영비, 그 중에서도 인건비의 비중을 대폭 낮추어야 하는데, 이는 곧 군 운영의 과감한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세기 한국군은 ① 상비인력(현역, 군무원 등)을 소수 정예·전문·직업주의로 육성, 확보하고 급속 동원 및 전개체제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② 계급 및 직급구조를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③ 군 조직의 ‘군살’(비만성)과 ‘허수’(중복성)를 과감하게 제거, 조직의

경제성,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④ 특히 중요한 것은 군 운영의 ‘합동성’(jointness)과 ‘통합성’(unification)을 강화해서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전투력 발휘효과를 대폭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⑤ 각종 국방운영규정 및 절차(국방기획관리제도, 무기획득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규정, 군수조달 및 계약제도, 회계 및 감사제도 등)를 간편·단순화시켜 번문욕례(red tape)를 제거하며, ⑥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행정관리, 의사 결정, 지휘통제 등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즉, 국방관리 정보체계(DMIS), 국방의사결정지원시스템(DDSS), 전자상거래(CALS), 군수 C3I, 정보감시 및 지휘통제(war network)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조직과 인력을 축소시키면서 군 운용 및 전투력 발휘의 생산성은 극대화한다.²⁷⁾

4. 결 언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 또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벨(Daniel Bell)이 예측한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드러커(Peter Drucker)가 주장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post-capitalistic society), 토플러(Alvin Toffler)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내스비트(John Naisbitt)의 거시경향(Megatrend 2000), 케네디(Paul Kennedy)의 21세기 준비, 브레진스키(Z. Brezinski)의 기술전자사회(Technoelectronic Society) 등은 표현은 다르지만 실제 핵심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즉, 21세기는 정보 및 지식사회가 될 것이며, 이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온 산업사회와는 그 성격과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²⁸⁾

27) 권태영·안병성·신범철, 앞의 보고서, 118~125쪽 참고.

28) 박선섭·김광식, 「산업·정보사회 발전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 한

미래학자 토플러(Toffler)는 그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에서 인류의 경제생활 방식과 전쟁방식 간에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⁹⁾ 즉, 인류가 전쟁을 하는 방식은 인류가 일을 하는 방식을 반영해 온 것으로서(Throughout history, the way man and woman make war was reflected the way they work), 완전한 의미의 ‘군사혁명’(MR : Military Revolution)은 새로운 문명이 기존의 문명에 도전할 때 발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군사혁명(MR)을 체험했다. 하나는 제1물결 농업사회의 전쟁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제2물결 산업사회의 전쟁방식이었다. 이제 인류는 21세기 새로운 정보·지식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세 번째의 군사혁명(MR)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정보·지식이 부(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전장에서도 지식·정보가 군사력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된다. 즉, 전장에 대한 정보·지식을 지배적 내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측에게 승리가 보장된다. 이 때문에 오늘날 미국은 물론이고 서구의 선진 국가들(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등)과 한반도 주변국들(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의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발전계획에 거의 동일한 용어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예컨대, 신속배치, 정보전, 전자전, 정밀무기, 미사일방호, C3I, 합동작전, 소규모부대, 특수작전 등의 단어들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정보집약형’의 군대를 지향하고 있음이 뚜렷하다.³⁰⁾ 하드 킬(hard kill)의 전력은 축소하고 소프트 킬(soft kill)의 전력을 강화

국국방연구원, 1996, 49~53쪽. 다음 책자들을 참고: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73; Peter Drucker(이재규 역),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Alvin Toffler(이규행 감역), 「제3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사, 1991; John Naisbitt & Patric Aburdence(김홍기 역), 「메가트렌드 2000」, 한국경제신문사, 1990; Paul Kennedy(변도운·이일수 역), 「21세기 준비」, 한국경제신문사, 1993 등.

29) Alvin & Heidi Toffler, *War and Anti-war: Survival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Little, Brown & Company, 1993, pp. 3~5.

30) 앤빈 토플러(이규행 감역), 「전쟁과 반전쟁」, 한국경제신문사, 1994, 261쪽.

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3국은 미국이 지식·정보 중심의 21세기 ‘군사혁신’(RMA)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추적하고 사실상 미국을 밀접히 뒤쫓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 전략환경에서 한국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present readiness)하는 한편,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future readiness)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은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전투준비태세’ 차원에서 대응하고, 신규전력 증강은 미래 불확실성 위협에 대비하여 ‘선진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전력은 현시점에서 기획된다고 해도 향후 10~15년 후에야 실전배치될 것이므로 정보·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21세기 한국군이 ① 정보군·과학군·기술군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뜻하고, ② 경제군·효율군·능률군의 모습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③ 결과적으로 ‘자주화’되고 ‘선진화’된 군대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이 이와 같은 미래 발전개념에 따라 ① 자위 충분성의 ② 작지만 당찬, ③ 거부적 억제전력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 전력은 ①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물론, ② 평화적 통일을 지원·촉진·보장하고, ③ 정당한 국가이익의 추구를 보호할 수 있으며, ④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큰 업적을 이룩했다. 북한의 공산화 무력통일 기도를 저지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한강변의 경제기적’, ‘88 올림픽 기적’, ‘북방 외교 기적’, 그리고 ‘민주화 기적’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러한 과거 업적에 안주할 수 없는 처지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반세기

프랑스 육군참모총장 몽샬 장군은, “지상군은 10년 내에 17%가 감소될 것이나, 전자전(electronic war)에 전념하는 군대는 70%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50년)의 한반도 전략환경은 지난 반세기(50년)의 것과 비교할 때 성격, 본질 및 차원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전이며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이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설계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선진국방태세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만 영광의 월계관을 선사한다.

방위전략의 재조명

온 창 일
(육군사관학교 교수)

1. 국가방위와 방위정책 및 전략
2. 국가 방위전략의 실제와 실태
3. 한국의 방위전략과 태세
4.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방위전략과 태세 및 능력

1. 국가방위와 방위정책 및 전략

정치집단의 하나로 지구상에 존재해 온 국가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국의 실존적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제일의 정책으로 삼기 마련이다. 실존적 생존의 보장이란 국가의 실체적 보존은 물론, 국가 체제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의 보존까지를 망라하여 포괄한다. 국가의 실존적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국가방위요, 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방위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방위정책에서 설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과 방책을 효율적으로 구사하는 책략이 바로 방위전략이라고 규정하여 정의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방위정책과 전략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여 국가의 실체를 보존하고, 체제를

보전하며, 이익을 증진시켜 국가적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방책을 강구한다.

그러나 국가적 생존의 보장이라는 개별 국가들의 정책은 항상 주어진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유지적인 성질의 것만은 아니다. 주어진 현상이 국가의 적절한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현상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국가가 나타날 수 있다. 현상을 변경하려는 국가 혹은 국가군(國家群)이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할 경우, 국가들 사이에는 갈등과 충돌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외부적 위협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처방책 수립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에 국가는 외부적 위협에 대한 자체 방위정책 및 전략의 수립과 이의 현실적 보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 국가방위는 주로 국가의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해서 자국의 실체와 영역을 보존하는 대책의 수립과 수단의 운용에 중점이 주어졌다. 과거 절대 왕조국가들은 자국의 보존상태를 더욱 강하게 유지하려는 방편의 하나로 영토와 영향력의 확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들 국가 자체가 상호간 위협의 근원을 제공하였다. 이를 국가들은 서로 충돌하여 상호 전쟁상태에까지 돌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또한 식민지의 확보라는 군사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택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위협 근원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은 결국 “생활권의 확보(lebensraum)”나 “대동아 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건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독일과 일본의 개전 구실이 되었고, 세계대전을 치르고서야 정책으로서의 명분적, 현실적 타당성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는 핵무기를 동원한 핵전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 군사적 위협은 무시해도 팬참을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적으로 지역내 패권국(hegemony state)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와 인접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현상 파괴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들이 존재하여, 전통

적인 의미에서 본 국가의 실체 보존이라는 국가방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의 실체 보존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방위 개념에 부가하여, 이른바 탈냉전 구조라고 지칭되어지는 현 국제정치 질서 아래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오늘의 국가들은 “국가 체제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방위를 위한 국가적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의 실체적 보존을 위한 전통적인 방위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책과 대처방식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체제의 보존을 보장하는 국가방위는 전통적인 의미의 방위와는 다른 면을 내포하고 있다. 내부 체제의 자생력의 손상이나 손실에서 오는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협의 근원이 국가 외부에만 있지 않고 내부에도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련이 러시아로 변한 역사적 과정과 동부 유럽의 붕괴현상은 국가방위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무엇이며, 이 내부적 위협이 어떻게 국가의 모습을 변질시키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국가는 자체의 존재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적 위협에 대한 대처까지도 포괄하는 국가 방위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위정책과 전략에 합당한 방위수단을 보유하도록 강요되어지고 있다.

국가 내·외부에서 비롯된 위협에 대처하는 비교적 소극적 의미에서의 국가방위와 더불어 오늘의 국가들은 자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가이익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증진하는 의미에서 본 국가방위와 이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가 많이 있다. 자국의 국력으로 국가적 존립을 보장함은 물론, 국가적 가치와 번영을 확실히 하고, 국가가 처한 지역적, 세계적 안보환경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방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책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국가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대국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국가들은 물론, 중·소 국가들도 전 세계적인 경쟁과 협조구조 속에서 자국들의 존립상태를 좀더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력에 걸맞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자국이 지향하는 가치의 보존과 증진을 위해서 대내·

외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국가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군사, 외교 정책 등으로 분화되어질 수 있는 국가안보 및 방위정책과 전략을 책정한다. 특히 군사정책은 군사력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군사전략의 기본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실체적 보존은 물론,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가용수단으로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국가의 안보 및 방위 정책과 전략의 현실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 전략의 적응과 조정을 부단하게 실시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¹⁾

이와 같이 국가방위를 위한 정책과 전략은 국가적 실체의 보존은 물론, 국가의 체제의 보장과 가치체계와 이익의 증진이라는 것까지를 포괄하여 수립되어진다. 따라서 오늘의 국가는 자국의 방위정책과 전략의 현실적 타당성을 유지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넓은 의미의 개념에서 정의된 국가방위에 동원되는 수단은 국력의 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다. 국가의 역량은 국토의 크기나 형태, 인적, 물적 자원과 같이 유형적인 형태의 것은 물론, 지적, 관리적 차원의 자원과 같은 무형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까지 망라하여 포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국력은 국토의 크기와 형상 같은 고정적 요소,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물량적인 요소와 정치력, 외교력, 행정력과 같은 지성적인 요소까지 국가가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보유한 모든 역량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국가방위에 동원되는 수단은 외부의 위협의 발생을 제거하거나 위협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평시에 담당할 국가의 외교력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군사력과 경제력등의 국력, 외부의 위협이 현재화되었을 때 이를 신속히 무효화시켜 안정을 회

1) Daniel J. Kaufman, et al ed., *U. S. National Security: A Framework for Analysis* (Lexington, Mass., D. C. Health and Company, 1985), pp. 3~26.

복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군사력과 이의 보유 및 운용을 가능하게 만든 경제력, 정치력 등의 국력, 그리고 내부적인 위협요소의 발생이나 외부 위협과의 연결을 막아 주는 정치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 행정력 등의 국력, 그리고 국가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현재적, 잠재적 국력 등 국가가 보유한 역량의 전부를 포괄한다. 다만, 국가가 처한 위협의 형태와 상태,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의 성질에 따라서 동원되는 국력의 부문별 우선순위가 바뀔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별 국력요소의 평시 구비와 위기시 사용은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로 얹혀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의미의 방위정책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의미에서 본 국가방위의 개념과 수단을 개괄해야 할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의된 국가방위는 사실상 국가의 외형적 실체 보존을 전제로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정의된 국가방위와 방위수단으로서 국토의 크기와 양상을 고려한 군사력과 군사적 태세 및 전략을 논의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외부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적 실체를 보존하기 위한 방위정책과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떤 종류의 군사력을 얼마만큼 보유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하여 국가를 내부의 위협이나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전략이다. 군사력의 종류와 규모는 국가체제의 자생력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무효화시키려는 국가적 정책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 수준은 바로 그 국가가 처한 전략적 환경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역할 및 국가가 담당할 수 있는 국력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질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력에 걸맞고, 주어진 역할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군사력을 보유, 운용하여 국가 내부 위협의 근원적 발생을 억제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방위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만이 국가적 실체를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다.

국가의 군사력은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전략예비전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상에서 행해지는 침공의 저지, 지연, 그리고 역습을 거친 공격 등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상전력과 해상의 침투, 상륙의 저지는 물론,

해안초계, 제해권 확보, 지상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전력, 그리고 조기경보, 제공권 확보, 전략 및 전술 폭격, 그리고 지상작전 지원 등을 담당할 공중전력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가가 필요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임무수행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예비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 주변국의 침공 억제와 견제를 위한 작전수행을 전제로 한 예비전력은 상정된 임무에 따라 규모와 종류 면에서 다양하여, 전략적 목표의 공격, 주요 지점의 장악, 후방 교란과 기타 필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시에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군사력은 현재적, 잠재적 위협의 수준과 유형에 맞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류와 수준, 그리고 규모를 유지해야만 하나, 국력의 수용능력에 따른 제한 때문에 종류와 규모 및 수준 면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국의 군사역량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위협의 종류와 수준에 대해서는 양자간 연합전력이나 다자간 집단전력의 형성을 통한 보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내부 자생력의 손실로 인한 내부 위협의 발생소지를 제거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처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어 국가적 실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체 군사력은 물론, 동맹국과의 연합전력을 형성하거나 집단 안보체제 속에서의 집단전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뜻에서 국가의 군사력은 자국의 군사력과 그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연합 혹은 집단전력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전력의 형성이나 집단전력의 동원은 그 국가가 보유한 군사력이 상대국에 호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 그 형성과 동원이 더욱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이 지닌 군사력의 작전수행상 능력의 구비가 연합 및 집단전력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 이 된다. 결국 국가의 군사력은 수행할 임무 면에서 볼 때, 자국이 지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바탕 위에 그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연합, 집단전력을 포함하여 계정(計定)할 수 있다.

국가의 실체 및 체제와 가치의 보존, 그리고 국가이익을 증진시켜 번영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국가방위는 국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실체를 보존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가 방위정책과 전략의 수립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위협이 가시화되었을 때 국가의 실체

를 보존하는 국력의 요소는 군사력이다. 국가가 보유해야 할 군사력의 종류와 규모는 국가의 실체 보존에 현재적, 잠재적 위협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국가의 국가 정책과 전략이 어떠한가 하는 데 따라 배열과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군사력의 규모와 종류는 다른 국력요소와 유기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보유수준과 정해진 수준의 유지는 다른 국력요소와의 결충과 조정과정을 거친 후에야 결정되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여기에 적정한 군사력의 보유를 위해서 위협의 분석에 근거한 대처방책과 수단을 모색하는 데 국가적 지혜의 결집과 국력의 동원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자국의 군사력만이 국가방위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현실과 국가방위를 위해서 연합전력의 형성이나 집단전력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곧 현실하고 강한 자국의 군사력의 보유라는 또 다른 현실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고려하여 방위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려 하고 있다.

2. 국가 방위전략의 실제와 실태

한 국가의 방위전략은 그 국가의 국력과 국가의 정책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내 및 세계적 차원의 정치, 전략적 역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불리었거나 불려지는 국가의 방위전략은 다분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과거 동·서 이념대립 질서에서 동쪽 진영의 맹주(盟主)적 역할을 수행했던 소련은 진영내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보다 진영의 결속(bloc's solidarity)을 더욱 중시하여, 체코나헝가리 등지에서 군사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민족주의적 이탈을 저지하였으며, 소련에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의 대여와 판매는 물론, 막대한 군사원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소련과 대립관계에 있을 당시의 미국이나 소련이 러시아로 변질된 후의 미국 역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방위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 소련의 팽창정책에 맞서기 위해 서 미국은 NATO, CENTO, SEATO 등의 집단적 방위체제를 구축했으며, 필요한 국가들과는 쌍무적인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서방 진영의 결속을 집단방위체제(collective defense regime)로 현실화함으로써 소련과 공산권의 팽창을 봉쇄하려 했다.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미국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현재에도 미국은 NATO를 확대하여 유럽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하에 10여 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아시아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10여 만의 미군을 지역 내에 배치해 놓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냉전적 대립구조 속에서 세계적인 질서를 자국 중심적으로 구축하려 했던 소련이나 미국, 그리고 탈냉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 등, 소위 강대국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국가는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세계적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의 국가 방위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현실적 보장을 위해서 다분히 공격적인 방위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미국은 지역적인 패권국의 출현이나 출현 기도를 어떻게 봉쇄하는가를 걸프전(The Gulf War, 1991)의 수행을 통해서 보여 주었고, 앞으로의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두 개의 지역분쟁을 승리로 마감하기 위하여 원-원 전략(Win-Win Strategy)을 수립해 놓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상유지를 위한 공격적 방위전략이 아닐 수 없다.

강대국은 이러한 공격적인 방위전략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의 전 부문의 군사력을 비교적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과거의 소련이나 현재의 미국이나 러시아는 핵 군사력에서부터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특수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전 분야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10,000개 정도씩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발수단도 지상, 해상, 공중발사 탄도탄, 장거리 폭격기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SALT II 체제 이후에도 양국은 각각 3,000~3,500개 정도의 핵탄두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놓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도 미국은 145만 정도, 러시아는 150만 정도로 축소하려 하고 있으나 축소된 군사력도 강력한 수준이다. 특수 군사력도 만만치 않아 대테러, 공수, 공정작전과 전략적

침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도 갖추고 있다. 양국은 또한 아직도 강력한 화생무기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화생무기 사용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대국의 방위전략은 다분히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²⁾

지역 내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군사적 중견국들의 방위전략은 제한적으로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치렀던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은 각각 유럽이나 아시아의 전략적인 균형유지에 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도 다양한 부문의 군사력을 만만치 않게 유지하고 있다. 전략, 전술핵 군사력은 물론, 비교적 규모가 큰 재래식 군사력과 기동군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와 중국 등은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체제가 자리를 잡기 전에 핵무기체계의 실질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고, 요즈음엔 남아시아의 인도까지 군사적 중견국 대열에 끼어 지역내 전략적 균형을 인도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정책의도로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수행하여 핵 강국 대열에 끼어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³⁾ 이러한 군사적

2) For U.S. defense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see, "Bottom-Up Review: Pentagon Charts Plans for Future Force Structure," September 1, 1993, provided by USIS in Seoul, Korea; U.S. Secretary of Defense, "Readiness at A Reasonable Cost," the statement to the Hous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February 8, 1995, revised and published in *Defense 95*, pp. 2~6;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signed by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John M. Shalikashvili, 1997; US Defense Secretary's Annual Report on Security(1998); For Russian defense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see, "Decree No. 1833: The Basic Provisions of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the Russian Security Council and President Boris Yeltsin on November 2, 1993, Special Report No. 1, *Jane's Intelligence Review* (January 1994).

3) “印, ‘核 주권’ 과시…주변국 긴장,” 동아일보, 1998. 5. 12; “중국 예상밖 무덤덤…‘속 챔’ 아리송,” 동아일보, 1998. 5. 14.

중견국들 역시 지역과 의도 면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방위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현실적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⁴⁾

국가방위 면에서 중·소국가라고 치칭되어질 수 있는 국가들은 자국이 지닌 본래적인 제한사항에 따라 다양한 방위전략과 태세 및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국가들은 국토와 인구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국민 총생산량(GDP)이나 국내 총생산량(GNP)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군사력의 규모와 종류 역시 제한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자연히 이들 국가들의 방위전략과 태세 설정에 현실적인 한계가 된다. 상대적으로 한정된 국토의 크기는 방위전략 면에서 기동과 분산의 융통성과 전략, 전술적 중심의 보유를 사실상 거부하며, 안적자원의 제한이나 국가적 경제력의 한계는 대규모의 군사력 유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국가들은 이들이 지닌 현실적 제한사항과 요소에 걸맞는 방위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다.⁵⁾

중·소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위전략과 태세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적극적 방어를 바탕으로 한 방위전략과 태세를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이 택하고 있는 이 전략과 태세는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는 예방전쟁(preventive war)까지도 사양하지 않는 방위전략이다. 아랍권의 대규모 공격을 국가 독립의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비교적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에서 비롯된 위협을 미리 상정하고, 이 위협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이를 무효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 아

4) See the armed force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in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7/98.

5) Klaus Knorr, "Constraints on the Defense of a small Country," CSS(Center for Strategic Studies) Paper No. 17, *The Defense of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Tel Aviv University, 1982), pp. 1~12.

합국의 하나인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여 전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적극적 방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주변의 아랍국이 군사력을 집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략적 우세를 확보하여 이스라엘의 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전략 및 태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이 합동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합동공격을 하더라도 이를 각개 격파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 그리고 태세를 유지할 필요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해 놓고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예방전쟁은 물론, 이라크의 원자 시설물까지도 선제 타격할 정도로 과감한 방위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현재는 100 ~ 200개의 핵탄두(nuclear warheads)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 아랍국, 특히 이라크의 화생무기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다.⁶⁾ 예방전쟁으로 치러진 6일전쟁의 전리품인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양보하고 이집트와 화해를 성사시킴으로써 주변 아랍국의 공조체제를 거의 무효화시킨 이스라엘은 이러한 정치적인 화해 몸짓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눈, 입에는 입”식의 응징과 보복의 개념에 입각한 방위전략과 태세, 그리고 능력을 보유하여 적극적 방어를 기반으로 한 방위전략과 태세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 방어를 상정한 방위전략과 태세를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주변국가들의 무력사용 유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어(nonprovocative defense)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위개념과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위개념은 비공세적(nonoffensive), 정당한(just), 수세적(defensive), 비도전적(nonprovocative)인 방어에 입각한 방위태세로서 주변국들에게 무력침공의 구실을 주지 않으면서 자국을 방어하겠다는 정책과 전략이다. 소극적 방어를 근간으로 한 이러한 방위전략과 태세는 스위스식의 전면적 방어(general defense), 스웨덴식의 총체적 방어(total

6) Rupert Cornwell, “Nuclear bombs back on world agenda,” *The Korea Herald*, May 16, 1998.

defense), 그리고 붕괴전 유고슬라비아의 전면적 인민방어(general people's defense) 개념에 입각한 국가의 보존정책과 전략으로 대별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스위스가 택한 전면적 방어개념은 스위스가 주변국의 전면적 무력침공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스위스는 자국을 지켜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립된 개념이다. 자국이 주변 강국의 침공을 사전이나 사후에 억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스위스는 침공을 저지할 수는 없으나, 침공군의 스위스 점령을 위한 공격작전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침공군 스스로 스위스 점령작전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방위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협약은 극히 소규모로 유지하면서 48시간 내에 650,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거의 상비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원 즉시 자신들이 수행할 임무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와 교량 및 주요 시설물은 중앙통제 하에 파괴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상 필요시에 이를 파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을 방어하고 침공군의 기동을 방해하며, 산악지형을 이용한 습격이나 제한된 공격작전을 수행하여 침공군의 스위스 점령을 가능하게 만들어 침공군을 격퇴함으로써 스위스를 방어하겠다는 개념이 스위스의 전면 방어전략이다. 스웨덴의 총체적 방어는 침공군의 침공 자체를 거부하는 작전과 공격작전을 방해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비재래식 공격에 대비한 지하 대피호 등을 준비하여 침공군의 침공작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개념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스웨덴은 비교적 많은 상비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자급률도 높이 유지하려 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역시 침공군의 유고 점령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침공군이 유고를 점령할 경우에 전 국민이 병사나 게릴라가 되어 침공군의 점령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점령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전면적 인민방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여 자국을 보존하려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소극적 방어전략은 국가적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제한요소를 극복하고 자국을 지키겠다는 정책을 구체화한 방책인 셈이다. 자국의 피해를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서 자국을 보

존하겠다는 개념의 방위정책과 전략이다.”⁷⁾

세 번째는 거부적(拒否的) 방어를 바탕으로 한 방위전략과 태세를 들 수 있다. 이 개념과 태세는 방어를 위해서 공격작전은 수행하지 않으나 국가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영공에 대한 침공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작전을 수행하여 자국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위대를 유지하여 해안초계, 공중감시, 상륙거부 등의 작전을 수행하여 본토를 방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아래 공중조기경보, 해안초계, 그리고 증강된 2개 사단의 상륙을 거부,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공중, 해상 및 지상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 거부작전조차도 최초 초동단계에서부터 미국의 전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가시화하고 미국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협력으로 일본의 방위를 확실히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국가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⁸⁾ 일본은 이와 같은 방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국의 방위력을 미국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문 전력이 있도록 갖추어 해안초계, 검색, 구조, 보급 등의 분야에서 미군의 작전에 도움을 주면서,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미군의 전력을 동원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

7) Harry B. Hollins, et al., *The Conquest of War: Alternative Strategies for Global Security*(Boulder, San Francisco, & London: Westview Press, 1989), pp. 78~88; Nils Gylden, “The National Defense Plann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The Swedish Experience,” CSS Paper No. 17, *op. cit.*, pp. 33~39; *The Military Balance*, 1997/98.

8) Excerpts from US-Japan security arrangements in “Outline for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from Fiscal Year 1995,” ado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on 28 November 1995, quoted in Motohide Hashimoto, “Security in Asia: Roles and tasks for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IPS Policy Paper 149E* (March 1996), p. 14, 15, 19; “U.S., Japan sign military support pact,” *The Korea Herald*, April 29, 1998. The pact would allow the Japanese Forces to jo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for U.S. military personnel, or to inspect foreign vessels off Japan during the emergencies in the regions that have been identified by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이 자국의 군사력은 물론, 미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미군의 소총까지 동원하여 외부의 침공을 거부함으로써 일본 본토와 영해 및 영공을 보존하려 하고 있다.

국가적 실체를 보존하고 정의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방위정책과 전략은 해당 국가의 국력요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수립되어져 있다. 세계적 차원의 균형유지와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는 강대국과 지역 내의 전략적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중견국의 방위전략과 태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소국가들의 방위태세는 적극적, 소극적, 그리고 거부적인 성격으로 다양하게 수립되어져 잠재적인 주변 강국들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 방위전략과 태세의 실제와 실태는 한국의 방위전략과 태세의 분석과 이의 수립에 실증적인 참고자료가 되기도 한다.

3. 한국의 방위전략과 태세

한국의 방위전략과 태세는 방어적이다. 한국은 1950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무력 침공을 자체 군사력만으로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3년간의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야 약간 변경된 전쟁 전의 상태를 회복하고 휴전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1950년에 치른 한국전쟁은 방어능력이 없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떠한가를 체험하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반도 전역은 폐허로 변했고,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는 필설(筆舌)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며,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갈라놓은 상호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지기만 했다. 전쟁이 개인과 민족에게 안겨 준 상처와 상흔은 아직도 아물지 않아 화해와 협력, 그리고 경쟁의 시대에도 한국과 북한은 냉전적 대립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또 다른 무력 침공과 이에 따른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정책의지를 방위전략에 반영해 놓고

있다.

한국군은 자유민주체제하의 한국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공으로부터 방어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원하며, 지역내 안정과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함”을 목표로 책정하고 있다.⁹⁾ 한국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공으로부터 방어한다는 목표는 북한의 위협과 무력 침공은 물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을 뜻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원한다는 목표는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억제를 통하여 안정을 유지하고, 안정적 기반 위에 민족의 재통합을 보장한다는 것을 지칭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목표는 지역내 주변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군사적으로도 지원하고 유엔을 통한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국군은 한국에 대해서 가해질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실효성을 제어, 제거하고, 지역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세계적인 평화 증진 노력에 동참한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구체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군은 한반도内外에서 군사력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 및 견제하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위태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이러한 방어적 목표 달성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1978년 이전에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자국의 방위를 거의 미국의 억제력에 의존할 정도였으며,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후에야 한국이 대북한 억제와 방어를 위해서 한 축의 전력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북한의 전력구조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래식 군사력만이 아닌 화생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개발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 단독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력개발과 유에는 많은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비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는 가장 신뢰성 있는 현실적인 수단과 방법은 비재래식 무기의 보유

9)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White Paper, 1997~1998*, pp. 15~17.

와 필요시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억제전략을 채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북 단독억제와 방어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국군은 해결하기 힘든 고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공격적 방어에 근거한 방위전략을 채택하기 어려운 전략 환경의 현실적인 제약과 자국 경제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북한의 전력에 대한 부분별 억제만이라도 확실히 보장할 전력을 우선 갖추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 대북한 전면적 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에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의 확보와 이의 실천적 운용은 건설한 한·미 연합전력의 형성을 의미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지금까지 형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력은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보병 5개 사단 10만 명 수준으로 한국전쟁을 치른 한국군은 670,000명의 상비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대전차 무기와 대공화기도 제법 갖추었고, 7척의 잠수함과 미사일 전함까지 보유한 해군력과 F-16과 F-5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하는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000,000 명이 넘는 상비군을 유지하고 잠수함도 26척, 수많은 전투기와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사용을 자신 있게 억제하고, 북한군의 무력 침공을 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를 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¹⁰⁾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연합전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평시에 미국의 억제력과 한국군의 전력으로 북한의 무력사용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의 일부를 차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이 미국의 국가이익 보호에 부합된다는 전제를 수용하고, 세계적으로 두 지역에서의 국지전을 동시에 승리로 마감한다는 원-원 전략(Win-Win Strategy)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나 동북아시아의 북한 같은 말썽꾸러기 국가(backlash states)들이 미국의 억제 의지를 잘못 읽고 승리에 대한 기대감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의도를 사전에

10) *The Military Balance*, 1997/98.

봉쇄하여 또 다른 한국전과 걸프전을 치르지 않기 위한 미국의 정책의지를 표현한 미국의 방위전략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현재의 막강한 군사력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북한의 무력사용을 억제하고, 필요시에 무력침공을 저지하려는 방위전략과 태세를 지니고 있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증편을 통한 첨가식 군사력 강화를 도모해 왔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전체적인 전력의 발휘에 필요한 전 부문의 균형적 군사력 강화보다는 단편적인 첨단 무기체계의 일부를 첨가하는 방식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문 전력요소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사용한 최신의 전차는 엄청난 연료를 소모하여 병참지원상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 전차를 지원하는 자주포병은 속도가 느려 포병 표적까지도 전차가 제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한 부문의 최신 무기체계가 다른 부문의 무기체계의 역할이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의 전투지원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통합적인 전력발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첨가식 군사력 강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요소간 불균형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전력요소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점은 지상, 해상, 공중전력 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육·해·공, 그리고 전략예비 전력의 보유 및 유지를 확고하게 할 필요도 있다.

한국군의 조직이나 지휘계통은 미군과의 협조를 위해서 미군과 대칭적인 개념으로 구축되어 온 점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의 작전수행보다는 해외 원정작전을 상정하여 수립된 미군의 조직 및 지휘계통과 한반도 내가 전장으로 국한되고,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한국군의 조직과 지휘계통과 단계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의 독자적인 대북억제 전략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조직이나 지휘계통 및 단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지휘계통 및 단계”로 간편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직은 단순하게, 지휘계통은 일사불란(一絲

不亂)하게, 지휘단계는 융통성 있게 유지하여 작전형태와 임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최고 지휘부에서 필요할 경우에 증강된 대대 규모의 특수임무부대도 편성하여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직 및 지휘계통상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융통성은 횡적인 병력의 보강이나 증원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만이 과거 한국전쟁시 낙동강 교두보 작전수행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군은 조직과 지휘계통 및 단계를 단순하고 융통성이 보장되며,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

4.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방위전략과 태세 및 능력

현재나 미래에 적합한 한국의 방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이 군사강국이 아니며, 어떤 면에서는 군사강국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려면, 우선 국토의 크기가 넓어야 하고 효율적인 핵무기 체계의 보유를 필요로 한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산개(散開)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군사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으며, 재래식 군사작전에서도 넓은 국토를 보유해야 전술적으로 기동공간을 활용하는 작전을 구사할 군사적 여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영토 면에서 군사강국이 되기 힘든 조건적 제한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군사적인 중견국도 아니다. 이 국가군(國家群) 역시 최소한 핵 군사력을 이미 보유하여 지역내 전략적 균형요소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이 핵 군사력의 보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으나 핵 군사력의 보유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은 군사적인 중견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와 미래의 방위전략과 태세를 수립함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수준의 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먼저 상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태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전략상(geostrategic) 한국의 위치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수립된 한국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지전략적으로 한국은 당장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보장할 능력을 개발,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보장해야 할 국가적 목표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¹¹⁾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 가장 효율적이며, 또한 가장 경제적인 방위전략과 능력의 구비를 요구받고 있다. 간단히 말하여, 한국은 북한의 억제(deterrence)와 주변국의 견제(check)를 위한 방위전략을 수립하고 방위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중·소국가들의 방위전략과 태세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이 지향할 방위 개념 설정에 참고할 현실적이고 적절한 본보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채택하고 있는 적극적 방어에 기초한 방위전략은 한국이 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방전쟁과 선제공격까지를 포함한 개념에 입각한 방위전략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거나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은 스위스 등의 국가들처럼 소극적인 방어개념에 입각한 방위전략을 수립할 수도 없다. 과거 유엔군과 더불어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고 난 후에 남겨진 남한의 참상과 파괴상을 경험한 한국이 국토의 점령을 허용하는 식의 방위개념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거부적 방어에 입각한 국가방위를 택할 수밖에 없다. 침공과 점령을 거부하는 방어태세와 능력을 갖추는 정책과 전략이 바로 한국이 택할 방위개념인 셈이다. 이러한 방위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억제나 국력의 신장(military deterrence and power projection)보다는 군사적 견제와 국력의 보호(military

11) 국방문제와 복지 및 경제성장 문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Steve Chan and Alex Mintz ed., *Defense, welfare, and growth*(New York: Routledge, 1992) 참조.

check and power protection)에 중점을 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채택할 거부적 방어에 입각한 방위전략과 태세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과 조치를 요구한다. 한국은 먼저 최소한 북한의 재래식 무력사용을 억제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군사외적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의 현존 위협을 억제하고, 방지와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가해진 위협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¹²⁾ 최소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관해서 방지와 억제, 그리고 격퇴를 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춘 전략과 태세의 유지는 한국과 미국 간 군사적인 협조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미 군사협조 관계에서 한국의 전실한 위상을 유지하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주변 아랍국을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호혜적인 군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억제를 위해서 미국이 보유한 억제력의 일부를 차용하고, 통일 후에도 주변국의 군사적 모험과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 한국이 담당할 군사적 역할은 한국의 뜻이기 때문이다.

현존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장차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이 보유해야 할 군사력과 보완대책은 결코 가벼운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방어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력은 규모 면에서 북한 군사력의 2/3라고 말하고 있다. 이 계산은 미국의 남북전쟁(1861~65)시 링컨 대통령(Abraham Lincoln, 1809~1865)이

12) This concept of coping with post-Cold War threats was suggested in the former U.S.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s remarks in 1996, in which he mentioned a "policy for managing post-Cold War dangers" based on three elements: preventing new threats from emerging, deterring existing threats and defeating threats to US and allied interests "if prevention and deterrence fail," quoted in Graham H. Turbiville Jr.,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Military Review* (May-June 1997), pp. 5~10.

육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서한 중, “만약에 남군 60,000명이 북군 90,000명의 러취몬드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면 북군 40,000명으로 남군의 위성된 접근을 저지하고, 50,000명은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에서 구체화된 적이 있었다.¹³⁾ 무기와 장비의 수준이 비슷할 경우에 건실한 방어는 상대병력의 2/3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만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다.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작전 지휘체계와 조직, 국내 가용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연합전력의 대응능력,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전략과 전술의 운용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 역시 규모 면에서의 군사력 유지 못지 않게 중요한 군사력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통일 후의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균형축(strategic balancing hub)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침공의 거부전략에 입각한 자체 군사력과 더불어 미국의 억제력의 동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을 잘 알고 이에 대한 입장 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한국은 통일 전에는 북한의 억제, 통일 후에는 주변국의 견제를 위해서 필요한 군사력과 군사협조체제 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전력과 주변국의 침공 의도를 견제할 군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지상전력은 증강된 2개 사단씩으로 구성된 병력으로 실시되는 한 개 방향의 지상공격과 두 지역 에서 감행될 수 있는 상륙공격을 동시에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육지와 동·서 양 해안으로의 상륙작전을 상정하여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방향으로 약 5개 사단씩의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으며, 상륙 및 후방침투, 그리고 제한

13) Letter, Lincoln to General Halleck, September 19, 1863, quoted in T. N. Dupuy, *Understanding War: History and Theory of Combat*(New York: Paragon House Publishers, 1987), pp. 32~33.

14) “남북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김 대통령, *동아일보*, 1998. 4. 24; “Kim thanks U.S. troops for service,” *The Korea Herald*, May 25, 1998.

된 전략적 목표공격 등의 전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 추가로 3개 사단 정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해상전력은 조기경보, 해안초계 및 봉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2개의 연안함대와 1개의 기동함대의 유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 공중전력도 조기경보, 제공권 확보 및 유지, 전략폭격 임무수행을 위해서 3개 정도의 비행사단이 필요할 수 있다.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전략예비 전력의 규모는 장기적인 위협의 분석과 존재하는 위협의 수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한·미 연합전력의 동원수준과 한국이 지닌 예비전력의 동원 정도에 따라 규모와 조직 및 장비의 수준과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주변국이 한국을 침공하여 점령하기에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침공 기도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형성을 통하여 추가적인 견제와 억제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의 집단안보체제를 수립하는 조치를 구체화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위협의 제거와 제어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쌍무적 또는 집단적인 군비통제체제(arms control regime)를 구축하여 군사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태세와 전력, 그리고 조치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자국의 실체적 보존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균형축(balancing hub)으로서 한국이 담당할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위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군사외적 수단이다. 이러한 전략과 수단을 수립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은 국력의 전반적인 요소에 입각한 절충과 배분을 위해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데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日本軍國主義 形成過程에 대한 研究

李鍾學
(前 國防大學院 教授)

1. 머리말
2.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1832)
3. 몰트케의 參謀本部와 戰爭遂行
4. 日本의 參謀本部
5. 맷음말

1. 머리말

필자는 韓民族의 생존과 독립에 깊은 관련이 있는 倭·日本이 東西洋의 軍事理論을 어떻게 수용·발전시켜 왔는가에 대해 歷史的概觀을 한 바 있다.¹⁾

최근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1997)이라는 두툼한 책(531쪽)을 보내왔기에 이 분야를 연구한 著者에 대해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발간사에 “우리 민족사의 자주적인 전개를 굴절시킨 주된 요인이 …일본 군국주의 형성과 그 팽창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近代歷史를 이

1) 拙稿, 「日本軍事理論에 관한 研究」『國防研究』(서울: 國防大學院, 1993), pp. 27~61.

해하는 데에도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²⁾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부각시킨 내용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생각이 든 것은 일본 군국주의 형성에 관한 軍事理論的 論據는 거의 누락되어 있고 주로 制度中心으로 記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日帝(大日本帝國의 약칭으로 1868~1945년까지 지칭함)는 陸主海從의 體制로 敗亡 때까지 일관했고 또한 陸軍은 전적으로 독일의 軍事理論·制度를 수용했는데, 그것도 普墺·普佛戰爭의 승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승리를 이끌게 한 頭腦集團은 몰트케(1800~1891)의 참모본부였다. 몰트케를 위시한 軍幹부와 그의 후계자들은 한결같이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이론, 즉 『戰爭論』(1832)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에 승리했다고 주장했는데, 필자는 다음 사항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첫째 :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의 基本軍事理論은 무엇이며, 왜 難解하고 誤解가 많은가?

둘째 : 몰트케는 클라우제비츠의 基本軍事理論 가운데 무엇을 수용·파기했고 또한 왜 軍國主義³⁾로 흘러가게 했는가?

셋째 : 日本의 軍國主義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2) 朴榮濬,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3) • 독일에서는 1870년 이후, 군국주의(militarism)란 國家生活에 있어서 文民에 대한 軍人의支配, 軍事的 要求의 과도한 優越, 軍人的 思考·精神·理念 및 軍事的 價值尺度의 강조를 뜻하게 되었다. 한편 福祉와 文化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편으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과하고, 국가의 가장 훌륭한 인적 자원을 비생산적인 軍事服務에 소비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Alfred Vagts, *A History of Militar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 14)

• 전쟁을 평화보다도 국가 또는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군대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치·경제·외교·사회·교육·문화 등의 국민 생활의 全分野를 半恒久的으로 이 목적에 따르도록 組織하려는 主義.(防衛學會 編, 『國防用語辭典』, 東京: 朝雲新聞社, 1980, p. 85)

2.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1832)

가. 『戰爭論』 入門

클라우제비츠(1780~1831)의 『戰爭論』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名著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읽혀지고 있기보다는 引用文으로 더 애용되고 있다. 그가 1831년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일관된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아니라, 전연 觀點이 相異한 絶對戰爭과 現實戰爭의 混作으로 未完成作品⁴⁾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오해는 여기서 비롯되며, 거기다가 哲學的 用語의 抽象性으로 인한 난해함과 책의 분량이 많다는 것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클라우제비츠는 가장 오해를 초래한 說을 편 것은 인정해야 한다. 간접적인 칸트學徒인 그는 진정한 철학적 정신을 함양하지도 않은 채, 철학적 표현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보통 군인들의 思考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思考로 그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은 너무도 추상적이고 또 난해하여 그 결과 그들의 思考는 클라우제비츠가 의도한 방향과는 왕왕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 . .

클라우제비츠는 戰術 혹은 戰略에 대하여 새롭고 또한 눈부신 진보적 사상에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창조적이라 할까 力動의思想家라기보

4)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에 관한 著書·論文이 이 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혼란·오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컨대 마이클 헨델 『戰爭의 巨匠들—古典的 戰略思想』(1996)에 대한 書評(『國防論集』 1996년, 제36호, pp. 241~246) 및 “여기서 전쟁 그 자체는 절대적이고 궁극적 힘의 적용과 거의 동일시되며, 그리고 거기서는 유일한 수단을 전투 속에서 찾으며, 또 결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나, 항상 접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만을 思考하는 軍國上義의 명백한 推進者가 되는 것이다… 아무튼 독일과 프랑스의 군인들은, 클라우제비츠의 教示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無條件的·絕對的 戰爭에 지나지 않았다.”(Alfred Vagts, 前揭書, p. 185) 前자는 『戰爭論』의 混作·未完成作品임을 度外視했고, 후자는 클라우제비츠를 絶對戰爭論者로 誤解하고 있다.

다는 法典編纂의인 思想家였다.⁵⁾

- 클라우제비츠의 책은 그 통찰력이 대단히 심오하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후세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몇 권 안 되는 古典 중의 하나이다. 당연한 일로 『戰爭論』은 그 主題에 대해 직업적이든 또 다른 이유로 하여 강력한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만이 읽을 것이지만, 사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⁶⁾
- 『戰爭論』은 오늘날까지 출간된 戰爭과 戰爭遂行에 관한 연구 중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것으로 유일한 軍事古典이다.⁷⁾

『戰爭論』이 난해하다는 것은 定評이 있으며, 필자도 1957년 7월 졸즈가 英譯한 『戰爭論』(1943)⁸⁾을 처음 읽기 시작했으나, 제1권 1장도 모두 읽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다는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12세 때 프로이센軍에 入隊한 이래 나폴레옹 전쟁을 직접 체험했고, 오랫동안의 思索과 研究로, 그의 말을 빌면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책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또 전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면 한 번 이상 손에 들어도 후회하지 않는 책을 저술할 생각이다”⁹⁾고 하는 결의하에 晚年の 12년간 원고집필에 전념했으나 불행히 미완성으로 남겼다.

그의 論法, 思考方式, 認識手段, 研究方法 그리고 戰爭理論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수립하고자 당시의 獨逸觀念論 哲學을 기반으로 했다는 데 대해 異論은 없으리라. 그러나 독일 관념론 철학 그 자체가 이해하기 쉬운

5) B. H. Liddell Hart, *Strateg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4), pp. 352 ~353.

6) Bernard Brodie, ‘The Continuing Relevance of On War’ in Clausewitz,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50.

7) Herbert Rosinski, *The German Arm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6), p. 110.

8) Clausewitz, *ON WAR*, trans. by O. J. Matthijs Jolle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43).

9) クラウゼヴィッツ, 『戰爭論』上卷(東京: 岩波書店, 1933), p. 6.

학문은 아닌 것 같다. 예컨대 칸트는 그의『純粹理性批判』(1781)의 원고를 친구인 마르크스 헤르츠에게 보냈더니, 헤르츠는 그 원고를 반 정도 읽고서는, “이것을 모두 읽으려고 한다면 미칠 것 같다”면서 원고를返送했다고 한다.¹⁰⁾

클라우제비츠가 칸트의 유명한批判書의三部作이나 헤겔의『精神現象學』(1807) 등을 읽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는 전쟁의 본질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 관계 등에 관하여哲學的考察을 시도했던 것이다. 즉 전쟁의 본질이란 증오·적개심과 같은 원시적 폭력이요, 전쟁은 불확실성과 우연의 도박이며 또 한 전쟁은 정치의 도구라는 종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悟性(verstande)이 다루어야 하는 분야라 했다.¹¹⁾

전쟁의 준비·수행이라는 문제는 인간생활의 모든 양상을 포함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전쟁에 관한 종합적 이론, 즉精神(Geist)과實質(Gehalt)을 겸비한 체계적인 전쟁이론의 수립을 시도했던 클라우제비츠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학문분야를 구사했다. 『戰爭論』에는 철학, 역사, 정치이론, 심리학, 과학, 전략, 전술 등의 광범위한 지식이 내포되어 있다. 한두 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저서는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軍事學分野에서 『戰爭論』을 능가하는 저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나 난해한 원인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의 본질·기본사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 철학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철학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리라.

나. 戰爭의 定義와 用兵術

- ①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意志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폭력행위이다. … 폭력, 말하자면 불리적 폭력은 수단이고, 적에게 우리

10) Will Durant, *The Story of Philosoph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52), p. 254.

11) 클라우제비츠, 『戰爭論』(서울: 一潮閣, 1974), p. 26.

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의 저항력을 無力化해야 하며 이것이 모든 군사적 행위의 목표이다.¹²⁾

② 전술이란 전투에 있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략이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¹³⁾

③ 전쟁수행의 개개의 경우, 전쟁의 개념만 想起한다면,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가) 敵 戰鬪力의 격멸은 전쟁의 주요한 원리이며,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측에는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나) 敵 戰鬪力의 격멸은 주로 전투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다) 대규모의 전반적인 전투만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다.¹⁴⁾

④ 공격자는全力을 기울여 적의 重心에 총공격을 가해야 한다. 많은 경험에 의하면 적을 타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 敵側에서 軍이 重心을 이루는 경우에는 군을 분쇄한다.

(나) 敵國의 首都가 國家權力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政治團體 및 黨派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首都를 침공한다.

(다) 적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가 적보다 유력한 경우에는 그 동맹자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한다.

(라) 國民總武裝의 경우, 重心은 지도자 자신에게 있다.¹⁵⁾

①의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행위”라 했는데, 이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戰爭의 定義이다. 여기서 목적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 물리적 폭력, 즉 군사력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의 전투력을 無力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군사작전의 목표라는 것이다.

12) 上揭書, p. 2.

13) 上揭書, p. 78.

14) 上揭書, pp. 107~108.

15) 上揭書, pp. 202~203.

이 내용은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이론의 골격을 나타내고 있다. 즉 戰爭의 定義, 目的—전쟁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군사력이고, 군사작전의 목표가 명시되어 일련의 理論的 體系, 즉 목적·목표·수단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Ⅲ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②는 戰術·戰略의 定義인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도달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전술이란 전투에 있어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주로 승리의 획득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나 전략이란 전쟁의 목적, 즉 전쟁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戰鬪의 勝敗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목적의 달성 여부가 尺度가 된다.

③은 적을 無力化하기 위한 군사작전의 목표는 敵戰鬪力의 격멸을 지향해야 하고, 대규모의 主力戰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④는 군사작전의 목표는 적의 重心으로 지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重心(center of gravity)이란 물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質點系의 中心의 운동은 모든 質量이 이 점에 모여서 모든 外力이 이 점에 작용할 때의 한 質點의 운동과 같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힘과 운동 사이에 중심이 생겨 모든 것은 그 중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軍事作戰의 成敗는 敵의 重心에 대한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예컨대, 1991년 1월 걸프灣 전쟁에 있어서, 美首腦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전쟁목적이 이라크 후세인의 失脚 내지 去勢에 있었다면, 그들의 군사작전의 목표는 (개)가 아니라, (래)를 택해야 했으리라.

다. 絶對戰爭과 現實戰爭

클라우제비츠는 1827년 7월 10일의 手記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⑤ 지금 두 종류의 전쟁이라 했는데, 첫째는 적의 완전한 타도를 목표로 하는 전쟁이며, 이런 경우 국가로서 적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든가, 아니면 다만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쪽이 요구하는 대로 講和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을 문제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적국의 국경 부근에 있는 敵國土의 얼마간을 탈취하려는 전쟁이다. 그런데 이 경우 탈취한 지역을 그대로 영구히 소유하거나 아니면 講和 때의 유리한 교환물로 삼을 것인가를 문제로 삼을 것이 없다.

이 두 종류의 전쟁 사이에는 갖가지 중간적 단계가 있다. 그러나 兩者가 추구하는 목표가 전혀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兩者의 相容치 못하는 성질을 분명히 분리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전쟁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근본적 차이도 차이려니와, 그 밖에도 전쟁의 고찰에 있어서 역시 실제로 필요한 관점이 명백하고 또 정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즉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책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나 이 관점에 선다면 전쟁에 관한 고찰은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整然한 統一을 얻을 것이며, 또 모든 것은 쉽사리 해명될 수 있으리라.¹⁶⁾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적군의 타도·격멸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절대전쟁을 뜻하고, 둘째는 적국의 국경 부근의 영토를 조금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현실전쟁이라 하며, 그 사이에 여러 단계의 전쟁이 존재하지만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은 전연 相異한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전쟁이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오랜 戰爭體驗·戰爭史의 研究·分析 그리고 思索의 結晶으로 그의 전쟁이론의 골격이며 眞髓이다. 필자는 클라우제비츠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경위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나폴레옹이 출현하기 이전의 18세기의 유럽 국가들의 군대는 주로 傭

16) 클라우제비츠, 『戰爭論』, xvii~xviii.

兵制度에 의존하고 있어서 모집이 쉽지 않았고, 또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많은 병력을 보유할 수 없었다. 예컨대, 프레드릭 대왕도 한 전투에 2만 내지 4만 이상의 병력을 운용한 것은 드물었는데, 이것은 그가 보유하고 있었던 병력이 많지 않았다는 것과 직접 관련되었다.傭兵들은 戰鬪技術의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士氣가 별로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장수들은 전쟁에 있어서 自軍의 死傷者를 가능한 적게 하기 위해 敵軍과의 정면 충돌을 회피하는 데 노력했다. 그들의 전략목표는 적군의 타도·격멸이 아니라, 교묘한 機動을 통해 적군으로 하여금 전투를 하게 되면 패배한다는 궁지에 몰아넣어 항복 혹은 퇴각으로 유도해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출현은 전쟁양상을 전연 다르게 만들었다. 즉 전쟁은 全國民의 事業이 되었고 또한 戰爭의 本性, 즉 전쟁의 절대적 형태로 현저히 접근하게 되어, 전략목표는 적군의 타도·격멸이 되었다. 또한 交戰國은 어느 쪽이나 상대편을 타도하여 再起不能으로 만든 후에 비로소 전쟁행위를 중단하고 講和에 의하여 양편의 정치적 목적의 결말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클라우제비츠는 大尉(26세)로 1806년 나폴레옹 전쟁에 參戰하여 철저한 패배를 당해 프랑스軍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이 새로운 전투의 체험과 나폴레옹의 戰爭遂行方式을 연구하여 절대전쟁, 즉 적군의 타도·격멸을 목표로 하는 戰爭의 信奉者가 되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戰爭論』의 제2, 3, 4, 5, 6, 7권을 집필했으나, 오랫동안의 戰史研究와 思索의 결과 40代의 후반기에 이르러 현실전쟁, 즉 목표·수단 등의 制限戰爭의 신봉자로 변했다. 그는 현실전쟁의 관점에서 제8권을 집필했고, 완전한 것으로는 제1권 2장인 「전쟁이란 무엇인가?」 뿐이라고 手記에서 밝혔다.

前述한 바와 같이 『戰爭論』은 일관된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아니라, 전연 관점이 相異한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混作의 미완성 작품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오해는 여기서 유래하며, 또 그도 手記에서豫言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그가 現實戰爭論者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⑥ 적의 타도야말로 戰爭行動의 자연적인 목표이며, 철학적 견지에서 개념의 엄밀성을 기하려고 한다면 전쟁의 목표는 이것 이외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왜 철학적 개념에 의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가. 장벽은 전쟁이 국가 생활상 다수의 사물·힘·관계에 관련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전쟁은 원래 한 나라의 소수의 정치가 및 군인에 의해 發起되는 것이다…거기에는 반목과 알력이 생겨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반대자를 說服하는 데 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힘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不一致는 兩國의 어느 한 쪽에서도 생길 수 있고 혹은 쌍방에서 다 같이 생길 수도 있다. 아무튼 전쟁이 본래의 순수한 개념과는 다른 것, 즉 어중간한 것 또 內的 關聯을 결여한 것이 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¹⁷⁾
- ⑦ 전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각각 갖추고 있는 固有의 比重이나 이들 사이에 생기는 마찰, 인간정신이 가지는 自家撞着, 不明確 혹은 두려움마저도 일괄해서 부정하지 않고 각각의 있는 바를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들은 전쟁과 우리들이 전쟁에 미치는 형태와는 그때그때의 지배적인 思想·感情 및 事情에 의해 생긴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理論의 真實을 기하려고 한다면, 전쟁이 그 절대적 형태를 취한 경우에도, 즉 나폴레옹의 지휘하에 실시된 전쟁에서도 이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⑥은 전쟁이 순수한 개념의 절대전쟁과 相異한 현실전쟁, 즉 어정쩡한 內的 關聯을 결여한 전쟁이 된 원인을 밝히고 있고, ⑦은 그 원인의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전쟁사의 연구와 나폴레옹의 지휘하에 실시된 절대전쟁에 있어서도 이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는 “전쟁술에 있어서, 경험은 많은 개념적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¹⁹⁾는 관점에서 現實戰

17) 上揭書, pp. 178~179.

18) 上揭書, p. 180.

19) Clausewitz,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 164.

爭論者로 태도를 바꾸었으리라. 그에게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하는 직접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 ⑧ 전쟁의 성격이 확실하게 절대전쟁에 접근함에 따라 또 전쟁의 범위가
다수의 交戰國을 포괄하고 이런 여러 국가를 전쟁의 와중으로 끌어들임
으로써 전쟁에서의 여러 가지 일의 연관은 더욱더 긴밀해지며, 최초의
一步를 내어 디딜 때, 최후의一步를 이미 고려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리하여 전쟁은 한편에서는 그 강력함과 그本性을 중대시켰지만, 다른
편에 있어서는 거기서 얻는 利點을 다시 잊게 되었던 것이다.²⁰⁾

여기서 '利點'이란 무엇인가? 그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웃 나라와의 미래의 우호관계'를 뜻하는 것이라. 1806년 아우구스트 親王의 副官으로 出戰하여 함께 프랑스軍의 포로가 되었던 젊은 날의 체험은 그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나폴레옹軍의 프로이센 점령, 賠償金과 철저한 内政干渉, 그가 출입했던 왕궁은 완전히 勝者 나폴레옹의 것이 되어 있었고, 거기를 親王과 함께 포로로서 방문했을 때, 그는 강한 증오감을 품게 되었다.

그런데 1815년 7월, 이번에는 프로이센軍이 파리를 점령하고, 1億 프랑의 배상금, 10萬人分의 衣類, ⋯ 定數의 馬匹 등을 요구했다. 그는 파리 점령 직후의 분위기를 妻에게 냉정한 관찰과 비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즉 “우리들이 루이 18세나 프랑스人에 대해 어떠한 敵對觀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당신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陣中の 영국군은 軍稅를 올리거나 약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프랑스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뒷맛이 쓱쓸한 사건은 곧 종식되기를 열망합니다. 상대편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태도는 나의 뜻에 위배되며, 權益과 黨派性을 둘러싼 끝없는 투쟁은, 나의 이해 밖의 일입니다.”²¹⁾

그는 報復이 보복을 낳고, 역사 그 자체가 복수의 연쇄가 되는 것을 경

20) 클라우제비츠, 『戰爭論』, p. 185 및 p. 193.

21) 郷田 豊, 『クラウゼヴィッツの生涯』(東京: 日本工業新聞社, 1982), pp. 190 ~191.

계하여, “최초의一步를 내어 디딜 때, 최후의一步를 이미 고려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⑧고 경고했지만, 그 후의普佛戰爭, 제1·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반성해 봤을 때, 그의 卓見·深奧한思想은 이해되지 않았다. 그가 상대편을 완전히 타도·격멸시키는 絶對戰爭論者에서 現實戰爭論者로 태도를 바꾼 직접적 동기는 파리점령의 체험과 오랜 사색과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라. 政治와 戰爭과의 關係定立

現實戰爭論者가 된 그는 정치와 전쟁과의 관계정립을 이룩해야만 했다. 즉

⑨ 현실전쟁은 그 자체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체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전체라는 것은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는 전쟁을 도구로써 사용한다…실제의 전쟁은 정치 그 자체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정치적 관점을 군사적 관점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정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는 頭腦이고, 전쟁은 道具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그 반대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양자의 관계는 결국 군사적 관점을 정치적 관점에 종속시키지 않을 수 없다.²²⁾

이 내용(⑨)은 정치와 전쟁의 관계정립으로서 클라우제비츠의 핵심적 군사사상이다. 즉 정치는 전쟁의 主宰者이고, 전쟁은 그것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관점은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군사에 대한 政治優位思想의 근원이 유래하며, 또한 전쟁에 있어서 군사작전은 勝敗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여부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비롯되기도 한다.²³⁾

22) 클라우제비츠, 『戰爭論』, pp. 217~218. p. 220.

23) 1941년 12월 日軍의 하와이 진주灣 기습작전은 승리했으나 실패작이요, 1968년 1월 베트콩에 의한 越南舊正攻勢作戰은 패배했지만, 成功作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기준을 두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 (⑩) (가) 우리들은 전쟁이 여러 국가의 정부 및 국민 사이의 정치적 교섭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즉 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交戰하는 兩國間의 정치적 교섭은 단절하고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상태가 나타나며,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상태는 그 자신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 (나) 이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즉 전쟁은 정치적 교섭의 계속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정치적 계속에 있어서 다른 수단을 섞은 계속이라는 것이다. 지금 “정치적 교섭이란 다른 수단을 섞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동시에 다음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첫째, 정치적 교섭은 전쟁에 의하여 단절되는 것도 아니며, 또 전혀 별개의 것으로 轉化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전쟁에 있어서 일체의 사건이 더듬는 주요한 노선은 전쟁을 끊고 講和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계속되는 정치적 교섭의 要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 전쟁은 그 자신의 문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의 論理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²⁴⁾

국가 간의 외교적 교섭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여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정치가는 무대에서 물러나고, 이번에는 將帥가 무대에 등장하여 자유로이 활동하여 전쟁에서 적군을 타도·격멸시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가에 의해 휴전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장수들의 일반적 통념이었다(가). 예컨대 몰트케(차후 詳論함)와 맥아더 원수도 그러했다. 맥아더 원수는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어 1951년 4월 19일 上下兩院合同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일단 전쟁이 강요되면 이것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 보는 이외의 남은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결말이 없는 상태를 오래 끌어 가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代用品은 있을 수 없습니다.²⁵⁾

24) 클라우제비츠, 『戰爭論』, pp. 216~217.

25)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New York: McGraw-Hill, 1964), p. 404.

한편 클라우제비츠는 당시 군부 수뇌들의 일반적 통념에 반대했다. 즉 전쟁의 개시, 전쟁의 수행 그리고 강화에 이르기까지 정치가가 주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내),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독창적 그리고 심오한 견해라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며, 또한 ⑨의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은 스스로의 문법, 즉 적군의 타도·격멸을 지향하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전쟁의 궁극적 목적(전쟁에 의해 달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은 전쟁 이외의 정치에서 주어지는 종속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치가와 장수의 관계는 어떠해야만 할 것인가?

⑪ 만약 전쟁이 정치적 목적에 調和되고 또 정책이 수단인 전쟁을 채용하는 데 적응하고자 한다면, 정치가와 군인이 한 사람으로 겹비되지 않는 한, 건전한 방법은 최고사령관을 內閣의 一員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내각이 그의 주요한 활동의 局面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²⁶⁾

⑪의 내용은 군사적 결정·활동에 내각의 참여를 강조한 것이지, 정치적 결정에 군인의 참여를 강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戰爭論』(1832)의 再版이 1853년에 간행되었는데, 이때부터 다음과 같이 후반부를 改竄하였다. 즉 “최고의 장수를 內閣의 一員으로 만들어, 내각의 중요 안전에 참여한다.”²⁷⁾ 이 改竄은 그 후 독일과 일본에 있어서 군국주의의 대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의 軍事傳統을 잘 명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이 문제는 普墺·普佛戰爭의 수행과정의 戰例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6) Clausewitz, *ON WAR*(Princeton University Press), p. 608.

27) *ON WAR*(The Modern Library, 1943), p. 600.

3. 몰트케의 參謀本部와 戰爭遂行²⁸⁾

可視的 戰場에서 나폴레옹의 천재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의 한 계는 7~8만 정도였다. 이것을 넘어선 10만 이상 대병력의 지휘·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組織이 참모본부였다. 따라서 참모본부는 조직의 운용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며, 參謀本部의 要員을 參謀라 하고, 참모의 양성기관이 陸軍大學이었다.

프로이센에서의 참모본부의 기원은 1803년 兵站參謀部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陸軍省 제2부는 1817년에 정식으로 「참모부」(Generalstab)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825년 육군성에서 독립하여 참모본부가 되어 육군성의 並行機關이 되었다. 그러나 샤른홀스트나 구나이제나우가 바라던 帷幄上奏權, 즉 국왕에게 直接 上奏하는 지위는 부여되지 않고, 다만 陸軍大臣의 諮問에 응하는 정도였다.

참모본부의 본질적 업무는 가상 적국의 군대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가능한 군사사태의 발생을 검토하여, 거기에 대비한 動員·展開計劃을 수립하는 데 있었다. 部署는 三部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는 人事, 제2부는 組織·訓練·用兵·展開·動員計劃, 제3부는 技術問題, 특히 火器의 문제를 담당했고, 또한 陸地測量部·地誌部 그리고 戰史部가 부속되어 있었다.

몰트케는 1857년에 뜻하지 않게 참모총장 대리로 임명되었으며, 총인원 64명을 지휘하게 되었다. 다음해인 1858년에 정식으로 참모총장이 되었고, 그 다음해에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는 프로이센軍에 입대한 후, 한 大隊도 지휘한 경험이 없이, 즉 지휘계통의 경험을 거치지 않고 참모의

28) 아래 著書를 참고했다.

- 佐藤德太郎, 『近代西歐戰史』(東京: 原書房, 1974)
- 四手井綱正, 『戰爭史概論』(東京: 岩波書店, 1943)
- 林健太郎 外, 『ビスマルクとリンカーン』(東京: 人物往来社, 1967)
- 渡辺昇一, 『ドイツ參謀本部』(東京: 中央公論社, 1974)
- 中野登美雄, 『統帥權の獨立』(東京: 原書房, 1972)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것은 당시 프로이센軍에 있어서 軍團長이라는 지휘 계통의 지위가 높은 데 비해, 참모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普墺戰爭(1866) 때, 몰트케의 副署가 있는 작전명령을 받은 軍團長은 ‘몰트케가 누군가?’ 하고 질문할 정도였다. 몰트케는 참모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급히 서둘지 않았으며, 그의 권한 내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참모본부를 군의 두뇌·중심부로 육성·발전케 하는 데 성공했으니, 그것이 바로 普墺·普佛戰爭의 승리였다.

여기서 兩戰爭에 있어서 정치(비스마르크)와 군사(몰트케)의 관점에서 전쟁수행을 간략하게 概觀하고자 한다. 비스마르크 수상의 전쟁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은 프로이센 主導의 독일 통일이었다. 이를 위해 普墺戰爭의 정치적 목적은 오스트리아를 독일聯邦으로부터 驅逐하는 데 있었다. 괴니히그라츠 전투에 앞서 陸軍大臣 른은 몰트케 참모총장의 작전계획을 무시하고 부대 이동명령을 내렸다. 당시는 아직 작전계획의 작성까지는 참모총장의 임무이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陸軍大臣이었다. 몰트케는 이것을 알고 그와 같은 兵力分散은 全作戰計劃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국왕에게 上申했으며 육군대신의 명령을 취소케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동원된 군대에 대한 작전명령은 참모총장이 내리고, 동시에 육군대신에게 通告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전쟁 중, 몰트케에게는 작전에 관하여 국왕에게 직접 상주하는 지위, 즉 帷幄上奏權이 부여되었으며, 물론 이 上奏에는 비스마르크 수상이 同席하게끔 되어 있었다.

괴니히그라츠 전투에서 승리한 몰트케는 敗軍을 추격하여 적의 수도를 점령할 것을 주장했으나, 비스마르크는 단호히 반대하여,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더 이상 오스트리아에 셧기 어려운 굴욕을 준다는 것은 이 나라로 하여금 프랑스에 가담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전쟁 후에는 반드시 對佛戰爭이 있다. 이 對佛戰爭을 수행할 때, 오스트리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관대한 조건을 가지고 講和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비스마르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無割讓·無賠償의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결과는 다음의 普佛戰爭(1870~71)을 수행할 때 바라는 대

로의 결과를 가져왔다.

비스마르크는 보불전쟁에 있어서, 목적은 독일 통일이었지 프랑스의 정복이 아니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방해를 제거하는 정도로 프랑스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 이상으로 이웃 나라에 굴욕을 주어 영구히 원수가 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그래서 세당의 戰勝後, 곧바로 파리에 진격하지 않고 거기서 講和를 맺어야 한다는 腹案이었다. 그러나 몰트케와 군의 수뇌들은 처음부터 프랑스 주력군의 타도·파리점령을 목표로 작전계획·수행을 감행하는 동시에, 비스마르크에게는 외교교섭에 필요한軍事情報도 즉시 제공하지 않았다. 작전 중에 몰트케는 “臣은 폐하에게 今世紀에 있어서 최대의 승리를 경축합니다”고 국왕에게 말했다.

1871년 1월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프로이센 왕은 독일聯邦을 통일한 독일皇帝에 취임했지만, 그 후 제1·2차 세계대전의 경과와 프랑스·독일 양 국민의 복수의 連鎖를 생각했을 때,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의 심오함을 감지할 수 있으리라. 특히 그의 基本思想, 즉 군사에 대한 政治優位思想과 現實戰爭(制限戰爭)에 대해서 몰트케보다 비스마르크가 더 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몰트케는 작전에 의한 승리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작전의 상호관계 및 戰後의 이웃 나라와의 평화유지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많은 프로이센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몰트케 자신의 사상이 클라우제비츠의 영향을 받았고, 또 자신을 클라우제비츠의 弟子라고 記述했다… 몰트케는 抽象的思考에 의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戰爭의 文法家이며,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전쟁수행에 노력하였다… 그는 “일단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적 노력의 방향은 군인 스스로에 의해 명백히 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란 군사적으로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 한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다.²⁹⁾

몰트케는 다음과 같이 表明했다. 즉 “정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

29)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 297.

쟁을 사용한다. 정치는 전쟁의 開始와 終結에 결정적으로 개입한다. 따라서 정치는 전쟁의 경과 중에는 그것을 확대하거나 혹은 작은 성과로 만족하든가, 스스로의 요구를 보류한다. 전략은 언제나 주어진 수단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만이 노력할 경주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략은 정치에 가장 적합하게 협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의 목적에 대해서만이고, 행동에 있어서는 전연 정치로부터 독립해 있다.” 이 命題는 19세기 후반의 독일 참모본부의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클라우제비츠의 定式의 어떤 것에는 의식적으로 依據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는 명백한 괴리를 내포하고 있다. 전쟁 중의 기간에 있어서도 政治的 指導가 우선한다는 생각에 대해 異論을 제출하고 있다.³⁰⁾

몰트케의 견해에 의하면, 정치는 戰爭의 開始와 終結에는 개입하지만, 전쟁수행 중에는 스스로의 文法, 즉 敵主力軍의 타도·격멸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클라우제비츠의 ⑩(내)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즉 클라우제비츠의 基本思想은 첫째, 전쟁이란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둘째, 전쟁은 어떻게 戰勝하는가 하는 스스로의 문법은 가지고 있지만, 전쟁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은 정치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論理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⑩(다), 몰트케는 전쟁의 문법만 수용하고 그 외는 거부·파기했던 것이다.

몰트케의 보불전쟁의 수행과정을 보았을 때, 그는 클라우제비츠의 제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다만 전쟁의 문법, 즉 적군의 타도·격멸을 지향하는 用兵術을 수용했을 뿐이며, 帷幄上奏權은 그 후 統帥權의 독립으로 이어졌다. 獨逸軍部는 對內적으로 軍國主義와 反議會主義 方向으로, 對外적으로는 유럽의 強國 그리고 더 나아가서 世界의 強國으로 비약코자 했으나, 제1·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말았다.

30) ゲルハルト・リッター, 『政治と軍事』(東京: 新榮堂, 1985), pp. 90~91.

4. 日本의 參謀本部

가. 參謀本部의 誕生과 統帥權의 獨立

일본 육군의 戰略·戰術立案部門은 참모본부였다. 일본의 참모본부는 프로이센·독일 참모본부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프로이센 시대 아래, 독일 참모본부의 이름은 독일 육군을 대표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프로이센·독일을 대표하는 군인의 이름은 프로이센 참모본부의 「아버지」로 알려진 샤를홀스트 이후, 그 후계자 구나이제나우, 古典的인 名著『戰爭論』을 未定稿로 남겨 둔 채 구나이제나우의 참모장을 역임하다 痘死한 클라우제비츠,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을 실제의 戰場에서 체계적으로 구체화한 몰트케, 프랑스와 러시아와의 2正面作戰을 想定하여 유명한 슬리펜計劃의 완성자 슬리펜…일본의 육군은 독일 참모본부, 직접으로 몰트케 시대의 참모본부를 모범으로 하여 만들었다. 육군의 機構·編制는 물론이요, 軍事理論, 參謀將校의 양성에 이르기까지 독일을 스승으로 삼았다. 실제로 指導에 임한 자는 몰트케가 人選하여 일본에 파견한 독일 육군의 참모장교 K.麦ケル 參謀少領이었다. 맥켈의 軍事理論과 參謀養成教育이 그 후의 일본 육군의 본연의 모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³¹⁾

조금 장황한 인용이지만, 일본의 참모본부란 征服戰爭을 위한 전략·전술을 수립하는 곳이었으며, 프로이센·독일 참모본부를 모델로 하여 創設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을 실제의 戰場에서 체계적으로 구체화한 몰트케’ 즉 몰트케는 보오전쟁(1866)과 보불전쟁(1870~71)에서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을 활용·적용하여 승리했다는 견해이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되어 왔다. 예컨대, 참모총장 슬리펜 元帥는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 제5판 출판(1905)의 序文에서 “실제로 클라우제비츠가 뿐만 써는 1866년 및 1870~71년의 전쟁에서 풍부한 果實을 맺었다. 그러한 戰役에서 발휘된 우리 軍의

31) 大江志乃夫, 『日本の參謀本部』(東京: 中央公論社, 1985), pp. 8~9.

用兵術의 탁월성은 전적으로『戰爭論』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유능한 많은 군인들은 이 책에 의해 교육되었기 때문이다”³²⁾고 하였다.

1995년에 발간된 울리히 말웨델編의 클라우제비츠의『戰爭論』의 編者後記에 의하면, “실로『戰爭論』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특히 1857년부터 프로이센軍 참모총장이 되어 끈질기게 교육활동에 노력하여 클라우제비츠의 見識의 대부분을 實務에 옮긴 몰트케의 功績에 의한다.『戰爭論』이 더욱 넓게 알려지게 된 것은 분명히 독일 통일전쟁(보불전쟁)의 승리 후이며, 이것은 몰트케의 전쟁수행이 현실적으로 클라우제비츠의 基礎理論을 답습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데서 비롯된다”³³⁾고 했다.

필자는 용병술에 관해서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만,前述한 바와 같이 몰트케는 클라우제비츠의 基本思想 ⑩의 (내), (다)를 거부했던 것이며, 일본의 참모본부도 그대로 답습했다. 즉 明治陸軍의 軍政(軍事行政의 略語)이며, 軍隊를 建設·維持·管理하는 것을 뜻함)에 공헌했던 桂太郎은 보불전쟁 후의 수년간을 독일에서 배웠고, 軍令(軍의 統帥에 관한 事務 및 統帥에 관한 命令의 총칭)上의 대표자 川上操六(참모총장)도 전후 2회에 걸친 유학으로 독일 참모본부에서 실제의 근무를 체험했으며, 그 동안 몰트케의 指導를 받기도 했다. 1883년 육군대학교의 개교도 몰트케의 참모 양성의 방법을 배운 결과였다. 桂太郎은 육군에 있어서 軍政과 軍令의 分立化, 참모본부의 獨립 등을 추진하여 공적을 세웠고, 川上操六과 田村怡與造(參謀次長)는 近代用兵理論을 확립하여 참모본부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³⁴⁾

육군에서『戰爭論』의 번역 착수 시기는 1886년 후반경, 陸軍省·參謀本部·監軍部에서 시작했으나 곧 중지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戰爭論』의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이 아닐까³⁵⁾ 하는 견해도 있다. 그

32) クラウゼヴィッツ,『戰爭論』上卷(東京: 岩波書店, 1933), pp. 22~23.

33) 이 책은 현재 日本클라우제비츠學會員에 의해 번역 중이며, 上述한 내용은 鄭田 豊 學會長의 번역에 의한 未發刊의 원고에서 인용했다.

34) 淺野祐吾, 「近代日本におけるクラウゼヴィッツ影響」『戰争なき自由とは』(東京: 日本工業新聞社, 1982), pp. 521~522.

35) 林 三郎,『參謀教育』(東京: 芙蓉書房, 1984), p. 191.

러나 참모본부가 추진하는 통수권의 독립이 정착하기 전에, 클라우제비츠의 軍事에 대한 政治優位의 軍事思想의 보급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론한다. 일본에서의『戰爭論』의 完譯은 1903년에 완성했는데, 프랑스에서는 1853년, 영국에서는 1873년, 미국에서는 1943년에 번역·출판된 것으로 본다면, 독일과 인접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하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일본에서 번역·출판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통수권의 독립은 육군의 경우, 1874년 參謀局의 설치로부터 1878년 참모본부 독립의 과정에서 山縣有朋과 桂太郎에 의해 統帥權 獨立·帷幄上奏權이 확립되었다. 참모본부장은 將官이 임명하며, 天皇에 直屬하고 陸軍大臣과 同格의 존재가 되었다.

통수권의 독립에 있어서 1882년에 발표된「軍人勅諭」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것은 法令은 아니지만, 天皇의 意志를 직접 표현한 것으로 군인에게 있어서 法令 이상의 절대적인 最高規範이기도 했다. 「軍人勅諭」에는 “朕은 너희들 군인의 大元帥나라”고 선언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天皇親率의 原理를 명시하여 통수권 독립의 사상적 근거를 부여했다. 그리고 1889년에 發布된 明治憲法의 제11조에 “天皇은 陸·海軍을 統帥한다”고 함으로써 통수권의 독립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이 軍部의 견해였다.

참모본부에서 독립한 海軍軍令部도, 1893년 海軍省과 대등의 지위를 확보했다. 그리고 육군의 참모총장과 해군의 軍令部長(후에 總長으로 개칭)은 天皇에 直屬하고 帷幄上奏權이 있는 것으로 되었다. 軍令事項은 陸海軍大臣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된 결과, 內閣의 權限 外에 속하게 되어 文民統制(Civilian Control)의 원칙은 붕괴되었으며, 이것이 소위 통수권의 독립이다.

그러나 明治憲法의 제12조는 “天皇은 陸·海軍의 編制 및 常備兵力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의 天皇大權을 統帥 또는 軍令大權이라 하고, 제12조는 軍制·編制 또는 軍政大權이라 칭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 제55조는 “國務各大臣은 天皇을 輔弼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헌법 제55조에 정해져 있는 國務大臣의 보필권

에는 제한이 없고, 軍令事項에도 미친다는 것이 明治憲法學界의 兩巨頭, 穂積八束 教授 및 美濃部達吉 教授의 해석이었다. 이 해석대로 明治憲法이 운용되었더라면, 陸軍大臣은 陸軍의 軍令·軍政大權에 대해 천황을 보필하게 되고, 海軍大臣도 이와 마찬가지의 보필이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통수권의 독립」이라는 美名下에 軍部가 政府의 統制에서 벗어나 獨走하고 暴走하는 폐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³⁶⁾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즉, 육·해군의 일부에서는 헌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國務大臣의 보필은 軍令大權은 물론이고, 軍政大權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常備兵額事項(兵力事項)은 憲法理論上으로 보아 軍政事項이며, 軍令事項이 아닌 것이 通說이다.³⁷⁾ 그런데 軍部는 이것을 軍令事項이며 軍政事項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했다. 그래서 荒木陸相은 “병력의 결정은 大權에 속하는 것이며, 그 兵力量은 國防用兵上 절대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統帥의 參謀長인 참모총장(육군) 및 軍令部長(해군)이 이것을立案하여, 그 결정은 帷幄機關을 통하여 행하는 것으로 믿는다”³⁸⁾고 주장했다. 兵力量의 결정은 軍令機關에서 결정하며, 정부는 그 결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지출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것이야말로 군국주의 사고방식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川上操六이 몰트케로부터 어떤 軍事理論을 배웠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明治期에 있어서 참모본부가 독일에서 도입한 軍事理論은 주로 用兵理論이며, 戰爭哲學은 아니었다. 특히 클라우제비츠의 軍事에 대한 政治優位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有害한 것으로 생각했다. 예컨대, 육군대학교에서는 國家戰略이 軍事戰略을 지배한다는 것은

36) 猪木正道, 『軍國日本の興亡』(東京: 中央公論社, 1995), p. 85.

37) “결정적 지점에 가능한 한 많은 군대를 전투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이 첫째 원칙이다. 이 절대적 병력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다.”(클라우제비츠, 『戰爭論』, p. 95) 그 이유는 병력 수의 결정은 國家豫算과 직결되고 또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곳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38) 松下芳男, 『明治軍事史論』下(東京: 圖書刊行會, 1978), p. 314.

왕왕히 統帥의 순결을 더럽히고 戰勝의 요인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통수권 독립시대에 있어서는 당연할지 모르나, 전쟁의 성격이 總力戰的 傾向으로 변한 현대에 있어서는 생각을 요하는 문제이리라.³⁹⁾

參謀將校의 養成機關인 육군대학교에서 맥켄 少領의 역할에 대해 略述하고자 한다.⁴⁰⁾ 그는 몰트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해 陸大의 교관으로 1885년부터 1888년까지 3년간 파견되었으며, 주로 戰術教育·參謀官 參謀旅行의 統制·軍制改革(鎮台에서 師團編制로의 전환)의 자문에 응하였다.

맥켄 少領이 陸大에서 가르친 교육내용은 軍事理論의 관점에서 본다면, 用兵理論 가운데서도 가장 수준이 낮은 戰術·作戰術이며, 軍事戰略·國家戰略 그리고 중요한 戰爭哲學에 관해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술 위주의 교육방법은 60여 년 간 陸大에 일관되게 흘러 陸大敎育의 原形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孫子의 國力 第一主義와 萬全主義를 들보지 않게 되었다”⁴¹⁾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비극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나. 參謀本部의 機構와 業務

일본 육군은 西南戰爭(1877)을 마지막으로 內亂에 대비하는 군대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외국과의 전쟁을 主任務로 하는 군대로 성격을 전환시켰다. 이런 성격 전환의 표현의 하나가 참모본부의 설치였다. 參謀本部 設置時의 機構는 管東, 管西의 二局과 總務課 외에 地圖課, 編纂課, 測量課, 文庫課로 구성되었고, 中心機構는 管東·管西의 二局이었다.⁴²⁾

管東局은 東部監軍部, 近衛 및 東京·仙台의 두 鎮台의 참모부와 협력하고, 北海道, 檀太·滿洲·캄차카·시베리아 방면의 地理政誌를 조사하며, 有事時의 對備策(작전계획 등)을 강구하는 것을 임무로 했다.

39) 上法快男 編, 『陸軍大學校』(東京: 芙蓉書房, 1973), p. 294.

40) 淳稿, 前揭論文, pp. 52~54 參조.

41) 佐藤堅司, 『孫子の思想史的研究』(東京: 風間書房, 1962), p. 521.

42) 大江志乃夫, 前揭書, p. 35.

管西局은 中西部監軍部, 名古屋, 大阪, 廣島, 能本의 四鎮台와 협력하고 朝鮮 및 清國沿海方面의 地理政誌를 조사하며, 有事時의 對備策을 강구하는 것을 임무로 했다.

地圖課란 작전수행에 필요한 지도를 작성하는 곳이며, 編纂課란 古代韓·倭關係史 研究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서이다.

- 現實의 朝鮮侵略을 합리화하기 위한 朝鮮史와 日韓關係史에 대한 「研究」가 구체적인 침략정책과 병행하여—침략정책 그 자체의 일환이라 말하는 편이 낫다—행하여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明治初期부터 日本의 對外政策의 基本은, 바로 朝鮮侵略을 당면 최대의 목표에 두고 있었고…

종래 얘기되어 온 近代日本史學史에 있어서 軍部, 특히 참모본부가 일본에서의 歷史研究에 얼마나 깊게 관련되었는가 하는 시각에서 史學史를 논의한 것은 없다. 요즘 수년간에 밝혀진 것처럼 廣開土王陵 碑文의 研究에 있어서, 참모본부가 그 연구를 좌우할 정도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다만 비문의 해석에 멈추지 않고, 古代의 日·韓關係, 더 나아가 近代日本에서의 「朝鮮史像」에 커다란 작용을 미쳤던 것이다.⁴³⁾

- 나는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왜곡된 古代日韓關係史觀의 完成의 時期를 1888년(明治21年) 10월로 생각한다.⁴⁴⁾

明治初期부터 日帝의 對外基本政策은 大陸政策이며, 특히 한반도에 대한 침략·식민지화를 목표로 삼았고, 그들은 작전계획뿐만 아니라, 그들의 침략을 합리화·정당화하기 위해 古代韓倭關係史를 왜곡하여 연구하는部署가 編纂課요, 주동 인물은 課員이며 육군대학교 교수인 橫井忠直이었다.

1881년 5월 清國으로 파견된 참모본부 소속의 간첩, 酒匂景信 中尉는 1883년 10월 귀국하면서 廣開土王陵碑文의 雙鈎本을 가져왔다. 비문 가

43) 中塚 明, 「日本近代史の展開と‘朝鮮史像’」『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號(東京: 龍溪書舎, 1974), pp. 144~145.

44) 佐伯有清,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東京: 吉川弘文館, 1976), p. 121.

운데 32字로 구성된 이른바 辛卯年記事는 古代韓倭關係史 研究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며, 5년간의 연구 후, 1889년 日本亞細亞協會가 발간한 『會餘錄』 제5집에서 橫井忠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百殘(濟)과 新羅는 예로부터 屬民으로서 朝貢을 바쳐 왔다. 그리고倭는 辛卯年(391)에 바다를 건너와 百殘(濟)과 新羅를 과하고 臣民으로 삼았다.⁴⁵⁾

辛卯年記事의 上述한 해석은 通說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古代에 있어서倭(日本)에 의한 「韓半島經營」說 내지 「任那日本府」說의 확고한 論據로 삼았고, 「征韓論」의 정당성을 외쳤다. 물론 南北韓의 古代史學者에 의한 反論도 제기되어 반세기 이상의 연구·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필자는 최근 軍事理論的 觀點에서 辛卯年記事를 日本의 通說로 해석해도 「任那日本府」說의 論據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 즉 主語·缺字補充 및 기본적 성격에 대해 究明한 바 있다.⁴⁶⁾

참모본부의 업무는 침략전쟁의 준비, 즉 정보수집·작전계획의 수립 등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國內外의 謀略, 그들의 침략정책의 정당성·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왜곡된 韓倭關係史를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오늘날까지도 日本의 古代史學界는 그 路線에 따라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과서에서 허위·날조된 역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 議會政治와 「現役武官專任制」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정책의 뜻을 본받아 실행하고 또 정책이 전쟁의 수단과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는 동시에 將帥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컨대 프레드릭 대왕이나 나폴레옹이 그 事例이다. 그러나 이러

45) 原文：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

46) 拙稿,「廣開土王碑文 辛卯年記事의 檢討」『軍史』 제32호(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6), pp. 46~77.

하지 못할 경우, 해결책은 最高의 將帥를 內閣의 一員으로 임명하여, 수상이 그의 중요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1853년『戰爭論』의 再版 때부터 내용이 改竄되어 최고의 장수가 내각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내각의 중요한 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고, 改竄한 내용을 日本語譯에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⑫ 전쟁으로 하여금 완전히 정치의 목적에 적응시키고, 또 정치로 하여금 전쟁을 위한 諸手段이 허용하는 이상의 일을企圖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치가와 군인이 同一人中에 결합되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하나뿐, 그것은 최고의 장수를 內閣의 一員으로 만들어, 가장 중요한局面에 그 評議와 決議에 참가시키는 데 있다.(馬込健之助 譯)⁴⁷⁾
- ⑬ 전쟁이 정치의 뜻을 본받아 실행하고 또 정치가 전쟁의 수단과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와 군인이 一身에 兼備되지 않는 한, 남은 길은 最高의 將帥를 內閣의 一員으로 加하여, 가장 중대한 時機에는 內閣의 審議 및 決議에 참여케 한다는 制度뿐이다.(篠田英雄 譯)⁴⁸⁾

클라우제비츠는 內閣에 將帥를 入閣케 하는 것은 군사적 결정·활동에 내각의 참여를 강조한 것이었는데⑪, 1853년의 再版부터 정치적 결정에 將帥의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改竄되었고 그것의 日本語譯이 ⑫, ⑬이며, 이것이 일본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자 한다.

옛날부터 軍人은 文民으로부터 統制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明治政府는 원래 많은 수의 陸·海軍 軍人을 포함하고 있었다. 軍部는 헌법의 제정에 의해 英·美兩國처럼 文民이 陸·海軍의 大臣에 취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일찍부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1878년 陸軍省의 軍令, 즉 作戰·用兵을 관장하는 部署를 參謀本部라 하여 독립시킨 것도 그러한 發想에서 연유하였다.

한편, 明治初期 이래로 軍部大臣은 不文律에 의해 現役將官으로 한정되

47) クラウゼヴィッツ, 『戦争論』下巻(東京: 岩波書店, 1933), p. 509.

48) クラウゼヴィッツ, 『戦争論』下巻(東京: 岩波書店, 1968), p. 324.

어 있었다. 그런데 1891년 7월 陸軍省 官制 속에, “陸軍大臣을 將官으로 補한다”고 정했다가, 1900년의 개정에서는 “現役將官에 限한다”고 明記해 버렸다. 여기서 ‘現役’의 두 글자는 너무나 중대하였다. 그것은 陸軍의 總意를 뜻하며, 將官 개인 스스로의 進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軍部를 지키기 위한 일대 비약이었으며, 한편 政黨政治에 있어서 넘기 어려운 城壁에 직면하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비약한 이유는, 첫째, 長州派 陸軍幹部를 보호하고, 둘째, 政黨이 자유롭게 將軍을 軍部大臣에 選任하는 길을 完封하기 위한 장치였다.⁴⁹⁾

明治體制下의 内각제도는 戰後의 内각제도와는 달리, 天皇의 命에 의해 수상이 指名되면, 그는 組閣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상은 다른 대신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동등의 지위에 있었고, 閣內 不一致의 경우, 반대하는 閣僚를 과면하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각이 붕괴되는 지휘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거기다가 軍部大臣을 획득하지 못하면 內閣이 流產되며, 또 사퇴하는 경우 내각은 붕괴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1912년 제2차 西園寺內閣은 上原陸相이豫算原案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辞任함으로 해서 내각을 붕괴시켰으며, 1914년 清浦內閣은 海相을 임명하지 못하여 內閣이 流產되고 말았다.

軍部大臣의 「現役武官專任制」는 政軍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 議會政治를 말살했을 뿐만 아니라, 內閣의 存廢를 좌우하게 되었다.

둘째 : 따라서 軍部大臣은 軍部의 요구를 國政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다.

셋째 : 軍政을 담당하는 軍部大臣은 內閣의 一員으로 책임을 수행하지만, 軍令機關은 內閣 外에 존재하여 統帥參謀들이 對外活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므로 政府의 對外政策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처럼 통수권의 독립과 軍部大臣의 「現役武官專任制」를 방패로 하는

49) 伊藤正徳, 『軍閥與亡史』 2卷(東京: 文藝春秋新社, 1958), pp. 54~55.

軍部는 정부에 대한 軍部의 聖域化,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 및 內閣의 存廢를 좌우하는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변하여, 마침내 滿洲事變(1931), 中日戰爭(1937~1945) 그리고 太平洋戰爭(1941~1945)을 일으켜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 일본의 한 軍事評論家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는데, 타당한 내용이라 하겠다. 즉 ‘統帥權’도 軍閥을 잘 보호했고 또 軍閥을 잘 滅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昭和(1926~1945)에 들어와서 特筆할 만한 일본의 罪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軍部大臣의 「武官專任制」에 이르러서는 明治(1868~1911), 大正(1912~1925), 昭和의 3대에 걸쳐 정치의 바다에 大暗礁를 형성하여 여러 내각이 좌초당했고, 파손당했고 혹은 침몰당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본 자체가 전복당하고 말았다. 軍閥은 이 제도에 의거하여 그 몸을 보호했고, 安住했고 번영했으나, 마침내 凡夫의 마음은 오만해져 節度를 잃고 亡國의 원인을 만들어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운명을 초래했다.⁵⁰⁾ 역사상 統帥權의 獨立과 한 문장의 改竄이 두 국가(독일·日帝)의 운명을 패망으로 인도한 예는 드문 일이리라.

5. 맷 음 말

클라우제비츠는 초기에 적군의 타도·격멸을 지향하는 絶對戰爭論者였으나, 12년간의 執筆·研究·思索의 결과로 후기에 와서 制限戰爭을 수행하는 現實戰爭論者로 변신했다. 그는 現實戰爭論者로 일관성을 가지고 『戰爭論』을 수정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病死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誤解는 여기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는 전쟁에 대한 綜合的 理論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접근방법, 특히 철학적 방법과 여러 학문분야를 구사했고 또 독창적이고 심오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難解하기로 유명하다.

50) 伊藤正徳, 上掲書, pp. 56~57.

클라우제비츠의 基本的 軍事理論은,

첫째：精神과 實質(무기·장비 등)을 겸비한 체계적인 戰爭理論의 수립을 시도했으며, 당시 소홀히 생각했던 精神的 要因을 강조한 점.
(본 논문의 성격상 생략했다)

둘째：現實戰爭論者로의 전환이다. 즉 적의 타도·격멸을 지향하는 絶對戰爭을 추구하면 할수록, 戰後 이웃 나라와의 友好關係의 유지가 어렵게 되고, 보복은 보복을 놓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점을 갈파했다.

셋째：軍事에 대한 政治優位思想이다. 즉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 내지 道具에 지나지 않으며, 군사적 관점은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전쟁의 개시·수행·종결에 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클라우제비츠의 후계자·제자로 추앙받고 있는 몰트케 참모총장은 絶對戰爭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 중에는 정치를 배제했고, 帷幄上奏權으로 統帥權의 독립, 『戰爭論』의 改竄(?) (그가 직접 개찬했다는 뜻이 아님)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몰트케를 클라우제비츠의 후계자·제자로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 후 독일 군부는 對內의으로 軍國主義와 反議會主義 方向으로, 對外의으로는 強國으로 도약을 시도하다가 敗亡하고 말았다.

日帝의 陸軍은 몰트케의 軍事的 思考와 參謀本部를 모델로 하여 창설·운용되었다. 통수권의 독립과 「現役武官專任制」로 軍國主義·軍部의 聖域化·政治的 影響力의 強化 등으로 內閣의 存廢를 좌우하게 되었고 議會政治를 말살하여 國力を 무시한 侵略戰爭을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 太平洋戰爭에서 패망하고 말았다.

필자는 軍國主義의 理論的 根據를 제시했고, 日帝의 軍國主義 形成過程을 살폈다. 그리고 앞으로 日帝의 軍國主義 體制에 의한 侵略戰爭의 구체적 과정을 분석하고, 戰後 日本은 앞으로 21세기를 향하여 軍國主義 色彩가 농후한 軍事大國으로 발전할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兇明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 대한반도정책의 변화와 전망

김 경 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서 론
2. 고르바초프의 한반도정책
3. 엘친초기 대한반도정책
4. 엘친정권의 대한반도정책 재정립
5. 결 론 :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외교 전망

1. 서 론

1998년 7월 러시아와 한국정부의 외교관 맞추방사건은 한국 외무장관의 해임을 초래했을 정도로 그 파장이 컸다. 더욱이 소연방 붕괴 이후 한국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다소 소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국관계의 냉각화를 유발한 이 사건은 그 자체에 대한 분석 필요성과 더불어 한러관계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던져 주고 있다. 한러간 양국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라는 변수를 포함하게 되고, 따라서 한국, 러시아, 북한의 3각 구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상당히 한국편향적이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던 당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한국에 대한 경사는 어찌면 당연한 것 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지니는 이해관계는 보다 다양해졌다. 즉 경제적인 지원과 협력이라는 것 외에 지정학적으로 자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에 대해 필수적인 안보라는 차원의 이해관계와 외교적 의미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중요하게 되었다. 더불어 러시아 내의 세력변화와 남북한관계의 주요 문제와 진전상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방적인 친한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편향적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더불어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를 명확히 시기구분을 하기 어렵다.¹⁾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러시아연방이 성립되기 이전인 고르바초프 시기의 북한일변도에서 한국과 국교수립을 이루게 되는 기간, 한국편향적 대외정책을 추진한 러시아연방 성립 초기와 등거리 외교를 모색하게 되는 기간을 대체적으로 분리하면서, 그러한 변화를 보이는 주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Seung-Ho Joo, "Russia and Korea," Bae Ho Hahn, Chae-Jin Lee(ed.),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Major Powers*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8), pp. 70-9297-104. 이 논문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을 3단계로 나누고 있다. 1 단계는 1992년 1월에서 12월에 이르는 한국편향(Continuing Tilt Toward Seoul) 단계, 2단계는 1993년 1월에서 1995년 12월까지로 등거리외교 모색기 (In Search of a Balanced Relationship), 3단계는 1996년 1월에서 현재에 이르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도모시기(Normalization with Pyongyang Set in Motion)로 구분짓고 있다. 이 시기구분은 러시아 외교정책의 일반적 변화와 케이스를 같이하는 것이다.

2. 고르바초프의 한반도정책

가. 북한일변도 대외정책의 변화

1988년 “끄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북한만을 인정하던 정책에서 ‘사실상 2개 국가’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변화될 때까지 구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은 소련과 북한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북한일변도 정책이었다. 1961년 북한은 소련, 중국과 “조소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및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이 시기는 중소대립이 심했던 때로 중·소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양국 경합을 통한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김일성정권이 소련의 입장에서 그리 달 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념적 냉전상황하에서 소련으로서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1985년 소련의 변혁을 주도한 고르바초프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외적으로 ‘신사고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1998년까지는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소련의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동맹관계를 기초로 한 북한일변도 정책을 지속했다. 오히려 북한과 소련은 일련의 고위급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관계발전의 정후를 보였다. 즉 1985년 4월 북한 외교부부장 김영남, ’85년 12월 정무원 총리 강성산, ’8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86년 10월 김일성의 소련방문과 ’86년 11월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의 북한방문 등이 이어졌다. 소련은 북한과의 동맹을 유지·발전, 한반도문제에 있어 북한측의 입장 지지 및 한국과의 접촉 회피, 한반도에 대한 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비난 등으로 과거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으며, ’86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시에 고르바초프는 연설을 통해 소련과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협력증진과 상호경험의 교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 시도는 일종의 동부지역의 NATO라고 비난하였다.²⁾ 또한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추진하려는

2) *Правда*, 25 Октября 1986.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남한에 중거리미사일을 반입,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다”³⁾고 북한의 입장을 응호함으로써 북한과의 공조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외교적 언명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도 이어졌다. ’85년 12월 강성산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86~’90년 동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김책제철소 및 북창화력발전소 시설확장, 동평양화력발전소 건설, 안주탄광 확장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체르넨코 시기였던 1984년 5월 북한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던 대북한 군사지원정책이 실행되었다.⁴⁾ ’85년 이후 소련은 50여 대의 MIG-23기, 25대 가량의 MIG-29기, 20여 대의 SU-25기, 240기의 SCUD-B 미사일, 첨단對空 방어시스템을 제공하였다.⁵⁾

이러한 근대적 무기지원의 대가로 북한은 소련정찰기의 북한 영공통과 허용, 소련공군기의 북한 공군기지 사용 허용, 소련 태평양함대의 나진, 원산, 납포 기항권 부여,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의 정례화 등을 제공했다. 북한의 영공과 기지를 이용함으로써 소련은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고, 대한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트남의 소련기지까지 해군과 공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획득했던 것이다.⁶⁾ 더불어 소련은 TU-16(Badger) 정찰기와 TU-95(Bear)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만주의 공업지대와 발해만 및 청도에 있는

3) *Правда*, 29 Ноября 1986.

4) 이때 김일성의 모스크바방문은 23년 만의 일이었다. 브레즈네프시대 소련은 북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념적으로는 동지에 있었지만 근대적 무기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1984년 체르넨코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김일성의 방소는 소련의 대북한 군사지원정책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였다. 체르넨코-김일성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F-16 전투기 공급에 대항하여 MIG-23 전투기 북한제공을 소련이 확약하였다.

5) 全洪燦, “蘇聯의 對북한 經濟, 軍事援助政策에 관한 연구,” 『中蘇研究』, 제 17권 4호(1993/4 겨울), p. 220.

6) 위의 글, p. 221.

중국의 북해함대 사령부 등을 정찰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⁷⁾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정보 수집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중소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었던 다른 한편에서 중국에 대한 정찰루트를 획득하는 데도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고르바초프 집권 초기에 보였던 이와 같은 북한일변도의 대외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87년 이후 양국간의 인사교류도 많이 줄었고, 중요한 무기제공 협상이나 합의도 없었다.

나. 한국의 북방외교와 러시아의 대응

고르바초프 북한일변도의 대한반도정책은 1988년을 시점으로 변화되었다. '88년 2월 한국에는 노태우정권이 등장하고, 그해 7월 '북방외교'가 발표되었다. '북방외교'는 동·서의 이념적 대결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국제정세하에서 한국이 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정권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게 만드는 한국의 대외정책 전략이었다.

고르바초프는 한국의 '북방외교'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경제 발전을 위해 군사비지출을 줄이고자 했던 고르바초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무기 감축협상을 진행시키면서 평화무드를 조성해 가고 있었으며, 아시아에서는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용의를 표하는 등 아·태지역에서의 화해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고르바초프는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한국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소련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이미 1986년 5월 11일 공산당 각료회의 문건을 통해 드러내 놓고 있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한국이 미·일에 대해 보다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면 소련과 한국과의 접촉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7) Richard Nations, "China's Korea Fiasco,"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26, 1985), p. 56.

언급되어 있었다.⁸⁾ 이에 따르면 소련의 외교관은 제3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한국외교관과 접촉할 수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소련과 한국 사이에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준비를 해 오고 있던 고르바초프에게 한국의 ‘북방외교’의 표방은 관계를 개선 할 수 있는 호기로 보였던 것이다.

북한의 반응을 조심하면서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 16일 발표된 끄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중소관계의 완전 정상화의 실현을 위해 중소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덧붙여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건전화를 추구하는 맥락에서 남한과의 경제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겠다’고 언급했다. 매우 조심스럽게 한국과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이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데 비해 끄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은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2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⁹⁾

끄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드러난 고르바초프의 대한접근정책에 대해 북한은 소련에 즉각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소련정부는 이에 대해

“소련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극동지역에 유용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다.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상업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한소간의 직접적인 경제접촉의 시작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유익하다. 소련은 이러한 관계발전을 서두르기를 원치 않는다. 소련은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조류와 더불어 경제적 진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동시에 소련은 북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소련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의지가 없다. 소련은 한국과 그 우호세력이 주도하는 남북한의 ‘교차승인’은 지지하지 않는다.”¹⁰⁾

고 대응했다.

8) Eugene Bazhanov, “Soviet Policy towards South Korea under Gorbachov,” Il Yung Chung(ed.), *Korea and Russia: Towards the 21st Century*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2), p. 95.

9) *Правда*, 18 Сентября 1988.

10) Memorandum of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물론 북한은 이러한 답변에 만족할 수 없었다. 더욱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소련이 선수단을 파견하자 북한은 맹렬히 비난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대해 설명을 위해 '88년 11월 세바르드나제가 북한을 방문, 김영남 부수상 겸 외교부부장과 회담이 있었다. 세바르드나제는 방문결과문 공동 코뮤니케에서 소련의 대한접근은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아니라 는 점을 강조했다. “소련은 남북한 교차승인에 의한 ‘2개 한국정책’에 반대하며, 공식적으로 한국을 인정할 의도도 없고, 한국과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수립치 않을 것임”¹¹⁾을 재천명함으로써 사태를 일단락지으려 했던 것이다. 이듬해 소련은 한소접근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북한에 대해 경제, 군사원조를 계속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에 대한 북한정부의 불신은 커져 갈 수밖에 없었다. 1989년 2월에는 소련의 동의하에 헝가리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다른 동유럽국가들은 헝가리의 예를 따랐다. '89년 4월 모스크바와 서울에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었고, 비자발급에 한정된 영사관련업무가 시작되었다.

북한의 항의뿐 아니라 소련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접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소련의 군부와 외무부는 북한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위반이라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론을 억누르고 고르바초프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소련에 경제적 실리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다. 한·소 국교수립

1990년 6월 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상 최초의 한소 정상회담이 북한에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부진으로

the CPSU, 28 September 1998(Moscow), pp. 2~3; Natalia Bazhanova, “North Korea and Seoul-Moscow Relations,” Il Yung Chung(ed.), *op. cit.*, p. 332. 채인.

11) *Известия*, 25 Декабря 1988.

고심하고 있는 소련에 한국측이 경제원조를 할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어서 '90년 9월 30일에는 국제연합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세바르드나제와 최호중 외무장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곳에서 즉각 국교를 수립하겠다는 한소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소련이 끄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 인정했던 '사실상 2개의 한반도정책'은 1990년 한소 국교수립에 이르러 '법률상 2개의 한반도정책'으로 한단계 진전되었다. 한소 국교수립으로 이어진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은 그의 새로운 정치철학인 '신사고외교'를 동북아에서도 실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비중이 훨씬 높으며, 따라서 관계정상화가 양국간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소 국교수립에 대해서는 소련정부내 견해가 나뉘어져 있었다.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한 국방부와 외무부는 소극적이었던 데 비해 공산당 중앙위와 KGB는 찬성하는 쪽이었다고 한다. 정치, 외교상의 이익보다 경제적 이익을 원했던 고르바초프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진척시켰다. 더욱이 한소 관계발전이 가속화된 데는 한국측의 외교전술도 한몫을 했다. 소연방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스크바는 일본으로부터 그렇다 할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모스크바당국은 한국을 주목했으나 한국정부는 모스크바가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할 때까지 소련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원조나 투자를 거부했다는 점이다.¹²⁾ 즉 소련측으로서는 경제적 지원이 조급해져 관계정상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한소 국교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4개월 후 1991년 1월 22일 한국은 구소련에 30억 달러의 금융지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소련으로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당연히 북한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련은 북한의 불만을 최대한 완화시켜 주고자 했다. 한소 공동성명에서는 한소 국교수립이 한반도 평화진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한소 국교수립이 제3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

12) Sharif M. Shuja, "Moscow's Asia Policy," *Contemporary Review*, vol. 272, Issue 1587 April 1998, pp. 169~176.

는다는 점을 확신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로 무마시키려는 소련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1990년 9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고르바초프는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을 평양에 파견하고, 한국과의 국교수립을 통지했다. 이는 1961년에 체결한 조소동맹 제3조에 명기되어 있는 양국의 이익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상호 협의할 것이 규정된 점을 소련측이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소 국교수립에 대한 일방적인 통고에 대해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소 국교수립에 대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은 ‘달리에 팔린 외교관계’라는 논평을 게재, 소련정부를 비난했다. 이 기사에서 소련의 결정은 배반행위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권위와 존엄성을 팔아넘겼고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맹방의 이익과 믿음을 버렸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다른 신문들은 소련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기 위해 미국과 결탁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소련이 한국과의 국교수립을 끊지 않는다면 북한은 소연방 내에 발트 3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북한-일 국교수립교섭을 개시하며,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나아가 김영남 외교부부장은 “소련이 한국과의 국교 수립을 바꾸지 않으면, 핵무기를 제조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¹³⁾

이에 대해 소련측은 한소 국교수립이 북한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북한에 대해 일종 배려함을 보였다. 소련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측의 입장은 달랐다. 한소 국교수립에 있어 한국측의 이해관계는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1990년 초 한국정부는 첫째, 북한의 가장 중대한 군사적 지원자인 소련이 더 이상 북한의 일방적 지원자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을 축소시키고자 했다. 둘째, 한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약화시켜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고자 하는 것

13)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10 Декабря 1990.

이었다. 당시 소련은 수출과 투자의 잠재시장으로서의 가치는 확실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⁴⁾ 정치적 중요성을 우선하고 있던 한국에 정경분리의 내용은 적절치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경협을 원했던 소련측으로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소 국교수립으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양국이 조소동맹을 파기하거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계속 보전하고자 하는 고르바초프는 동맹관계의 파기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원치 않았고, 북한도 소련과 외교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 고립화를 일축 심화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무기 및 석유의 수입면에서 소련의존도가 극히 높은 북한은 소련과의 완전결별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은 한국측으로 기울고 있었다. 경제적 상황이 보다 어려워지면서 1990년 11월 소련은 북한과의 교역에서 바터식 무역방식을 국제통화 결제방식으로 변화하며, 우호가격제도도 폐지된다고 북한측에 통고했다. 그로 인해 소련으로부터 원자재와 무기를 구입하는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들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국교수립 후 한소관계는 가속적으로 진전되었다. 1990년 12월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하고, 1991년 1월에는 30억 달러의 대소경제지원이 합의되었고, 4월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제주도회담은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북한 핵사찰 문제가 제기되었고, 고르바초프가 이를 지지하였다. 반면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의 소비물자 부족완화와 한국기업의 대소 투자지원을 위해 우선 8억 달러를 무역차관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제주도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선언에 입각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한소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문제를 제시하였다.

14) Sharif M. Shuja, *op. cit.*, p. 171.

3. 엘친초기 대한반도정책

가.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

1990년 8월의 보수쿠데타의 실패와 이어진 연방체제의 붕괴는 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연방으로 재탄생되었다. 이 과정을 주도한 엘친체제 초반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 원칙은 첫째, 러시아가 서방선진국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며, 둘째, 국내개혁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었다.¹⁵⁾ 이러한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입장 역시 과거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러시아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최대의 경제적 지원은 러시아의 동부, 즉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였다.

더불어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친서방외교를 주장하는 ‘대서양주의’로부터 벗어나면서 ‘유라시아주의’가 대두되자 구소련방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지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었다. 엘친-꼬지레프팀의 친서방적 외교정책 노선의 변화는 1992년 가을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엘친은 ’92년 10월 27일 외무부회의에서 외교노선의 수정필요성을 언급했다. 엘친은 ‘근외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서방뿐 아니라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¹⁶⁾ 그에 따라 꼬지레프도 러시아의 국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외정책의 방침을 수정하려 하였다.

15) Heinz Timmermann, “Russian Foreign Policy under Yeltsin: Priority for 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of Civilized States’,”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8, No. 4 (December 1992), p. 163.

16) *Красная Звезда*, 28 Октября 1992.

친서방외교로부터의 이탈은 대아시아관계에서의 변화도 촉발시켰다. 엘친은 외무부에서의 연설 이후 대아시아 외교를 본격화하였다. 곧바로 1992년 11월 한국방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92년 12월 중국과 '93년 1월 인도, '93년 10월의 일본 방문에 앞서 엘친의 아시아 방문 최초 국가로서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가진 국가는 물론 일본이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말기부터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투자와 경협의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거둘 수 없었다. 일본측이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내세워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와 경협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넓은 지지를 위해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태도 역시 북한에 대한 배려로 주춤거리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엘친 방한시 한국과 러시아는 '우호관계기본조약'에 조인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여러 군사원조를 중지할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역으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희망했다. 한국과의 관계강화는 필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1961년 체결되었던 '조소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북한은 그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나 조약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인 '95년 9월 7일 러시아 외무부는 정식으로 조소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의 폐기를 북한에 통보, 새로운 조약체결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와 북한관계는 계속 비틀거렸다. 러시아의 양국교역에 대한 국제통화결제 요구가 양국간의 교역을 급격히 쇠퇴시켰다. 1991년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에 대해 국가가로 경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무역은 1990년 24억 달러에서 1992년 5~6억 달러로 급속히 쇠퇴했다. 1993년 북-러 교역액은 1억 3천만 달러, 1994년에는 남한의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또다시 77.1%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1995년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석유와 군사장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

다. 중국은 단지 정치적 지원과 제한된 경제원조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동북아지역에서 갖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엘친 초기 경제적인 측면에 과도히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러시아는 점차 이 지역의 정치전략적 중요성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전쟁에 대해 민감했다. 연해주지방 인구의 대부분은 러시아-북한경계의 수백 킬로 내에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로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더욱이 핵무기의 사용에 의한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러시아 극동의 주요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이 재래전이든 핵전이든 전쟁이 발생한다면 많은 피난민이 러시아 국경을 넘을 것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회박한 극동지역에 중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에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언명하고 있으며, 핵무기 확산제한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엘친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핵무기에 관해 러시아는 미국이나 한국과 협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핵무기의 존재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나. 한국편향정책과 한러 기본조약

소연방 붕괴 직후 '친서방정책'을 추진했던 엘친 대통령은 일러관계 타개를 위한 일본방문을 계획했으나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측과의 협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 방문이 연기되었다. 그래서 연방해체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최초의 방문국으로 일본 대신 떠오른 곳이 한국이었다. 엘친 대통령과 꼬지레프 외무장관은 한국방문에 앞서 북한과의 군사동맹의 유지는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2년 1월 엘친 대통령은 로가초프를 북한에 파견, 조소동맹의 개정을 북한측에 제안하였다.¹⁷⁾ 당시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개

17) Yoke T. Soh, "Russian Policy Towards the Two Koreas," Peter Shearman

선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면서 북한과의 군사조약을 계속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¹⁸⁾ 외무부내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폴로라야(Georgy Toloraya)는 “우리는 오늘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관계평등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택일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방도를 알고 있지 못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온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가 국가사회에 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것이 러시아 국경주변의 긴장완화의 담보가 된다. 우리는 옛 친구 또는 새 친구 중에서 누구를 선호할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과의 등거리 외교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¹⁹⁾

그런데 경제의 빠른 회복을 원했던 엘친은 경제력이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은 엘친정권 초반부터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개정하고 친한국적 정책을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92년 3월 꼬지레프 외무장관이 방한시 “북한에 대한 공격용 무기판매를 금지할 것과 한국의 이상육 외무장관과의 협상에서 한반도 군사충돌시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는 ‘조러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현실에 맞게 재검토될 것”이라고 했다.²⁰⁾ 1992년 11월 하순 엘친 대통령은 꼬지레프 외무장관과 그라쵸프 국방장관을 동반하여 한국에 공식 방문했다. 방한시 한러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한러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 골조를 규정하는 것이다. 동 조약의 제2조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행사의

(ed.), *Russian Foreign Policy Since 1990*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p. 187~188.

18) Leszek Buszynski,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1996), pp. 203~205.

19) 제오르기 폴로라야, “두 개 조선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러시아스카야 가제따』, 1992. 8. 28; 정일영 편, 『한·러관계와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의 대한반도관계 자료집(1986~1994)』(성남: 세종연구소, 1994), p. 423.

20) 세르게이 무슈카테로프, “모스크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격용 무기판매를 중지하였다”, 『이즈베스찌야』, 1992년 3월 19일; 정일영, 『앞의 책』, p. 392.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발생시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 엘친은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에 모든 군사원조를 중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한국과 군사기술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²¹⁾ 한국측은 자동적으로 군사개입토록 되어 있는 1961년 조소동맹의 폐지를 요구했다. 더욱이 엘친 대통령은 1983년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되었던 대한항공 보잉 747기의 음성기록장치의 기록테이프를 전해 주는 등 한국과의 관계 확고화에 노력하였다. 한편 한국측은 미납된 이자 지불 등의 문제를 평가하고, 차관제공 재개를 약속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러시아의 긴밀화는 필연적으로 북한과의 괴리를 확대시켰다. 한소 국교수립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북러관계는 엘친의 한국방문으로 급격히 냉각되었다. 엘친의 방한 직후인 ’93년 1월 말 꾸나제 외무차관을 평양에 파견, 조소동맹의 군사지원폐지의 의향을 정식으로 통고했다. 이때 조소동맹 대신 유사시 군사지원조항을 포함한 우호협력조약을 새로이 체결하겠다는 러시아정부의 방침에 대해 북한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높아진 1994년 6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측에 자국의 북한정책에 동조할 것을 촉구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최종일 발표된 한러 공동성명에서는 한러 기본조약을 기초로 해서 양국관계가 착실히 발전해 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질서, 인권존중 및 시장경제라고 하는 양국 공통의 가치에 기초해 ‘건설적인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이 언급되었다. 그 일환으로 한러 공동성명에서는 ① 한국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입후보를 러시아가 지지한다. ②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가입에 관해 한국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서명했다. 김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계기로 한러 해난방지협정이 체결됨과 더

21) “엘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한국 국회연설,” 정일영 편, 『앞의 책』, p. 434.

불어 청와대와 크레믈린을 잇는 포토라인 설치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엘친 대통령은 조소동맹을 1996년에 폐지할 것을 약속한 동시에 이후 북한과 어떠한 군사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무기부품의 공급도 '일시정지'하며,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언명하고, 다시금 한국편향적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다. 군사장비의 판매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 북한을 소외시키고 친한국적 입장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의 하나는 군사장비의 판매였다. 구소련의 군사장비와 기술은 상당부분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원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포기는 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필요로 했고, 군사장비도 지원이 아니라 판매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군사장비의 수출대상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판매를 위한 시장확보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원자재 판매 외에 타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러시아로서 무기수출은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질 수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교류와 군사장비 판매에 있어 적극적인 면을 보여 주었다.

한·러 군사협력은 1992년 11월 엘친 대통령의 한국방문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엘친 방한을 계기로 군사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의정서에는 ①군간부의 상호방문, ②군사훈련참관단의 상호파견, ③합정의 상호방문, ④국방대학생의 정기교류 등 한러 양국이 안전보장의 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추진할 것이 망라되어 있었다.²²⁾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의정서대로 추진된다면 한국은 구소련이 북한에 대해 제공했던 무기와 군사기술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로부터 직접 입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군사협력분야에서 방위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군수협력협정과 군사교류협정 등이 체결되었고, 주요 군인사의 교류

22) *Известия*, 20 Ноября 1992.

와 함정 교환방문이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군사교류와 협력이 전전되어 갔다.²³⁾

양국 군사협력은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보다 심화될 수 있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대한 차관상환문제가 논의되었고, 여기에서 차관을 군사장비로 상환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와 부품의 공급 및 판매를 중지할 것에 동의했다. 러시아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무기와 부품 공급 중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을 언급하면서 대한 차관상환의 수단으로 러시아제 무기구입을 한국측에 요청했다.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차관상환에 관한 실무교섭이 개시되어 1994년 9월 상순 러시아측은 채무총액의 45%를 탱크, 장갑차, 휴대용 대공화기, 기타 다른 무기로 제공키로 하고, 나머지 55% 가운데 45%를 알루미늄, 철강 등의 원자재, 5%는 山林消火用 헬기 등으로 갚기로 잠정 합의했다. 같은 해 12월 한러 채무상환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²⁴⁾

채무상환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에 공식루트를 통해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오게 되었다.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소련제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개발용으로 소수의 러시아제 무기를 입수하기는 하였으나, 정부간 계약에 기반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공식 구입하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러시아는 북한과는 무기거래를 중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반대로 한국에게는 첨단무기를 제공한다는 지극히 한국 편향적인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무기로 채무를 상환키로 한 협정은 냉전 이후 한러관계를 상징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해 1995년 9월 서울에서 대한 차관상환교섭에서는 TU-80 탱크, BMP-3형 장갑차, METIS-M 대전차유도탄, IGLA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러시아제 무기를 한국에 매각할 것에 합의했다.²⁵⁾

차관상환 문제를 계기로 진전된 군사기술 면에서의 상호관계는 보다 진

23) 황병무, “다자간 안보체계에서의 한·러 군사협력,” 『中蘇研究』, 제21권 2호 (1997 여름), pp. 88~90.

2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9 December 1994.

25) *Jane's Defense Weekly*, May 13, 1995, p. 3.

전될 조짐을 보였다. 한국은 군사력 균대화를 위한 현대식 무기구매를 계획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일정 영역을 잠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러시아로서는 무기수출이 확대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러시아 군수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고, 무기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협력을 통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라는 정치적 요인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²⁶⁾

한국은 북한의 스커드형 미사일공격에 대비한 방어를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조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1994년 러시아 국방부산업위부의장은 이타르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구입을 희망한다면 러시아는 고성능 미사일체계인 S-300을 공급할 수 있다”²⁷⁾고 하는 등 적극적인 무기판매 의지를 밝혔다. 1996년 8월 말에는 러시아의 국영무기수출회사인 로스보루제니예의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1997년에는 러시아정부가 한국의 경협차관을 모두 첨단무기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최신예 무기와 군사기술을 공급할 때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던 데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SU-27 전투기와 SU-35 전투기 등의 공동생산을 언급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제 패트리어트의 성능에 괄적하며, 그보다 3할 정도 값이싼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의 매입을 검토했으며,²⁸⁾ 또한 한국측이 러시아의 군사기술력을 얻어, 1,800톤급 중형잠수함을 건조중에 있다는 보도도 있다.²⁹⁾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 무기구입할 때 얻어지는 이익은 첫째, 러시아 무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며, 무기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한국은 군사무기에 있어서 과도한 미국의존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전투용 탱크의 최신예기인 TU-80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K-1의 2/3 가격이며, 미국 A1의 반값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욱이 무기 수입

26) 황병무, 『앞의 글』, p. 91.

27) 『ロシア月報』, 第614號(1994年 8月), p. 106.

28) *Korea Times*, 12 February 1996.

29) “Seoul to Build Mid-Sized Subs With Russian Help,” *Korea Times*, 17 October 1996.

선이 다변화되면 경쟁이 이루어져 보다 싼 가격에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 둘째, 군사기술이전의 경우 미국보다는 러시아로부터의 이전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현대적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첨단 군사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S-300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비해 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술이전이 용이하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이점이 있다고 해서 한국이 러시아 무기를 쉽게 구매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미관계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둘째, 80%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한국의 무기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꾸나제(Georgi Kunadze) 주한 러시아 대사는 S-300 지대공 미사일의 한국판매와 관련, 미국의 개입을 비난하면서 한국이 가격, 성능 면에서 우수한 무기체계를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술이전이 관대한 쪽에서 무기 구입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하고 있다. 1997년 한국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 구입시 미국제 스팅어(Stinger)가 아닌 프랑스제 미스트랄(Mistral)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³²⁾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한국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과거보다 확대될 여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장비 부문의 협력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분야의 협력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³³⁾고는 하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러시아는 현금

30) Seung-Ho Jo., *op. cit.*, p. 102.

31) 『중앙일보』, 1997년 4월 11일.

32) 『조선일보』, 1997년 10월 17일.

33) V. Moiseev, "On the Korean Settlement," *International Affairs*, No. 3(1997), p. 67.

결제를 원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신용거래를 원하고 있다. TU-80이나 BMP-3 등 첨단무기를 공동생산과 차후 수출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이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막대한 비용의 군사장비를 북한이 구매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금결제를 원하는 한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엘친정권의 대한반도정책 재정립

가. 한반도정책에 대한 신중론

1994년 이후 한·러간 일련의 사태진전은 엘친 초기 한국편향적인 대한반도정책의 궤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엘친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편향적 대한반도정책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긴장시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1992년 엘친 방한시 이미 조소동맹의 자동적인 군사개입 조항이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3월 말 빠노프 외무차관은 “북한이 일방적인 침략을 당할 경우 러시아는 원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1993년 말 러시아 하원선거에서 자리노프스키의 자유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사회 전반의 보수화에 의한 러시아 국내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발언은 엘친정권 내에서 한반도정책에 대해 재고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사한 엘친정부의 ‘빠노프외교’는 한국정부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로 다시금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러시아가 대한반도관계에서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96년부터 명확해진다. 러시아는 1994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동안 북한의 핵문제와 러시아가 제안한 평화를 위한 다자간회의 등에서 소외되면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5년 국가두마 선거에서 공산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였고, 1996년 6~7월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보수주의적 사회분위기를 대변해 외무장관을 친서구주의자인 코지레프에서 뽀리마고프로 교체하면서 대한반도정책에도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는 자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중국의 정책과의 비교선상에서 살펴보면서 스스로의 과도한 한국편향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약화시켰다고 본다. 북한핵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비난이 아니라 북한과 협의를 추진했다. 그로써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배타당하지 않고, 북한의 칭구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문제에 대한 협의당사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초반부터 한국에 일방적으로 경사된 정책을 지향하였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³⁴⁾ 실제로 러시아는 한국이 희망하는 대로 1961년 체결된 소련·북한간 “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원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러시아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전에 제안했던 8자회담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 함께 1996년 4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다. 4자회담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내 주는 단적인 예이다. 즉 러시아가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의 상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소외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인식한 러시아는 한반도정책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사라졌으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 영토적 통일성과 안보 등과 관련된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해관계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런데 러시아 성립 초기에 이러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러시아·북한 간의 관

34) M. L. 타타렌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한러포럼 제1차회의 보고서』 (1995년 10월 17~18일) (한양대 종소연구소,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pp. 161~162.

계가 위축,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러시아의 위치가 약화되었다. 이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참여를 배제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대한정책의 유효성은 러시아가 남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³⁵⁾ 또한 러시아 극동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미·일·중·한국의 여러 가지 책동으로, 러시아는 이들 동북아국가들과 이익이 합리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 재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³⁶⁾

결국 이러한 판단에 근거할 때 러시아의 한국편향정책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어느 한쪽으로 경사되지 않고 균형잡힌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북한관계의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의 대북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996년 4월 이그나텐코(V. N. Ignatenko)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5월의 셀레즈뇨프(G. N. Seleznyov) 국가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한 의회대표단의 방북으로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급 회담을 재개시켰다. 무역과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제1차 회담도 개최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 경제협력과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95년 "조소동맹조약"을 개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고했는데, 러시아는 그 대신 "우호협력기본조약"에 대해서 북한 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러시아가 친서방정책을 취하는 동안 약체화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금 강화하고,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³⁷⁾

35) 위의 글.

36) A. Yakovlev,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Position of the Region," *Far Eastern Affairs*, No. 2(1995), pp. 2~16.

37) 松井 弘明, "ロシア外交の變轉: コーズ イレフからプリマコフへ," 『國際問題』, No. 408(1997年 7月), p. 13.

나. 북한 핵문제

소연방의 해체는 북한에 여러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구소련의 공산주의 정권 붕괴가 북한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붕괴되지 않기 위한 생존전략을 취해야만 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북한은 국제적 고립의 위험성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핵무기를 얻으려는 노력을 강화시켰다.³⁸⁾

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러시아에게도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자신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더욱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할 수 없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대해 이미 북한이 5~6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러시아 대외정보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외무부와 원자력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도 충분치 않고, 북한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NPT 탈퇴결정에 대해 초반 러시아의 태도는 명확치 않았다. 러시아의 이러한 불명확한 태도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위상 재정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NPT 탈퇴결정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외무부 성명에서 “러시아는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조치에 무관심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자신의 행동결과를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

38) Yoshika Nakagawa,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the Communist States of Asia,” Trevor Taylor(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Empire*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2), pp. 95~96.

39) Игорь Рядов, “Супермен Ким Ир Сен,” *Новое Время*, No. 26(1994), pp. 18~19

명을 발표했다.⁴⁰⁾ 그런데 이와 더불어 모스크바방송은 “이번의 조치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북한정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의 미군기지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그것을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사찰 방침에 따른다는 것으로 그 요구는 극히 적절하다”⁴¹⁾라고 논평하는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일정한 이해를 표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주변국이나 한국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4월 외무부에서 미국·영국과 동시에 “그와 같은 결정(NPT 탈퇴)은 국제적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⁴²⁾ 동시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했다. 북한에 대해 NPT 탈퇴를 철회할 때까지 원자력부문에 있어 전문가 교육과 대표단의 교류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중지한다고 통지했다.⁴³⁾

이렇게 러시아는 북한의 결정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듯한 입장을, 다른 한편에서는 서방국가들과 공조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당시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한계성에 기인한다. 즉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를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 북한의 NPT 탈퇴선언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남겨진 외교적 행동반경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제재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⁴⁴⁾

러시아의 대북한 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또 다른 변수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유엔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북한의 결정철회를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40) 『ロシア月報』, 第597號(1993年 3月), p. 167.

41) 『ロシア月報』, 第597號(1993年 3月), pp. 168~169.

42) 『ロシア月報』, 第598號(1993年 4月), p. 129.

43) Valery Danisov, “The Problem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n Korea,” *International Affairs*, No. 8(1994), p. 41.

44) 創田 秀也, “朝鮮問題多國間協議論とロシア,” 『ロシア 研究』, pp. 118~119.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공조체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6월 한승주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거기에서 한미 양국 외무장관은 NPT로 복귀할 수 있는 공동 견해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러한 강한 반발에 적면한 러시아는 북한과의 분쟁을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평양으로 하여금 IAEA와의 협력을 회복케 하고 핵무기 비확산조약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서방에 러시아가 경솔하게 영합한 데 대해 북한이 러시아를 보다 아프게 징벌하려는 인상이 느껴진다”⁴⁵⁾라고 언급, 러시아 입장의 조심스러움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에 비해 중국은 보다 치밀한 대한반도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와는 달리 대북한 비난성명이나 대북 제재조치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북한으로 하여금 ‘NPT’로 복귀할 것을 설득하면서 북한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협의와 더불어 신중한 태도로 미국과도 협의를 했다.⁴⁶⁾

북한의 핵문제는 러시아가 원하듯 ‘조용’하게 종결되지 않았다. IAEA의 사찰에 이르는 과정과 사찰단계에서의 갈등은 심각한 것이었다. 북한은 ’94년 2월 말 일부 ‘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였는데, 북한은 ‘핵연료 재처리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했다. 당연히 남북한 당사자 관계도 긴장되고,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인 박영수는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에 이르렀다. 그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다. 여기에서 러시아로서 문제시된 것은 한국의 태도였다. 즉 한국은 공동으로 제재에 참가한 러시아보다 북한제재에 반대한 중국에 북한과의 사이에 어떤 중재역할을 부여하고 있었

45) 블라지미르 쓰코시에프, “러시아 핵물리학자 철수에 대한 평양의 강경한 조치,” 『이즈베스찌야』, 1993. 5. 20, 정일영 편, 『위의 책』, pp. 493~485.

46) Е. Дробышев,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требует корректировк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1 1996г. p. 16.

던 것이다. 북한은 대화창구를 미국으로 일원화하고자 했고, 한국은 국제 공조체제에서 중국에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에 대해 “모스크바는 적극적으로 중국의 외교를 관찰해야 한다”⁴⁷⁾고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의 실패를 주목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서 배제되는 상황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4년 3월 24일 러시아의 8자회담이 제안되었다.⁴⁸⁾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다국간회담의 형식을 통해 북한 ‘제재’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회담을 주도함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8자회담의 추진 역시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8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초 손성필 주러대사는 “그 문제가 국제적 성격을 띤다면 그 해결은 보다 복잡하다”⁴⁹⁾고 언급했으나, 그후 5월 IAEA의 추가사찰을 북한이 거부하고 다시금 제재론이 부상하자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은 빠노프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8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8자회담에 대해 다른 주변국가들도 제재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재로 가기 전 최종적 조치로써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1994년 6월의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은 한국의 대북한 압력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즉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한 제재에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방러기간중에 서명한 ‘한러공동성명’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한다”⁵⁰⁾

47) *Известия*, 24 марта 1994.

48) Valery Danisov, *op. cit.*, p. 42.

49) 『ロシア月報』, 第610號(1994年 4月), p. 151.

50) “Korean-Russian Joint Declaration,” *IFANS Review, Korea-Russia Relations*, vol. 2, No. 7(October 1994), p. 39.

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과 같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NPT체제로의 복귀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이를 수행하는 데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엘친은 일정한 전제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엘친은 “우리가 이번에 제기한 내용은 국제공조체제가 그 문제(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점에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 및 원자력기구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이다”⁵¹⁾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제기된 8자회담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김영삼의 러시아방문을 계기로 엘친은 제재의 필요성에 일정한 이해를 표하면서도 그 전제로 8자회담이라는 러시아 주도의 다국간협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반도문제에 있어 남북한 양측에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후 북한의 핵문제는 러시아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대북제재론으로 기울고 있었던 상황의 반전은 러시아가 제시한 8자회담이 아니라 북미관계의 진전을 통해서였다. 카터 前 미국대통령의 방북에서 북한 핵활동의 ‘검증가능한 동결’을 조건으로 하는 북미협상의 재개와 ‘남북 최고위급회담’의 개최가 돌파구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핵문제를 미국과 남북한의 과제로 남겨지게 하였다.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북미협상은 남북한 당사자의 최고위급회담 없이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제네바 ‘북미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문서는 북한측이 핵활동을 동결하고, 최종적으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쉬운 흑연감속로를 해체하는 대신 미국측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힘든 경수로를 북한에 공급하기 위해 ‘국제 전소사움’을 준비하는 동시에 대사관급 외교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대북한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이라는 조건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과정은 북한이 요구한 대로 남한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 양국간 관계로 진행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한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입의 발판을 마련되었다.

러시아는 8자회담 구상이 좌절된 상황에서 북한에 러시아형 경수로를

51) 『서울신문』, 1994년 6월 3일.

공급함으로써 대북한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⁵²⁾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부 차관 시드렌코는 러시아를 방문한 북미협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갈루치미 국무차관보에게 러시아는 최신형 경수로를 공급할 용의가 있음을 전했다. '94년 9월 빠노프 외무장관의 북한방문 주목적도 러시아형 경수로를 공급을 둘러싼 협의였다. 빠노프는 북한방문 전부터 러시아형 경수로를 공급하려는 의도를 표했고,⁵³⁾ 북한도 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형 경수로를 희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형 경수로를 희망한 최대의 이유는 그에 의해 한국형 경수로의 도입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 한국형 경수로가 도입된다면 북한은 중요한 에너지공급이 한국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며, 그것이 대규모 인적 교류를 수반하게 되면 북한의 정치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와 북한의 희망대로 상황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1995년 3월 '북미합의'에서 구축된 경수로 공급을 위한 국제 컨소시움은 미국, 일본,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 구체화되고, 그 설립협정에서 북한에 공급되는 경수로는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로 결정되었다. 그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러시아는 자국형 경수로의 공급을 전제한 KEDO 참여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수로형이 결정된 콜라룸푸르 협의에 러시아는 관심을 보였으나, 미국무부 차관보 대리 허버트와 북한 金桂寬 외교부 부부장간 북러간 실무협의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결국 협의는 '경수로사업은 약 1,000메가와트급 발전용량의 加壓輕水爐 2기'로 되었다. KEDO가 선정한 경수로형은 미국의 설계와 기술에 의해 개발되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개발형으로 되었다.⁵⁴⁾ 이 합의

52) *Известия*, 5 Августа 1994.

53) 『ロシア月報』, 第614號(1994年 8月), p. 106. 빠노프 외무차관은 이타르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국제적 재정지원이 주어진다면 북한 핵 개발계획의 경수로 전환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또한 “重水爐를 輕水爐로 전환함으로써 북한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54) “Joint U.S.-North Korean Press Statement on the Provision of Light-Water

문서는 북한도 한국형 경수로 공급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이 지역의 외교무대에서 미국에 그 지위를 약탈당했다. 이러한 패배를 당한 후 러시아가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⁵⁵⁾라고 러시아형 경수로 공급 좌절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러시아의 태도는 일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북한의 핵개발을 기본적으로 저지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국에 인접한 국가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외에 북한의 핵무장은 이 지역의 특성상 한국의 핵개발이나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도미노’식 전전 가능성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지역 국가가 핵으로 무장했을 경우 무력충돌시 핵전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남북한간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에 직면해 러시아는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 일정한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물론 러시아는 ‘등거리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대안을 갖지 못함으로써 서방의 공조체제의 한 부분을 맡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유엔에 의한 재재보다는 8자회담의 개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였으며, 제네바 ‘북미합의’ 이후에도 러시아는 KEDO 참가조건으로 러시아형 경수로 제공을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관해 어떻게든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 신평화체제 구축문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을 철회시키려는 시도는 주로 미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

Nuclear Reactors(LWR), Authorizing KEDO to Conclude the Reactor Supply Accord,”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9, No. 2(Summer 1995), pp. 357~358.

55) *Правда*, 16 июня 1995.

겼고, 부수적으로는 남북대화, IAEA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러시아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뿐이다. 따라서 ‘핵문제’와 병행해 북한이 제기한 ‘신평화보장체제’ 구상에서는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다.

북한은 1994년 봄 이후 의도적으로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4월 28일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신평화보장체제’ 수립협상을 제안하고, 지금까지의 군사정전협정을 사문화시키고,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조선인민군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대신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 설치,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공산측의 다른 한 당사자인 중국군대표단을 철수시켰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 역시 무실화시켰다.⁵⁶⁾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러시아도 북한이 주장하는 식의 북미간 베타적 평화체제 수립⁵⁷⁾은 허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이 주장하듯이 북미간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한반도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이는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로서는 한국이 주장하는 ‘남북합의서’에 의한 남북당사자간의 평화체제 수립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남북당사자간이 아닌 북미간 신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북한의 구도가 명확해지자 한국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다국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서는 다국간 협의가 진행될 경우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위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중국과 달리 정전협정의 당사국도 아니며,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로 갖고 있지 못한 러시아로서는 자신의 지위를 그리 낙관 할 수만은 없었다. 이러한 우려는 1994년 10월 말 중국 국무원 총리 이

56) 諸成鎬,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전략: 내용, 의도 및 문제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민족통일원, 1995), pp. 5~6.

57) 위의 글, pp. 31~34. 북한이 주장하는 협정의 당사자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만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남북한 간의 직접적 대화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 역시 배제되는 구도를 지니게 된다.

봉의 한국방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방한중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이 평화체제 수립문제에 있어 남북한을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당사자로 인식하게 되면 정전의 당사국인 미국·북한과 중국 및 한국이 참여하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다국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더불어 중국이 한국을 배제하는 북한의 ‘신평화보장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국은 고무될 수 있었다. 한국으로서는 남북대화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주변국가들을 관여시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도 주효했다. 러시아로서는 이 경우 한반도문제에 대해 한국이 보다 중국으로 경사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졌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이 남북간 평화체제 수립에 긍정적이라는 판단하에 남북 당사자와 미국, 중국을 더하는 4국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협의를 공공연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논의에서 중국의 관여는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그때 한국은 남북당사자가 평화체제 수립을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그것을 보장하는 구도를 ‘2+2’ 구상이라고 불렀다. 러시아가 배제된 ‘2+2’ 구상에 대해 러시아는 불쾌감을 표하고,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2+4’로 고칠 것을 주장했다.⁵⁸⁾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 가담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국간 협의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결부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입지가 극히 축소된다는 것이다.

북한도 기존에 주장하던 북미간 평화체제 수립의 한계성을 의식하고 ‘94년 제시했던 ‘신평화체제’에 대해 일정한 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6년 2월 22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미·북한 ‘잠정협정’안은 그 조정의 일환이었다. 그 안은 ‘신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과도적

58) Shim Jae Hoon, “Silent Partner,” *Far Eastern Review*, December 29, 1994 & January 5, 1995, p. 15.

조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다국간 협의의 중심적 의제는 ‘핵문제’에서 평화체제 수립문제로 이행되고 있었다.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4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4자회담’ 구상이었다. 이것은 이미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2+2’ 구상을 체계화한 것으로 남북한 당사국,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다국간 협의체였다. 4자회담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성취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 남북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4자회담에서 러시아는 배제되었다. 정전당사자도 아니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 특별히 양국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던 러시아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4자회담에 대해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 한국의 공로명 외무장관이 5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러시아로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뽐리마꼬프 외무장관은 “4자회담 구상은 그 참가자를 확대해야만 한다”⁵⁹⁾고 언급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이미 제시했던 8자회담이 부정되고, 러시아형 경수로 제공을 통한 한반도문제 관여도 거부되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조차 4자회담 구상으로 배제되자 러시아의 영향력이 실린 다국간 협의가 완전히 현실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자신을 배제한 다자간 협의를 방해할 외교적 역량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문제가 러시아를 배제한 채 진행된다는 것은 연방 해체 이후 자국의 영향력 저하를 의식하고 있던 러시아에 상당한 소외감과 초조감을 부여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보장 파트너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라. 북·러 기본우호조약 체결 협상

러시아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됨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의 변화를 도

59) 『ロシア月報』, 第635號(1996年 5月), p. 121.

모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방안을 드로브이세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 양국과 선린·우호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는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과제로 남는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고위급 수준에서 신중하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러시아·북한간 우호 원칙에 관한 신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간 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상호 협력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북한 별목공의 러시아 삼림 채벌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건설노동자와 농업노동자 파견, 국경지역에서의 교류 활성화, ‘두만강 개발계획’의 공동 참여 등이다. 셋째, 군사관계, 군사-기술 협력의 조정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무기와 군사기술의 한국 제공은 심사숙고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으로 북한과의 군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정치분야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러시아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 즉 러시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재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경사되어 있는 정책을 수정, 북한과 다방면에 걸친 관계회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를 추진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념적 동질성이나 막대한 경제지원을 해줄 수 없는 러시아에 대해 북한이 긴밀한 접촉을 원하지도 않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서 소외된 러시아는 어떤 형식으로든 새로이 한반도문제에 관여할 기반을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방안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우호조약 체결로 구체화되었다. 1961년 체결된 소련·북한간 ‘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은 1996년 9월 10일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는 그것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고한 상태였다. 조약의 폐지는 그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북·러간의 협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60) Е. Дробышев, там же, pp. 17~18.

더불어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의 전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나 통일 이후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체제의 유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⁶¹⁾ 미국은 한국이 원한다면 통일 이후 군사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전략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아태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토크나 연해주의 해군기지 등에 근접하게 되어 러시아의 군사적 상황을 매우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본다.⁶²⁾ 결과적으로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유지는 러시아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새로운 동맹조약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북·러 양국관계의 기본구조가 될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신우호동맹조약 체결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켰다. 이를 위해 '97년 1월 평양에서는 러시아측 대표로 카라신 외무차관이, 북한측에서는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외무차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기존의 협력관계와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특성 및 양국관계 활성화를 위한 신조약안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2차 회담은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신조약의 협의는 대부분 조항에 합의하고 있는데, 북한이 신조약 서문에 고려연방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문구와 안보위협 발생시 협의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어 양국간 조정중에 있으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뽀리마꼬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과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과 다방면에 걸친 접근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간 “투자장려 및 상호보호협정”, “의학아카데미 간의 학술협력협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북한 국립과학원간의 학술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양국 국민의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그 밖에도 10여 개에 이르는 양국 정부간 협정 및 국가기관간

61) В. И. Монсеев, “Россия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2(1996), p. 50

62) В. Ткаченко, “Последстви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для Росси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협정안이 상호 합의단계에 와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 및 군사 기술 분야의 협력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⁶³⁾ 이는 러시아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보이는 구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5. 결 론 :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외교 전망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안전보장체계로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받아들여지는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동유럽으로 확대됨으로써 러시아의 지위가 하락하였고, 동북아에서 역시 러시아는 자국이 아태지역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논의체계에서 번번이 러시아가 배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형 경수로를 채택하는 결정을 내린 콜라룸푸르에서의 북미회담, 북한의 ‘신평화체제’의 구상은 러시아에게는 외교적 실책과 같은 것이었다. 한반도문제는 북미 2국간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그 위에 한국이나 중국이 관여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통제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그리 크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됨으로써 큰 타격을 받았다. 주변국들은 러시아를 동북아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러시아는 자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선택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러시아는 지역안보의 주도국이 아니라 대상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단지 핵을 포함한 군사력과 지정학적 위치 등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국가로 인식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가 러시아에게는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63) V. Moiseev, *op. cit.*, pp. 65~72.

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러시아가 구소련 말기부터 취한 한국편향정책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악화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⁶⁴⁾ 그러므로 러시아가 다시금 한반도에서 자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악화된 관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은 러시아가 한국으로 과도히 경사된 정책을 벗어나 한국·북한간 균형 잡힌 등거리 외교를 취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러시아로서는 남북한 양국에 균형정책을 취해야 할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러시아 국내에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자 세력이 상당히 증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외정책에 있어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고 있고, 엘친-꼬지레프의 친서구주의적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1996년에는 대외정보국장의 경력을 지닌 보수세력으로 알려진 뿐리마꼬프가 외무장관이 되었다. 둘째, 기대와 달리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양국간 교역량은 증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매우 빈약한데 한국은 중국에는 이미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데 비해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3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⁶⁵⁾ 셋째, 어느 정도 북한에 경사된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보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치적 구상에서도 북한을 지지하고, 평양과 군사 및 기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대북한 관계개선에 보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등거리 외교정책이 성공적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재 러시아는 남북한 양국과 모두 그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의해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으며, 한국과도 빼걱대고 있다.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은 최근 상호 무관심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금년 7월 양국 외교관의 추방

64) Seung-Ho Joo, “Soviet Policy on Seoul-Moscow Normalization,” *Comparative Strategy*, vol. 13, No. 4(October/December 1994), pp. 421~437.

65) Е. Дробышев, там же, р. 19

과 한국의 외무장관 해임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양국의 기대불충족과 상호불신이 상호 냉소적인 양태로 비화된 예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남북 한간 등거리 외교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맞이하자마자 다시금 금융위기로 내몰려 최근 러시아는 러시아 국채에 대한 채무를 3개월간 연기하는 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한 상태이며, 옐친은 사임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을 할 수도 없으며, 러시아 입장에서도 경화결제가 거의 불가능한 북한과의 교류가 경제적으로 실익을 가져다 줄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러시아에 북한은 한국을 대체할 만큼의 메리트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 재정립은 한국과의 관계구도를 배제하고 진행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와 한국 간 상호 불만과 냉소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러·북한의 관계 재정립이 대북한 편향정책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얼마간은 한국으로 어느 정도 경사된 등거리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그재그식의 모습을 그리면서 진전하게 될 것이다. 양국간의 교역규모나 양은 보다 증대될 것이며, 인적·문화적 교류 역시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역시 옐친정부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정도 관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신우호조약의 체결은 이러한 관계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書評〉

修正主義的 韓國戰爭史 연구에 대한 批判과 自省

— 유영익 편, 『修正主義와 韓國現代史』(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金 幸 福

(國防軍史研究所 先任研究員)

1. 한국현대사와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

최근에 들어 우리 나라 현대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부문에 관한 연구자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부쩍 늘어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軍事史에 대한 연구자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서 좋은 論著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듈다.

놀랍다고 하는 까닭은 그 동안 군 관련 문제가 학계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던 데 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군사분야는 그 영역의 특수성이라는 점이 결림돌이 되어서 자유스러운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데도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군사문제를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차제에 군 관련 연구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이 분야의 연구물들이 자주 발표될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의 주제로도 빈번히 취급되고 있으니 격세지감뿐만 아니라 놀라운 느낌까지 든다는 것이다.

한편, 당연하다는 점은 우리 나라의 처지와 입장에서 군사문제를 연구하는 일이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研究趨勢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치른 이후 현재까지 南北分斷의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로서 군사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필수적인 일이 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군사분야에 관한 한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 외국의 수준 높은 연구방법과 성과를 따라 배우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군사연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사문제를 제외하고서는 한국현대사를 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 군사사 분야의 연구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된 『修正主義와 韓國現代史』는 현대사에 관한 중대되는 이런 관심과 연구추세를 반영하는 책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國際學大學院 부설 韓國學研究所가 지난해 10월에 「한국현대사 연구의 반성과 전망： 수정주의 이후의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던 開所紀念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이 연구소의 소장인 유영익 교수가 모아 펴낸 것이다. 학술총서 제1집이라고 하므로, 예상컨대 앞으로 이런 종류의 책들이 계속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編者는 이 책의 구성 목적을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수정주의(revisionism)의 영향하에 촉진되었던 한국현대사 연구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올바로 설정해 보려는 데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정주의라고 하지만 책에 수록된 모든 논문들이 수정주의의 내지 그것의 학문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며, 단지 대부분의 글들이 .수정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한국전쟁과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제목 중에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처럼 바로 한국전쟁을 지칭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글들도 그 내용 속에 한국전쟁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현대사에 있어서의 수정주의와 한국전쟁 연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반증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2. 8편의 논문과 그 주제들

이 책에 첫 번째로 실려 있는 유영익의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연구’(여덟 편의 글 중에서 이것만이 유일하게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아니다)는 위에서 언급된 이 부문의 주제가 요약 정리된 글이다. 이 글에는

- ① 수정주의 학설의 계보
- ②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인식
- ③ 국내학계에 끼친 수정주의의 영향
- ④ 수정주의 학설의 문제점
- ⑤ 수정주의 이후의 연구방향

등이 차례로 논급되어 있다.

유영익 교수의 글에서 이렇게 시작된 수정주의 학파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는 차상철 교수의 ‘냉전의 기원과 수정주의 학파’에 더욱 자세히 논술되어 있다. 그는 이 주제를 ① 수정주의 학파의 등장, ② 수정주의 학파의 시작, 그리고 ③ 수정주의 학파의 영향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이 부분은 유영익 교수의 논술과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정식 교수는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스탈린의 한반도정책’에서 1949년 이후 스탈린의 對韓半島政策의 究明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미국에서 소련의 한반도정책에 관해 정설로 받아들여진 로버트 슬러서(Robert M. Slusser)의 論調를 반박한 후,

- ① 스탈린의 한반도정책의 기조
- ② 스탈린과 만주 利權
- ③ 스탈린과 38도선
- ④ 런던외상회의의 결렬과 힘의 대결
- ⑤ 스탈린의 중국정책 轉變
- ⑥ 국제정세의 변화와 스탈린의 한반도정책
- ⑦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신탁통치제도

⑧ 스탈린의 한반도 전략가치의 재평가와 한국전쟁

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 글에서 스탈린이 해방 전후부터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또 일관성 있는 정책을 따른 것도 아니었음을 설파한다. 또한 그는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스탈린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너무 어두워서 매우 귀중했던 해방 후 3년간 남한 정국을 방향타 없이 표류시키다가 군대를 철수해 버림으로써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이완범 씨는 ‘한반도 분단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미국과 국내정치세력 간의 역학관계’에서 해방직후 3년간, 즉 1945년부터 1948년까지를 집중 고찰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내·외부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외부적 힘의 공백기에 발현된 민족 내부의 힘’과 ‘미국 및 국내정치세력의 결합, 즉 국제적 성격이 강한 복합형의 형성 추이’를 살펴보고, 결국 한반도의 분단은 최초에는 民族外의인 외세의 힘(外因)에 의해 분할점령이 강요되었으나, 민족 내부의 근본적인 원인(內因)과 결합되어 복합적인 분단구조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박명립 씨는 그의 ‘한국전쟁 기원과 성격－전통주의·수정주의 이후의 시각과 방법의 모색’에서

- ① 시각과 퍼스펙티브 :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종합과 지양의 모색
- ② 연구의 출발 : 인식과 해석·평가의 준거 설정－농민·민주주의·민족주의
- ③ 방법의 문제 : 분석의 영역과 방법
- ④ 구조와 행위의 문제 : 상호 결정과 3층 수준의 動學
- ⑤ 전쟁의 성격과 평가

라는 小主題들을 통해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 새로운 어떤 것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영호 씨의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은 커밍스 内戰論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스탈린의 롤백理論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상인 씨의 ‘고개 숙인’ 수정주의－‘한국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

에서는 한국현대사 연구를 회고하고, 한국현대사 연구와 수정주의의 위기 상황, 그리고 한국현대사의 향후 과제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

끝으로 Steven Hugh Lee의 *The American Empire and the Cold War in Asia*는 미국이 제국주의를 추구하게 된 경위와 그 현대적인 힘의 발현, 그리고 Franz Schurmann의 논리와 윌리암스 및 콜코 해석의 중요한 차이점, 그리고 1945~1975년 사이에 아시아 즉 한국과 월남, 일본과 중국에서 전개되었던 냉전의 양상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논급하고 있다.

3. 美國的 수정주의의 성격

유영익의 설명에 따르면 수정주의란 말은 '1959년 「미국외교의 비극」(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이라는 책을 폐낸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암스(Williams Appleman Williams)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주도된 냉전시대사 연구의 학풍'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라고 되어 있다.

이들 비주류 歷史學者群은 마르크시즘 내지 네오 마르크시즘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19세기 이래 미국이 추구한 대외정책을, 미국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파함으로써 기존의 傳統/正統主義(traditional/orthodox)學派 및 현실주의(realist)학파의 정치·이념 중심 통설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 중 일부 학자는 미국이 참여한 주요 전쟁의 원인을 구명하는 작업을 펼쳤는데, 그중 '급진적 수정주의자'로 알려진 콜코(Gabriel Kolko)는 미국이 개입한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및 월남전쟁 등이 모두 미국 자본주의체제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발단되거나 참전된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소련의 대외정책을 옹호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추세와 더불어서 특히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해 이 같은 수정주의적 해석을 시도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톤(Isidore F. Stone), 플레밍(Denna F. Fleming), 콘데

(David W. Conde) 및 콜코 부부(Joyce and Gabriel Kolko)였다. 스톤은 「한국전쟁 비사」(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History)에서 한국전쟁은 맥아더, 이승만, 장개석 및 덜레스 간의 ‘침묵의 음모’에 의해 빚어진 전쟁이라고 추론함으로써 ‘자유진영’의 전통주의적 해석—즉, 소련이 한국전쟁을 사주했다는 주장—에 처음으로 의문을 던졌다.

이후로 수정주의자들은 스톤의 추론을 정밀화하는 작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을 ‘민족해방의 정통세력’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남한이 한국전쟁을 도발했다는 소위 ‘북침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스톤의 추론을 확대·부연하여 한국전쟁은 맥아더가 이승만과 ‘共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어났다는 이른바 ‘誘導說’을 제창하는 사람도 출현하였다.

한국전쟁을 둘러싼 이 같은 수정주의적 학설은 미국의 커밍스(Bruce G. Cumings), 시몬즈(Robert Simmons) 및 메릴(John Merrill), 영국의 할리데이(Jon Halliday), 그리고 호주의 맥코르맥(Gavan McCormack) 등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확산되었다.

특히 이른바 ‘新左派’(the New Left)의 이론적 기수였던 커밍스는 박사 학위 논문과 학위 취득 前後에 발표한 일련의 한국현대사 관련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의 대표작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을 저술·출판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의 배경을 구명하는 연구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한국현대사 관련 사료를 섭렵·분석한 끝에 외국인 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 해방전후사를 ‘개척’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다. 그는 나름대로의 총체론적·구조주의적 한국현대사 인식체계를 구축·제시함으로써 국내외 학계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커밍스로서 대표되는 수정주의적 한국현대사 인식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측면과 남한의 反動性, 그리고 이들의 결합에 의한 음모적 전쟁유도, 따라서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또는 독점적인 민족정통성의 부여와 전쟁성격의 민족해방전으로의 규정 등”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전통주의 학파와 현실주의 학파의 觀角과 主張에 정면으로 도전

했던 수정주의 학파는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소련의 정책에 대해서는 동정적이고 옹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소련의 팽창주의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냉전 초래의 일차적이고 중요한 책임이 소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호개방 팽창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온 미국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한국현대사에 관련된 미국 수정주의자들의 論著들은 주로 미국적 시각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집필된 글들이었다. 특히 커밍스의 한국현대사론은 미국의 對韓政策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한국의 기층민중에 대한 강렬한 연민의 정을 서술의 밑바닥에 깔고 있다.

커밍스의 책이 발간되자 이에 대한 미국 학계의 반응은 극히 호의적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인 서평자들은 이 책을 한국현대사에 관한 ‘결정적 업적’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해 최상급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4. 수정주의의 영향과 그 극복

미국 수정주의자들의 학설은 우리 나라에도 밀려오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학계에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관련 논저들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다음부터였다. 그의 논저들은 반공·안보 이데올로기 일색이었던 한국 지성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킴과 동시에 때마침 광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고조되어 있던 국내외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및 반미운동과 맞물리면서 ‘진보적’ 사회과학자들과 민중사학자들 간에 탐독·원용되었다. 그 결과 그의 연구물은 1980년대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를 휩쓴 ‘知的革命’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의 연구방법론은 한국현대사 연구와 서술방식에 놀라운 전환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3년 이후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진 한국현대사 연구물이 국내 서점가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수정주의적 논저들이 한국 학계를 ‘강타’한 결과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초반

에 걸쳐 국내 한국현대사 연구의 흐름은 수정주의가 그 주류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80년대에 국내 사회과학계 및 역사학계에서 수정주의적 학풍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커밍스 등에 의해 미국에서 발단된 수정주의가 한국사학계에 끼친 공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커밍스의 논저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정주의 학설은 反共保守 이데올로기 일색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참신한 자극제로 가능하였음을 인정받고 있다. 커밍스의 예리하고도 총체적·분석적인 연구방법론은 그가 풍부하게 인용한 미국측 자료들과 함께 국내 한국현대사 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커밍스는 특정 연구분야에서 한국사학사에서 오래 기억될 만한 독창적 학설을 제창하였으며, 참신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커밍스의 논저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그의 논술은 얼핏 보아 완벽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유영익은 그의 논저에 대해 1989년 이래 국내학계에서 제기되었던 비판을 모아 ① 목적론적인 연구방법론, ② 균형감각의 결여, ③ 음모 이론의 약점, ④ 자료의 편향적·제한적 이용, 그리고 ⑤ 한국사에 대한 거시적 판단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의 기원을 논하면서 그가 소련 및 중국측 자료를 충분히 발굴·활용하지 못한 것은 그의 한국사 연구의 결정적 한계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소련측의 기밀자료가 속속 공개되고 소련의 對韓政策에 관한 연구가 진척됨으로써 한국현대사—특히 한국전쟁—에 관련된 커밍스의 주장은 거의 모두가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에 도입된 수정주의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보호벽 뒤에 숨어 천편일률적으로 반공·안보 논리의 역사기술을 일삼았던 국내 학계에 경종을 울려 주었다. 한마디로, 수정주의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외교사 학계에서 하나의 비주류 학풍에 불과했던 수정주의가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거의 10년간 현대사 연구의 주류학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의 기성학계는 오랫동안 이러한 수정주의의 학문적 도전에 설득력 있는 반론을 내세우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유지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 수정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일부 ‘진보적’ 사회과학자 및 역사학자들 간에 한국역사를 왜곡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러한 ‘시행착오’가 묵과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수정주의는 역사상 명멸했던 어느 거창한 학설이나 이론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가진 過性的 外來思潮였다고 볼 수 있다. 수정주의는 그것에 內在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수정주의 史家들의 방법론적 결함 및 자료활용의 한계 등의 약점을 때문에 냉전 종식 이후 재평가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만시지탄이 있으나 근래 國內外에서 수정주의의 장점을 취하여 그 약점을 과감히 비판·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사 전문가들 간에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다 같이 止揚하고 ‘제3의 새로운 연구시각’을 개발하자는 自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 한국 역사학계는 수정주의로 인하여 왜곡된 한국현대사—특히 해방 8년사 서술의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을 서두름과 동시에, 그 동안 수정주의의 압도적 영향하에 위축되었던 특정분야의 근·현대사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 책 『修正主義와 韓國現代史』는 이 부문에 있어서 국내외의 역사학도들에게 요긴한 길잡이 역할을 다함으로써 한국현대사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1998年度 前半期 軍事史 關聯 博士學位論文 紹介

- 朝鮮後期 营將制 研究－鄉村支配와 관련하여－(徐台源, 東國大, 1998. 8)

1. 서 론

- 2.壬辰倭亂 중 軍制의 改編과 束伍軍
3. 营將制의 성립
4. 营將制에 의한 17세기 집권체제의 강화
5. 营將制에 의한 18세기 鄉村의 治安維持
6. 营將制에 의한 19세기 민란·변란의 진압
7. 결 론

- 大院君 執權期(1863~1873) 西洋勢力에 대한 대응과 軍備增強
(延甲洙, 서울大, 1998. 8)

序 論

1. 권력구조의 변화와 권력집단의 동향
2. 西洋勢力에 대한 대응
3. 西洋勢力의 侵入에 대비한 군비증강
4. 軍備增強을 위한 財政增大

結 論

* 〈軍史〉誌에서는 軍事史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및 연구단체에 軍事史 研究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軍事史 관련 박사학위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박사학위논문이 빠짐없이 소개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新刊紹介

| 구 분 | 내 용 |
|---|---|
| 韓國戰爭 資料叢書 (1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編 • 국배판 • 1998. 7. 6. | 戰後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3년 10월부터 1954년 6월까지 판문점 및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 관계문서를 수록하였음. 여기에는 회의록, 각국 대표의 기조성명 및 제안, 미국대표가 국무부와 주고받은 전문, 회의경과에 대한 언론보도 및 브리핑 자료, 회의결과에 대한 유엔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회의에 임했던 각국의 이익과 전략,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의도, 그리고 남·북한 간의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을 살피는 데 유용한 자료임. |
| 中國人民解放軍史 • 李進永 編著 • 신국판 • 1998. 12. 28. | 중국인민해방군이 紅軍으로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다루었음. 특히 중국군의 성장 과정 중에 大長征, 國民黨 정부군에 의해서 수행된 掃共戰, 對日抗戰, 그리고 인접국과의 紛爭 등에서 보여 준 중국군의 작전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와 전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음. |

| 구 분 | 내 용 |
|---|--|
| <p>對非正規戰史 Ⅱ (1961~19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羅鍾三 著 • 신국판 • 1998. 12. 28. | <p>1961~1980년까지 20년 동안 北韓의 對南戰略을 고찰하고, 韓半島를 赤化統一하려는 戰略戰術에 따른 북한의 非正規戰을 분쇄하는 우리의 對非正規戰을 內陸作戰(무장공비소탕작전, 간첩검거작전), 海岸作戰, 海上作戰, 기타작전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특히 청와대기습 미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광천지구 무장공비사건 등에 대해서는 작전기간, 동원병력, 성격 등을 감안하여 주요작전으로 처리하였음.</p> |
| <p>UN軍 支援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孫文植 著 • 신국판 • 1998. 12. 28. | <p>UN군은 UN창설 이후 최초로 집단안전보장 원칙하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음. 이 책은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UN군의 참전의의와 전훈을 되새김하기 위하여 전투부대와 의료지원 부대를 과연한 국가, 그리고 구호물자를 지원한 국가와 국제기구의 활동 등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음.</p> |

| 구 분 | 내 용 |
|--|---|
| <p>蘇聯軍 創設期 軍事 關聯 文書選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在勳 編著 • 신국판 • 1998. 12. 28. | <p>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1941년 獨蘇戰 발발시까지의 소련 군사관련 문서들을 1917년 2월 혁명부터 같은 해 10월 혁명까지의 기간, 10월 혁명 이후부터 1920년 내전 종료 시까지의 기간, 1921년 내전 종료 후부터 1941년 독소전 발발시까지의 기간 등 특정시기 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였음.</p> |
| <p>建軍 50年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編 • 4×6배판 • 1998. 9. 10. | <p>정부수립 및 건군 50주년을 맞이하여 미군정기에 창설된 국방경비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 그후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국군의 성장과정을 ① 건군기 ② 전쟁/전후정비기 ③ 국방체제 확립기 ④ 자주국방 기반조성기 ⑤ 자주국방 강화기 ⑥ 국방태세 발전기 등 여섯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로 특징적인 사항만을 정리하였음.</p> |

| 구 분 | 내 용 |
|---|---|
| <p>紀效新書 (軍事史研究資料集 : 제6, 7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戚繼光 著 • 國防軍史研究所 編 • 4×6배판 • 1998. 12. 30. | <p>『紀效新書』는 16세기 중엽 이후 明나라의 戚繼光이 지은 兵書로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전래되어 이후 조선의 군사부문을 위시한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음. 특히 조선에서는 이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의 軍制가 騎兵 중심에서 步兵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음. 이번에 影印發刊되는 『紀效新書』는 조선의 주체적 입장에서 정리된 朝鮮增刊本을 저본으로 한 것임.</p> |
| <p>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 (現代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編 • 4×6배판 • 1998. 12. 28. | <p>《韓國의 軍服飾發達史》(고대~독립운동기)의 속편으로 광복 이후 국군창설 전후기부터 1995년에 이르기까지 육군·공군·해군 등 각군의 복식변천 및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편찬하여 한국 현대 군복식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p> |
| <p>戰跡紀念物便覽集 II (고대~광복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編 • 4×6배판 • 1998. 12. 28. | <p>고대~광복 이전까지 건립된 전적기념물들을 각 도·시·군별로 체계적으로 편집, 발간하여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전파하고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과 숭고한 얼이 담긴 유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총괄 서술한 것임.</p> |

| 구 분 | 내 용 |
|---|---|
| 韓國軍事史論文選集 (제2, 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編 • 4×6배판 • 1998. 6. 30. | 광복 이후 高麗時代 軍事史 研究는 군사사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성격을 규명해 보려는 노력이 더 해져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본서는 그간의 주요한 연구성과 가운데 47편을 엄선·수록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反芻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한국군사사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음. |
| 護國戰歿勇士功勳錄 (제6, 7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軍史研究所 編 • 4×6배판 • 1998. 6. 30. | 이 책은 8·15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각종 폭동 및 반란진압, 共匪討伐, 한국전쟁 및 월남전쟁 등에서 散華하신 분들의 殺身報國 정신을 선양하고 護國思想을 昂揚하기 위한 사업의一環으로 편찬된 것임. 제6권에는 제주 4·3사건 및 여순반란사건 관련 발표문 등이, 제7권에는 공비토벌작전 전투상보 및 창군기 남북한 연표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전사자의 개인별 인적사항, 소속부대의 전투사항, 개인의 功績 사항, 전사일자 및 전사장소, 安葬處 및 안장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음. |

參戰者研究室 利用 案內

國防軍史研究所에서는 한국전쟁·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신 분들의 전사 연구, 참전기록 및 전투기록(수기, 회고록, 전기 등) 열람, 참전자간 정보교환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 자료실(전쟁기념관 4층)에 『참전자연구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 래 —

1. 연락처 : 국방군사연구소 자료실

709-3188, 3191, 3199

2. 이용시간

- 평일 : 09:30-16:30
- 토요일 : 09:30-12:30

3. 편의제공

- 비품 : 책상, 의자, 캐비닛, 녹음기, 사진기 등
- 자료 : 전사자료, 수기, 회고록 자료, 군사지도
- 기타 : 복사

『軍史』誌 投稿案內

1. 原稿內容 및 範圍

가. 國내외 軍事史에 관한 내용

나. 韓國의 國防 및 安保와 有關한 軍事·政治·外交分野에 관한 내용

다. 가,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
논문 번역 등

2. 原稿作成 要領

가. 原稿分量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脚註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A4용지로 함.

나. 原稿作成은 國·漢文을 混用하고 固有名詞 또는 外國語는 原
語를 () 안에 밝힘.

다. 註는 脚註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
아 숫자로 함(예 : 36)).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제재지
또는 저서』, 발간처, 발간연도, 페이지의 순서 및 방식으로
함.

3. 投稿要領

가. 提出하는 原稿는 그대로 掲載할 수 있는 완고상태여야 하며,
반드시 디스켓을 함께 보낼 것.

나. 郵送時 필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간략한 이력/경력을 명
기할 것.

4. 原稿審查 및 稿料

가. 原稿의 掲載 與否는 當 研究所에서 審議를 거친 후 決定함.

나. 接受된 原稿는 掲載與否에 관계없이 返還하지 않음.

다. 掲載된 原稿에 대해서는 所定의 稿料를 支給함.

5. 其 他

가. 『軍史』는 연간 2회 發刊하고 있음(前半期 : 6월, 後半期 : 12
월). 따라서 매년 3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전반기에, 9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후반기에 게재함.

나. 問議/連絡處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 우편번호 140-021

國防軍史研究所 民族軍史部 『軍史』誌 編輯擔當官

전화 : 02) 709-3186

軍 史 (第 37 號)

1998年 12月 26日 印刷

1998年 12月 28日 發行

發行處 國 防 軍 史 研 究 所

發行人 朴 淳 贊

印刷人 第 1 文 化 事 業 所

<非賣品>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
見解가 아님.

